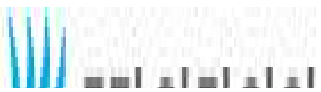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322-01

2011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 10.

연구수행기관	인권의학연구소
연구책임자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공동연구원	주영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최현정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남상덕 (인권의학연구소)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임승준 (인권의학연구소)
연구보조원	황주영 (인권의학연구소) 방예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주영 (정신과 전문의) 김혜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연구자문	김희수 (법무법인 창조) 이훈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목 차

제1장. 서론 ····· 1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8
3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 19

제2장. 고문피해 관련 선행연구 검토 ····· 23

1절. 국내 연구 현황 ····· 23
2절. 국외 연구 현황 ····· 35

제3장. 고문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 법체계 ····· 39

1절. 고문에 관한 국제적 기준 ····· 39
1. 고문과 고문피해자 개념 ····· 39
2. 고문방지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 41
3. 이스탄불의정서 ····· 45
4. 범죄피해자와 권력남용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칙 선언 50
2절. 고문에 관한 국내 법체계 ····· 52

제4장. 고문피해자 지원 현황 ····· 63

1절. 공적 지원 현황 ····· 63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조사 ····· 63
2. 국가 과거사관련기관 조사 ····· 65
3. 법적 구제 ····· 67
2절. 민간 지원 현황 ····· 75

제5장. 고문피해자 설문조사 결과 ····· 83

1절.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과 분포 ····· 83
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 86
1. 인구통계학적 분석 ····· 87
2. 고문사건에 대한 분석과 의료인의 개입 ····· 92
3. 고문의 유형과 피해 ····· 107
4. 고문사건 이후의 생활고통 분석 ····· 119
5. 고문사건 이후의 건강 실태 ····· 125
6. 고문사건 이후의 자살시도 분석 ····· 132
7. 고문으로 인한 정신심리적 후유증 분석 ····· 134
8. 고문피해자 가족의 고통 분석 ····· 143
9. 국가구제조치에 대한 만족도 ····· 145
10. 고문피해자 지원에 관한 요구도 ····· 155

제6장. 고문피해자 심층면접조사 결과 ····· 163

1절.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선정과 구성 ····· 163
2절. 심층면접조사 도구와 진행과정 ····· 164
3절. 심충면접조사 결과 ····· 167
1. 정신과적 진단결과 ····· 167
2. 심층 면담의 현상학적 분석 ····· 168

제7장. 범죄 및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방문조사 결과 ····· 199

제8장. 결론 ····· 213

1절. 조사결과의 요약 ····· 213
1. 설문조사 결과 ····· 213
2. 심층면접조사 결과 ····· 219
2절. 고문방지와 고문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언 ····· 223
1. 고문피해에 관한 지속적 조사 ····· 223
2. 고문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노력 ····· 229
3. 고문피해자 재활을 위한 치유센터설립의 필요성 ····· 237
3절. 고문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246

참고문헌 ····· 251

<부록 1> 심층면접 분석표 ····· 255
<부록 2> 고문피해 실태조사 지침서(안) ····· 268
<부록 3> 설문지-당사자용 ····· 271
<부록 4> 설문지-가족용 ····· 293

<표 목차>

[표4-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고문 피해사건 결정례 ····· 63
[표4-2] 한국의 과거사 조사기구 ····· 65
[표4-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심 권고 사건 ····· 70
[표5-1] 설문대상자의 고문사건 분포 ····· 85
[표5-2] 고문사건에 따른 설문대상자의 분류표 ····· 86
[표5-3] 고문피해자들의 사건별 빈도 ····· 86
[표5-4] 성별 ····· 87
[표5-5] 연령 ····· 87
[표5-6] 현재거주 지역 ····· 88
[표5-7] 학력 ····· 89
[표5-8] 현재 월 수입 ····· 90
[표5-9] 의료보장형태 ····· 91
[표5-10] 현재 혼인 관계 ····· 91
[표5-11] 현재거주형태 ····· 92
[표5-12] 고문피해 당시 연령 ····· 93
[표5-13] 고문피해 당시 직업 (한국표준분류체계) ····· 93
[표5-14] 고문피해 당시 직업 ····· 95
[표5-15] 사건별 고문을 당한 장소 ····· 96
[표5-16] 시대별 고문을 당한 장소 ····· 98
[표5-17] 고문을 당한 이유 (중복표기) ····· 98
[표5-18] 사건별 불법구금일 ····· 99
[표5-19] 시대별 불법구금일 ····· 100
[표5-20] 사건별 투옥일 ····· 101
[표5-21] 시대별 투옥일 ····· 101
[표5-22] 나의 사회적 신념에 확신이 있었다(사건별). ····· 102
[표5-23] 나는 중요한 사회운동에 임하고 있었다(사건별). ····· 102
[표5-24] 고문을 받거나 투옥당할 것이라는 각오(사건별) ····· 103
[표5-25] 나의 사회적 신념에 확신이 있었다(시대별). ····· 103
[표5-26] 나는 중요한 사회운동에 임하고 있었다(시대별). ····· 104
[표5-27] 고문을 받거나 투옥당할 것이라는 각오(시대별) ····· 104
[표5-28] 의료인의 진료 여부(사건별) ····· 105
[표5-29] 의료인의 진료 여부(세부사건별) ····· 105
[표5-30] 의료인의 진료 여부(시대별) ····· 105
[표5-31] 고문 과정에서 의료인이 취한 조치 ····· 106

[표5-32] 고문 분류 ····· 107
[표5-33] 고문 유형 ····· 108
[표5-34] 사건별 고문 분류 ····· 109
[표5-35] 시대별 고문분류 ····· 110
[표5-36] 고문유형에 따른 고통수준 ····· 111
[표5-37] 고문유형에 따른 집단 ····· 115
[표5-38]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의 계통적 분류(중복표기) ····· 115
[표5-39] 사건별 신체손상 유무 ····· 116
[표5-40] 신체손상 유형 순위 ····· 117
[표5-41] 사건별 계통적 신체손상 빈도 ····· 118
[표5-42] 세부사건별 계통적 신체손상 빈도 ····· 118
[표5-43] 시대별 신체손상 유무 ····· 119
[표5-44] 생활 고통 유형 ····· 120
[표5-45] 사건별 생활고통 유형 ····· 120
[표5-46] 세부사건별 생활고통 유형 ····· 121
[표5-47] 시대별 생활고통 유형 ····· 121
[표5-48] 사건별 생활고통 분석 ····· 122
[표5-49] 생활고통유형에 대한 변인 분석 ····· 124
[표5-50] 사건별 음주여부 ····· 125
[표5-51] 사건별 알코올 의존성 여부 ····· 125
[표5-52] 시대별 알코올 의존성 여부 ····· 126
[표5-53] 사건별 흡연 여부 ····· 126
[표5-54] 고문피해자들이 현재 진단 받은 질병 ····· 128
[표5-55] 사건별 현재 진단 병력 빈도 ····· 129
[표5-56] 연령에 따른 질병진단 분포 ····· 131
[표5-57] 성별에 따른 질병진단 분포(남자) ····· 131
[표5-58] 성별에 따른 질병진단 분포(여자) ····· 131
[표5-59] 사건별 자살시도 여부 ····· 132
[표5-60] 세부사건별 자살시도 여부 ····· 132
[표5-61] 사건별 자살시도 횟수 ····· 133
[표5-62] 사건별 자살계획 여부 ····· 133
[표5-63] 사건별 참여자들의 자살계획 횟수 ····· 134
[표5-64] 고문사건 관련 심리적 후유증 위험군 ····· 135
[표5-65] 고문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심리적 후유증 비교 ····· 136
[표5-66] 고문사건 재판 결과에 따른 심리적 후유증 비교 ····· 136
[표5-67] 고문사건 집단에 따른 심리적 후유증 비교 ····· 137
[표5-68] 조작간첩사건 관련 집단 구분에 따른 비교 ····· 138

[표5-69] 조작간첩사건 관련 집단 구분에 따른 심리적 후유증 비교 ····· 139
[표5-70] 심리적 후유증 변인분석 ····· 140
[표5-71] 고문피해자 가족의 생활 고통 ····· 143
[표5-72] 복합성 외상후 증후군 위험도 ····· 144
[표5-73] 국가 과거사관련기관에 고문 및 피해조사 신청유무(사건별) ····· 146
[표5-74] 국가 과거사관련기관에 고문 및 피해조사 신청유무(시대별) ····· 146
[표5-75] 국가기관 재조사 결과 고문당한 사실 인정여부(사건별) ····· 147
[표5-76] 국가기관 재조사 결과 고문당한 사실 인정여부(시대별) ····· 148
[표5-77] 국가기관 재조사 결과에 대한 만족도(사건별) ····· 148
[표5-78] 국가기관 재조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내용 ····· 149
[표5-79] 고문피해와 관련한 재판 신청 경험(사건별) ····· 151
[표5-80] 고문피해와 관련한 재판 신청 경험(시대별) ····· 152
[표5-81] 재판 결과 고문당한 사실 인정여부(사건별) ····· 152
[표5-82] 재판 결과 고문당한 사실 인정여부(시대별) ····· 153
[표5-83] 재판 결과에 대한 만족도(사건별) ····· 153
[표5-84] 법원 결정 후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과 불만족 내용 ····· 154
[표5-85] 고문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지원방안 ····· 156
[표5-86] 고문피해자 지원에 관한 요구 사항 내용 ····· 157
[표6-1]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 164
[표6-2] MINI진단 결과 ····· 167
[표6-3] 공병진단 ····· 168

<그림 목차>

[그림5-1] 고문피해 당시 직업 ····· 95
[그림5-2] 고문을 당한 장소 ····· 97
[그림5-3] 고문을 당한 이유(중복표기) ····· 99
[그림5-4] 사건별 불법구금일 ····· 100
[그림5-5] 사건별 투옥일 ····· 101
[그림5-6] 시대별 고문분류 ····· 111
[그림5-7] 사건별 신체손상 계통적 분류 ····· 117
[그림5-8] 사건별 생활고통 개별 분석 ····· 123
[그림5-9] 사건별 현재 진단 병력 빈도 ····· 128
[그림5-10] 고문피해자들이 현재 진단받은 질병의 계통적 분류 ····· 130
[그림5-11] 질병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 받지 못한 질병의 계통적 분류 ····· 130
[그림5-12] 고문피해자들이 신청한 국가 과거사관련 기관별 빈도 ····· 146
[그림5-13] 고문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지원방안 ····· 156

(요약문)

제1장. 서론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을 어떤 목적이나 합리화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간성에 대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고문과 비인도적인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억압적 군사정권은 분단 상황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여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고문을 관행적으로 허용하였으며 그 결과 수많은 고문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과 가혹행위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인권 범죄가 명백하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고문은 수사 관행처럼 행해졌다. 일반사건 중에서는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 사건에서 고문으로 인한 조작이 많았다

국가폭력에 의한 고문은 개인을 신체적, 심리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고문과 같은 국가 폭력을 경험한 이는 수 십 년이 지나도록 사건 당시의 경험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되고 악몽을 꾸며 그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들이나 우리 사회가 이런 심리적 위급성을 거의 자각하지 못하고 방치해 왔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과거청산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여러 진상규명 위원회들이 구성되었지만 고문피해자들의 재활이나 고문 근절 방안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없었다.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고문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얼마나 많은 고문피해자들이 발생되었으며, 현재 어떤 상황에서 고통 받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도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나 진단, 분석 등이 없기 때문에 일반화하기가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국내 현행법상 명확하게 고문을 정의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고문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았으며 가혹행위는 고문과는 별개로 인식되고 있었다. 형법에서 '고문'이란 규정 대신 '폭행 또는 가혹행위'로 명시하고 있어서 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고문 행위를 은폐하거나 우리 사회에 고문이 없다는 오류를 불러오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는 협의의 고문의 정의와 고문방지협약 제16조의[1] '부당한 처우' 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고문 개념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수많은 고문사건에 대한 실태 조사, 정부의 사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재심을 통한 원상회복 및 재활, 예방노력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음을 공감하고, 고문방지와 고문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진이 수행한 "고문피해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목적은,

첫째, 국가기관에 의해 고문피해자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최초의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로서 피해자 지원과 치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과거 고문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가해자 처벌의 근거 마련과 함께 독립적인 고문사건 조사기구(고문사건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지속되고 있는 고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 법규에 고문에 대한 정의와 고문방지협약의 규정에 맞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고문 피해자의 정신심리적 후유증 치유를 포함한 포괄적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섯째, 고문예방과 관련종사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국가예방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

1) 고문방지협약 제16조에서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하여 각 국에 조사, 피해자 구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1) 고문피해자의 현황과 실태 파악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자행된 고문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고문 실태와 피해자의 현황 및 피해 실태가 포함된다. 고문의 형태와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문이 고문피해자 당사자에게 남긴 피해뿐만 아니라 고문피해 당사자의 가족이 당한 피해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한다. 이러한 고문 형태와 유형, 피해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고문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기본 자료를 수집한다.

2) 고문피해 구제를 위한 공적, 사적 조치 현황과 평가

국내에서 고문 피해 구제를 위한 공적 조치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와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그리고 사법 절차를 통한 피해자 구제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문 피해에 대한 국가의 고문피해 구제 조치 사례와 과정을 검토하여 공권력에 의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다.

3) 고문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영역별 조치와 과제

고문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이스탄불 의정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사 방법, 내용, 절차 등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고문 피해 조사 과정을 대조 검토한다.

4) 피해자 치유 센터 설립과 운영 방안

국제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와 함께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과 서비스 현황을 검토하고 본 실태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고문 피해자 재활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에 필요한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문헌 및 자료조사

국제기구의 고문과 피해자 관련 공식 문헌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문 피해자의 고문 여부뿐만 아니라 그 피해와 지원에 대한 일반 원칙과 기준,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 이행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문에 관한 국내 법규들과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피해자 지원에 대한 각종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고문 피해 진정사건들을 중심으로 관련 기록과 자료를 조사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진정한 사건들의 결정문 등에서 고문 피해를 인정한 진정사건 기록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문 피해에 대한 국가 소송의 사례와 과정을 검토하여 공권력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설문조사

① 조사대상자 선정

국가기관 진정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중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결정문에서 고문피해 사실이 인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고문사실이 인정된 사건, 언론을 통해 고문피해가 널리 알려진 사건, 인권단체들을 통해 고문피해가 제기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② 설문 내용과 설문 도구

본 조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 내용에는 피해자 인적 사항, 고문의 유형, 고문 피해 (심리적, 신체적, 사회 경제적) 유형과 실태, 정신건강 평가, 고문피해 관련 국가차원의 지원, 피해 지원 요구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지는 고문피해자 당사자용과 가족용의 두 종류로 제작하였다.

3) 심층면접

① 심층면접 조사대상

고문피해자의 언어를 바탕으로 심리적 후유증의 구체적인 양상을 이해하고 현재 피해자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 및 요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시국사건 피해자를 포함해서 피해 당사자 2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문피해 경험을 가장 잘 기술할 수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목적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② 심층면접 내용과 면접도구

심층면접을 위해 정신과적 진단과 외상성 후유증에 관한 진단, 치료의 경험이 풍부한 임상심리학자 2인과 정신과 전문의 1인이 구조화된 면접 도구를 활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고문이후 발생한 정신과적 장애의 유병률 및 현재 유병률을 조사하였다. 또한 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참여자의 인생사 내러티브를 수집하여 고문 이전의 삶과 고문 이후 변화된 삶의 양상, 고문피해와 관련된 심리적 후유증 및 핵심 정서의 작동 양상, 피해극복을 위해 요구되는 심리내적 자원, 피해자가 요구하는 외부 지원책 등 광범위한 질적 자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4) 피해자 지원기관 방문조사

범죄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파악, 피해자 지원 사례 청취,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청취하여 고문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범죄 및 권력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리 선언의 적용을 위한 피해자 사법 핸드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항목’(위기 개입, 상담, 옹호(Advocacy), 범죄 수사 기간 중의 지원, 형사소추 및 공판 중의 지원, 사건의 처분 결정 후의 지원, 전문가와 담당 직원의 피해자 문제에 관한 훈련, 폭력 방지 및 기타 예방 서비스, 피해자 문제에 관한 공중 교육)을 근거로 한 체크리스트를 시용하였고 센터 현황(조직, 인력, 예산 등), 지원 업무 현황과 지원 절차, 협력 체계, 지원 업무 전문성,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5) 자문 회의

연구조사에 대한 자문가는 법률, 심리치유, 피해자 지원 경험자 등으로 구성하고, 자문회의는 2회 개최하며, 연구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특히 조사내용과 방법, 범위 등의 현실성, 타당성, 객관성 확보 여부와 연구조사 결과 및 연구팀이 제시한 고문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수렴하였다.

제2장. 고문피해 관련 선행연구 검토

1절. 국내 연구 현황

국내에서 고문 또는 고문피해에 대한 연구 현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고문에 대한 사례 중심의 자료집 발간이며, 두 번째는 해외 자료의 번역이나 피해자 지원과 치료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자료, 세 번째는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 기준의 국내 수용을 둘러싼 학문적 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조사 기구에 의해 진행된 국가폭력 피해자 실태조사에 포함된 고문피해 조사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고문에 대한 사례 중심의 자료집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1987년 1월 제작 배포한『고문근절대책공청회 자료집 - 고문피해의 증언』과 1987년 고려대학교 법사회학회가 발간한『거짓과 진실 - 고문과 죽음의 기록』, 그리고 1994년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등이 주최한『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의 자료집 등이 고문피해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둘째, 2000년 이후 고문과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범과 연구사례가 전문연구자들에 의해 소개되었다. 주요 문헌으로 변주나, 김록호, 박원순 등이 펴낸『고문 생존자 - 외상과 재활』(현문사, 2003), 고문 등 정치폭력 피해자를 돕는 모임(KRCT)에서 펴낸『고문. 인권의 무덤』(한겨레신문사, 2004), 최현정이 펴낸『고문폭력 생존자 심리치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범죄 및 힘의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리 선언의 적용을 위한 피해자 사법 핸드북』(2008)등이 있다.

셋째, 고문방지에 관한 국제기준의 국내수용에 대한 논의는 주로 법학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주요 문헌으로는 민경식의「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중앙법학』, 제7집, 중앙법학회, 2005), 정경수의「구금장소 방문의 제도화를 통한 갇힌 자의 인권보호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분석과 국내 도입문제를 중심으로」(『인권평론』, 통권 제2호, 한국인권재단, 2007), 오병두의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형사실체법적 쟁점 - 고문 범죄의 처벌을 중심으로」(『민주법학』, 통권 37호, 관악사, 2008),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 관련 주요 쟁점 분석』(2005) 등이 있다.

넷째,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는 그동안 국가 차원의 조사기구에 의해 진행된 성과와 민간단체, 5·18재단 등에서 진행된 성과가 있다. 5·18기념재단의『5·18민주유공자 생활실태 및 후유증 실태 조사연구 보고서』(2006)와『5·18민주유공자 생활실태 및 후유증 실태 조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2007)를 필두

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사망자 유족 후유증(정신과적 장애) 실태조사 보고서』(200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198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경험과 기억』(200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정리위원회의『심리적 피해현황 조사보고서 - 조사의 신뢰성 제고와 치료 및 재활 측면의 화해방안 모색』(2007),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예기치 못한 죽음을 경험한 유족의 심리적 외상 관련 조사연구』(2008) 등이 발간되었다.

2절. 국외 연구 현황

국제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고문피해자에 관한 연구가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고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전문가 집단의 한계, 정치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제약, 문화적으로 적합한 평가도구 및 프로그램 개발의 부족이 이러한 비판에 속한다(Campbell, 2007). 그럼에도, 과거의 고문 경험이 현재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의 근거들을 밝히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강조(JAMA, 1996)는 국제 사회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 광범위한 학문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전문저널을 통해 고문에 관한 깊이 있는 임상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최근에는 치료 기관을 찾지 않은 다양한 집단의 고문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구들이 실시되고 있고(Quiroga & Jaranson, 2005), 피해자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임상적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Kagee, 2004). 고문으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뿐만 아니라, 고문이 피해자의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후유증, 후유증의 세대 간 전달 또한 국제 사회 고문 연구의 관심 주제이다.

또한 고문 후유증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다차원적 측면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며, 개인의 치유력과 회복 능력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입장(Harvey, 2003)이 대두되는 등 활발한 진전이 두드러진다.

제3장. 고문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 법체계

1절. 고문에 관한 국제적 기준

본 연구에서는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는 협의의 고문의 정의와 고문방지협약 제16조의 '부당한 처우' 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고문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자 한다.

고문방지협약은 어느 누구도 고문과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만인의 보호에 관한 선언"에 근거하여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총 3장 3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약에서는 먼저, 고문에 대한 정의(제1장 제1조)를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협약 당사국의 고문방지 의무(제16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하여 협약 당사국의 조사, 피해자 구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제3조)에 이어 고문가해 행위 및 고문가해 혐의자에 대해서도 "자기나라 형법에 따라 범죄가 되도록 보장하며 고문 미수, 고문 공모 또는 가담에 해당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제4조)이며 고문가해 혐의자는 즉시 구금하거나 신병을 확보하고 고문범죄를 적절한 형벌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7조).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2002년 12월 18일 제 57차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A/RES/57/199)로 채택되어, "고문방지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후 조치들의 필요성과 국가의 피해자 보호와 고문방지 의무를 주지시키고 특히, 고문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에 중심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2006년 5월 9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공약한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와 관련, "구금시설·보호시설 등 인권 향상 계기될 것"이라며 2006년 4월 27일 정부에 비준을 요청한바 있

으나 아직 선택의정서 가입,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선택의정서 비준은 고문방지협약의 구체적 실천을 담보하고 있어 고문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의 이행과 국제 인권연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스탄불 의정서는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의학적으로 평가해야하는가와 그들이 진술하고 있는 고문 사건을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제적인 지침서이다. 더 나아가 제기된 고문 사건의 조사 결과를 사법부나 기타 조사기관에 보고할 때 국제적 기준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다.

이스탄불 의정서는 고문으로부터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고문 피해 사실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고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잘 기록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기록들은 고문가해자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 그들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탄불 의정서는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법부나 기타 조사 기관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변호사들과 의료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지침서라고 하겠다.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제적 원칙, 기준으로는 UN 공식 문서인 「범죄피해자와 권력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칙 선언」(1985. 이하 "피해자 인권선언")이 있다. 이 선언은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법과 공정한 처우, 원상회복, 손실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권고조치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권력남용에 의한 피해자화(victimization)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주요 절차를 담고 있다. 피해자 인권선언은 국가가 법규범에 권력 남용을 금지하고 그 남용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조항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고, 특히 이 구제수단에는 원상회복 및/또는 손실보상 및 물질적, 의료적, 심리적 및 사회적 원조와 지원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절. 고문에 관한 국내 법체계

현행법상 고문을 정의한 규정이 없고, 각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문'의 범주가 각기 다르다. 그런데 고문방지협약 제16조에서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하여 각 국에 조사, 피해자 구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고문 이외에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처우까지 포함한 광의의 고문 개념을 전제로 살펴보았다.

고문방지를 위한 형사절차상 규정으로는 헌법 제12조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제2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제7항)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위 헌법 규정을 구체화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형사소송법(2007. 6. 1. 개정, 2008. 1. 1. 시행) 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신문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형법은 고문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형법 제124조 제1항에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5조에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서는 위 형법 제124조와 125조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 개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면 재심개시가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422조). 하지만, 고문 범죄의 특성상 은폐 또는 조작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국가가 진상 규명을 하지 않는 이상 재심을 통한 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4장. 고문피해자 지원 현황

제1절. 공적 지원 현황

고문피해에 대한 공적지원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국가 과거사관련 기관들의 조사와 재심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적지원을 들 수 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문 등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접수받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과 정부에 정책권고, 시정 개선 권고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체의 자유 및 고문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는 모두 81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기관 및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와 시설 및 관행에 대한 개선, 인권교육 등을 권고 조치를 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과 권고조치는 현재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특히 고문범죄에 관하여 직접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국가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 과거사관련 기관들의 조사이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의 과거사 기구들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는 그동안 은폐된 인권침해 사건들의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의 구제와 명예회복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고문 피해자들의 주장과 인권단체들의 고문조작 피해 자료들이 상당수 진실로 밝혀져 그동안 공식적으로 고문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부분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일부는 재심을 통해 국가 배상을 받기도 하고 있다. 고문피해의 경우, 이들 과거사기구들의 활동으로 고문의 신체적, 정신 심리적, 사회적 피해 유형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과거 국가기구에 의한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실이 규명됨으로써 고문 금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국가기관의 위법한 수사관행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정부차원의 과거사청산 작업이 진행되면서 과거 고문범죄들의 진상이 드러났는데,

가해자 처벌은 한 건도 진행되지 못했고 피해자 구제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사건의 피해자가 진상규명 결정을 근거로 직접 재심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상규명 사건 중 73건에 대하여 재심권고를 하였는데, 2011. 4. 기준하여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30건이고, 무죄판결 후 상급심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16건이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개시결정이 나지 않거나 개시결정 후 재심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 22건이다.

재심법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재심사유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의해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실체 판단에 들어가서는 전부 무죄 선고를 하였다. 무죄 확정 판결 후 진행되는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 및 재심법원의 판결을 증거로 채택하고 1)체포, 구속과정의 위법, 2)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의 위법(고문), 3)공판절차 및 형사판결의 위법으로 세분화하여 국가 배상 판결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이 없는 사건들은 수사기관의 고문을 입증하지 못하여 법적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의 권위주의 통치라는 역사적 특수성, 고문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점, 피해자가 고문 등을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기구의 상설화와 반인권적 위헌 법률의 형사 피해자를 일괄 구제하기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제2절. 민간 지원 현황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민간지원은 고문피해를 당한 시기에 따라 사건의 유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존재하였다. 1970년대까지는 고문이 반인도적이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지지, 정신·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의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인민혁명당 사건의 고문사실을 동아일보에 폭로했던 김지하 시인은 반공법위반으로 재구속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는 민간차원에서 고문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고문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들이 고문피해에 대한 증언을 두려워하거나 감추려하지 않고 고문피해보고대회, 고문 증언대회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면서 고문의 상처를 이겨내기 시작했다. 1990년대는 고문피해에 대한 보고대회와 증언대회를 통해 사회에 알리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와 고문피해자의 치유에까지 활동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고문피해자를 치료하는 전문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대안제시까지 나오게 되

었다. 2000년대는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심리적 치유프로그램이 아름다운 치유동산(KRCT), 진실의힘, 인권의학연구소 등의 민간단체들에서 진행되었다.

고문피해 사실을 보고대회와 증언대회를 통해 알리고 사회공론화에 앞장섰던 피해자들, 가해자를 고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던 피해자들,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명예회복과 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했던 피해자들에게는 민간단체들과 친척, 이웃 등 주위에서 따뜻한 사회적 지지가 있었으며 이들은 대다수는 고문피해를 잘 극복하였음을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 고문피해자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과 인권관련 단체, 개인들의 도움을 받아 여전히 음지에서 생활하는 고문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을 통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상자선정, 대상자면담 등의 어려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조사에 참여한 고문피해자들은 213명으로 시대별로 구분하면 1970년대 이전은 2명, 1970년대 62명, 1980년대 128명, 1990년대는 13명, 2000년 이후는 8명이었다. 그 외 고문피해자 외 피해자 가족 10명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참여자를 당시 연루된 사건 영역별로 구분해보면 정치·재야사건은 47명, 노동사건은 48명, 청년·학생 사건은 61명, 농민·빈민 사건은 2명, 교육·통일·여성 사건은 3명, 종교·문화 사건은 2명(이상 시국사건 163명, 76.5%), 조작간첩은 43명(20.1%), 비시국사건은 7명(3.2%)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고문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시국사건인 경우는 53.7세, 조작간첩은 68.6세, 비시국사건은 40.5세로 조작간첩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가장 나이가 많았다. 대부분 남자가 주를 이루었고 사는 곳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였으며, 충청지역이 가장 적었다. 조사 대상자들의 학력은 대졸이상인 경우가 113명(53%)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만 졸업한 경우도 28명(13.3%)이나 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한 달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4.9%로 조사되었다.

2. 고문 사건 분석

고문이란 피해자의 정체성을 유린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측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형태의 폭력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졌음이 드러났다. 본 조사에 참여한 고문 피해자들은 고문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인간성과 정체성을 말살당하고 굴복해야 하는 극단의 고통을 겪었다고 하였다. 가해자는 여러 형태의 고문 기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이러한 상태에 처하게 하였다.

고문유형은 크게 신체고문, 심리고문, 박탈고문, 노출고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신체고문은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적 가해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심리고문은 욕하기, 조롱함, 행동의 강요, 위협, 가해자의 태도 돌변 등 심리적 조작 및 모욕주기의 행위들이 포함된다. 박탈고문은 기본욕구를 박탈시키는 가해행위로서 외부인과의 단절, 감금, 수면/섭식/빛/의료 박탈 등이 포함된다. 노출고문은 특정 자세를 강요하거나 감각적 불편감을 가하는 행위로 묶여있거나 못 움직이게 하기, 심각한 감각적 고통에 노출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참여자(고문피해자)들 가운데 시국사건과 조작간첩 사건 관련 피해자들은 평균 30~40일 가량 경찰, 보안사, 안기부 등 정보수사기관에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온몸 구타', '모욕주기', '물고문' 등 신체적, 비신체적 고문과 박탈/노출 고문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조사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경험된 고문은 '욕하거나 모욕주기', '외부인과의 단절'의 심리적 고문과, '온몸구타'의 신체고문이었다.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과 같은 심각한 강도의 고문도 높은 빈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히 조작간첩사건 피해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높았다. 특히 조작간첩 피해자의 경우 가족에 대한 위협과 협박이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강도 높은 고문이었음이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고강도 신체고문을 줄어들었으나 비신체(심리)고문, 박탈고문, 노출고문 역시 신체고문과 유사한 수준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문유형 중 물고문, 각목구타 등이 90% 이상의 극단적 고통으로 지각되었고, 전기고문, 온몸 구타, 성기고문 등과 같은 가혹한 형태의 신체고문이 높은 수준의 고통을 유발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신체고문만이 아니라 심리고문, 박탈 고문, 노출 고문과 같은 비신체고문도 신체고문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수준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고문유형의 시대별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197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높은 강도의 신체고문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사한 고통을 야기하는 이러한 비신체 고문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비신체고문이 야기하는 고통에 대한 인식 증진 및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해 보인다.

고문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했던 장소는 경찰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안수사대 안기부 기무사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불법구금일은 약 30~40일 정도였고 투옥기간은 1년 6개월~8년까지 다양하였다.

3. 고문과정에 의료인의 개입

고문과정에서 의료인의 진료를 경험한 경우가 응답자의 24.4% 정도로 나타났다. 고문 과정에서 의료인이 취한 의료적 조치의 사례 가운데 '전기고문 진행 중 의료인 참석', '의식 확인과 주사', '청진기를 가슴에 댐' 등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백히 고문의 진행을 돕거나 고문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의료행위로써 고문을 방조한 경우가 드러났다. 치료적 목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설사 치료적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고문이 진행되는 것을 막지 않았거나 고문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고문 사건에 대한 방치로 의료인의 고문 개입 행위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고문과정에서 의료인의 개입은 국제법과 의료계가 모두 금지하고 있다. 특히 1975년 세계의사회의 도쿄선언은 "의사는 고문이나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가 가해지거나 이러한 행위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어떠한 과정에도 가담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문가해자들의 요청에 의해 의료인이 고문피해자들을 진료하는 것은 고문이 지속되게 하거나 고문의 증거를 은폐해서 고문을 돕거나 방조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사협회의 윤리법사위원회는 "의사들은 고문현장에 참석해서는 안된다. 의사들은 만일 그들의 행위가 가장 이익이 된다면 재소자들이나 피구금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고문을 시작할 수 있을지 또는 고문을 계속해도 좋을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치료해서는 안된다....의사들은 고문피해자들에게 지원이 제공되도록 도와야 하며 언제든지 고문의 진행이나 고문의 상황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인이 고문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명백히 금하고 있다.

4. 고문피해자들의 일상에서 지속되는 심리사회적 고통

고문 피해는 단지 고문폭력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로도 이어졌다. 따라서 고문 폭력에 더하여 피해자들의 일상에서 지속되는 심리사회적 고통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생활상의 심리사회적 고통을 보안관찰 관련 고통, 사회경제적 고통, 사회적 지지 부재의 고통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조사참여자들이 현재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통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이는 고문으로 인한 피해가 일생생활 전반으로 파급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취업 제한, 건강문제, 사건피해와 관련된 지원 부재, 가족 친척의 배척, 고문 경험에 대한 주위의 외면 등을 생활고통으로 겪고 있었다. 특히 조작간첩 사건과 관련된 경우 보안관찰고통과 사회적 지지부재 순으로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 우리 사회에서 조작간첩사건으로 고문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수한 생활고통의 맥락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5. 고문피해자들의 건강 상태와 자살시도

본 조사결과 조사참여자의 36.6%에서 알코올 의존경향을 보이고 있고, 질병 분포는 만성질환, 소화기질환, 정신질환, 근골격계 질환 순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은 고문피해자와 같은 고위험집단에서는 유병율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조사 결과 특이한 점은 질병을 진단받았지만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질환에서 정신질환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남자의 경우 38.6% 여자의 경우 30.5% (불면증 제외)로 조사되었고, 이는 2006년 일반 인구집단의 유병율(남 30.5%, 여 20.5%)에 비해 남자는 1.26배, 여자는 1.48배 높은 것이다. 우울증은 기분장애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본 조사에서는 22.8%로 조사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우울장애 평생 전체유병율에 비해 약 4배정도 많은 수치이다. 불안장애는 17.9%로 조사되었는데 불안장애 평생 전체유병율보다 2.8배 높은 수치이다. 특히 본 조사참여자들의 정신분열증 유병율은 11.3%로 이는 정신분열증 평생 전체 유병율인 0.5%보다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자살을 시도한 비율도 총 응답자의 24.4%에 달했는데.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의 경우 자살시도율은 39.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 중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적이 있는 비율이 7.6%인 것에 비해 4배정도 높은 수치이고, 2010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소득수준을 표준화하여 소득수준이 '하'인 계층에서 자살시도율 10.4%인 것에 비하면 2.4배 높은 수치이다. 이렇듯 고문피해자들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에 쉽게 이환되기 쉽고 그 결과로 자살시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높은 정신질환의 유병률과 빈번한 자살 시도는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심리적 치료 개입의 위급성과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다.

6. 고문 피해자들의 심리적 후유증

복합적인 고문 관련 피해는 만성적인 심리적 후유증으로 나타났다. 복합적인 피해 경험으로 인한 만성적 심리적 후유증은 복합성 외상후 증후군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도 피해자들이 만성적인 복합성 외상후 증후군을 높은 비율로 호소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피해와 위험이 현재에도 지속되는 것처럼 체험하는 재경험 증상, 사건과 관련된 단서에 대한 행동, 감정, 사고의 억제가 따르는 회피 증상, 지속적인 과다각성과 과다경계 증상으로 구성됨) 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신체적 증상으로 지각하는 신체화 증상, 대인관계 적응 문제, 그 밖의 우울, 불안, 적대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체 213명의 참여자 중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한 자가 76.5%(163명), 신체화 증상 43.2%(92명), 대인예민성 27.7%(59명), 우울증상 25.4%(54명), 불안증상 31.9%(68명), 적대감증상 27.7%(59명)로 나타났다.

특히, 조작간첩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보다 높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는 조작간첩 사건과 관련된 경우 이들이 고문에 대해 전혀 예상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고통을 경험했고, 특히 상대적으로 보다 강도 높은 고통의 고문유형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가기관의 재조사를 통해 고문당한 사실을 인정받거나, 법원 재판 결과 고문당한 사실을 인정받았음에도 심리적 후유증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7. 고문피해자 가족의 전이외상

본 조사에서는 고문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만성적인 심리적 고통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가족 참여자의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고문 피해의 전이외

상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고문피해자의 고통은 그대로 가족에게 전이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피해자 가족 10명 모두는 완전 PTSD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해당되었다. 전이 외상으로 나타난 심리적 후유증의 경우 PTSD, 신체화,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증상 등 복합성 외상후유증으로 나타났다. 또 고문 피해자가 가족 내에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고문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과 관련하여 취조를 받거나, 고문피해자의 피해상태를 목격하거나, 보안관찰을 겪었으며, 교육이나 직업 활동이 제한되면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주변사람들과 친인척의 외면과 배척, 국가나 사회의 지원 부재 등 사회적 지지부재의 고통을 겪었다. 피해당사자에 대한 지원조차 부재한 환경에서 특히 가족으로서 겪은 특수한 피해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지지받은 경험은 더욱이 부족했을 것이며, 경험 공개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의 가능성 때문에 지원의 기회를 얻기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관련 고통, 사회경제적 고통, 사회적 지지 부재, 피해자 폭력의 악순환 경험을 매우 고통스럽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문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8. 국가조사기관의 구제조치에 대한 만족도

전체 응답자의 43.7%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각종 과거사위원회, 등에 고문피해 관련 재조사를 신청한 경험이 있었다.. 고문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곳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44건)이고, 다음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1건)이다. 국가기관에 신청 후 고문당한 사실을 인정받은 비율은 신청경험이 있는 88명중 67명(76.2%)으로 나타났다. 고문피해 신청자의 70%이상이 고문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지속된 피해자들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시국사건 참여자의 63%, 조작간첩 사건 관련 참여자의 37%정도는 고문피해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도 절반 이상(56%)의 참여자가 미신청인들이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고문피해자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노출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도 미신청비율이 이 정도라면 실제 은폐되고 잠재된 고문피해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문피해자들은 재조사 신청결과에 대해 49.2%가 불만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시국사건 관련 피해자의 경우 불만족 비율은 73.6%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불만족 이유로는 충분한 재조사가 되지 않은 점, 국가기관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단순히 돈으로 보상하려는 태도, 명예회복이 안 되고 있는 점, 낮은 보상금, 고문 후유증에 대한 보상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었다.

9. 재심을 통한 법원의 구제조치에 대한 만족도

법원에 고문사실 인정에 대한 재판을 신청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는 27%정도로 국가조사기관에 신청한 것보다 절반정도 수준이었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조작간첩(53.5%)인 경우가 시국사건(18.6%)인 경우에 비해서 3배정도 더 많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문사실을 인정받은 비율은 55~60%정도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재심 등 법원의 구제조치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가 불만족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인정을 받기위한 처리과정이 너무 길다는 점과 인정을 받은 후에는 국가가 능동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고 개인이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불만족스럽다고 하였다. 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만족 하다고 하였다. 즉 불법구금일에 대한 보상을 고려하지 않은 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보상신청금액을 전액 보상하지 않은 점, 타당한 근거 없이 보상기산점을 산정하는 점. 단순히 외상, 증상, 구속일수에 의한 보상만 이루어졌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고려 없이 보상이 결정 난 점을 불만족한 이유로 꼽았다.

10. 고문피해 지원에 관한 요구도

마지막으로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84.7%)가 국가 차원의 고문방지기구의 필요성으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식 증진(71.8%), 정신·심리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치유센터 건립(66.3%), 경제적 지원과 보상(62.8%), 신체적 후유증 치료와 재활을 위한 보조장비, 의료비 지원(56.3%), 임대주택 등 주거비 지원(49.5%)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고문피해자 지원방안은 크게 국가 차원의 과제, 법적 제도적 과제, 고문 후유증 치유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먼저, 국가 차원의 과제로는 공식적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 고문피해자 실태조사와 사건 추가 조사, 의료보호와 임대주택 등 생활지원, 충분한 배·보상, 인권교육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법적 제도적 과제로는 고문 가해자 처벌의 법적 근거 마련, 사법부 개혁, 고문 근절을 위한 입법, 고문피해자 지원 입법, 고문피해자 재심관련 특별입법, 고문방지 기구와 고문피해자 전담 지원기구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고, 고문 후유증 치유 대책으로는 고문피해자와 가족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전문 치유센터의 건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6장 심층면접조사 결과

24명의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자들의 정신과적 진단 결과 이들이 만성적인 외상 관련 후유증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문 사건 이후로부터 과거 시점에서 주요 I 축 정신과적 진단이 부재한 참여자는 단지 2명(8.33%)에 불과했고 이들 또한 주요 진단이 부재할 뿐이지 생활에 명백한 고통을 유발하는 유의미한 정서조절 문제나 강박 증상을 지녔다. 마찬가지로 면담 현재 시점에서 주요 I 축 정신과적 진단이 부재한 참여자는 3명(12.5%)에 불과하였다. 이들 역시 정서조절문제나 강박 증상 등 기타 주요 증상을 겪고 있었다. 즉 고문사건이 일어난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참여자가 고문 사건과 관련된 정신과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 정신과적 장애로 중복 진단을 받은 참여자도 과거 시점 진단 9명(37.5%), 현재 시점 8명(3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요하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공황장애, 물질관련장애, 수면장애의 고통을 중복되게 겪고 있었다.

24명의 참여자의 인생 내러티브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문 경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인간으로서 상징적으로 살아남고자 분투한 체험의 이야기였다. 이들의 고문 경험은 면담하는 순간에도 생생히 살아있는 상태였으며, 현재의 내러티브는 이러한 생생한 정서적 체험과 더불어 고문이라는 가혹한 폭력 속에서 생존하고자 했던 내면의 의지로 기술되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상황을 이해하고 통제해 보고자 애쓰며 삶을 이어가고자 투쟁하는 이야기였다.

고문경험은 고통의 시작점이었다. 고문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이 몸과 마음을 조정하고 정체성을 유린하였으며 인간의 무력함과 비인간성에 직면하게 하는 경험이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굴복과 저항의 순간을 체험했다. 이러한 고문 경험은 이후의 삶에서 끝없이 반복되고 순환되었다. 고문 고통은 삶의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었고 사람들은 이 재현을 통제하기 위한 싸움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싸움 안에서 악순환이 일어났고 고통은 세대로 전이되기도 하였다. 관계 체험 안에서 사람들은 타인/외부 세계와 단절되었으며 내면으로 고립되어 갔다. 관계와 삶의 터전에서 낙인찍히고 추방당했으며 실질적으로 고립되었다. 이는 완전히 고립당하는 극한의 상징적 공포체험으로 드러났다.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서도 단절과 소외를 체험했고 관계 속에서도 단절과 소외를 체험하였다. 또한 사람들은 세상의 불의에 대한 분노했고 용서할 수 없었으며 개인으로서는 원통하고 한이 맺힌 삶을 이어갔다. 이들은 생을 잃었고, 관계를 잃었고, 자기 자신을 잃었음을 느꼈다. 생은 의미를 잃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마치 자기

탓 같았다. 세계 속에 자기 존재가 없어지고, 인생이 조각나 버리고,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수치스러우며, 사회적으로 전락했고, 자기 자신은 영구히 변형되어 버렸다고 느꼈다. 그럼에도 이 온 삶의 과정 속에서 이들은 죽음에서 생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분투하였다.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통합하며, 고통의 이유를 이해하고, 관계를 통해서 다시 수용 받으며, 사회정의 회복에 의지하여 의미와 회복과 희망을 발견하고자 투쟁하였다.

통제 불가능했던 고문 경험은 이후 인생을 통제하려는 시도들 안에서도 재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의 시도들은 과거에 갇힌 채 과거의 경험을 통제하려는 시도들이었다. 이렇듯 인간은 어떻게든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통을 통제하고자 하나, 때로는 이러한 통제 시도들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통제 시도들은 현재 지금-여기에 충실하면서 고통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고 있었고 때로는 폭력과 고통을 재현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과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든 자기 치유를 하고자 하는 힘 있는 행동의 주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심리치료적 개입은 상당히 중요하다. 과거의 경험을 현재 없던 것으로 바꿀 수는 없으나, 현재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주목하여 이를 치유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치유 체험이 참여자들의 현재와 미래를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인간은 힘 있는 치유의 주체이기에 이러한 개입은 가능하다. 이러한 개입은 인간중심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이들이 직접 자기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나 고통의 이해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홀로 고통의 이유를 납득하기 위하여 어떻게 분투해야 하는가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사회의 도움 없이 홀로 고통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들은 고통에 대한 자신만의 이유를 찾아야 했다. 그 결과 때로 부당한 고통이 정당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홀로 고통의 이유를 찾아내야 했던 오랜 세월 동안 과연 사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사회정의 회복의 기운이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위한 기쁨과 희망의 토대였음을 짚어야 하겠다. 세상의 정의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 이 고통에 사회적 속성이 있으며 단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관점의 확장은 이들의 생 투쟁 과정의 기반이 되었다.

제7장. 범죄 및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방문조사 결과

고문방지협약 및 선택의정서는 고문 금지의 원칙과 고문방지를 위한 조사 원칙을 밝

히고 있으나, 고문피해자에 대한 세부적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UN의 “범죄피해자와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칙” 선언은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고문 등 권력남용에 의한 피해자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법과 공정한 처우, 원상회복, 손실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권고조치를 담고 있고 피해자화(victimization)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주요 절차를 담고 있다.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이 선언의 영향 하에 2004년부터 검찰청의 지원 하에 ‘민간법인’으로서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58개 지원센터가 활동 중에 있다. 현재 이 지원센터가 고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문 등 권력남용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문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반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지원 실태의 검토는 향후 국가차원의 고문피해자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데 일정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비교적 활동이 활발한 서울지역 5개 센터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재정, 조직, 운영 면에서 독립성과 자생성, 전문성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센터는 발족 초기부터 법무부와 검찰청의 지시와 주도에 의해 조직되었고, 운영에서도 대표(이사장) - 사무처 중심의 협소한 의사결정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 지원금이 대부분이었고,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5~30%선에 머물고 있었다. 자체 수입도 이사장의 출연, 기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불안정한 상태였다.

피해자 지원활동에서도 9가지 지원서비스 항목 중 임시 보호시설 제공, 카운슬링, 조정 기능, 피해자 구조금 지원과 의료 연계 등에서 일부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나 48시간내 위기상황 개입, 심리 지원,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개입과 지원, 옹호지지, 전문가 훈련 체계, 대중교육, 예방 업무 분야에서는 거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국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UN 피해자 사법선언에 포괄하고 있는 ‘권력남용에 의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나 대책, 구제 사례가 없었다. 이는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경찰과 검찰의 지원에 크게 힘입고 있는 실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현 단계에서 국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고문 등 권력남용 피해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럴 의사나 능력도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고문피해자들을 위한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지원센터의 설립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8장. 결론

1절. 고문방지와 고문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언

1. 고문피해에 관한 지속적 조사

고문피해 지원의 첫 단계는 공정한 조사와 진실규명이다. 이번 고문피해자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시국사건 피해자의 63%, 조작간첩 사건 관련 피해자의 37%정도는 고문피해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56%)의 참여자가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 각 과거사위원회,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등에 피해사건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조사참여자 가운데 76%정도가 고문당한 사실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과거사위원회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등에 피해사건을 신청한 경우에도 시국사건의 경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73.6%에 달하고 있다. 불만족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고문피해자들은 고문피해 조사를 국가기관이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수행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여러 과거사위원회에서 과거 고문피해 사건을 조사했으나 여전히 다수의 고문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조사나 진상규명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고, 국가의 재조사를 경험한 피해자들 중에서도 다수는 조사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실정임이 확인되었다.

오늘날 고문에 관한 피해자와 일반 시민들의 판단기준은 물고문, 전기고문, 칠성판과 통닭구이라는 전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고문을 부인 혹은 정당화하는 정부 및 가해자들의 허구적 논리와 주장이 고문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고문에 관한 조사, 기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준다. 동시에 고문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문 행위에 관한 조사와 기록은 더욱 긴요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 드러내지 않는 - 고문피해자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는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동안 여러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성과가 작다 할 수 없으나 다수의 고문피해자들은 국가 차원의 추가 조사와 성의있는 진상규명 조치를 바라고 있다. 또한 UN 고문방지협약과 선택의정서는 가입 당사국에서의 고문방지를 위한 제한없는 조사와 국가차원의 독립적인 고문예방기구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스탄불 의정서는 고문피해 조사의 원칙과 세부 기준을 밝혀놓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6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정부에 권고한바 있으나, 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추가적인 권고와 정부의 이행 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

2. 고문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노력

형법 제125조는 행위 태양을 '폭행 또는 가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의 부재는 실제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고문행위를 은폐하거나 고문이 근절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죄명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문'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또한 형법 제125조는 수사관이 아닌 공무원에 의한 고문, 수사나 재판에서 조사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고문, 예를 들어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한 고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문방지협약 제1조 정의 규정상의 행위와 고문방지협약 제16조의 '부당한 처우' 중 가벌성이 있는 행위까지 고문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는 고문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형법 제125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나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 등 반인권범죄의 경우 처음부터 불법과 범인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진실규명의 의지조차 없는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진행되었다는 점, 수사 및 소추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이 범죄행위를 알고도 수사 및 소추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효를 적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보다 더 큰 정의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헌법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고문 등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행위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5년 또는 10년의 시효를 적용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소멸시키는 것은,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선택의정서 채택에는 찬성했으나 아직까지 서명,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고문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증거 조작 또는 은폐의 가능성이 높은 반인권적 범

죄라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하며,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정기적인 감독은 고문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신속히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법률에 의하여 재정적으로 독립한 국가예방기구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3. 고문피해자 재활을 위한 치유센터설립의 필요성

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여러 형태의 고문 상황에서 인간성과 정체성을 유린당하고 죽음의 위험을 경험했던 조사참여자들에게서 심각한 정신·심리적 후유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고문피해자 213명 중 163명(76.5%)에서 완전 PTSD 증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TSD 외에도 신체화,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등 복합외상후유증과 같은 증상들 또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상들은 고문의 경험에서 시작되었지만 고문 사건이 발생한 지 20~30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문피해자들이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특히 높은 강도의 신체적 고문을 경험하였거나 고문사건 이후 사회적 지지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심리적 후유증은 국가기관의 재조사를 통한 고문 인정이나 법원 재판결과 고문을 인정받은 사실과 무관하게 나타났다. 즉 과거사 관련 국가기관의 재조사 결과 진실이 규명되거나 재판을 거쳐 고문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신체화 증상을 제외한 여러 심리적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이는 국가구제조치를 통한 진실 규명이나 법적 결과에 따른 경제적 보상과 배상에도 불구하고 고문 피해자들의 정신·심리적 후유증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조사참여자들의 높은 수준의 자살 계획과 시도는 이들에 대한 정신·심리적 지원의 시급성과 절실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문피해자가 고문 사건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원래의 삶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나 법적 구제조치 이외에 심리치료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 실태조사 결과에서 고문피해 당사자의 피해 경험이 가족에게로 전달되는 전이외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 또한 상당히 높은 비율로 PTSD, 신체화,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증상 등과 같은 심리적 후유증이 나타났다. 이는 고문피해 당사자의 피해가 가족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전이되는 것으로 특히 고문피해 당사자가 가족들을 가해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고문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역시 고문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가족의 전이외상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최근 일반형사사건으로 고문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과거 시국사건으로 고문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고문피해유형이나 심리적 후유증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 일어나는 고문피해에 대한 조사

후 배상과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고문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2절. 고문방지와 고문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이 목적에 따라 고문과 같은 대표적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입법 권고, 예방, 교육, 방지, 홍보, 국제 협력은 국가인권위의 본연의 과제라 할 것이다.

1. 「고문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실천 지침」의 마련

고문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문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실천 지침” 매뉴얼을 개발하고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고문방지지침에는 본 연구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내외의 조사, 연구결과에 토대하여, 고문에 관한 정의와 인권보호의 목적, 고문의 유형과 수단, 수사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적법한 수사절차, 고문에 관한 법원의 판례, 신고 상담시설 설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고문방지를 위한 실천 지침”의 제작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등과 적극적인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고문방지 지침을 사법연수원과 경찰학교, 각급 수사기관 및 연수시설에 비치하고 의무적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와 국가 고문예방기구의 설립

한국 정부는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예방기구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아직까지 서명,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한국 정부에 대해 신속히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법률에 의하여 독립된 국가 고문예방기구를 신설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국가예방기구에 관한 의견표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관련규정과 동법 시행 후의 활동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예방기구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3. 고문피해자의 외상 치유 및 재활을 위한 입법 권고

유엔고문방지협약은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고문피해의 물질적 배상은 물론 국가가 피해자 재활을 위한 의료적 치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엔 "피해자 인권선언"은 공권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규범에 공권력 남용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배·보상과 함께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지원조항을 구체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권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심리적 외상 치유를 통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 회복, 정상적 사회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위한 법안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문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진정접수, 조사, 시정 권고 및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심리적 외상 치유를 위한 지원을 권고하여야 한다. 고문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란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실복구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긴급지원(위기개입), 의료적 지원, 심리적 지원, 법적인 지원(상담), 사회적 지원을 포함한다. 이에 고문피해자 재활을 위한 지원체계 도입을 위한 구제법안의 제정과 정부 예산으로 치유센터를 설립, 운영하도록 정책 권고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문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할 것, 고문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위해 고문피해에 대한 조사·교육·연구·홍보할 것, 고문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시행할 것 등을 정부에

제1장. 서론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1984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는 고문방지협약 (공식명: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유엔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고문을 어떤 목적이나 합리화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간성에 대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고문과 비인도적인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의 국가의 반 이상에서 공권력에 의한 고문과 비인도적인 대우가 행해지고 있고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정권에서는 고문이 발견되어 왔지만 한국 현대사에서처럼 대량으로 지속적으로 고문이 이루어진 경우도 드물었다. 과거 억압적 군사정권은 분단 상황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여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고문을 관행적으로 허용하였으며 그 결과 수많은 고문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과 가혹행위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인권범죄가 명백하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고문은 수사 관행처럼 행해졌다. 일반사건 중에서는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 사건에서 고문으로 인한 조작이 많았다.

고문피해자는 고문 받을 당시의 고통 뿐 아니라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처해졌으며 때로 고문 과정에서 사망하기도 하였다. 시국사건 중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 과정에서 사망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수사 중 자살로 발표된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 (최근 고문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짐)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일반형사사건의 경우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조사 중 고문에 의한 사망사건[2]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11조2항) 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고문을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 2002.10.26 살인사건 피의자로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받던 중 한명이 고문으로 사망하고 다른 피의자들도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하고 담당검사와 담당사법경찰관들을 불법체포, 감금,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헌법이 고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고문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고문은 고문가해자의 개인적 책임, 인권의식의 부재가 주된 이유라기보다 수사기관의 관행, 법제도적 한계, 사회정치적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문수사관들은 거의 처벌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고문의 증거를 확보하고 고문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또한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제법과는 달리 국내 법체계는 고문 범죄에도 공소시효를 두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가족 면회는 물론 변호인 접견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고문피해자가 자신의 고문사실을 외부로 알리기란 불가능 하였고 고문수사관의 신원이 밝혀져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었다.

시국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에게 '인권'보다는 '국가 안보'가 훨씬 중요한 것이었다.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피의자에 대한 고문행위는 애국 행위로 정당화되었다. 또한 국가보안법 범죄자를 체포한 수사관에게 상금과 별도의 특진기회가 주어졌다. 이러한 포상 제도는 '실적올리기' 수사관행과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을 부추겼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구속하고 강압적으로 자백을 얻어내는 용이한 방법이 바로 고문이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시국사건의 경우, 외부와의 접견이 차단된 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되어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조작간첩'사건의 경우에는 수 십 일간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가혹한 고문을 당하였다. 고문 결과 자백한 내용에 대해 번복을 못하도록 협박까지 받은 피의자가 검찰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법원은 이렇게 작성된 피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를 인정했다. 때로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임을 주장하였으나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에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수사는 지속되었다.

국가폭력에 의한 고문은 개인을 신체적, 심리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고문 피해자에게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후유증으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가 대표적이며, 이는 생명을 위협당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경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 밖에도 불안과 우울을 비롯한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후유증은 심각해지며 자살,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과 같은 이차적 피해와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

로 가족의 해체,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게 한다, 이러한 정신심리적 외상(트라우마)은 한 개인에게 "영구적인 내적 폭력'으로 작용하여 고문과 같은 국가 폭력을 경험한 이는 수 십 년이 지나도록 사건 당시의 경험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되고 악몽을 꾸며 그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피해 당사자들이나 우리 사회가 이런 심리적 위급성을 거의 자각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는데 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공권력에 의해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3]에서 피해자의 절반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피해자 가족들도 10명 중 3명꼴로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들의 국가폭력의 내용은 고문 및 불법 구금 등으로 만성적인 피해의식이 상당기간 존속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피해로 인해 개인의 삶이 왜곡되고 불행이 지속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주위 가족들이 피해 발생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특징이 있었다.

2007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사망 유족 후유증 실태조사[4]를 시행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중 다수가 고문, 수감, 장기간 수배 등의 다양한 이유로 불안, 수면장애, 악몽, 외상재경험, 회피 등이 수반되는 PTSD와 우울장애 등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매우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립경향을 보고하면서 피해자들은 자아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림으로써 사회로부터 위축되고 고립되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나 가족을 포함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심하게 겪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정치적 이유로 인한 고문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개인에게 외상을 가하기 때문에 복합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Complex PTSD) 또는 고문으로 인한 특수한 후유증을 나타내는 '고문 증후군(torture syndrome)'을 결과한다는 논의가 있을 정도로 고문의 후유증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Mollica, 2004). 고문은 그 피해자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을 만큼의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고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만, 고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지원의 제공은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상의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유엔고문방지협약은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의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를 물질적으로 배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 재활을 위한 의료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전남대심리건강연구소, "심리적 피해현황 조사보고서" 2007
4)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사망 유족 후유증 실태조사, 2007

구하고 고문피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았다. 억압적인 독재정권들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산했던 수천 명의 고문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와 후유증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 비해 이들의 재활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간혹 재심을 신청한 고문사건들은 무죄로 선고받고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고문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치유하는 재활프로그램이 없어 고문 후유증의 고통은 반복되고 지속되었다. 고문을 자행하는 사회도 반문명 국가이지만 이미 드러난 고문피해자들을 위해 치유와 원상회복의 가능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회는 더욱 반문명 사회라고 하겠다.

1980년대 후반에 한국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고문 사실의 폭로, 모임 결성, 소송제기 등의 과정을 통해 고문피해자들의 존재와 고통들이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문피해자들의 진정과 호소는 커다란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일부 고문 사건에서 피해자 배상이 있었으나 다수의 피해자들은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고문실태 폭로나 보고가 개별적 고발차원에 머물렀고 포괄적 접근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경험한 고문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작업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과거청산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친일문제,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학살문제, 의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진상규명 위원회들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고문피해자들의 재활이나 고문 근절 방안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없었다.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고문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얼마나 많은 고문피해자들이 발생되었으며, 현재 어떤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고문피해자들의 숫자와 실태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없었다.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도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나 진단, 분석 등이 없기 때문에 일반화하기가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국내 현행법상 명확하게 고문을 정의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고문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았으며 가혹행위는 고문과는 별개로 인식되고 있었다. 고문사건에서의 피해자 배상과 가해자 처벌에서도 혼선을 가져왔다. 국제법상 고문은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형이 확정된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가혹행위와 비인도적 행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나 국내 형법은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한 고문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5] 또한 형법에서 '고문'이란 규정 대신 '폭행 또는 가혹행위'로 명시하고 있어서 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고문 행위를 은폐하거나 우리 사회에 고문이 없다는 오류

5) 고문 처벌 규정인 형법 제125조는 수사관이 아닌 공무원에 의한 고문, 수사나 재판에서 조사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고문 예를 들어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한 고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는 협의의 고문의 정의와 고문방지협약 제16조의[6] '부당한 처우' 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고문 개념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에 고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문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문 근절 방안과 고문피해자 지원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수많은 고문사건에 대한 실태 조사, 정부의 사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재심을 통한 원상회복 및 재활, 예방노력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음을 공감하고, 고문방지와 고문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진이 수행한 "고문피해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관에 의해 고문피해자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최초의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로서 피해자 지원과 치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 독재정권 시기에 자행된 고문피해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고문피해자 지원은 법적 구제조치에 따른 국가 배상을 제외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문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피해자들은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며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쳐 가족관계의 해체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결과할 수 있다. 따라서 고문과 그 피해에 대한 연구조사는 고문의 사회정치적인 접근과 함께 고문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 미치는 고문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확인하여 피해자와 가족의 재활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과거 고문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가해자 처벌의 근거

6) 고문방지협약 제16조에서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하여 각 국에 조사, 피해자 구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마련과 함께 독립적인 고문사건 조사기구(고문사건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 고문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 스스로 고문범죄를 인정하거나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해 이를 조사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존의 경찰과 검찰과는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고문피해 당사자의 진정이나 신청을 받아 조사위원회의 조사관이 조사권을 갖고 물적 인적 증거를 수집해 고문사건의 실체를 조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스탄불의정서에 의하면 여러 이유로 고문수사가 부적절한 경우, 각 국가의 정부는 독립적 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수행해야한다고 하면서 조사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스탄불 의정서에 근거해 '고문사건 조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조사위원회 설립의 필요성과 함께 과거 고문 사건에 대한 지속적 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고문 관련 국내 법규의 개정안을 도출하게 한다.

국내 법체계는 고문 등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제법과는 달리 고문범죄에도 공소시효를 두고 있다. 수많은 고문피해자들이 고문사실을 폭로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말았다. 한국정부는 1995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내 법제를 그 협약에 맞춰 개정해야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고문방지협약의 모든 규정과 취지에 맞도록 형사 법제를 정비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지속되고 있는 고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 법규에 고문에 대한 정의와 고문방지협약의 규정에 맞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고문피해자의 치유와 재활을 위한 지원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고문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이 민간 분야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으나 심리치유 센터의 운영 원칙, 방향, 피해자 평가의 적절한 기준, 고문피해 후유증에 적합한 심리지원 내용, 시스템 등에 관한 포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2차 피해는 1차 피해만큼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전문적 치유 공간으로서 고문피해자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국제 기준과 관련 분야의 윤리 기준 등을 충족하면서도 국내 상황에 부합한 고문피해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발

생한 고문 피해자의 정신심리적 후유증 치유를 포함한 포괄적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섯째, 고문예방과 관련종사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국가예방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를 대상으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검찰, 경찰, 구금시설, 군 등에서의 진정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정부의 선택의정서 가입은 "유엔고문방지소위원회"의 국내 구금 장소의 직접적 방문을 가능하게 하고 국내적으로는 "독립적 예방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고문방지에 관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 특히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고문' 관련 교육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업무를 수행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1) 고문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고문피해자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자행된 고문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고문 실태와 피해자의 현황 및 피해 실태가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시계열적으로 이루어진 고문의 형태와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문이 고문피해자 당사자에게 남긴 피해뿐만 아니라 고문피해 당사자의 가족이 당한 피해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한다. 이러한 고문 형태와 유형, 피해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고문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기본 자료를 수집한다.

고문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내용은
첫째, 국내외 다양한 고문피해 관련 문헌 개관을 통해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1) 고문 경험의 양상 및 관련사건, 고문과 관련된 스트레스 경험, 2) 재경험, 회피, 과다각성 등 대표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및 복합성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 후유증의 지속과 관련된 변인 (예, 사회적 지지, 심리적 대비성, 사회경제적 문제) 파악, 3) 고문 피해와 관련된 신체적 질환, 4) 경제적 실태, 가족 관계 양상 등 사회경제적 환경을 파악한다.
셋째, 고문피해자 가족의 후유증 조사를 통한 지원을 위해 고문피해자의 자녀 및 배우자의 외상 및 스트레스 경험, 외상 후유증 및 정서적 스트레스를 조사하여 고문의 광범위한 악영향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현재 피해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및 요구를 조사한다. 특히 피해자가 당면한 문제와 요구를 조사하여 서구 중심적인 심리 진단 개념에서 탈피, 피해자가 직면하는 즉각적인 생활상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피해자의 언어를 바탕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의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2) 고문피해 구제를 위한 공적, 사적 조치 현황과 평가를 한다.

국내에서 고문 피해 구제를 위한 공적 조치로는 크게 세 가지 절차가 있었다. 첫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이며, 두 번째로는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법 절차를 통한 피해자 구제이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에 대한 권고를 실시하는 등 지난 10년간 수사기관에 의한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왔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고문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그동안 '국가(고문)예방기구'로서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촉구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문방지, 예방과 관련한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동안의 성과를 검토한다.

두 번째 과거사정리기구들의 활동으로는 특히 과거 독재 정권 시기의 조작간첩사건, 정치조직사건 등 시국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확인된 고문 실태와 피해 현황을 검토한다.

공적 조치의 세 번째 방법인 사법 절차는 국가인권위원회, 과거사정리기구들의 조사결과 확인된 고문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문 피해에 대한 국가 소송의 사례와 과정을 검토하여 공권력에 의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다.

민간 기구에 의한 고문 피해자 지원은 고문피해 시기와 사건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나 고문피해 사실을 국내외에 폭로하는 whistle blower 역할과 법적 지원을 들 수 있다. 법적 지원으로는 가해자를 고발하고,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명예회복과 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2000년대의 법적 지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 인권단체가 지원하였으며 이는 공적 조치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협의회 인권위원회(KNCC)', '민주화운동실천가족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과 같은 인권단체들이 고문피해 사실의 폭로와 법적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고문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영역별 조치와 과제를 제안한다.

고문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스탄불 의정서'와 '이스탄불 의정서의 실천 지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사 방법, 내용, 절차 등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 국가 기관에 의한 고문 피해 조사 과정을 대조 검토한다.

고문 피해자 구제와 지원 영역은 UN의 '범죄피해자와 권력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리 선언(이하 피해자 인권선언)'을 참조할 수 있다. '피해자 인권선언'에 따르면 지원 목표는 "정신적 외상 치유, 형사 사법 과정 지원, 배상 등의 지원을 위해 실행 프로그램 기준을 입안"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되는 서비스는 "위기 개입, 상담, 옹호(advocacy), 범죄 수사 기간 중의 지원, 형사소추 및 공판 중의 지원, 사건의 처분 결정 후의 지원, 전문가와 담당 직원의 피해자 문제에 관한 훈련, 폭력 방지 및 기타 예방 서비스, 피해자 문제에 관한 공중 교육"이며, 제공되는 서비스마다 세부 사항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서비스 지원 기본 시스템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고문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을 분석 평가하여, 각 분야별로 필요하면서도 가능한 지원 방안과 과제들을 제안한다.

4) 피해자 치유 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해 제언한다.

고문피해자 지원의 가장 핵심은 피해자가 고문의 피해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며, 따라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고문 피해 당사자와 가족 등이 경험한 심리적 상처와 고통을 해소하고 원래의 삶으로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 피해자 치유 센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그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미약하다. 다만,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 대책이 논의되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와 함께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과 서비스 현황을 검토하고 본 실태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고문 피해자 재활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에 필요한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문헌 및 자료조사

본 조사연구에서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고문과 피해자 지원 관련 공식 문헌과 부속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국제기구의 고문과 피해자 관련 공식 문헌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문 피해자의 고문 여부뿐만 아니라 그 피해와 지원에 대한 일반 원칙과 기준,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 이행될 수 있는 방안과 주의사항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외국에서 연구 조사된 고문 피해자 관련 연구들, 특히 심리적 피해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에 대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문에 관한 국내 법규들과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피해자 지원에 대한 각종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고문 피해 진정사건들을 중심으로 관련 기록과 자료를 조사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진정한 사건들의 결정문 등에서 고문 피해를 인정한 진정사건 기록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문 피해에 대한 국가 소송의 사례와 과정을 검토하여 공권력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설문조사

①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피해자들의 고문피해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와 피해사실에 대한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켜야만 했다. 따라서 가급적 국가기관 진정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중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결정문에서 고문피해 사실이 인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고문사실이 인정된 사건, 언론을 통해 고문피해가 널리 알려진 사건, 인권단체들을 통해 고문피해가 제기된 사건들

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② 조사 방식

본 연구조사를 위해 처음에는, 인권 관련 단체(민주화운동계승연대, 민주화운동실천가족협의회,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의 협조를 통해 위 단체들의 회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른 한편 국가기관 진정사건(국가인권위원회, 민주화운동보상심의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중 주로 1970~2000년대 인권 침해 분야 진정인 등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우편조사의 응답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조사 대상 피해자에 대한 회신 독려 전화, 우편 발송뿐만 아니라 눈덩이 표집방법 (snowball sampling: 설문응답 회신자에 대한 접촉을 통해 피해자 정보 수집 및 연락)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1차 우편 설문 발송 후 수거율이 계획에 미치지 못한 경우, 조사원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사전에 전화연락을 하여 조사 대상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조사원에 의한 대면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③ 설문 내용과 설문 도구

본 조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 내용에는 피해자 인적 사항, 고문의 유형, 고문 피해(심리적, 신체적, 사회 경제적) 유형과 실태, 정신건강 평가, 고문피해 관련 국가차원의 지원, 피해 지원 요구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지는 고문피해자 당사자용과 가족용의 두 종류로 제작하였다.

가. 고문피해 당사자용 설문지

- 고문 현황: 고문피해와 관련된 사건, 고문피해가 일어난 장소, 고문 목적, 고문 피해 시기, 고문피해 당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고문피해 기간 및 투옥 기간, 의료인의 진료경험 여부를 포함하였다.

- 심리적 대비성: 고문피해를 겪기 전 고문에 대해 심리적으로 대비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사회적 신념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중요한 사회운동에 임하고 있었다', '나는 고문을 받거나 투옥당할 것이라는 예상과 각오를 하고 있었

다'의 세 문항에 '전혀 아니다(0)'에서 '매우 그렇다(6)'까지의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세 문항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64로 유의미한 수준에 해당되고 하위 문항 간 상관은 .630에서 .749로 양호하였으며, 총점-문항 간 상관은 .869에서 .909의 범위로 매우 양호하였다. 이에 세 문항의 평정치의 총합을 심리적 대비성 측정치로 활용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고문에 대한 심리적 대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고문경험 및 경험에 대한 지각된 심리적 고통수준: Basoglu 등(2007)이 제시한 분류에 따라 심각한 신체적 고통과 성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신체고문과, 심각한 신체적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으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비인간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비신체고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추후 고문피해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법률지원, 심리치료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 간 회의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높은 빈도로 자행되었던 고문의 종류를 바탕으로 목록을 추가 및 수정하였다. 신체고문에는 온몸구타, 따귀 때리기와 같은 높은 빈도를 보이는 기본적인 신체고문에 더하여, 각목을 사용한 고문, 물고문, 매달기, 전기고문, 송곳찌르기, 성기고문 및 성폭행, 열고문, 약물 강제 투여의 10가지 경험이 포함되었다. 비신체고문에는 심리적 조작 및 모욕적 대우를 포함한 심리고문, 기본욕구의 박탈을 포함한 박탈 고문, 자세를 강요하거나 감각적 불편감에 노출시키는 노출 고문이 포함되었다. 각 고문을 경험했는지 여부를 '있었음' 혹은 '없었음'에 표기한 뒤 각 경험에 대한 지각된 심리적 고통의 수준을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음(0)'에서 '매우 극심히 고통스러웠음(6)' 사이의 7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 고문 관련 신체적 후유증: 근골격계, 피부과, 신경계, 호흡기계, 이비인후과, 소화기계, 안과, 비뇨/생식기계 증상 별로 고문으로 손상받은 신체에 대해 '있었음' 혹은 '없었음'에 표기한 뒤 각 손상에 대해 고통의 수준을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음(0)'에서 '매우 극심히 고통스러웠음(6)' 사이의 7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ES-K-R): 고문과 관련된 재경험, 회피, 과다각성, 해리 및 둔감화 증상등의 고문 후 스트레스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번안하여 타당화된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은헌정 등, 2005)을 활용하였다. 은헌정 등(2005)에서 내적 일관성은 .69-.83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 간이 정신 진단 검사-개정판(SCL-90-R):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번안타당화한 척도로, 개인이 호소하는 임상 증상을 9개 하위 차원에서 측정하는 90문항의 자기보고 질문지이다. 본 연구는 복합성 외상후 후유증의 광범위한 증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SCL-90-R의 하위척도 중 신체화,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척도의 50문항을 선별하여 활용하였다.

- 외상 기억 양상 질문지(TMQQ): 고문 기억의 양상을 평가하기 위해 Meiser-Stedman, Smith, Yule, Dalgleish(2007)이 개발한 척도로, 고문기억의 감각지각적 양상 및 비언어화의 양상을 묻는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가 .76-.82로 내적일관성은 양호하게 나타났다.

- 생활 경험 질문지: 고문피해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법률지원, 심리치료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 간 회의를 통해 고문피해자의 보안관찰과 관련된 경험을 묻는 3문항, 교육, 직업 등 사회활동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묻는 5문항, 대인 관계적 지지 및 고립, 사건피해와 관련된 지원 등 사회적지지 수준을 묻는 6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경험에 대해 '없었음' 혹은 '있었음'에 표기하였다. 고통의 수준을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음(0)'에서 '매우 극심히 고통스러웠음(6)' 사이의 7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여 보안관찰고통, 사회경제고통, 사회적 지지 부재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신뢰도 분석에서 보안관찰고통을 묻는 세 문항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98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위 척도간 상관은 .700에서 .927의 범위로 매우 양호하였고 총점-척도간 상관도 .885에서 .927로 높은 수준이었다. 사회경제고통을 묻는 다섯 문항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10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하위 척도간 상관은 .266에서 .707의 범위를 보였다. 교육 제한과 건강문제로 인한 제약 측정치의 상관이 .266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유의미한 편에 해당되었다. 총점-척도간 상관은 .615에서 .842로 높은 편에 해당되었고, 사회적 지지 부재를 묻는 여섯 문항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21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위 척도간 상관은 .298에서 .698의 범위에 해당되었다. 가족 외면과 고문경험을 믿지 않음의 상관이 .298로 다소 낮은 편이었으나 유의미한 편에 해당되었다. 총점-척도간 상관은 .653에서 .787의 범위로 높은 편에 해당되었다.

- 건강 상태: 술, 담배 등의 물질 사용, 자살 사고, 자살 계획, 자살 시도 경험, 질환 진단 경험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 국립정신병원형 알코올 중독 선별 검사(NAST): 김경빈 등(1991)이 개발하였으며 알코올 의존 문제를 선별하는데 유용한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국가 구제조치: 국가기관 및 법원에 피해조사를 신청한 경험 및 고문피해를 인정

받은 경험을 응답하고, 조사결과 및 구제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스러움(0)'에서 '매우 만족스러움(3)'의 4점 척도로 평정한 뒤, 불만족의 이유 기술하게 하였다.

- 피해자 지원 요구: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식 증진', '경제적 지원과 보상', '신체 후유증 지원', '심리 후유증 지원', '주거 지원', '국가적 고문방지 기구 설치' 항목에 대한 필요도를 '필요없음(0)'에서 '매우 필요함(3)'의 4점 척도로 평정하고, 고문피해자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기술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가족용 질문지

-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ES-K-R): 가족의 고문피해 사건에 대한 PTSD증상을 측정하였다.

- 간이 정신 진단 검사-개정판(SCL-90-R): SCL-90-R의 하위척도 중 신체화,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척도의 50문항을 선별하여 활용하였다.

- 생활 경험 질문지: 고문피해자의 가족이 경험한 심리사회적 생활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문피해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법률지원, 심리치료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 간 회의를 통해 문항을 제작하였다. 사건관련고통, 사회경제적고통, 사회적지지부재, 피해자폭력 악순환의 하위 항목을 설정하였다. 사건관련고통에는 사건 관련하여 '경찰서, 정보기관, 사법기관에서 취조를 받은 경험', '고문피해 당사자의 피해 상태를 목격한 경험', '보안관찰로 인한 생활의 제약'이 포함되었고, 사회경제적 고통으로는 '교육 제한', '직업 활동 제한', '취업 제한', '경제적 어려움'이 포함되었다. 사회적 지지부재에는 '주변인과 이웃의 외면과 배척', '친인척의 외면과 배척',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 부재'가 포함되었다. 또한 피해자폭력의 악순환 고통에는 고문피해 당사자로부터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언어 폭력을 당한 경험이 해당되었다. 각 경험을 했는지의 여부와 각 경험에 대한 지각된 고통의 수준을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음(0)'에서 '매우 극심히 고통스러웠음(6)' 사이의 7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 건강 상태: 피해 당사자용과 동일함.
- 국립정신병원형 알코올 중독 선별 검사(NAST): 피해 당사자용과 동일함.
- 국가 구제조치: 피해 당사자용과 동일함.
- 피해자 지원 요구: 피해 당사자용과 동일함.

3) 심층면접

① 심층면접조사 목적

한국사회 고문 피해자의 언어를 바탕으로 심리적 후유증의 구체적인 발현 양상을 이해하고 현재 피해자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 및 요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② 심층면접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비시국사건(일반형사사건) 피해자를 포함해서 피해 당사자 2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선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고문피해 경험을 가장 잘 기술할 수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목적적 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 심리사회적 후유증이 높은 참여자: 양적조사 질문지의 심리적 후유증 측정에서 PTSD 증상을 측정하는 IES-K-R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거나, 양적조사 실시 도중 조사원에게 과거 자살시도의 경험, 사회생활 및 대인/가족관계의 어려움을 보고한 경우 등 양적조사 결과 심리사회적 후유증이 두드러지는 참여자 중 질적조사 인터뷰에 동의한 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중간분석 단계에서 이론적 포화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고, 표본 편향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별기준을 설정하여 추가적인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즉 극심한 심리사회적 후유증을 극복한 고문 생존자와 일반형사 사건 고문피해자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 고문 생존자: 고문 후유증을 극복한 고문 생존자는 회복과 치유의 과정에서 체험하는 경험에 대한 기술을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포함하였는데 이들은 고문피해 경험에 대해 좋은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에 따라 네트워크 표출 방법을 바탕으로 선별하였다.

- 비시국사건(일반형사사건) 피해자: 설문 및 심층 조사 대부분이 과거 시국 사건 피해자라는 점에서 이들 시국 사건 피해자와의 경험 차이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선별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문을 인정한 결정례 중에서 2000년 이후 일반 형사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구치소, 교도소 수감 중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이론적 포화를 이루었다고 판단하여 모집을 중단하였으며 이에 총 24명의 참

여자의 심층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③ 심층면접 내용 및 면접 도구

심층면접을 위해 정신과적 진단과 외상성 후유증에 관한 진단, 치료의 경험이 풍부한 임상심리학자 2인과 정신과 전문의 1인이 구조화된 면접 도구를 활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고문이후 발생한 정신과적 장애의 유병률 및 현재 유병률을 조사하였다. 또한 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참여자의 인생사 내러티브를 수집하여 고문 이전의 삶과 고문 이후 변화된 삶의 양상, 고문피해와 관련된 심리적 후유증 및 핵심 정서의 작동 양상, 피해극복을 위해 요구되는 심리내적 자원, 피해자가 요구하는 외부 지원책 등 광범위한 질적 자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층면접에 사용된 면접 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

- MINI-국제 신경정신과적 진단도구(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정신장애진단통계편람-IV(DSM-IV)과 국제질병분류-10(ICD-10)의 정신과적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구조화된 진단 면접 도구로서 Sheehan 등(1998)이 개발하였다..

- 다차원적 외상 회복 및 심리자원-인터뷰(Multidimensional Trauma Recovery and Resiliency-Interview):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치료적 경험을 받지 못한 생존자들의 인생사와 언어표현을 얻기 위한 반구조화된 면접 도구로서 외상의 심리적 영향력과 회복 및 치유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Harvey et al., 2003). MTRR-I는 광범위하고 개방되어 있으며 참여자의 대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생이야기를 구술하도록 반구조화되어 있으므로 심층면접 자료 수집의 틀로서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피해자 지원기관 방문조사

① 목적 : 범죄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파악, 피해자 지원 사례 청취,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청취하여 고문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② 대상: 범죄피해자와 성폭력피해자 지원 기관 업무 종사자로 수도권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내 업무 수행 종사자 중 1개 센터 당 1내지 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③ 방문 조사 내용 :
- “범죄 및 권력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리 선언의 적용을 위한 피해자 사법 핸드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9가지 ‘서비스 제공 항목’(위기 개입, 상담, 옹호(Advocacy), 범죄 수사 기간 중의 지원, 형사소추 및 공판 중의 지원, 사건의 처분 결정 후의 지원, 전문가와 담당 직원의 피해자 문제에 관한 훈련, 폭력 방지 및 기타 예방 서비스, 피해자 문제에 관한 공중 교육)을 근거로 한 체크리스트를 시용하였다.
- 센터 현황(조직, 인력, 예산 등), 지원 업무 현황과 지원 절차, 협력 체계, 지원 업무 전문성,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5) 자문 회의

연구조사에 대한 자문가는 법률, 심리치유, 피해자 지원 경험자 등으로 구성하고, 자문회의는 2회 개최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1차 자문
- 시기 : 연구조사 개시 후 3주일 이내
- 자문 내용 : 연구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특히 조사내용과 방법, 범위 등의 현실성, 타당성, 객관성 확보 여부에 중점을 둠.

② 2차 자문
- 시기 : 중간보고서 제출 후
- 자문내용 : 연구조사 결과 및 연구팀이 제시한 고문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종합 의견

3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 연구의 의의

고문이 불러오는 인간성 파괴의 재앙은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고문피해자가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때 우리는 모두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공식적으로 고문을 반대하고 국제적 고문반대 행렬에 동참한다고 하여 우리 사회가 인권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은폐된 고문 피해사실과 피해자들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인권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내외에 공언하는 것임과 동시에 고문으로부터 우리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한국현대사에서 발생한 고문피해 사례들에 대해 국가기관에서 고문피해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최초의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이다.

둘째, 고문의 종류나 방법, 고문의 강도, 고문 시행기관, 고문사유, 신체적 손상을 파악하는 데 머물지 않고, 고문 후의 정신·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트라우마(외상)와 PTSD(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정도를 파악하고 고문피해자 치유 필요성의 근거제시에까지 이르고 있다.

셋째, 24명의 피해자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고문피해가 향후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신체적, 정신·심리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지, 고문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치유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고문에 대한 제한적 인식과 고문의 정의와 개념[7]을 확장하였다. 고문이라 하면 물고문, 전기고문, 거꾸로 매달기 등 극심한 신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신체고문만을 떠

7) 코펜하겐 고문생존자 재활센터에서 활동하는 페터 엘사스(Peter Elsass)[1] 는 고문의 핵심은 "피해자의 정체성을 파멸"시키고 "이러한 좌절과 인격의 파괴 안에 고통"을 각인하는 것이라며 고문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지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올리게 된다. 그러나 잠 안재우기, 음식물 안주기, 치료 안해주기 등의 박탈고문이나 위협과 협박, 모욕주기 등의 심리고문, 강요된 자세와 감각적 불편을 강제하는 노출고문 등도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는 고문행위라는 것이다.

다섯째, 고문과 자살시도, 고문과 정신·심리적 후유증, 국가구제조치에 대한 만족도, 고문피해자 지원에 관한 요구도 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파악은 향후 고문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 체계 방안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여섯째, 고문 과정에 의료인이 개입하고 고문수사를 방지해야 할 검찰이 고문에 가담 또는 협력하고, 법원이 묵인하거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했던 과거의 잘못이 피해자들의 고문경험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고문 과정에서의 의료인의 개입과 고문을 지속하게 하거나 고문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결과는 의료계와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고문피해자 모집단의 전체적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국가기구와 민간단체 어느 곳도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연구진에서 피해자를 찾아내고 조사한 만큼만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시대별 사건분포를 적절히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213명중 128명이 1980년대에 집중되고 1990년대 이후로 설문참여자가 적은 것을 고문이 1980년대에 집중되었다가 1990년대 이후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파악해서는 안된다. 과거사기구들의 조사결과와 고문피해사례 보고대회 등의 자료를 통해 1980년대의 고문피해자를 찾아내고 접근하기가 보다 용이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시대별로 조사대상의 편차가 심한 것도 그 이유이다. 따라서 조사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도 조사참여자들의 실태를 통해 전체 고문피해자 집단의 실태를 유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이점은 앞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다. 은폐된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발굴된 피해자들이라 하더라도 고문 피해자들이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설문에 응할 수 없는 심각한 질환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은 조사할 수 없었다. 과거의 고문사건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들과 국가기관의 실태조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또 다른 보복피해를 두려워하는 피해자들, 고문후유증이 심각하여 실태조사에 응할 수도 없는 피해자들이 예상보다 많이 존재했다..

셋째, 비시국 사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못했다. 진범이 잡혀 고문으로 살인누명을 쓴 일반 형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법원판결과 자료를 통해 접할 수 있었으나 이들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면담조사를 하기에는 연구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따라서 연구주체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인권위에 진정 접수된 사건들 중에서 대상자를 추출하다보니 국가인권위 설립 이후인 2000년대 이후 사건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혹여 비시국 사건에 대한 고문사례가 2000년대 이전에는 없었다거나, 최근 들어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국가기관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문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사건들을 조사했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국가기구에 진정한 접수서류와 결정문 등을 입수하여 고문피해 사실을 검토하고자 했으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자료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인 신상이 일부 포함된 정보라 할지라도 국가기관에서 피해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제공이라면 정보유출 방지책을 마련하여 관련기록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고문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

제2장. 고문피해 관련 선행연구 검토

1절. 국내 연구 현황

국내에서 고문 또는 고문피해에 대한 연구 현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고문에 대한 사례 중심의 자료집 발간이며, 두 번째는 해외 자료의 번역이나 피해자 지원과 치료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자료, 세 번째는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 기준의 국내 수용을 둘러싼 학문적 논의, 그리고 국가 차원의 조사 기구에 의해 진행된 국가폭력 피해자 실태조사에 포함된 고문피해 조사로 분류할 수 있겠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국내에 고문 관련 1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그나마 여러 기관, 단체에 흩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향후 고문피해 관련 국내 연구를 위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체계적인 고문피해 관련 자료 수집과 정리가 시급함을 강조해 둔다.

1. 고문관련 사례 중심의 자료집

고문피해에 관한 문헌자료는 1970년대 주요 시국사건을 중심으로 발간된바 있다. 1973년 11월 7일 발표된 서울대 공과대학생회에서 발표한 "선언문"은 학생에 대한 고문폭행의 중지 및 언론자유 등을 주장하고 있다. 1975년 12월 발생한 재일교포 학원침투간첩사건의 고문피해자 권말자(당시 26세) 씨가 일본에서 발표한 "KCIA의 고문에 관한 회고록"은 1975년 8월 한국 유학 중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 관련하여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수사받고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협박과 강간과 폭행을 당한 고문피해 사실을 직접 기술하고 있다.

1977년에는 청계피복노동조합에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각목으로 구타하고 곪은 상처를 바늘로 후비는' 고문피해사례를 폭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979년 8월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서 폭로한 고문피해 사례를 담고 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피고인들은 중앙정보부에서 무릎뒤에 각목넣고 밟기, 각목 구타, 담뱃불로 지지

기, 여성 피고인에게 '옷을 벗기겠다'고 협박하기, 바늘로 찌르기, 잠 안재우기, 거꾸로 매달기, 권총으로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기 등의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문피해자들의 폭로와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각종 호소문, 선언문, 탄언서, 성명서와 진상보고문, 고문사례모음집 등이 급격히 늘어난다. 이 문헌 자료들은 피해자 당사자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교·사회단체, 변호사단체, 기자 등이 제작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각종 시국사건으로 경찰, 정보기관에 연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수기, 공판 진술기록, 사건의 진상규명과 고문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주장들을 담고 있다.

우선, 1980년대 초반 문헌 자료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1979년 11월 24일 명동YWCA강당에서 시국선언 성명서를 발표한 사건의 피고인들의 고문피해사례를 담은 출처불명, 작성자 불명, 제목 불명의 문건이 있다.(본문의 내용상 당시 계엄사의 합동수사본부의 고문 사례 모음으로 추정된다.) 이 문건(10쪽)에서 당시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이었던 조성우, 설훈, 이해동, 이호철, 김대중, 이신범, 문익환, 이문영 등 피해자들은 거꾸로 매달고 각목구타, 각목으로 무릎 비틀기, 강제로 물 마시기, 옷 벗기기, 온몸 구타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명동 YWCA 성명서 사건으로 보안사(계엄사 본부)에 연행되었던 전직교수 김모씨와 학생 2명의 고문피해 사례가 있다. 이들이 당한 고문은 각목구타, 고무신으로 뺨 때리기, '원산폭격', 장시간 벽에 붙어 있기, 철창에 매달리기, 잠 안재우기, 몽둥이로 손등 내려치기, 군화발로 차기 등이다.

1980년대에는 주요 시국사건 피해자들의 고문 폭로가 계속 이어졌다. 고문폭로가 있었던 주요 사건들은 1980년 전민노련, 전민학련 사건, 1981년 부림사건, 1983년 오송회 사건, 1985년 민청련 김근태, 이을호씨 사건,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5·3인천시위사건, 서노련 사건, 하나교회 청년회장 고문수사 사건,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반제동맹당 사건, 1989년 국민대 박정환 생매장 고문사건, 이철규 군의문사 사건, 민족해방운동사 그림사건 등이다.

1980년대에 고문관련 자료집과 문헌들은 1985~1987년경에 집중된다. 이 시기에 발생한 민청련 김근태씨 고문사건, 부천서 성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그동안 잠복되어 있던 고문 피해주장이 사회의 전면에 부각되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고문 피해사례에 관한 보고서, 자료집 등이 많이 제작되었다.

1985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고문대책위원회는 "1985년도 고문대책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당시 대책위원회가 대통령, 내무부장관, 국회의장 등에게 고문피해 사례를 열거하고 고문근절을 요청하는 서신, 김근태 씨의 재판정 고문피해 주장 모두진술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87년 고려대학교 법사회학회가 발간한『거짓과 진실 - 고문과 죽음의 기록』은 인권관계법 조항, 1980년대 이전의 고문피해 사례 - 인혁당 사건, 1971년 서승 형제 사건, 1975년 학원간첩단 사건, 1979년 남민전 사건, 1979년 YWCA 사건 - 과 1980년대의 주요 고문피해 사건을 담고 있다.

『거짓과 진실 - 고문과 죽음의 기록』에 기재된 1980년대 주요 고문피해 사례로서 1980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 폭파음모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1981년 김시훈 사건, 고숙종 사건, 부산양서조합(부림) 사건, 광민사 사건, 김영 사건, 박성혁 사건, 1982년 기태우 사건,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이재영, 장종택, 심윤남 씨 사건, 1983년 야학연합사건, 김근조 사건, 경주당구장 살인사건, 1984년 오석희, 방용석 사건, 여학생 성추행사건, 인하대생 강성진 군 사건, 부산해운대 시위사건, 윤승권 사건, 대구택시운전사 시위사건, 1985년 이경순씨 사건,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폭행사건, 민청련 사건, 춘천지역 고문사건, 서울대 민추위 사건, 대우자동차 파업시위사건, 하남전자 노조간부 고문사건, 동아일보 해직기자 폭행사건, 허인회 등 학생 고문 용공조작사건, 힘전 작가에 대한 고문수사사건, 1986년 5·3인천시위사건, 서노련 사건, 하나교회사건, 부천 성고문사건, 유상덕 씨 사건, 백산서당 보임사 사건, 안산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사건, 반제동맹당 사건, 백기완 씨 사건, 서재선 씨 사건, 민정당사 성직자 연합시위사건,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 사건, 1987년 박종철 사건, 제헌의회그룹 사건 등을 요약, 소개하고 있다. 이 문헌에는 고문사례 외 1980년대 발생한 의문사 사건(우종원, 신호수, 김성수, 한영현, 김두황, 정성희, 이윤성, 한희철, 최은순, 황정하, 이경은 씨 태아, 정철헌)도 다루고 있다.

또한 이 문헌은 고문과 의문사 사건들에 대한 정리와 함께 한국사회에서 '고문은 왜 일어나는가', 고문가해 기관, 고문과 언론, 고문의 유형, 고문의 후유증, 고문에 대응하는 방법, 인권운동의 방향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문 후유증의 경우 죽음, 신경과 감각이상 증상, 비신경계통의 증상으로 나누고, 신경과 감각이상 증상으로 두통, 청력이상, 시력이상, 알콜 과민, 이상감각, 현기증 등이 있고, 비신경계통 증상으로 소화기관, 관절통증, 심폐, 보행 이상, 외상과 관련된 통증을 들고 있다.

민청련 김근태, 서노련 김문수, 부천서 성고문,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사건이 사회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처음으로 고문에 관한 실태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987년 1월 제작 배포한『고문근절대책공청회 자료집 - 고문피해의 증언』은 앞서『거짓과 진실 - 고문과 죽음의 기록』에 실린 고문사례 외에 '보도지침'사건 관련 피해자와 수배자 가족들의 피해, 일반 형사사범인 특수절도 무죄판결의 피의자 서재선 씨 사례와 교도소 내 정치범, 양심수에 대한 가혹행위 사례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 자료집을 발간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서문에서 “박종철 군의 참혹한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는 공권력에 의한 야만적인 고문과 가혹행위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전 국민적인 결과 합의에 의해 단호한 고문반대운동을 전개해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순간”이며,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는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모든 고문피해사례에 관한 주장을 공개리에 재검토하고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어 고문 책임자들을 의법 처단하고 피해를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1980년대 단행본으로 출판된 문헌으로는 조갑제가 쓴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 고문에 의한 인간 파멸과정의 실증적 연구』(한길사, 1983.)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펴낸 『나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거름, 1987.),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가 펴낸 『고문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민중사, 1987.), 김종순이 펴낸 「격동의 민족사 10 - 안기부와 보안사」(대한서적, 1989), 김병진이 지은 『보안사』(소나무, 1988) 등이 있다.

조갑제의 책은 국내에서 고문의 역사와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한 최초의 자료이다. 이 책은 먼저 고문과 조작의 뿌리로 일제 고등결찰, 헌병 출신자들의 해방 후 변신과정을 추적하고 있는데, 저자에 따르면 일제 경찰 출신들, 특히 고등계 형사출신들이 이승만 정권의 경찰, 특무대, 헌병의 중추부를 장악하고 폭력배들을 이용하면서 권력에 충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치사건을 조작하고 고문을 이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 1967년 살인사건 피의자 김기천씨, 1981년 사망사건 피의자 고숙종씨 등 1980년대 초까지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자행한 고문 실태와 그에 따른 피해상황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다.[8)]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펴낸 『나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거름, 1987.)[9)] 1980년대 시국사건 관련자들의 고문사례들(김근태, 김병걸, 김은숙, 이재오, 김재술 등)을 엮은 자료집이다. 이 책에는 김근태, 이영교(인혁당 피해자 하재완의 처), 이재오 등 고문 직접 피해자들의 수기 외에 가족들의 수기와 주요 사건의 피해자 진술문, 변론 요지 등을 싣고 있다.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의 『고문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부천성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그동안 정권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민주운동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자행된 고문 실태에 대한 자료를 다수 모아 놓은 책이

8) 유사한 방식의 책으로 김덕용, 『고문 정치학』, 동광출판사, 1988. 이 있다. 책의 구성은 총 9개의 부로 되어있으며, 각각 ‘고문의 유래’, ‘고문의 종류’, ‘아르헨티나의 고문과 살육’,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부천성고문 사건’,

9) ‘김근태 남영동 고문’, ‘고문은 정보정치의 사생아’, ‘인간성 상실의 현장 :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 ‘죽음을 부르는 고문’이라는 제목이다.

다. 여기에 포함된 사건들을 보면 다른 문헌에서 같이 부천서 성고문 사건, YWCA사건, 김대중 등 내란음모 사건, 부림사건,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양심인사들의 실종, 변사사건 등과 같이 1970년대와 1980년대 주요 정치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스유니버스대회 폭파음모사건, 여대생 집단추행사건, 광산노동자 살해기도 사건 등 총 19개 주요 사건으로, 독재 정권 당시 정치권력이 정권유지를 위해 자행한 각종 고문 실태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종순의『격동의 민족사 10 - 안기부와 보안사』는 전두환 집권 8년간 거듭된 안기부와 보안사의 간첩조작 사건과 고문피해를 담고 있다. 1988년 국회 국정감사와 5공청문회에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김병진의『보안사』는 재일동포 유학생 신분의 저자가 1983년부터 1986년 동안 보안사에 연행되어 간첩으로 조작된 후 보안사 직원으로 강제근무하면서 보고 겪은 고문피해 사례와 간첩조작 사례를 다수 기술하고 있다. 이 문헌은 저자가 일본으로 탈출해 있으면서 국내 출판되어 당시 보안사의 고문수사 메커니즘과 가해자의 실명과 직책을 그대로 싣고 있어 매우 실증적인 자료이다.

1990년대 들어 고문사례 자료집은 양적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1991년 박노해를 비롯한 사노맹 관련자들의 안기수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고문수사 의혹과 1996년 12월 발생한 경희대생 김형찬 군이 안기부원에 의해 경기도 대공분실에 연행된 후 고문 폭행당하고 분신한 사건은 1990년대 들어서도 공권력의 고문수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 문헌 자료들은 고문사례 외에 고문후유증과 고문피해 조사와 원호, 고문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과거 고문의혹사건과 의문사 사건에 관한 포괄적인 재조사 등에 관한 내용들이 많다.

1992년 5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의 고문과 인권”주제의 심포지엄에서는 한인 교포와 미국 인권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고문희생자원호회(Stop Torture in Korea)>가 결성되었고, 권인숙, 서승 등 발표자들은 고문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필요성, 한국의 고문사례 등을 토론하였다. 이들은 고문피해자들의 원호를 위해 “고문희생자들을 위한 의료대책, 고문희생자들의 가족 생계, 고문사례의 자료 수집, 고문희생자 가족을 위한 법률 상담, 고문과 인권문제의 교육 홍보사업” 등을 제기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펴낸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1994)은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과 의학적 측면에서 본 고문의 심각성에 대한 발제와 고문피해 사례발표 및 토론에 대한 자료집이다.

박원순의『야만시대의 기록』(전3권, 역사비평, 2006))은 일제시대부터 최근까지 각종 신문자료와 잡지, 단행본, 논문, 단체 자료집, 법원 판결문, 외국 정책자료 및 인권단체 보고서 등을 총망라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의 다양한 고문 사례들을 통사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2. 고문 관련 연구 번역 문헌

2000년 이후 고문과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범과 연구사례가 전문연구자들에 의해 소개되었다. 주요 문헌으로 변주나, 김록호, 박원순 등이 펴낸『고문 생존자 - 외상과 재활』(현문사, 2003)[10] , 고문 등 정치폭력 피해자를 돕는 모임(KRCT)에서 펴낸『고문. 인권의 무덤』(한겨레신문사, 2004), 최현정이 펴낸『고문폭력 생존자 심리치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11],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범죄 및 힘의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리 선언의 적용을 위한 피해자 사법 핸드북』(2008)등이 있다.

『고문 생존자 - 외상과 재활』(현문사, 2003)은 1987년 덴마크 간호사협회와 덴마크 고문피해자재활 및 연구센터에 의해 출판되어, 1990년 영문 수정판을 한국어로 번역한 책으로, 10개의 장과 고문지원 기관을 소개하는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고문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국제협약과 선언들을 교육용 교재로 구성한 것으로 보건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고문에 대한 소개'(1장), '고문과 의료인의 윤리문제'(2장), '고문방법'(4장), '생존자의 신체적, 심리적, 가족 및 사회경제적 문제'(5장), '고문피해자 자녀들의 문제'(6장), 'RCT의 활동 내용'(8장) 등이다.

『고문. 인권의 무덤』은 고문 등 정치폭력 피해자를 돕는 모임에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재정리한 책으로,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국제고문피해자 재활협의회(IRCT)가 발행한 고문 관련 자료를 번역하였고, 3장에서는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급성, 만성 후유증), 심리적 문제(고문 중 급성 반응과 고문 후 만성 후유증), 가족문제, 사회경제적 문제 그리고 가해자 석방과 면책이 생존자에게 주는 심리적 불안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고문 생존자 재활과 관련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개관하고, 한

10) 원저는 L. Jacobsen & K. Smidt-Nielsen, Torture Survivors - Traum and Rehabilitation, RCT, 1987
11) 원저는 Peter Elsass, *Treating Victims of Torture and Violence*, New York University, 1997

국의 현실에 대해 정리한 5장은 먼저 권력에 의한 고문피해의 사례로 한총련 집회 연행 및 구금자 고문실태, 광주 518 민중항쟁 연행, 구금, 수형자의 고문실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을 검토하고 있고,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와 탈북자 고문 실태를 정리하면서, 이러한 국내 고문 피해자 재활을 위한 국내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문폭력 생존자 심리치료』은 덴마크 코펜하겐 고문생존자 재활센터(Rehabilitation Center for Torture Survivors in Copenhagen, RCT)에서 심리학자 라스무스 요르단(Rasmus Jordan)을 비롯한 심리치료자들과 함께 고문 생존자들에 대해 진행된 치료와 슈퍼비전의 결과물이다. 그렇지만, 순전히 심리평가도구, 치료과정, 치료결과를 보여주는 임상 보고서가 아니라 고문을 포함한 폭력 생존자의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이론적 쟁점들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먼저 고문방지협약의 고문 정의 불충분함을 지적하면서, 고문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성의 파괴에 있음을 주장하면서(서론), 고문을 폭력과 공격성의 맥락에서 관찰하면서 고문피해자를 이해하고 치료를 개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인식론적 쟁점들을 설명한다(1장, 고문, 폭력, 공격성 : 과학으로 '절대 악'에 대면하는 어려움). 이어서 고문 증후군을 이해하기 위한 정신 역동적 이해에 대한 상세한 설명(2장, 고문 증후군 : 트라우마 증상의 진단 기술과 '견딜 수 없는 무력감'에 관한 정신 역동적 이해)과 더불어 고문 폭력 피해자를 지지하는 태도와 함께 정신분석과 인지치료 관점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치료과정을 제시하고 있다(3장, 심리치료). 그리고 고문피해자의 문화적 맥락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2개의 장을 할애하고 있다(4장, 고문 증후군의 문화심리학, 5장, 문화 심리학 치료). 이는 특히 서구의 경우 자국 내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 발생한 피해자의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들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국 내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세대 간 또는 지역 간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이론적 쟁점과 연구를 바탕으로 저자는 RCT에서 수행된 고문폭력 피해자의 슈퍼비전 과정과 결과를 6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고문피해자 심리치료 과정에서 고려할 주요 사항과 임상결과들을 정리하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심리평가와 결과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범죄 및 힘의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리 선언의 적용을 위한 피해자 사법 핸드북』은 1985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범죄피해자 및 권력 남용에 관한 근본적 사법원칙 선언"(총회결의 40/34)의 사용과 적용에 관한 매뉴얼로 1995년 12월부터 2년

반에 걸쳐 만들어졌다. 이 자료는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지원과 관련된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5개 장으로 구성된 핸드북은 '피해의 영향'(1장)에서부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2장), '피해자 지원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3장), '시민사회의 역할'(4장), '국제 협력'(5장)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고문을 포함한 공권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고민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3. 고문방지 관련 국제 기준의 국내 수용에 대한 학문적 논의

고문방지에 관한 국내 논의는 주로 법학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주요 문헌으로는 민경식의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중앙법학』, 제7집, 중앙법학회, 2005), 정경수의 「구금장소 방문의 제도화를 통한 갇힌 자의 인권보호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분석과 국내 도입문제를 중심으로」(『인권평론』, 통권 제2호, 한국인권재단, 2007),. 오병두의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형사실체법적 쟁점 - 고문 범죄의 처벌을 중심으로」(『민주법학』, 통권 37호, 관악사, 2008),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 관련 주요 쟁점 분석』(2005) 등이 있다.

민경식의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는 고문의 특성으로 반인륜적 범죄 행위, 인격침해와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것, 인간 학대의 제도적 폭력, 비밀로 인한 입증의 어려움, 고문 금지의 절대성 5가지를 제시하면서 인간존엄성의 존중, 국가도덕성의 보장이라는 보호법익의 내용에 따라 고문범죄의 엄벌,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의 부인, 피의자 심문에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 고문피해의 적정 배상과 피해자의 완전한 사회 복귀 보장,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의 배제, 고문방지협약 제21조와 22조 수용을 통해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정경수의 「구금장소 방문의 제도화를 통한 갇힌 자의 인권보호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저성의 분석과 국내 도입문제를 중심으로」는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인권규범의 발전, 구조 그리고 고문방지협약 이행감시절차의 특징과 한계, 국가보고서 정기제출, 국가 간 통보절차, 개인통보절차, 고문방지위원회조사, '사전적 방지 추구'라는 선택의정서의 이행절차 등 고문방지 국제규범의 발전 과정 그리고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선택의정서 가입과 관련한 국내 조치 중 쟁점이 되는 사항으로

방지소위원회와 국내 방지기구 위원들에 대한 면책, 특권부여 문제, 입회자 없는 면담 허용 문제, 정보제공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문제,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한 방지소위원회 위원들의 입국불허문제, 국내 방지기구의 설립 또는 지정 문제를 검토하였다.

오병두의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형사실체법적 쟁점 - 고문 범죄의 처벌을 중심으로」는 고문방지협약의 적용대상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또는 사실 상 구금 또는 통제에 있는 사람임을 밝히고,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형사실체법적 입법 의무의 범위를 협약에 규정된 고문 개념, 고문범죄의 요건 그리고 그에 적정한 형벌의 범위를 확인한 결과 현행 법체계상 고문 방지에 필요한 법 규정이 충분하지 않으며, 형량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협약의 고문개념을 직접 국내에 반영하면서 그 심각성을 고려한 적정한 형벌을 규정하고, 기타 잔혹한 대우에 대처하기 위해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 기관의 행위 규범이 법제화되고, 그 중 일정한 경우에는 형벌 법규로 대체하고, 아울러 국내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 관련 주요 쟁점 분석』은 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 쟁점에 대하여 3명의 국내 연구자의 글을 싣고 있다. 첫 번째 김태천의 글, 「고문방지협약 상 규정과 국내형사법체계와의 조화 및 충돌 : 고문방지협약 상 고문의 정의의 국내적 적용의 문제점 포함」은 고문방지협약 상 고문의 성립요소를 '주체적 요소, 객체적 요소, 고의적 및 목적적 요소, 행위적 요소'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고문에서 제외되는 합법적 제재조치와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전제하지 않는 부당한 처우나 형벌이 무엇인지 먼저 살핀다. 이를 바탕으로 고문 특별법 제정보다 현행 규정에 독직 폭행, 가혹행위죄를 고문범죄로 규정하여 그 범죄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구분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문범죄 처벌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절차, 행정 지원 등을 규정하는 수준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하지훈의 글, 「고문방지협약의 적용실태 및 문제점 - 사법적 적용을 중심으로」는 현재의 형사절차 상 '조서중심재판과 함께 수사제도 및 관행을 극복하고, 구금자에 대한 필요적 법관 면접제도의 도입, 변호인 참여권 보장, 불구속수사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고문방지협약과 그 선택의정서 도입과 관련해서는 소송과정에서 고문 주장에 대한 입증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고문가해자의 공소시효 문제, 그리고 고문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손해배상 및 청구권 소멸시효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 박기갑의 글, 「선택의정서 제3부의 '방지소위원회' 및 제4부의 '국가예방기구' 제도의 국내적 도입에 대한 고찰」에서는 선택의정서 상 국가예방기구는 그 성격에서 예방적(정기적 방문 포함)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차이가 있으며, 국가예방기구 지정의 선행 조치로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구금 장소 방문이나 기존 기구와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국가예방기구의 구성, 절차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로 기구의 독립성, 재정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국가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는 그동안 국가 차원의 조사기구에 의해 진행된 성과와 민간단체, 5·18재단 등에서 진행된 성과가 있다.

국가차원의 조사기구는 「국정원과거사사건진상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2004.~2007.)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4.~2007.),「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5.~2007.),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2005~2010)가 있었다. 각 위원회들은 조사활동 보고서를 발간한바 있다. 이 보고서들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발생한 고문, 학살, 실종, 의문사 사건들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의 피해사례를 다수 담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피해회복 조치, 재심 등을 권고하고 있다.

민간단체에서 발간한 실태조사 보고서로서는 사단법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사망자 유족 후유증(정신과정 장애) 실태조사 보고서』(2007)가 있다. 이 조사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대상자에서부터 학생운동과 민중운동에 종사한 경우까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총 523명이 조사에 응했다. 응답조사는 정신건강조사설문 Ⅰ과 Ⅱ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설문Ⅰ은 한국정신과학회에서 사용되는 정신건강 표준검사지 SCL-90-R을 사용하였으며, 설문 Ⅱ는 자가진단까지 가능한 한국형 알콜중독(NAST) 선별 검사표가 사용되었으며, 그밖에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관련 서적을 참조하여 설문이 제작되었다.

이 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민주화운동 관련 조사대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후유증, 사회생활의 제약 및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둘째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많은 후유증을 갖고 있고, 셋째 응답자들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중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과거사 조사기구의 조사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넷째 국가 폭력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후에도 치료나 적절한 후속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응답자들의 심리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기억의 잔상이 여전히 남아 공포불안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문 등 폭력에 의한 후유증으로 신체화 증상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가족의 경우 직접 관련자들에 비해 2~3배 정도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정신적 공황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8.1%의 피해자들이 알콜 중독 의심자로 나타났다. 심층분석결과를 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의 대상자도 있으나 일반인과 달리 개인의 의지로 그 증상을 안고 살아간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보고서는 향후 과제로 체계적인 조사연구의 필요성, 경제적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후속 사업, 국가주도의 국가 폭력 및 고문 피해자 사후 치료센터의 건립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5·18재단의 『5·18민주유공자 생활실태, 후유증 실태 조사연구 보고서』(2006)는 5·18민주 유공자들이 현재 처한 사회경제적 실태, 그들의 심리적 적응 양상과 내면세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광주민중항쟁의 구체적인 이해 확대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자 300여명의 5·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사회경제적 실태' 그리고 심리건강을 평가하기 위해'생활 스트레스 질문지,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진단 척도-인터뷰 버전(PSS-I), 일반건강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례분석은 11개 사례를 대상으로 면담 방식을 통해 '인적사항, 현재의 어려움과 문제, 병력, 가족력, 개인력, 성격, 정신상태 검사 : 감정상태, 지각, 사고, 인지기능 등, 심리검사 : MMPI-2, 로샤 검사, 그림검사, 문장완정검사, 웩슬러 성인 지능 검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광주지역의 5·18 유공자들 뿐 아니라 서울/경기, 전남지역의 유공자들(직접 상해를 입은 부상자와 구속자)과 유족들도 심한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26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의 충격이 현실처럼 생생하게 재경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지역 구속자들의 경우 54.6%가 심각한 알콜의존 경향을 보이고 있고, 5·18 보상금이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1차 조사 때 64.7%보다 낮아진 56.3%로 나타났다. 심리적 특성과 후유증의 경우, 서울/경기와 전남지역 5·18 유공자와 유족들의 25.6%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될 수 있었고 전체 조사대상자 중 16.8%는 엄격한 기준에서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할 수 있었다. 특히 유족의 경우 그 비율이 36.45%, 엄격한 기준에서도 27.35%로 나타났다. 부상자의 경우 전남지역은 24.4%, 서울/경기 지역은 27.6%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가능성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약 36.3%인 41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에 해당되고, 구속자는 37.5%, 부상자는 37.1%, 유족은 27.3%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심리적 피해현황 조사보고서 - 조사의 신뢰성 제고와 치료 및 재활 측면의 화해방안 모색』은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적 피해현황 조사와 이에 근거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표본 544명(대조집단 30명 조사)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과 내용을 살펴보면, 설문조사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실태, 사건 및 사건 이후의 심리적 피해와 적응'을 파악하였고, 심리건강을 평가하기 위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진단 척도-인터뷰 버전(PSS-I), 외상후 스트레스 척도(PSS-I)의 평정자간 신뢰도 분석, 생활 스트레스 설문, 일반 심리건강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현재 상태, 병력, 가족력, 개인력, 성격, 정신상태 검사,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5·18재단의『5·18민주유공자 생활실태, 후유증 실태 조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2006년 연구 후속 작업으로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례조사,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조사이다. 조사 방법과 내용을 살펴보면,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경제적 실태'와 함께 '생활 스트레스 질문지,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진단 척도-인터뷰 버전(PSS-I), 일반 건강 척도를 사용한 심리건강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면담, 정신상태, 심리검사를 하였으며, 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나 신체적 치료 외에도 삶 전체 영역에서 국가적 차원의 치료와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조사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결과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욕이나 동기수준이 상당히 높았고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지속적인 치료 상담이 진행되어야 함을 제기하고 있다.

2절. 국외 연구 현황

고문 후유증에 관한 초기 국제 연구는 고문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1982년 최초로 설립된 덴마크의 고문피해자재활센터(Rehabilitation Center for Torture Victims, RCT)나 미국의 고문피해자센터(Center for Torture Victims, CVT)와 같이 망명자를 위한 치료기관에서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고문행위를 부인했던 국가들의 행위를 폭로하고 고문의 의학적, 심리사회적 영향력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Elsass, 1997). 특히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의회(International 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Victims, IRCT)는 1991년부터 여러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고문의 생의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들을 다루는 <Torture> 저널을 발행하고 있다. <Torture>지는 고문에 관한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치료경험을 공유하고 학계 간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면서 고문에 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고문피해자에 관한 연구가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고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전문가 집단의 한계, 정치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제약, 문화적으로 적합한 평가도구 및 프로그램 개발의 부족이 이러한 비판에 속한다(Campbell, 2007). 그럼에도, 과거의 고문 경험이 현재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의 근거들을 밝히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강조(JAMA, 1996)는 국제 사회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 광범위한 학문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전문저널을 통해 고문에 관한 깊이 있는 임상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최근에는 치료 기관을 찾지 않은 다양한 집단의 고문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구들이 실시되고 있고(Quiroga & Jaranson, 2005), 피해자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임상적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Kagee, 2004). 고문으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뿐만 아니라, 고문이 피해자의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후유증, 후유증의 세대간 전달 또한 국제 사회 고문 연구의 관심 주제이다. 또한 고문 후유증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다차원적 측면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며, 개인의 치유력과 회복 능력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입장(Harvey, 2003)이 대두되는 등 활발한 진전이 두드러진다.

1. 신체적 후유증

고문과 관련된 신체적 후유증으로는 통증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으나 임상 현장에서 고문피해자의 만성 통증은 과소 진단되고 있다는 지적이다(Quiroga & Jaranson,

2005). 고문피해자의 통증은 조직손상에 의한 통증, 신경학적 통증, 심리적 통증이 모두 포함된다. Amris(2004)에 의하면 머리, 목과 어깨, 상지, 흉곽 및 척추, 허리 하단, 하지, 발의 통증이 53-93%의 고문피해자에게서 발견되었으며 세가지 부위 이상에서 통증을 경험한 피해자는 63%였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문의 유형이 신체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발바닥 때리기 고문으로 인한 만성적 통증 문제(Amris & Prip, 2001), 구타로 인한 횡문근융해(rhabdomyolysis), 두개내 및 척추 출혈, 두개내부종, 뇌척수액루, 간질(Bloom et al., 1995; Moreno & Grodin, 2002)이 보고되었다. 또한 이명, 청각저하, 코로 숨쉬기 어려움, 어지럼증이 보고되었고(Sinding, 2000), 높은 비율의 고혈압, 당뇨가 발견되었다(Kinzie, 2003 In Quiroga & Jaranson, 2005). 전염성 질환, 암, 뇌혈관 장애, 심장 문제는 외상 피해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고문피해자의 이러한 질환에 관한 연구는 밝혀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연구자들은 비판하고 있다(Eitinger, 1991).

2. 심리적 후유증

고문과 관련된 심리적 후유증으로는 PTSD와 우울장애, 범불안장애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ollica, 2004). 특히 고문과 투옥을 경험한 피해자의 연구를 살펴볼 때 PTSD의 유병률은 한 연구에서 39%로(Parker et al., 1992), 또 다른 연구에서 평생 유병률은 60%, 현 유병률은 30%(Maercker et al., 1997)로 나타났다.

고문피해자에게 공병률의 문제는 크다(Somnier et al., 1992). 특히 PTSD와 우울의 공병률이 높은데, 이는 여성에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PTSD와 물질남용의 공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astrup & Arcel, 2004). 수면장애(Astrom et al., 1989; Lavie, 2001; White, 2001), 뇌손상과 관련된 인지기능장애 및 정서장애(Mollica, 2003)도 보고되었다. 자살과 약물남용의 문제는 빈번하지만,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는 드문 것으로 평가된다(Quiroga & Jaranson, 2005).

고문의 심리적 후유증과 연관된 변인이 무엇이며 어떠한 치료적 개입이 적합한가에 관한 연구는 고문에 국한되지 않는 PTSD 전반에 관한 연구에 의존하고 있다. 고문에 대한 주관적인 고통, 투옥 이후 가족 내 스트레스 및 사회적 경제적 스트레스가 만성적 심리적 후유증에 기여한다고 보고되었고(Basoglu et al., 1994a), 장기종단연구에서 사회적 관계의 질과 경제적 문제는 고문피해자의 만성적 정신건강의 문제에 기여한다고 보고되었다(Carlsson et al., 2006). 고문에 대한 심리적 대비성과 강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완충 기능을 한다고 보고되었다(Basoglu et al., 1994b).

특히 고문피해자에게 두드러지는 심리적 증후군으로서 고문증후군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는데(Elsass, 1998; Mollica 2004; Peel et al., 2001; Wenzel et al., 2000), Elsass(1998)는 고문피해자는 고문경험에 대한 정서처리의 불완전성, 우울반응, 신체화 반응, 실존적 딜레마가 두드러진다고 주장하였고, Wenzel 등(2000)은 수치심과 죄책감, 실존적 반추의 문제를 포함하여 고문증후군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고문의 영향력을 과연 PTSD의 개념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제기에서 비롯된다. 고문 후유증을 PTSD의 개념 안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예, Basoglu와 동료들)은 고문증후군의 존재에 관하여 회의적이다. 그러나 고문증후군의 개념화는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파악하고(Silove, Tarn, Bowles, & Reid, 1991), 심리사회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자원과 위험요소를 명료히 함으로써 다차원적 심리사회적 적응체계를 마련하고(Silove, 1999), 심리장애에 관한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비서구 사회의 피해자의 경험의 실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Kagee, 2004)에서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 이는 한국사회의 고문후유증 실체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이해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사회적 후유증

고문이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생활 및 피해자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발견된다. 고문과 투옥으로 인한 직장 상실 및 교육 중단,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무능의 문제가 지적되었고(Turner & Gorst-Unsworth, 1993), 더하여 심리적 후유증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제약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점(Jaranson et al., 2001), 신체화 증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점(Somnier et al., 1992)도 보고되었다.

고문이 피해자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지만, 이들이 고문으로 인해 가족 간의 결별, 사회직업 지위의 상실, 사회적 지지 체계의 박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겪는다는 보고가 있으며(Witterholt & Jaranson, 1998), 가족의 이러한 스트레스 요소가 이들에게 PTSD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Basoglu et al., 1994). 또한 고문은 가족 내의 폭력을 증가시키며, 가족을 파괴한다(Quiroga & Jaranson, 2005). 이는 고문피해의 세대전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PTSD는 자녀양육에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이러한 피해가 2세의 심리적 문제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Yehuda et al., 1998) 아직 고문피해에 관한 2세의 PTSD는 연구가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고문은 개인을 통해 집단에게 공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사회를 양

극화시키고, 사회에 분노와 의심을 확장시키며,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키운다고 논의되었다(Genefke, 1994).

제3장. 고문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 법체계

1절. 고문에 관한 국제적 기준

1. 고문과 고문피해자 개념

"고문(torture)"이란 말의 유래는 라틴어인 "비튼다(twist)"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는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의 몸을 비틀거나 구부리게 하는 일반적인 기술을 통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약 800년 전 프랑스에서 교회 또는 정부가 자백이나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 고문을 도입하였을 때부터 고문이란 단어는 정부 관리에 의해 가해진 고통이라는 현재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12)]

1975년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억류와 구금에 관련된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의사들을 위한 지침서(Guidelines for Medical Doctors Concerning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 Relation to Detention and Imprisonment)"에서 고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고문이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단독으로 또는 어떤 권력자의 지시에 따라 당사자나 제3자로부터 정보 혹은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서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고의적이고 조직적이며 무자비하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다.

1984년 유엔은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에 관한 유엔협약: 유엔고문방지협약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서 고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고문이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 동의, 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12) 이화영(역), 배반당한 히포크라테스 (고문에 가담한 의료인들), 백산서당 2008, 31p

연루되었거나 연루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 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문서들에 의하면 '고문이란 고문가해자 개인에 의해 가해지는 고통이라기보다는 국가 또는 권력자의 지시나 묵인 하에 국가 업무로서 실행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고문은 고문가해자의 개인적 책임, 인권의식의 부재가 주된 이유라기보다는 국가의 묵인 하에 사회적 제도로서 실행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두 문서 모두 국가에 의한 제도적 폭력으로 고문을 정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문방지협약의 고문의 정의에는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서 몇몇 국가에서의 체형 등과 같은 고통은 고문에서 제외하였다.

고문방지협약은 고통 수준의 개념을 도입하여 고문을 재정의 하기도 하였다. 극심한 통증이나 고통(severe pain or suffering)을 수반할 경우에 고문(torture)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밖의 것은 부당한 대우(maltreatment)로 재정의한 것이다.[13] 1971년 유럽인권재판소가 아일랜드와 영국 사례에서 부당한 대우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는데, 포로를 심문할 때 눈을 가리거나 잠안재우기와 같은 행위는 고문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라고 판단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고문에 대한 잠정적 오류를 결과할 수 있다는 반론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부당한 대우 역시 국제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고통 수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Welsh and Rayner, 1997) 본 연구에서도 눈을 가리거나 잠안재우기와 같은 고문 기법을 박탈고문으로 분류하여 포함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는 협의의 고문의 정의와 고문방지협약 제16조의[14] '부당한 처우' 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고문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자 한다.

한편 고문 피해자(torture victim)라 함은 고문사건을 경험한 이후 지속적으로 고문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거나 고문 후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는 용어인데 고문가해자의 승리를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 고문 생존자(torture survivor)는 고문 후 생존하고 있는 고문피해자들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며 고문피해에서 벗어나 사회로의 재

13) Jose Quiroga, James Jaranson, Politically-motivated torture and its survivors, Torture vol15:2, 2005

14) 고문방지협약 제16조에서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하여 각 국에 조사, 피해자 구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통합에 성공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1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문 사건이후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 처벌이 거의 없었으며 고문피해자들이 국가의 사죄, 고문 배상의 경험, 고문 후유증에 대한 치유 제도를 거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문사건 이후 생존하고 있으나 고문의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고문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은 인간성에 대립하는 범죄이고 어떤 목적이나 합리화로서도 국가에 의한 고문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코펜하겐 고문생존자 재활센터에서 활동하는 페터 엘사스(Peter Elsass)에 따르면 고문방지협약이 채택한 고문의 정의는 "고문의 핵심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의를 제기한다.[16] 그에 따르면 고문의 핵심은 "피해자의 정체성을 파멸"시키고 "이러한 좌절과 인격의 파괴 안에 고통"을 각인하는 것이다. 고문방지협약에 덧붙여진 엘사스의 고문에 대한 정의는 고문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지원에 대한 노력이 지향해야 할 바를 나타낸다. 아울러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의 목적인 "국가기관에 의해 고문피해자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고문피해자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고문에 대한 정의는 엘사스가 정의하는 바를 포함하고자 했다. 또한 고문은 고문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도 직, 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한다. 그러한 점에서 고문을 고문 가해자와 피해 당사자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고문이 발생하는 사회정치적 배경, 법, 제도적, 정책적 요인뿐만 아니라 고문의 피해와 치유의 범위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

2. 고문방지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고문을 금지하는 국제적 합의 정신은 사회내의 문화적·종교적 차이들로 말미암아, 혹은 고통을 감내해 낼 수 있는 희생자들의 인내의 차이 등에 의해 상대화될 수 없으며, 고문이나 여타의 모든 형태의 잔혹하고 비인인도적인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지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모든 수감자, 모든 국가, 모든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고문의 절대금지 정신은 국제 관례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모든 국가들, 심지어 어떤 인권협정에도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 그리고 고문금지

15) L. Jacobsen & K. Smidt-Nielsen, Torture Survivors - Trauma and Rehabilitation, RCT, 1987.
16) Peter Elsass, *Treating Victims of Torture and Violence*, New York University, 1997

조항이 국제적 규범으로 명문화될 시기에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들에게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17]

국제사회는 2차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1948) 제5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7조, 그리고 「만인에 대한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UN선언」(1975) 제3조의 언명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국가도,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이나 다른 어떤 잔혹하고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1984년 12월 UN은 총 33개 조로 구성된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하 고문방지협약)" 을 채택하고, 이 협약의 부속 문서에 해당하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UN Anti-Torture Treaty)“를 코스타리카와 스위스의 공동 제안으로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에서 1984년 채택한 후, 고문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기 위한 지침서인 "이스탄불 의정서"를 1999년 UN의 공식문서로 채택되었다.

고문방지협약과 선택의정서, 이스탄불 의정서는 그 이전의 선언적 규정에서 한걸음 나아가 고문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을 담보하고 있다는 진일보한 의의가 있다.
국내 현실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1994년 12월 국회 동의를 거쳐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2006년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이후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1) 고문방지협약

협약의 전체 제목은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으로, 1984년에 작성되어 1987년 6월부터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94년 12월 15일 국회동의를 얻어 1995년 02월 08일 (조약 제1272호) 발표되었다.

이 협약은 어느 누구도 고문과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만인의 보호에 관한 선언”에 근거하여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총 3장 3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인간존엄과 한국의 고문실태」, 『1970년대 민주화운동』, 1987. p. 2161.

이 협약에서는 먼저, 고문에 대한 정의(제1장 제1조)를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제3조)에 이어 고문가해 행위 및 고문가해 혐의자에 대해서도 “자기나라 형법에 따라 범죄가 되도록 보장하며 고문 미수, 고문 공모 또는 가담에 해당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제4조)이며 고문가해 혐의자는 즉시 구금하거나 신병을 확보하고 고문범죄를 적절한 형벌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7조).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조치로서는 “민간이나 군의 법집행 요원·의료인·공무원과 그 밖의 요원들의 훈련과정에 고문방지에 관한 교육”(제10조), “개인을 구금·처리하는 각종 제도는 물론 심문 규칙·지침·방법 및 관행”에 대한 체계적 검토(제11조),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당국의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 진행”(제12조), 고문피해자의 배상받을 권리와 보호조치(제13~15조) 등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협약 당사국의 고문방지 의무(제16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하여 협약 당사국의 조사, 피해자 구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고문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 협약은 <고문방지위원회>를 두고(제17조), 당사국에서 작성한 협약 의무 이행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인정된 관련 당사국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0조) 나아가 협약 당사국의 개인이 당사국의 협약 규정 위반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고문방지위원회는 그 개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통보를 수리하고 심리할 수도 있다.(제21조)

UN고문방지협약은 고문금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을 구체적 실천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협약 선언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당사국에 대한 유효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제18조, 제22조), 협약 이행 위반 국가에 대한 조사결과의 비공개, 제21조에 따라 당사국의 개인이 고문방지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규정위반을 진정할 경우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할 것 등의 제한규정(제22조 제5항)을 두고 있는 점 등은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선택의정서는 2002년 12월 18일 제 57차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A/RES/57/199)로 채택되어, “고문방지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후 조치들의 필요성과 국가의 피해자 보호와 고문방지 의무를 주지시키고 특히, 고문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에 중심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선택의정서 제1조는 그 목적이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적, 국내적 차원의 독립적 기구가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이러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택의정서는 각 당사국이 고문방지를 위해 하나 또는 다수의 기구들을 국내적 차원에서 설립, 선정 도는 유지하도록 하며(제3조), 이 고문방지기구들이 공권력에 의한 명령, 사주에 의하거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사람들의 자유가 박탈당하거나 당할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할 것을 허용하여 고문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UN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국에 권고조치를 하고 당사국의 고문방지기구 설립에 협조하고 필요한 교육, 기술의 원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사국은 UN 고문방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허용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 의무를 평가하기 위한 동 위원회의 평가활동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제12조) 나아가 의정서 당사국은 UN 고문방지위원회에 대해 피해자 구금장소, 피해자 정보, 통역, 기타 시설, 설비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과 방문 장소와 면담대상의 선정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제14조).

선택의정서 당사국은 의정서의 발효, 비준 또는 가입 후 1년 이내 국내에 고문방지를 위한 하나 혹은 복수의 독립적인 국가 고문방지기구를 운영, 지정 또는 설립토록 하고 있다(제17조). 이 고문방지기구는 최소한 구금장소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권한, 피구금자의 대우 및 구금환경을 개선하고 고문 방지를 위해 UN 관련 규범에 의거 관련 당국에 권고를 할 권한, 현행 관련 법안 및 초안에 대한 제안 및 의견제출 권한을 갖는다(제19조).

또한 국가는 이 고문방지기구의 목적 수행을 위해 피해자 구금장소, 피해자 정보, 통역, 기타 시설, 설비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과 방문 장소와 면담대상의 선정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이 기구와 UN고문방지위원회와의 연락, 정보제공, 대화 권리를 보장해

야 한다(제20조). 당사국의 관련 당국은 국가 고문방지기구의 권고를 검토하고 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당사국의 고문방지기구의 연례보고서를 출판, 배포할 책임이 있다(제22,23조).

끝으로 선택의정서 제27조는 이 의정서가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였거나 가입한 국가들에 의해 비준되어야 하며, 선택의정서의 어떤 조항도 유보할 수 없음(제30조)을 밝히고 있다.

한국은 2006년 5월 9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공약한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와 관련, "구금시설·보호시설 등 인권 향상 계기될 것"이라며 2006년 4월 27일 정부에 비준을 요청한바 있으나 아직 선택의정서 가입,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선택의정서 비준은 고문방지협약의 구체적 실천을 담보하고 있어 고문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의 이행과 국제 인권연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3. 이스탄불의정서

지난 20년 간 고문과 고문이 결과하는 신체적, 정신-심리적 영향에 대한 많은 사실들이 고문피해자 (고문생존자)를 치유하고 지원해온 유럽과 미국의 여러 단체들의 경험으로부터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스탄불 의정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고문의 증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1999년 8월 9일, 고문에 대한 조사와 증거 기록에 관한 포괄적인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증거 기록에 관한 지침서 (이스탄불 의정서)"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UNHCHR)에 제출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스탄불 의정서는 전문가들에 의한 3년간의 분석과 연구와 기안의 결과이다. 이 의정서의 태동은 1996년 3월, 터키의사협회 주최로 개최된 "의료와 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고문에 대한 조사와 증거 기록에 대한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터키에서 11일 간의 구속 중 고문으로 사망한 Baki Erdogan의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 온 터키인권재단과 터키법의학회의 오랜 노력의 결과였다. 그 후 이스탄불 의정서의 준비 작업은 15개국으로부터 온 40개의 단체 및 기관을 대표하는 75명의 법, 보건의료, 인권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단체 중에는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회 (IRCT), 세계의사회 (WMA), 인권을 위한 의사회 (PHR), 그리고 미국의 고문피

해자센터 (CVT) 등도 포함되어 있다. 법의학자, 의사, 심리학자, 인권감시 활동가들과 법조인들의 공동 노력은 3년 동안 지속되었고 마침내 1999년 3월, 이스탄불에서 개최 회의에서 최종안이 "이스탄불 의정서 (Istanbul Protocol)"라는 이름으로 공표되었다.

1) 고문에 대한 법적 조사의 방법과 절차 (Legal Investigation)

이스탄불 의정서는 고문의 법적 조사 수행에 관한 수많은 절차들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문 피해자들이나 증인들을 면담하는 방법들, 적절한 조사관을 선정하는 방법, 고문피해자들과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방법들 뿐 만 아니라 혐의가 있는 가해자들의 진술 확보의 필요성들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여러 이유로 조사 절차가 부적절한 경우, 각 국가의 정부는 독립적 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스탄불 의정서는 조사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지침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 철저하고 공정한 고문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적 증거의 수집과 분석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고문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고문 현장에 제한 없이 접근하여 현장 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조사관은 고문 피해자들의 의학적 검사를 준비하여 고문의 신체적, 심리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스탄불 의정서는 고문과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의 신체적 및 심리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의 포괄적인 지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는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대우에 대한 진정이나 보고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하며 진정이 없더라도,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대우로 발생할 수 있는 조짐이 있다면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조사관은 혐의가 있는 가해자와 그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공정해야 한다. 조사관은 의료인이나 그 밖의 전문가들을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직권, 조사의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고, 조사 결과는 공표되어야 한다. 단 전문적 지식의 부족이나 편견 또는 그 밖의 실질적인 이유로 인해 기존의 조사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가 착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성, 자질과 독립성에 근거해 선발되어야 하며 특히 위원들은 혐의가 있는 모든 가해자와 그들이 근무하는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들 원칙들 하에 제공된 사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적정 기한 내에 만들어진 서면 보고서는 조사의 범위, 증거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

되는 절차와 방법, 진상에 대한 조사 결과, 적용 법규에 근거한 결론과 권고를 포함해야 하는데, 완성되면 이 보고서는 공표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구체적인 사건과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증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안전을 위해 신원이 비공개된 증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 증인들의 이름을 열거해야 한다. 국가는 적절한 시간 내에 조사 보고서에 대해 답변해야 하며, 적절하다면 답변에서 추가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2) 고문의 신체적 증거 확보를 위한 의학적 평가 (Physical Evidence)

이스탄불 의정서는 고문의 신체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의학적 평가에 관한 원칙과 절차들을 매우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지침서에서는 고문의 증거 기록을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과 고문생존자의 증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고문의 신체적 증거가 존재한다면 고문당했다는 중요하고 확증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고문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고문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종종 흔적이나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대우에 관한 조사에 참여한 의료인들은 항상 최고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특히 모든 진찰이 시행되기 전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문의 증거자료 확보에 필요한 의학적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평가는 의사의 임상적 전문지식과 전문가적 경험을 토대로 해야 한다. 특히 진찰은 보안 요원이나 정부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은 곳에서, 의료인에 의해 개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평가를 수행하는 의사는 고문과 그 밖의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에 대한 법의학적 증거 기록에 관해 특별 훈련을 받아야 하며, 환자가 수감되었던 특정지역에서 사용되는 고문 방법, 교도소 상태, 그리고 고문의 후유증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의학적 보고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되 어휘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특수 용어는 피해야 하고 모든 의학 용어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고문피해자의 대부분의 상처는 고문 후 6주 내에 치유되고, 전혀 흉터를 남기지 않거나 기껏해야 불분명한 흉터를 남긴다. 이는 고문자가 고문으로 인한 상처의 흔적을 미리 방지하는 테크닉을 쓴 경우에 종종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찰 소견이 정상범위이내로 나오겠지만, 이것이 결코 고문의 주장을 무효로 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가 상처에 대한 관찰과 그 후의 치유 과정에 대해 세세하게 진술한다면 특정한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대우의 혐의를 확증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상황에서 병력과 진찰로 충분하기 때문에 진단적 검사는 고문혐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임상적 평가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신체적 소견이 있으나 검사 상 양성 소견이 없다고 해서 고문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암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진단 검사가 없다고 해서 적절하게 기록된 보고서를 절대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

3) 고문의 심리적 증거 확보를 위한 심리학적 평가 (Psychological Evidence)

이스탄불 의정서에서는 고문의 심리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심리학적 평가에 관한 방법과 절차들을 기술하고 있다 고문이 광범위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인생 경험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견해이다. 의사들은 고문의 극단적 본질이 고문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고문 전 심리적 상태와 상관없이 정신적, 심리적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에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고문의 심리적 결과들은 개인의 인격 발달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고문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모의 사형의 심리적 결과는 성폭행의 심리적 결과와 같지 않고, 독방 감금과 격리는 신체적 고문과 다른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그러나 고문생존자에게서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관찰되고 기록되어 온 심리적 반응들과 종합적 증상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고문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개인에게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기능의 황폐를 초래하여 극심한 무력함과 괴로움의 상태로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문은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기능의 기본적 상태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 고문자는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무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을 붕괴하려고 한다. 꿈, 희망,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가족과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피해자의 존재의미를 고문자는 파괴시키고자 한다. 피해자의 인간성을 빼앗고, 그들의 의지를 꺾으면서, 고문자는 나중에 그 피해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본보기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문은 공동체 전체의 의지와 결합력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고문은 부부, 부모, 자식, 기타 가족 구성원 간의 친밀한 관계를 깊이 손상시키고 또한 피해자와 그들의 공동체 간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

고문을 받은 많은 피해자들은 깊은 정서적 반응과 심리적 증상을 경험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유형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진단이 적용되어 왔다. 비서구 문화에서는 이러한 진단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여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상을 경험한 난민들도 높은 비율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주요우울증 증상을 겪는다는 것이 알려져 왔다. 고문에 관해 설명하고 이

야기할 수 있는 능력은 각 개인이 처한 독특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심리학적 평가는 다양한 정치적 정황에서 이루어지며 이것은 심리 평가의 수행 방법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여준다. 의사 또는 심리학자는 이스탄불 의정서의 지침을 특정 상황과 평가의 목적에 맞추어 적용해야 한다. 심리적 증상이나 행동이 병적인지 또는 적응성인지를 평가하려고 할 때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금 상태 또는 상당한 위협이나 억압 상태에서 피해자가 검사를 받을 경우, 몇 가지 증상은 적응성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독방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활동에 대한 관심의 감소와 이탈 또는 소외의 감정은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나친 경계와 회피 행동은 억압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심리학적 평가가 다양한 정치적 정황에서 이루어지지만 면담에 있어서 특정한 조건의 통제나 제한은 지침서에서 설명된 규칙의 적용을 제한시킬 수는 없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관련 정부와 당국이 이러한 기준을 최대한 지키게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4) 소결

이스탄불 의정서는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의학적으로 평가해야하는가와 그들이 진술하고 있는 고문 사건을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제적인 지침서이다. 더 나아가 제기된 고문 사건의 조사 결과를 사법부나 기타 조사기관에 보고할 때 국제적 기준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스탄불 의정서에서 제시하는 증거 기록에 대한 방법들은 고문을 증명하는 경우 이외의 다른 정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타 인권침해 현장에서 인권침해 내용을 조사하거나 인권침해 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 밖에 정치적 망명 신청자들을 평가하는 경우, 고문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고문과정에 개입을 요청받은 의료인들에게도 이 의정서의 원칙들은 적용될 수 있다. 의료인들은 고문이 자행될 때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문은 의료적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고문의 긴 역사에서 특히 의사들은 고문피해자가 고문 중 사망하지 않도록 감독하였고, 고문의 증거인 상처의 소실을 도왔으며, 고문으로 인한 사망을 은폐하기도 했다. 과거 군사정권하의 한국 의사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이 고문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스탄불 의정서에서는 의료인들의 높은 의료 윤리적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 기준들이 고문을 근절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고문 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강제로 고문을 방치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고문증거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고문의 증거를 변조하도록 의료인들에게 강요되는 경우에도 이 의정서는 의료인들과 재판관들 모두에게 국제적 기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스탄불 의정서는 고문으로부터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고문 피해 사실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고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잘 기록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기록들은 고문가해자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 그들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탄불 의정서는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법부나 기타 조사 기관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변호사들과 의료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지침서라고 하겠다.

4. 범죄피해자와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칙 선언

고문피해자의 경우 고문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과 함께 고문피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문과 관련한 국제기준은 고문피해에 대한 조사에 주요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고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원상회복(restitution), 보상(compensation), 재활(rehabilitation), 사죄와 재발방지의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제적 원칙, 기준은 UN 공식 문서인 「범죄피해자와 권력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칙 선언」(1985. 이하 "피해자 인권선언")에 잘 설명되어있다.

이 선언은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법과 공정한 처우, 원상회복, 손실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권고조치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권력남용에 의한 피해자화(victimization)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주요 절차를 담고 있다. 1996년 5월 유엔 범죄예방과 형사사법위원회는 위 선언의 활용과 적용을 위한 지침으로서 “피해자사법 핸드북(Handbook on Justice for Victim)”을 만들기로 결의하였다.

「피해자 인권선언」은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1개 항목은 범죄피해자에 관한 17개 항목과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항목 4개로 구분된다.

‘범죄피해자’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법에 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하여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정서적 고통, 경제적 손실 또는 기본적 권리의 실질적 손상 등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 내리고 있다. 피해자를 판단할 때는 범죄자의 확인, 체포, 기소 또는

유죄판결 여부를 묻지 않으며 피해자와 범죄자의 가족 관계 유무를 묻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피해자의 범주에는 직접적 피해자의 직계가족 또는 피부양자와 고통받는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피해자화를 방지하기 위한 개입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포함된다.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위 선언은 '사법에 대한 접근과 공정한 처우'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공감과 존엄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할 것, 피해자가 사법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사법과 행정 메커니즘은 피해자가 신속, 공정하고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통지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로서 국가는 다른 형사제재에 더하여 원상회복을 형사사건의 양형 선택안으로 고려하는 실무와 규칙 및 법률을 검토해야 하고, 원상회복은 가능한 경우 환경의 회복, 사회적 인프라의 재구축, 교체, 관련 비용의 상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으로 행위하는 자가 개별 국가의 형법을 위반하는 경우, 피해자는 해당 공무원 또는 행위자가 속한 국가로부터 원상회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실보상' 조치로서 범죄자 또는 기타 재원으로부터 손실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국가는 중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및 피해자화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능력에 빠진 가족, 피부양자에게 재정적 손실보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피해자 손실보상을 위한 국가 기금의 설치, 강화 및 확장이 장려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로서, 피해자는 정부, 자원봉사, 공동체 기반 및 토착적 수단을 통하여 물질적, 의료적, 심리적 및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하고, 보건 사회 서비스 및 관련 지원의 가용성을 통보받고 즉각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 사법, 보건, 사회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인력은 피해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한 훈련과 적절하고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권력남용의 피해자'에 관한 항목에서는 우선 피해자를 "개별 국가의 형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관련 규범에 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하여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정서적 고통, 경제적 손실 또는 기본적 권리의 실질적 손상 등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피해자 인권선언은 국가가 법규범에 권력 남용을 금지하고 그 남용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조항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고, 특히 이 구제수단에는 원상회복 및/또는 손실보상 및 물질적, 의료적, 심리적 및 사회적 원조와 지원을 포함할 것

을 규정하고 있다.

또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국가는 기존 입법과 실무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심각한 남용 행위를 금지하며 그와 같은 행위의 예방을 위한 정책과 메커니즘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그 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권리와 구제 수단을 개발하고 피해자가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절. 고문에 관한 국내 법체계

1. 법적 구제

1) 현행법상 고문을 정의한 규정이 없고, 각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문'의 범주가 각기 다르다. 그런데 고문방지협약 제16조에서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하여 각국에 조사, 피해자 구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구제 항목에서는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고문 이외에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처우까지 포함한 광의의 고문 개념을 전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고문방지를 위한 형사절차상 규정

① 헌법 제12조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제2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제7항)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위 헌법 규정을 구체화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

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형사소송법(2007. 6. 1. 개정, 2008. 1. 1. 시행) 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그리고 위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신문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제1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위 '정당한 사유'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해석하였다(대법원2008. 9. 12. 선고 2008모793 결정 참조).

③ 조서 중심의 재판이 자백중심의 수사관행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불사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다. 그리하여 고문방지위원회에도 2006년 정부보고서 심사 보고서에서 '형사재판이, 조사관이 용의자의 자백을 받아낼 것을 조장하는 조서에 의지하고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는 의견 표명을 하였다.

대법원은 2004. 12. 16. 자백을 조장하는 조서중심 재판의 막을 내리기 위해 기존판례를 변경하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즉, 이전에는 형식적 진정성립(진술자의 서명, 날인의 진정을 의미)이 인정되면 실질적 진정성립(조서의 기재 내용과 진술자의 진술내용이 일치함은 의미)을 추정했는데, 이제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 서명, 날인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이 실제로 진술한 것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면(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대법원2004. 12. 16. 선고 2002도537 판결).

④ 한편, 검찰은 2002년 서울지검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하였는데(2006. 6. 26. 전부 개정), 제3조에서 고문 등을 금지하고 있고(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는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에서는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있다(제40조 ①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

3) 고문 처벌 규정

형법은 고문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형법 제124조 제1항에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5조에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서는 위 형법 제124조와 125조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124조와 125조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고문'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 우선, 형법 제124조와 125조에서 규정하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의 범위가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1)민,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관과 이를 보조하는 법원 서기관, 사무관 또는 법원주사보, 2)검사와 검찰에 관한직무를 보조하는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검찰주사보, 3)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 4)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7조가 규정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를 형사소송법 제197조가 규정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정하여 해석하다 보니,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그 보조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교도관들은 형법 제12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광주고등법원은, 일반교도관의 가혹행위에 대하여 '일반교도관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당해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심사 또는 그 보조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형법 제125조에 규정된 특수공무원의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 교도관의 기결수에 대한 폭행 또는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로 의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광주고등법원 1992. 11. 21. 선고 92초43). 재소자의 온 몸을 포승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독거 방에 4일간 감금하여 식사조차 불가능하게 한 사안에서도, 법원은 형법 제125조 적용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9. 3. 19. 선고 98고단458 판결).

그리고 법원은, 형법 제125조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서 '기타 사람'이란, 피고인, 증인, 참고인 등 재판이나 심사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며,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기결수는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의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4) 공소시효 배제 규정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이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과거사 청산 작업이 진행되면서 고문 등의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결국 12. 12 쿠데타, 5. 17. 쿠데타, 5. 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진압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1995. 12. 21.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집단살해 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등에 관한 특례법」 및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2002. 11. 8.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비준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위 법률에서도 집단살해죄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위 법률에서 집단살해죄란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또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를 끼치는 행위', '신체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계획된 생활조건을 집단에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집단의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범죄나 집단살해죄 이외에 고문과 같이 공권력에 의해 자행

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요구되는데, 관련해서 몇 개 법안이 발의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

5) 구금시설 내에서 고문 방지를 위한 규정

구금시설 내 형 집행과정에서 고문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장관의 순회 점검과 판사 및 검사의 수시 시찰 제도를 두고 있다(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8, 9조).

그리고 국가기구로부터 독립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문 발생을 예방하고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금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조사와 구제를 할 수 있다(위 법 제19조).

6)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 구제

권위주의 통치시대 때 발생한 공권력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하여 과거사 청산(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및 피해 구제)의 요구가 빗발치면서, 정부는 초기에 진상규명 보다 '보상' 방향으로 과거사 청산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처음에 제정된 것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이라고만 함)이다. 그 후 이를 모태로 하여 2010. 7. 10.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 보상법'이라고만 함)이 제정되었다. 위 법률에 의하여, 5. 18. 항쟁이나 민주화운동 과정(1964. 3. 24.부터 발생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 전반)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그 유족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배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위 규정대로 피해자에 대한 금전지급이 '배상'이어야 하나, 지원의 내용을 보면 '배상'보다는 '보상'의 성격이 더 강하다.

한편, 민주화운동 보상법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상의 범위(월수입 액을 전제로

보상금을 계산하고, 그 범위도 소득기준이나 경력에 따른 보상금지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를 보더라도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보상금의 성격이 '보상'이다 보니,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도 각 사건에서 발생한 고문 등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기 보다는 민주화운동 및 그로 인한 손해를 중심으로 심리를 하여 왔다.

위 각 법률에 대하여는 ①국가범죄로부터 야기된 배상적 성격을 거의 취하지 못하고 있고, ②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별 피해 보상을 활용하였으며, ③유엔의 「희생자 권리원칙」(2005. 12. 16. 유엔에서 채택.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에서 정한 배상방식(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만족, 재발방지 보증)을 거의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위 각 법률은 피해자가 입은 유무형의 고통에 대한 치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도 이를 위해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7) 재심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 개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면 재심개시가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422조). 하지만, 고문 범죄의 특성상 은폐 또는 조작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국가가 진상 규명을 하지 않는 이상 재심을 통한 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위 등의 진상규명 결정을 존중하여 진상규명이 된 사건들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지만 그 사실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위가 활동을 하지 않고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의 수사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구제가 문제되고 있다.

8) 손해배상

① 고문피해자는 국가배상법에 의해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은폐되다가 진상규명이 된 사건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되고 있다. 참고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가 적용되는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 법원은, 정부 차원의 과거사청산 작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국가의 반인도적,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해 왔다(대법원1996. 10. 11. 선고 95다1460 판결, 대법원 2006. 12. 19. 선고 94다22927 판결 등).

그러다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최종길 교수 사건의 항소심 법원에서, 최초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후 다른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배척 사유의 기준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1)자신에게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던 원고들에게 '왜 자신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가'라고 질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중앙정보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종길은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가해자이고 국가는 피해자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가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인 국가를 상대로, 도대체 어떠한 불법이 저질러졌는지도 모르는 행위를 이유로 무작정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법이 개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2) 유신헌법에 기초한 권위주의 정권이 그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국민을 탄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종길이 당시 체제수호를 담당하고 있던 중앙정보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희생되었다면, 원고들로서는 그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사법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어도 최종길이 사망한 날로부터 박정희의 사망으로 유신헌법에 기초한 권위주의 정권이 종료된 1979년과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제5공화국의 존속기간인 1987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3) 증거수집능력이 현저하게 열악한 지위에 있는 개인은 국가의 공권력에 기대어 진실을 규명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데, 원고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인 1988년 검찰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을 하였으나 공권력의 최후 보루인 검찰이 진실을 전혀 규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들에게 철저한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잘못을 물을 수 없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국가기관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발을 통하여 재수사요구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4)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나중에 재심을 통하여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재심 사건의 확정시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아예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어 재심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민사소송의 길까지 막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봉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시효소멸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5)마지막으로, 시효제도는 원칙적으로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변제자의 이중변제를 피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권리자가 아니거나 변제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진정한 권리를 희생하면서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시효제도는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근거 없는 청구를 받았을 때 사실의 탐지 없이 방어할 수 있는 보호수단을 주려는 데 있는 것인바, 시효제도의 본질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시효소멸을 인정하는 것은 시효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았다.

③ 그 이후 법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하고 형사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과거사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 당시가 아닌 변론종결 당일로 변경하는 판결을 하였다. 즉, 대법원은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와 가까운 무렵에 통화가치 등의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판시한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35572 판결 참조).

그러나 대법원의 위 판결은 ① 위자료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점에 관한 종전 판례 법리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② '장기간 세월'이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라는 예외 요건과 기준에 대한 판단도 누락되어 있으며, ③ '적정한 배상'의 기준과 '공평의 관념'에 대한 판단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법 해석의 범위를 넘어 법을 창설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 기준에 의하게 되면 '지연이자'의 본래적 의미 - 당연히 발생 시점에서 이행되어야 할 채무가 제때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에게 그 기간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배상이라는 것-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9) 고문방지협약 가입

고문방지협약은 한국 정부가 1995. 1. 9. 비준하여 1995. 2. 8.부터 발효되었다. 고문방지협약에 의하면 정부는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여 고문방지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정부는 1996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가간 통보절차(21조)와 개인통보절차(22조)를 두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할 때 위 두 조항의 선택을 유보했으나 2007. 11. 9. 위 조항을 모두 수락하였다.

국가간 통보절차란 인권조약의 일방 당사국이 타방당사국의 인권조약상 의무위반을 주장하고 조약상 기구가 이 문제를 당해 조약체제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제21조), 개인통보절차는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이 인권조약의 당사국을 상대로 인권위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통보제도는, 인권조약이 권리 보장의 실질적인 이행장치로서 기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참고로 한국정부가 이미 가입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금지하고 있고 그 선택의정에서 개인통보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고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문방지위

원회는 위 규정에 따라 임시보호를 위한 권고를 하여 추방 위기에 놓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고문방지협약상의 개인통보제도는, 추방 위기에 놓인 난민지위 인정 신청 외국인의 보호를 위해 의미 있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 고문피해자 지원 현황

제1절. 공적 지원 현황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조사

고문피해자 지원의 첫 출발은 조사와 진실규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이법 제19조(업무)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해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등을 수행하며, 제30조(조사대상)에 의거 반헌법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고문에 관한 피해 실태조사와 그 유형, 판단기준,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거나 권고하고,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법률, 정책, 관행의 시정, 개선 등의 구제조치(같은 법 제44조)를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문 등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접수받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과 정부에 정책권고, 시정 개선 권고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체의 자유 및 고문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는 모두 81건이다.[18]

[표4-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고문 피해사건 결정례

	사 건 명	유형	의결일자	기관유형
1	구치소내의문사진상규명	침해	2001.12.28	구금시설
2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침해	2002.10.28	경찰
3	가혹행위에의한인권침해	침해	2003.02.24	특별사법경찰
4	경찰관피살사건 수사본부의 가혹행위	침해	2003.09.15	경찰
5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가혹 행위	침해	2003.10.27	경찰
6	고문에의한인권침해	침해	2004.12.22	경찰
7	수갑조이기등에의한인권침해	침해	2005.07.11	경찰

18)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의 결정례 메뉴에서 '고문'으로 검색한 결과, 총81건이 검색되었다.

8	위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침해	2005.11.28	경찰
9	수사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침해	2006.04.06	검찰
10	폭행 및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침해	2006.06.26	검찰
11	자백 강요 등에 의한 인권침해	침해	2006.11.10	경찰
12	부당한 계구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침해	2007.02.26	구금시설
13	알몸 검신에 의한 인권침해	침해	2007.03.12	구금시설
14	사망과 관련한 인권침해	침해	2007.09.07	군헌병
15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침해	2007.11.14	경찰
16	부당한 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침해	2007.11.26	구금시설
17	부당한 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침해	2007.11.26	구금시설
18	폭행 및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침해	2007.11.26	구금시설
19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	침해	2007.11.26	구금시설
20	부당한 계구사용 등에 의한 ..	침해	2007.11.26	구금시설
21	부당한 계구사용에 의한 인권..	침해	2007.11.26	구금시설
22	인권위 면전진정 신청 방해 ..	침해	2007.11.26	구금시설
23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침해	2008.03.10	다수인보호시..
24	부당 감금 등에 의한 인권침..	침해	2008.03.24	다수인보호시..
25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등..	침해	2008.03.24	다수인보호시..
26	부당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등..	침해	2008.05.08	경찰
27	부당한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침해	2008.10.27	특별사법경찰
28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침해	2008.12.29	다수인보호시..
29	강제퇴거명령으로 인한 인권침..	침해	2008.12.29	다수인보호시..
30	과잉단속 등에 의한 인권침해	침해	2008.12.29	기타국가기관
31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침해	2009.09.14	경찰
32	인격권 침해 등	침해	2009.10.05	경찰
33	과잉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침해	2009.10.12	기타국가기관
34	산모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침해	2009.12.28	경찰
35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침해	2009.12.28	경찰
36	경찰의 고문	침해	2010.05.20	경찰
37	경찰의 고문	침해	2010.06.15	경찰
38	경찰의 고문 진정관련 직권조..	침해	2010.06.15	경찰
39	경찰의 고문 등	침해	2010.12.15	경찰

총 81건 가운데 고문(가혹행위) 등 신체의 자유 관련 진정조사 결정건은 모두 39건이고, 법령, 정책에 관한 결정건이 29건, 기타 차별 등에 관한 결정건이 13건이다. 고문관련 결정건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1년~2006년 사이 결정사례가 11건이었고, 2007년이 11건, 2008년 8건, 2009년 5건, 2010년 4건으로 이른바 '민주화 이후' 시기에도 고문관련 진정과 결정례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기관을 살펴보면, 경찰이 압도적으로 많고 기타 교도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기관 및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와 시설 및 관행에 대한 개선, 인권교육 등을 권고 조치를 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과 권고조치는 현재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

해, 특히 고문범죄에 관하여 직접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국가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고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고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진정사건의 경우 각하되는 등 조사권한과 진정사건의 조사대상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19)]

2. 국가 과거사 관련기관 조사

국가 차원의 고문 현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진실규명 작업은 사회민주화의 진전과 김대중 정부가 등장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민주화 정권의 출범 이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벌어진 의문사, 고문, 학살에 관한 과거청산이라는 흐름은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과거청산에 나섰던 외국의 경험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한국의 경우 식민지와 분단, 전쟁, 군사독재정권 등 다른 나라보다 훨씬 복잡한 근현대사의 청산과제를 안고 있었다.

[표4-2] 한국의 과거사 조사기구

국가조사기구	근거법령	조사대상	존속기간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법 (1948.9.22.)	친일 반민족행위자	1949.1.~1979.7.6.
국회특별조사반	국회법	거창양민학살사건, 한국전쟁시기 피학살자	1960.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1960.12.)	반민주행위자처벌, 부정축재자	1961.5.10.~1961.5.16.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 1995.12.21	12.12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	1995.11.3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4·3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1.12.	제주4·3사건	2000.8.28.~2003.10.

19)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소위에서 조사결정을 하고 있고, 특정 사건(독직폭행 등)에 대해서는 발생한지 1년을 도과한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1999.12.	권위주의정권하에서 발생한 의문사 사건	2000.10.~2002.9.16 2000.11.~2004.6.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2004년 12월 29일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	2005.5.31.~2009.5.30.
일제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2004년 2월 13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2004.11.1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귀속특별법 2005.12.8.	친일파 재산환수	2006.8.18.~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2005.5.3.	일제하에서부터 권위주의정권시기까지 발생한 주요 과거사 사건	2005.12.1.~2010.12.31.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5.6.29	1993.2.이후 군의문사사건	2006.1.1.~2009.
국정원과거사사건진상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자체 기구	인혁당 등 과거 국정원(중정, 안기부)이 개입한 과거사 사건	2004.11.~2007.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자체 기구	'나주부대사건'등 경찰이 개입한 과거사 사건	2004.11.·~2007.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자체 기구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등 직권조사 8건	2005.5.5.~2007.

이들의 주요 조사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국정원과거사위원회는 2004. 11. 내부 운영규정을 근거로 하여 국정원장 소속하에 설립되었고 민간위원 10명 및 국정권 기조실장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 관계부서장 5명과 2개의 조사팀(민간, 국정원 측 조사관 각 10명, 총20명) 및 조사지원팀으로 실무인력을 구성하여 약 2년 9개월 동안 활동하였다. 국정원과거사위원회의 주요 조사활동 사례로는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사건',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사건', '동백림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김형욱 실종사건', 'KAL 858기 폭파사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등 7대 의혹사건과 정치/사법/언론/노동/학원/간첩 등 6개 분야에 관한 조사가 있었다.

국정원과거사위원회는 국내 대표적인 공안기구로서 숱한 과거 인권침해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온 국정원(중정, 안기부 포함)이 스스로 자기반성을 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고, 경찰, 국방부 등 다른 권력기관의 과거청산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7대 사건에 머물 수 없는 다대한 과거 의혹사건이 조사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는 점, 규명된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와 명예회복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지울 수 없고, 조사과정에서도 한시적 조사기간, 조사인력과 권한의 미비, 핵심 조사대상자의 협조 거부, 자료 부족과 비공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20]

경찰청과거사위원회는 2004. 11. 내부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민간위원 7명, 경찰위원 5명)으로 구성하여 출범하였다. 조사관은 민간/경찰에서 각 8명, 총16명으로 4개 조사팀, 1개 조사지원팀으로 조직되어 3년간 활동하였다.

경찰청과거사위원회의 주요 조사활동 사례로는 '불법 선거개입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용공조작 의혹' 등 3개 포괄적 조사대상 분야와 개별 조사대상 사건으로 '서울대 깃발사건',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 '남조선민족해방 사건', '보도연맹원 학살 의혹사건', '1946년 대구 10·1사건', '나주부대 민간인 피해의혹사건' 등 8개 사건이 있다. 또한 직권조사 외 민원접수 사건 44건 중 18건(13건 이송, 10건 각하, 3건 취하)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민원사건은 보도연맹원 관련 13건, 포괄적 대상 분야 1건, 대구 10·1사건 관련 1건 등이었다.

경찰청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폭넓은 자료 수집을 통해 과거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발생한 경찰의 고문,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허위진술과 용공조작 의혹을 규명해 내어 권위주의 통치시대의 정권유지 수단으로서 기능해 왔음을 확인하였다.[21] 그러나 오랜된 사건의 경우 자료나 참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경찰청 내 주요 보안자료의 경우 접근이 불가능했다는 점, 다른 과거사기구와 마찬가지로 한시적 조사기간과 조사대상 범위, 조사인력과 조사권한의 미비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국방부과거사위원회는 2005. 5. 내부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하에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7명, 국방부 소속 위원 5명 등 총12명으로 구성되어 2년여 활동하였다.

국방부과거사위원회의 주요 조사활동 사례로는 '강제징집 녹화사업 사건', '실미도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12·12, 5·15, 5·18 사건', '보안사 민간인사찰사건', '10·27 법란사건', '신군부의 언론통제사건',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간첩조작 의혹사건' 등 8개

20)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과거와 대화, 매래의 성찰. -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총론 1」, 2007. 10. p296

21)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경찰청 과거사위 백서」, p.388.

직권조사사건이 있다.

국방부과거사위원회는 그동안 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웠던 군 내부 자료를 발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무사령부(옛 보안사)의 지원과 협조가 특기할 만하다. 조사활동을 통해 군의 불법적 정치관여와 민간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었고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의 주요 의혹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러나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역시, 조사권한의 미비로 강제조사권이 없어 핵심 조사대상자의 진술을 얻지 못해 일부 사건의 경우 최종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고, 조사기한과 조사범위의 한정과 조사대상 사건의 제한으로 인해 의혹사건과 피해사실의 일부만을 밝히는 데 그치고 말았다.[2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 12.「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독립적 조사기구로 설립되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민들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아 5년여 동안 조사를 진행하였다.

신청 접수된 사건은 총 10,860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항일독립운동 274건(2.5%), 해외동포사 14건(0.1%), 민간인 집단희생 7,922건(73.0%), 적대세력 관련 1,687건(15.6%), 인권침해 612건(5.6%), 기타 351건(3.2%)으로 집계된다.

고문 등 인권침해관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주요 진실규명 사건들을 살펴보면, 우선 1950년대와 관련하여 일제하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후 미군정기에 경무부 수사국장으로 있으면서 친일경찰 청산을 주도하다 이승만 정권의 정적이 된 후 .빨갱이.로 몰려 1951년 처형되었던 '최능진 사건', 1961년 박정희 등의 5.16 군사 쿠데타 직후 발생했던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5.16 직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사건', '5.16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사건', '구로농지 분배사건', 1960~1980년대에 걸친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등이 있고, 다수의 개별 간첩사건, 1980년대 전민학련, 아람회 등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이 진실규명 결정되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른 국가 과거사기구에 비해 조사대상과 범위가 넓고 비교적 장기간의 조사활동으로 다수의 사건을 진실규명하였다. 특히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조사함으로써 그동안 묻혀 있는 여러 과거 사건들의 진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피해조사 목적 외에 학술적, 역사적 의의가 적지 않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1년의 신청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 조사권한과 조사대상 등 앞서 다른 과거사기구의 경우와 동일한 조사과정의 한계점,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협조 부족, 위원회

22)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 종합보고서」제1권, p.135~137.

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의 불안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과거사 기구들은 그동안 은폐된 인권침해 사건들의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의 구제와 명예회복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고문 피해자들의 주장과 인권단체들의 고문조작 피해자료들이 상당수 진실로 밝혀져 그동안 공식적으로 고문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부분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일부는 재심을 통해 국가 배상을 받기도 하고 있다.

고문피해의 경우, 이들 과거사기구들의 활동으로 고문의 신체적, 정신 심리적, 사회적 피해 유형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과거 국가기구에 의한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실이 규명됨으로써 고문 금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국가기관의 위법한 수사관행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경우에서 보듯이 다수의 피해자들이 신청을 하지 못해 여전히 조사범위 밖에 존재하고, 고문피해자 인정 결정이 된 이후에도 국가의 적절한 피해구제와 명예회복 조치의 미흡으로 인해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조사불능, 각하, 조사중지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조사기간과 방법상의 제도적 한계, 자료 부족과 접근 불능, 증언 거부 등으로 인해 재조사의 필요성이 엄존한다.

3. 법적 지원

1) 권위주의 통치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문범죄가 자행되었으나, 증거조작 또는 증거 은폐로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자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다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부차원의 과거사청산 작업이 진행되면서 과거 고문범죄들의 진상이 드러났는데, 가해자 처벌은 한 건도 진행되지 못했고 피해자 구제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사건의 피해자가 진상규명 결정을 근거로 직접 재심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침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으로 총 768건의 진실

규명 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 237건(병합 등을 하여 사건수로는 134건)에 대하여 진상규명결정을 하였다. 이들 대부분의 사건은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들이다. 진실화해위가 진상규명한 고문 유형을 보면 불법구금, 구타, 잠 안 재우기, 물고문, 오금에 각목 끼워 밟기, 전기고문 등으로 다양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나 보안사 등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고문을 저지르며 수사한 사건들도 많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상규명 사건 중 73건에 대하여 재심권고를 하였는데, 2011. 4. 기준하여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30건이고, 무죄판결 후 상급심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16건이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개시결정이 나지 않거나 개시결정 후 재심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 22건이다.

[표4-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심 권고 사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심 권고 사건					
연번	사건명	사건유형	사건발생년도	재심진행경과(손배포함)	비고
1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61	2009.1.24.무죄확정 (2011.1.13.손배확정)	확정
2	태영호 납북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68	2008.7.9.무죄확정 (2011.1.13.대법손배파기)	확정
3	이수근 이중간첩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69	2008.12.19.무죄확정 (2009.12.19.배상판결)	확정
4	이준호 배병희 간첩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85	2009.7.10.무죄확정 (2010.11.11.배상판결)	확정
5	신귀영일가 간첩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80	2009.8.21.무죄확정 (2011.3.25.배상판결)	확정
6	오송회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82	2008.11.25.무죄확정 (2010.12.14.배상판결)	확정
7	차풍길 간첩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82	2008.7.31.무죄확정 (2009.4.23.배상판결)	확정
8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78	2008.7.14.무죄확정 (2011.1.13.대법손배파기)	확정
9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80	2009.1.22.무죄확정 (2009.4.23.배상판결)	확정
10	아람회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80	2009.5.21.무죄확정 (2011.1.13.손배확정)	확정

11	정삼근 간첩조작의혹 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85	2009.1.23.무죄확정 (2010.4.16.배상판결)	확정
12	진보당 조봉암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58	2011.1.20.무죄확정	확정
13	오종상 긴급조치위반 사건	확정판결사건 (긴급조치)	1974	2010.12.16.무죄확정	확정
14	강기훈 유서대필의혹 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91	2009.9.17.고법재심개시-대법계류중	재심진행
15	춘천 강간살인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72	2009.6.검찰상고-대법계류중	무죄진행
16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84	2008.10.31.무죄확정 (2011.1.13.손배확정)	확정
17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55		
18	김 철 간첩조작의혹 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88	2010.2.5.고법재심무죄-대법계류중	무죄진행
19	김기삼 간첩조작의혹 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80	2009.10.29.무죄확정	확정
20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5명 반공법 국가보안법위반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68	2009.2.16.무죄확정	확정
21	이정근 상해치사혐의 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80	2009.11.12.무죄확정	확정
22	김양기 간첩조작의혹 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86	2009.7.30.무죄확정	확정
23	구로분배농지 소송사기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60년대	재심진행중	무죄진행
24	재일동포 유학생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이종수)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82	2010.7.15.고법재심무죄	확정
25	오주석 간첩조작의혹 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83	2010.12.7.무죄확정	확정
26	김용준 등 간첩조작 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74	2008.7.14.무죄확정	확정
27	이장형 간첩조작의혹 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84	2008.12.19.무죄확정	확정
28	구명서 간첩조작의혹 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85	2010.10.29.고법재심무죄-대법계류중	확정
29	박동운 일가 간첩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81	2009.11.13.무죄확정	확정
30	김상순 간첩조작의혹 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83		확정
31	김우철형제 간첩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75	2010.1.13.고법재심무죄	확정
32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68		무죄진행

33	임봉택의 불고지위반 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72		확정
34	재일조총련 최양준 간첩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83	2010.1.14.무죄확정	확정
35	최복남 국보법위반 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67		확정
36	구명우 국보법위반 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83		무죄 진행
37	문인간첩단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74		무죄 진행
38	납북귀환어부 정영 간첩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83		확정
39	곽종대 정보사범 조작 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82		재심 진행
40	전민학련 전민노련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81		무죄 진행
41	박판수 등 반국가단체 구성 예비음모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72		
42	최능진의 국방경비법 위반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48		
43	HID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59		
44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 침해사건	긴급조치사건	1975		재심 진행
45	재일동포 윤정헌 간첩 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80		무죄 진행
46	5.16쿠데타 직후 인권 침해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60		무죄 진행
47	류한기 황병구 간첩조 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85		무죄 진행
48	박노수 김규남 등 유 럽거점간첩단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69		재심 진행
49	정하진 반공법위반조 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78		무죄 진행
50	재일교포 유학생 김정 사 간첩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77		무죄 진행
51	홍종열 등 간첩단조작 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85		무죄 진행
52	김장현 등 유럽거점간 첩단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74		무죄 진행
53	납북귀환어부 이상철 간첩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83		재심 진행
54	납북어부 최만춘 외 8 명 간첩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73		재심 진행
55	조봉수 간첩조작의혹 사건	확정판결사건 (조작의혹)	1984		재심 진행

56	오진영 지하당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65		재심진행
57	인민혁명당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64		재심진행
58	경북대생 임구호 등의 포고령위반사건	확정판결사건(포고령)	1972		무죄진행
59	김추백 등에 대한 간첩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77		재심진행
60	재일동포유학생 김동휘 간첩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75		재심진행
61	심진구 고문피해의혹사건	가혹행위사건	1986		재심진행
62	재일동포 조일지에 대한 간첩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84		재심진행
63	납북귀환어부 김성학 이청일에 대한 간첩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73		재심진행
64	납북귀환어부 박월림에 대한 간첩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72		재심진행
65	납북귀환어부 이병규에 대한 간첩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85		재심진행
66	납북귀환어부 김이남에 대한 간첩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76		재심진행
67	납북귀환어부 김영일에 대한 간첩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82		재심진행
68	납북귀환어부 윤질규에 대한 간첩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84		재심진행
69	납북귀환어부 이성국 강경하에 대한 간첩 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81		무죄진행
70	재일동포 박박에 대한 간첩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83		재심진행
71	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75		재심진행
72	이성희에 대한 간첩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조작의혹)	1974		
73	박종덕에 대한 인권침해사건	가혹행위사건	1983		

(자료출처: 재단법인 4.9 통일평화재단)

2) 재심법원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재심사유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의해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실체 판단에 들어가서는 전부 무죄 선고를 하였다.

무죄 확정 판결 후 진행되는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진실화해위의 결정 및 재심법원의 판결을 증거로 채택하고 1)체포, 구속과정의 위법, 2)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의 위법(고문), 3)공판절차 및 형사판결의 위법으로 세분화하여 국가 배상 판결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고문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인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법원은 오송회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1심 공판절차에서 수사관들에 의한 폭행, 협박, 회유, 고문에 의해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그 경위를 자세하게 주장하면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였으나 1심 법원인 전주지방법원은 고문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특별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자백을 기초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광주고등법원도 피해자들에게 고문 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조사 없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조작된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라고 판단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것으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형사법원이 만연히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 확정한 것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09가합98350 판결).

3) 그러나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이 없는 사건들은 수사기관의 고문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재심 등의 법적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이 2010. 12. 16. 긴급조치 1호에 대하여 처음부터 위헌,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에도(대법원 2010도5986 판결), 긴급조치 1호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고문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재심을 통해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참고로, 긴급조치 제1, 2, 9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면 고문 입증과 무관하게 헌법재판소 제47조에 의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함).

장기간의 권위주의 통치라는 역사적 특수성, 고문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점, 피해자가 고문 등을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진실화해위 같은 국가기구의 상설화와 반인권적 위헌 법률의 형사 피해자를 일괄 구제하기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2절. 민간 지원 현황

1. 1960년대의 민간지원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를 거친 1960년대는 군사독재 권력에 대항할 집단화된 사회세력이 거의 없었다. 60년대에 드러난 시국관련 고문피해 사건으로는 제1차 인혁당 사건(1964.8)과 동백림 사건(1967.7)을 들 수 있다. 두 사건 모두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자행된 고문이었으나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고문사실을 폭로하거나 언론에 고문사실이 간략히 보도되는 정도였다. 고문이 반인도적이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지지, 정신·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의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치적 목적으로 고문이 행해졌지만 이러한 사실을 사회에 알리고 고문을 반대하는 세력을 묶어낼 역할을 담당할 시민사회의 주체도 형성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고문피해자가 그 피해를 온몸으로 감당해야할 몫이었고 피해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고문사실을 입증하거나 가해자를 고발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반공법 등 간첩죄와 관련된 사건 피해자들은 본인만이 아니라 기족들까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배제되어 고문피해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기대하기도 힘들었다. 1964년에 발생한 1차 인혁당 사건에서 한국인권옹호협회 조사단이 밝혀낸 고문의 진상이 1964.9.14 일자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2. 1970년대의 민간지원

1970년대는 고문과 조작의 시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유신과 긴급조치 시대로 언급되는 1970년대는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고문(1972.10), 최종길교수 고문치사 사건(1973.10), 인혁당재건위와 민청학련사건(1974.4),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1979,3) 들과 수많은 조작간첩 사건 등에서 심각한 고문이 자행되었다. 기독교와 천주교 등 종교계와 피해자 가족단체, 국제 엠네스티 등의 단체들이 고문사실을 사회에 알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였다. 또한 대한변화협회의 불법고문 추방촉구(1973.12), 정치범 가족의 유엔과 미국정부에 보낸 고문피해 서신, 신민당의 고문 항의서한, 민주회복국민회의의 고문내용 성명 발표 등으로 고문사실을 알리고 고문방지 제도를 촉구하였으나

고문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정신·심리적 지원으로까지는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었다. 인혁당 사건의 고문사실을 동아일보에 폭로[23]했던 시인 김지하가 반공법위반으로 재구속되었고, 정권은 고문피해자들이 변호인접견과 가족면회를 못하게 하는 등 고문사실을 감추려하였고, 고문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처벌보다는 포상과 진급으로 고문을 조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들[24]은 목요기도회[25]에 참여하여 고문사실을 알리며 고문피해를 사회공론화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기독교인권위원회,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국제 엠네스티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고문피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1974년에 작성된 국제 엠네스티 한국위원회 보고서[26]인 「남한에서의 정치적 억압(Political Represssion in South Korea)」에는 "종교지도자들로부터 변호사, 재야지도자, 대학교수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정치범에 대한 고문이 확실한 사실-구속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구금상태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육체적으로 불구가 된 수감자들의 사진과 같은 특수한 증거들을 찾기가 아주 어렵다."[27]고문사실의 확인과 고문입증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1975년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 한국에 파견된 사면사절단의 보고서(Report of an Amnesty Mission to the Korea)」에서는 물고문, 전기고문, 잠안재우기, 의료박탈, 거꾸로 매달기, 구타와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비틀기, 영하의 날씨에 알몸으로 물속에 집어넣기, 옆방에서 비명소리 내게 하여 위협, 불이나 담뱃불로 지지기 등의 고문의 종류들과 이러한 고문으로 인해 ①고막이 파열된다. ②폐에 종양들이 생긴다. ③항문이 탈항된다. ④심장마비 증세가 나타난다. ⑤ 뼈와 신경조직에 타박상이 생긴다며 고문으로 나타나는 의학적 결과들을 밝혔다.

기독교인권위원회와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는 고문피해 사건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고문피해를 알리는 자료집 발간, 기도회에서 고문피해 증언을 통해 사회공론화하고 피해가족들의 자조모임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독재정권에 대한 반대를 빨갱이로 덧칠하여 피해자 가족들은 친·인척과 이웃들로부터 배척당하는 등 사회적 지지를 받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심리적 지원도 전혀 없었다. 이런 현실에 대

23) 동아일보 1975. 2.26일자 옥중수기 "고행-1974"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인혁당관련자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하면서 인혁당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전했다.
24) 정치범 가족들로 결성된 '한국양심범가족협의회'에서 수감자 가족들의 호소를 취합하여 폭로활동과 호소 및 항의를 하였고, 가터 사건별 가족모임을 통해 이런 활동이 전개되었다.
25) 목요기도회는 1974년 7월 18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목회자들과 구속자 가족 등 22명이 민청학련사건 관련자 구속자 및 긴급조치 위반협의 구속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26) 1974년 W.J. 버틀러가 작성. 버틀러는 당시 '국제법률가위원회' 미국대표이며 동 위원회 미국지부 부회장.
2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발행, 1987, 70년대 민주화운동Ⅴ p2168

해 “1970년대까지 고문사건들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건 민간차원에서건 적절한 방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효과적인 고문방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고문의 사실이 피해자의 법정진술에서, 혹은 가족과의 접견을 통하여 밝혀지고 그 밝혀진 사실을 가족들이 유인물 등을 통하여 혹은 정부에 탄원함으로써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기껏이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나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사건이 있을 때 가족의 요청에 따라 관계당국에 항의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고문방지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28]는 냉정한 평가도 있었다.

3. 1980년대의 민간지원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학살로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삼청교육대사건, 언론인탄압과 강제해직 사건, 불교법난 등의 사건에서 엄청난 국가폭력과 고문을 자행하였다. 여기에다재일동포 간첩사건, 진도간첩단 사건, 납북어부 간첩사건 등 수많은 조작간첩사건과 부림사건, 부산 미문화원 사건,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사건 한울회, 아람회, 횃불회 고문치사 사건, 오송회 사건, 깃발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민추위 사건 등 조직사건과 간첩사건들이 조작되면서 고문피해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간첩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조직사건에 연루되면 고문은 피할 수 없는 일로 인식되게 되었다. 고문으로 시작해서 고문으로 끝난 전두환정권에서 고문은 수사기관들에서 일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5공화국 후반에 이르러 고문행위가 훨씬 더 빈번해 지면서 민청련 김근태 고문사건, 부천서 성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어져 87년 민주항쟁으로 귀결되었다.

고문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고문에 대한 항의와 고문근절을 위한 대책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김근태 고문사건이 알려지면서 민주화운동 단체들과 재야인사를 중심으로 1985년 10월 17일 ‘고문 및 용공조작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대책위원회는 고문사건에 대한 성명발표, 진상조사, 보고대회 개최, 항의활동을 펼쳐나갔다. 또한 야당과 민주화추진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후에는 1987년 6월항쟁 지도부의 모체가 되기도 하였다. 결국 고문이 고문피해자와 민주화운동세력, 재야와 정당의 힘을 결합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던 것이다.

---

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발행, 1987, 70년대 민주화운동Ⅴ p2273

한편, 종교계와 여성계의 고문반대 활동도 매우 활발하였다. 기독교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고문대책위원회'는 기도회와 고문피해 보고대회 등을 열었고, 고문사건 진상조사와 법적 소송지원 등의 활동을 하였다. 천주교도 정의평화위원회와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을 중심으로 성당과 교구단위로 다양한 고문반대 운동을 하였다. 여성단체들은 부천서 성고문사건이 발생하면서 고문반대 활동에 적극 뛰어들었다. 이에 여성단체연합은 성고문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여성의전화, 교회여성연합, 여신학자협의회, 여성민우회 등도 고문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였다.

그리고 국제 엠네스티와 아시아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도 많은 역할을 하였다. 국제 엠네스티는 매년 정기적으로 고문과 인권상황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고, 아시아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도 방한하여 조사활동을 벌인 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제엠네스티는 1984년에 「80년대의 고문(Torture in the Eighties)」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한 수사요원은 수감자를 엎어놓고 심한 구타를 하고 구둣발로 짓밟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의 고문을 한 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지하실에 가게 되면 넌 거기에서 너의 정신적·육체적 인내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문도구들이 다 있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런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하는 목적은 피고문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혀 무력하며, 여러 가지 고문기술과 도구들, 그리고 어떤 털끝만한 저항도 박살내겠다는 결단 등을 지닌 자의 손에 자신이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29]라며 한국에서의 고문상황을 폭로하였다. 그리고 아시아워치도 1986년의 보고서에서 "1985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국무성은 최근 한국의 고문의 예에 대하여 반응하기를 3명의 언론인과 1명의 청년활동가가 한국의 비밀경찰에 의해 고문받았다는 믿을만한 보고를 인정하였다고 한다. 미 국무성 대변인은 그 사건을 '개탄할 만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정부에 우리의 관심사를 알게 하였다고 한다."며 한국의 고문사실에 대해 미국의 우려를 밝히기도 하였다"(박원순, 야만시대의 기록 3, 2006, p32).

피해자 가족 단체인 민주화운동실천가족협의회는 고문사례 보고회에서 발표된 고문피해 사례들을 자료집으로 만들고 사회공론화에 앞장섰다. 1987년 거름출판사에서 발행된 「나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라는 책에는 김근태, 권인숙, 박종철 사건에서의 고문에 대한 증언과 남민전사건, 서노련사건, 전민노련사건,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등의 고문피해자 증언과 인혁당 가족의 증언을 담고 있다.

1980년대는 민간차원에서 고문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

2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발행, 1987, 70년대 민주화운동Ⅴ p2165

되고 고문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들이 고문피해에 대한 증언을 두려워하거나 감추려하지 않고 고문피해보고대회, 고문 증언대회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면서 고문의 상처를 이겨내기 시작했고 종교계와 민주화단체들, 국제단체들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석방활동, 법적 소송지원,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또한 고문가해자를 찾아내 고발하여 가해자 일부가 사법처리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미래에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정신·심리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대로 제기되지 못했다. 언론에서는 덴마크의 「국제고문피해자 치료센터」설립(1983.6.24.중앙일보)과 '고문후유증에 시달린다'(1987.1.21. 동아일보), '고문후유증 6개월 이상 땐 완치 어렵다'(중앙, 1987.1.12)는 기사를 통해 고문피해자에 대한 치유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민주화단체들이나 관련기관들에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지는 못하였다.

4. 1990년대의 민간지원

1990년대에 들어서도 고문은 계속되었다. 사노맹사건, 자민통 사건, 애국군인 사건, 조국통일촉진그룹 사건,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 김낙중 간첩단사건과 중부지역당 사건, 남매간첩단 사건, 독일유학생 간첩사건, 김형찬에 대한 가혹행위와 분신 기도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등에서 고문피해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국제인권 규약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이 1990년 07월 10일부터 국내에 발효되고, 1995년에 「국제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면서 고문은 많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민간단체들은 국제인권규약에 의거 국제기구들에 인권피해를 제소하고 고문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나서게 된다. 방양균씨의 자신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과 담당검사 고소(93.11.26), 김근태씨 사건의 유엔 인권위에 제소(B협약 19조 2항 위반, 93.9.27. 표현의 자유 위반), 고문피해자 최영미씨 가족 대통령에 치료요구 탄원서 제출(93.10.8), 국제엠네스티 한국정부에 정치범 수십명에 대한 재심 촉구(93.10.7), '김삼석・김은주 간첩조작 사건 대책위원회'(93.10.28)가 기자회견을 통해 안기부가 함정수사와 성고문으로 간첩조작 사실 주장과 고문수사관들을 고발(93.12.13) 한 사례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주화운동실천가족협의회, 기독교인권위원회 등에서는 조작간첩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사례조사와 재심을 통한 권리구제와 법적소송에 적극 나서게 된다. 김양기, 함주명, 이헌치, 이장형, 신귀영, 강희철 등 수많은 조작간첩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청구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들은 대부분 2000년대에 들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리고 93.10.13일 발족한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에서는 고문피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고문피해자의 후유증에 대한 조사사업, 고문신고 상담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고문후유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치료대책을 세울 것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4년 4월 11일,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개최한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에서는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안모색과 의학적 측면에서 본 고문의 심각성과 고문후유증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발표되었다. 이제는 단체들이 고문피해에 대한 보고대회와 증언대회를 통해 사회에 알리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와 고문피해자의 치유에 까지 활동의 영역이 확장된 것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고문피해자를 치료하는 전문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대안제시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5. 2000년 이후의 민간지원

고문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고문피해자들이 고문의 상처와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고문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가능했다.

2001. 11. 25 국가인권위원회 출범하면서 고문과 고문피해자들에게 많은 변화가 왔다. 이제는 고문피해자가 고문피해를 진정하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물론 진정을 접수 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과 수사 중이거나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적 한계가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고문가해자가 처벌되고,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는데 한결 용이해졌다.

그리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에 설치되었던 과거사위원회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조사를 통해 많은 사건들에서 고문피해 사실이 밝혀졌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재심을 통해 보상 등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해자 처벌이나 고문피해자에 대한 정신·심리적 지원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국가기구들을 설치하는데 민간단체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새롭게 설치되는 국가인권기구가 피해자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각종 조사위원회에는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며 경험을 쌓았던 사람들이 직접 조사관으로 참여하여 조사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제 민간단체들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피해사실을 진정접수하기도 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런 절차를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기관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에 주력하게 되고 국가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사건들에 대한 재심을 지원하였다.

한편 국가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국가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되어 피해자들의 후유증 및 생활실태 등이 전문적인 연구로 뒷받침된다. 5·18기념재단의 『5·18민주유공자 생활실태 및 후유증 실태 조사연구 보고서』(2006)와 『5·18민주유공자 생활실태 및 후유증 실태 조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2007)를 필두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사망자 유족 후유증(정신과적 장애) 실태조사 보고서』(200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198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경험과 기억』(200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정리위원회의 『심리적 피해현황 조사보고서 - 조사의 신뢰성 제고와 치료 및 재활 측면의 화해방안 모색』(2007),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예기치 못한 죽음을 경험한 유족의 심리적 외상 관련 조사연구』(2008) 등이 발간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피해자들의 국가폭력 후유증과 정신·심리적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심리적 치유에 진실의 힘과 인권의학연구소가 적극 나서게 된다.

6. 소결

고문피해자들에게 사회적 지지와 정신·심리적 지원은 고문후유증을 극복하고 새로

운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문 피해를 혼자서 감당하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 고문피해를 당한 직후 사회적 지지와 정신·심리적 지원을 받았다면 정신분열 등 정신질환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후유증에 의한 자살 등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민간지원은 고문피해를 당한 시기에 따라 사건의 유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존재하였다. 1970년대까지는 고문이 반인도적이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지지, 정신·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의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치적 목적으로 고문이 행해졌지만 이러한 사실을 사회에 알리고 고문을 반대하는 세력을 묶어낼 역할을 담당할 시민사회의 주체도 형성되지 못했다. 심지어 인혁당 사건의 고문사실을 동아일보에 폭로했던 김지하 시인은 반공법위반으로 재구속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는 민간차원에서 고문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고문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들이 고문피해에 대한 증언을 두려워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 고문피해보고대회, 고문 증언대회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면서 고문의 상처를 이겨내기 시작했고 종교계와 민주화단체들, 국제단체들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석방활동, 법적 소송지원,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또한 고문가해자를 찾아내 고발하여 가해자 일부가 사법처리가 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는 고문피해에 대한 보고대회와 증언대회를 통해 사회에 알리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와 고문피해자의 치유에까지 활동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고문피해자를 치료하는 전문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대안제시까지 나오게 되었다. 2000년대는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심리적 치유프로그램이 아름다운 치유동산(KRCT), 진실의힘, 인권의학연구소 등의 민간단체들에서 진행되었다. 고문피해 사실을 보고대회와 증언대회를 통해 알리고 사회공론화에 앞장섰던 피해자들, 가해자를 고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던 피해자들,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명예회복과 보상 등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했던 피해자들에게는 민간단체들과 친척, 이웃 등 주위에서 따뜻한 사회적 지지가 있었으며 이들은 대다수는 고문피해를 잘 극복하였음을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고문피해자의 고통과 후유증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제5장. 고문피해자 설문조사 결과

1절.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과 조사참여자의 분포

설문조사와 자료 수집은 2011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 말까지 진행하였다. 실태조사의 참여자 범위는 우선 국가기관에 의해 고문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그동안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문피해자를 부분적으로 포함하였다. 조사대상자 선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와 2000년경 이후 진행된 여러 국가 인권침해 조사기구의 활동 결과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5·18 항쟁 피해자 등 1960년대 이후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사회적으로 여론화되어 고문피해의 대표적 사례로 일컬어진 사례도 일부 포함하였다.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내 대표적인 인권단체들[30]의 협조를 얻었다.

초기 조사계획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결정문과 피해자 인적사항을 입수하여 분석하고, 인권 단체와 피해자 단체들을 통해 고문피해자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우편조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점의 차이와 관련 기관의 성의 있는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해 국가기관들을 통한 고문피해자 인적사항 확보가 무산되어 조사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우편을 통한 설문방식 역시 피해당사자 아닌 사람이 표기할 경우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등 응답내용의 신뢰성 문제와 저조한 응답률 문제가 제기되어 직접 면접을 통한 설문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일부 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연락처를 확보하여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응답률이 5%에 지나지 않아 우편조사의 한계를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사과정은 국내 인권단체를 통한 협조와 과거사위원회 보고서 등 문헌자료를 통해 확보된 최소한의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일일이 발굴하여 접촉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중첩된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또한 설문대상자를 연쇄적으로 발굴해가는 눈덩이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실태조사는 사전에 제작된 구조화된 질문지(피해자용, 가족용)를 조사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 직접 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조사 전 당사자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

30)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민주화운동실천가족협의회, 민주화운동공제회, 5.18구속부상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기독교인권센터, 한국노총, 민주노총, 각 대학교 민주동문회 등

여 설문조사에 대한 사전 동의를 요청하였다. 대부분의 경우는 연구진 또는 설문조사원의 방문 면접을 통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일부 우편 조사가 병행되었다.

조사의 내용이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과 관련 되어 있는 본 실태조사의 특성 상, 참여자가 조사목적이나 설문조사원을 신뢰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응답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문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위해 설문조사 지침서와 유의사항을 제작하여 공유하였고 설문조사원들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원은 인권단체 또는 피해자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여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과거 유사한 연구에 참여하거나 지원을 했던 사람들과 실제 과거사건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이에 연구진 모두가 설문조사원으로 참여하고 엄선된 면접조사원을 충원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종료 후 집계된 설문조사 응답 건수는 가족 12건 포함 총 234건 이었고, 이 가운데 조사목적에 부적합한 설문지 11건을 제외한 223건(고문피해자 당사자 213명, 고문피해자 가족 10명)이 최종적으로 조사통계에 사용되었다. 총 213명 가운데 과거 청년·학생운동 영역에서 활동하다 고문피해를 입게 된 경우가 61명, 노동 운동의 경우가 48명, 정치·재야운동의 경우가 47명, 그 외 교육·통일·여성 운동 관련 경우가 3명, 농민·빈민 운동 관련 경우가 2명, 종교·문화 관련된 경우가 2명이었다. 조작간첩과 관련된 경우는 43명이었다. 비시국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가운데 고문관련 진정사건 81건의 결정문을 검토, 분석하여 이 가운데 8개 사건 관련 피해자 22명 중 현재 수감 중인 8명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이중 1명이 설문조사를 거부하여 최종적으로 7명을 직접 수감시설에서 면접조사 하였다.

참여자의 분포를 고문에 연루된 사건 영역과 시대 순으로 분류하면 <표5-1>과 같다.

[표5-1] 설문대상자의 고문사건 분포

발생연도 / 사건영역	1970년대이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이후	소계(명)
정치.재야	-	10	37	-	-	47
노동	-	8	36	4	-	48
청년.학생	-	19	36	5	1	61
농민.빈민	-	-	1	1	-	2
조작간첩	2	24	15	2	-	43
교육.통일.여성	-	-	2	1	-	3
종교.문화	-	1	1	-	-	2
비시국	-	-	-	-	7	7
소 계(명)	2	62	128	13	8	213

결과분석에 앞서, 통계조사의 비교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 지원 등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참여자의 고문관련 사건 범주를 '시국사건'(정치·재야, 노동, 청년·학생, 농민·빈민, 교육·통일·여성, 종교·문화 등)과 '조작간첩사건', 그리고 '비시국사건'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정치·재야, 노동, 청년·학생, 농민·빈민, 교육·통일·여성, 종교·문화에 연루된 사건은 그 당시 독재정권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속성으로 취급하여 '시국사건'이라는 범주로 만들어서 분류하였다.

둘째, 이와는 다르게 2000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면서 민주화 운동 등 시국사건과는 내용적으로 다르고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이 아닌 일반 형사사범들은 '비시국사건'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조작간첩'은 형법 제98조 1·2항(간첩죄) 위반혐의가 조작되어 간첩으로 처벌받은 고문피해자들로서 앞서 기술한 시국사건·비시국사건과는 사건내용이나 구금기간, 고문피해의 정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개로 분류하였다.

넷째, 시국사건에 포함된 사건의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사건별로 특성을 파악하기위해 시국사건을 세분화하여 정치·재야사건에 교육·통일·여성과 종교·문화사건을 포함시키고 노동운동에 농민·빈민 운동을 포함하여 정치·재야운동, 노동운동, 청년·학생운동, 조작간첩, 비시국사건으로 범주화 하였고 중요한 항목에 한해 분석하였다.

[표5-2] 고문사건에 따른 설문대상자의 분류

	내 용
시국사건	정치·재야, 노동, 청년·학생, 농민·빈민, 교육·통일·여성, 종교·문화,
조작간첩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비시국사건

참여자들이 연루된 사건을 시대별로 분석했을 때 1970년대 이전 고문피해자가 2건만 조사되어서 이를 1970년대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본 조사의 참여자와 관련된 시대는 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있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이른바 '민주화 이후' 시기에도 고문피해의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결과는 고문피해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 고문관련 사건, 고문경험과 고문당시의 피해, 고문사건 이후의 고문 피해(심리적, 신체적, 사회 경제적) 유형과 실태, 정신건강 평가, 고문피해 관련 국가차원의 지원, 피해자의 지원 관련 요구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시국사건은 전체대상자중 163명으로 76.5%를 차지하였고 조작간첩은 43명으로 20.1%, 비시국사건은 7명으로 3.2%를 차지하였다.

[표5-3] 고문피해자들의 사건별 빈도

	빈도	백분율
시국사건	163	76.5
조작간첩	43	20.1
비시국사건	7	3.2
합 계	213	100

1. 인구통계학적 분석

1) 고문피해자의 일반적인 특성

시국사건에 해당되는 163명중 남성은 130명(79.8%)이고 여성은 33명(20.2%)이었다. 조작간첩에 해당하는 43명중 남성은 40명(93.0%), 여성은 3명(7.0%)이었다. 비시국사건 관련 참여자는 모두 남성이었다.

[표5-4] 성별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남(%)	130 (79.8)	40 (93.0)	7(100)	177 (83.0)
여(%)	33 (20.2)	3 (7.0)	0(0)	36 (17.0)
합 계	163 (100)	43 (100)	7(100)	213 (100)

시국사건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의 현재 평균나이는 53.7세로 나타났다. 조작간첩에 연루된 참여자의 현재 평균나이는 68.6세였다. 비시국사건 관련 참여자의 경우 평균 연령은 40.6세였다. 조작간첩사건과 관련된 참여자의 경우 현재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5-5] 연령

	인원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시국사건	163	53.7	7.3	32	78
조작간첩	43	68.6	10.4	47	92
비시국사건	7	40.6	10.0	33	56

2) 거주 지역

시국사건 연루 조사참여자 163명중 서울/경기/인천에 51.6%가 거주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전라/제주지역에 15.9%가 거주하고 있었다. 전라/제주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은 대부분 5·18관련사건으로 연루되었다.

조작간첩 연루 조사참여자 43명중 서울/경기/인천에 14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체 참여자의 6.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라/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조사참여자가 많았고 전체에서 4.6%를 차지하였다.

비시국사건 연루 7명은 서울/경기/인천에 3명, 강원도에 2명, 경상도에 2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조사참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경기/인천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중 127명으로 59.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전라/제주지역이 44명으로 20.6%를 차지하였다.

[표5-6] 현재거주 지역 명(%)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서울·경기·인천	110(51.6)	14(6.5)	3(1.4)	127(59.6)
강원	8(3.7)	6(2.8)	2(0.9)	16(7.5)
충청	4(1.8)	4(1.8)	0(0)	8(3.7)
경상	6(2.8)	6(2.8)	2(0.9)	14(6.5)
전라·제주	34(15.9)	10(4.6)	0(0)	44(20.6)
기타·국외	1(0.4)	3(1.4)	0(0)	4(1.8)
합 계	163(76.5)	43(20.1)	7(3.2)	213(100)

3) 학력

전체 조사참여자들 가운데 대학재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고학력자가 전체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졸이하 조사참여자는 48명으로 약 23%를 차지하였다. 고학력층이 많은 이유는 과거 시국사건으로 처벌된 학생운동 관련자들이 많았고,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사건 역시 인텔리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참여자들의 학력 분포를 전체 고문피해자 모집단의 특성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과거 고문피해를 폭로하고 피해주장을 했던 것이 대부분 고학력층이었던 반면, 저학력층의 경우 고문피해가 상당부분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이는 2000년 이후 국가 과거사기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납북어부 등 여러 간첩조작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저학력층이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최근까지 저학력의 고문피해자들이 고문피해를 항변하고 사회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단이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한 비시국사건 연루 7명이 모두 고졸이하의 학력이라는 점은 의미가 적지 않다.

아래 표의 시국사건과 조작간첩 영역에서 초졸 이하 학력자들이 각각 11명, 12명으로 적지 않은 이유는 노동조합운동 관련 시국사건 및 납북어부 조작간첩 고문피해자들이 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표5-7］학력 명(%)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초졸이하	11(6.9)	12(28.6)	1(14.2)	24(11.5)
중졸이하	15(9.4)	6(14.3)	3(42.9)	24(11.5)
고졸이하	21(13.1)	7(16.7)	3(42.9)	31(14.8)
대졸이하	81(50.6)	13(30.9)	0(0)	94(45.0)
대학원이상	32(20)	4(9.5)	0(0)	36(17.2)
합 계	160(100)	42(100)	7(100)	209(100)

결측빈도 = 4

4) 수입

결측을 제외한 참여자 209명중 100만 원이하의 저소득자는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많은 34.9%를 차지한 반면, 월 400만 원 이상 고소득은 28명으로 전체대상자 중 13.4%에 불과하였다. 100만 원 이상 400만원 미만은 108명으로 51.6%를 차치하였다.

월 200만원 이하 저소득자를 합하면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2011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439,413원과 비교하면, 참여자의 절반가량이 빈곤선 이하 내지 차상위 빈곤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참여자들의 평균 학력과 비교할 때 학력에 비해 소득이 낮아 지위불일치 등 사회적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이는 시국사건, 조작간첩에 연루된 참여자들이 대부분 20~30대에 고문, 투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경험과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에서 일견 예상된 결과이다. 더불어 고문피해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과 배상이 부재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만성화되면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점도 분명해 보인다.

[표5-8] 현재 월 수입 명(%)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100만원이하	47(29.5)	22(51.1)	4(57.1)	73(34.9)
100~200만원	31(19.5)	9(20.9)	2(28.5)	42(20.1)
200~300만원	31(19.5)	7(16.2)	1(14.2)	39(18.6)
300~400만원	26(16.3)	1(2.3)	0(0)	27(12.9)
400만원이상	24(15.1)	4(9.3)	0(0)	28(13.4)
합 계	159(100)	43(100)	7(100)	209(100)

결측빈도 = 4

5) 의료보장형태

의료보험형태를 살펴보면 의료보호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69명으로 전체 참여자 중 3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참여자의 1/3을 차지하는 비율로 앞서 살펴본 최저소득층 비율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1/3이 고문피해로 인한 후유 장애에 대해 전문적인 치료는 고사하고 일반적인 의료 혜택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표5-9] 의료보장형태 명(%)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공·교 보험	2(1.2)	0(0)	0(0)	2(0.9)
직장보험	67(41.6)	16(37.2)	1(14.2)	84(39.8)
지역보험	36(22.3)	16(37.2)	0(0)	52(24.6)
의료보호	54(33.5)	11(25.5)	4(57.1)	69(32.7)
없음	2(1.2)	0(0)	2(28.5)	4(1.9)
합 계	161(100)	43(100)	7(100)	211(100)

결측빈도 = 2

6) 현재 혼인 관계

참여자들의 현재 혼인관계에서 별거 내지 이혼 경험자의 비율은 약 15%로 나타났다. 시국사건의 경우 별거 혹은 이혼 비율은 약 19%로 조작 간첩사건의 4.6%에 비해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표5-10] 현재 혼인 관계 명(%)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결혼	116(72.0)	36(83.7)	1(14.2)	153(72.5)
별거	4(2.4)	1(2.3)	0(0)	5(2.3)
이혼	26(16.1)	1(2.3)	1(14.2)	28(13.2)
사별	4(2.4)	5(11.6)	0(0)	9(4.2)
결혼안함	11(6.8)	0(0)	5(71.4)	16(7.5)
합 계	161(100)	43(100)	7(100)	211(100)

결측빈도 = 2

7) 현재 거주형태

현재 거주형태는 자기소유의 주택이 약 52%, 전세 및 월세는 약 40%로 나타났다. 자가 비율은 시국사건의 경우 약 46%, 조작간첩 사건은 약 81%로 나타났다.

[표5-11] 현재거주형태 명(%)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자가	74(46.2)	35(81.4)	0(0)	109(51.9)
전세	36(22.5)	2(4.65)	1(14.2)	39(18.5)
월세	37(23.1)	5(11.6)	2(28.5)	44(20.9)
기타	13(8.1)	1(2.3)	4(57.1)	18(8.5)
합 계	160(100)	43(100)	7(100)	210(100)

결측빈도 = 3

2. 고문사건에 대한 분석과 의료인의 개입

1) 고문 사건에 관한 분석

① 고문피해 당시 연령

참여자들이 고문을 당했을 당시 나이는 시국사건의 경우 25.5세이고 조작간첩의 경우는 34.5세이며, 비시국사건은 36.2세였다. 이렇듯 대체로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시기에 고문을 경험하고 구속, 투옥되었음은 물론, 투옥 이후에도 장기간 사회적으로 단절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5-12] 고문피해 당시 연령

	연령				
	인원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시국사건	163	25.5	5.6	18	48
조작간첩	43	34.5	8.7	15	52
비시국사건	7	36.2	7.8	31	54

② 고문피해 당시 직업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를 따라 참여자들이 고문을 당했을 당시 직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에 속하지 않은 직업은 따로 범주화 하지 않고 그대로 제시하였다.

[표5-13] 고문피해 당시 직업 (한국표준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고문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했을 당시 직업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경영인, 회사경영인, 단체임원, 언론사대표, 시민단체대표, 건설회사이사
전문가	언론인, 간호조무사, 교수, 교사, 국회의원비서관, 언론인, 화가, 침구가, 컨설던트, 법률가, 목사, 승려,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회사원, 공무원, 사무장, 부동산관련사무실
서비스 종사자	서점경영, 미술학원장, 요식업, 자영업, 사회교육기관
판매종사자	영업사원, 보험판매원, 노점상, 자영업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농업, 어업, 광부, 축산업, 상업, 유축농업
기능원 및 관견기능종사자	노동자, 노동조합간부, 방직공작원, 생산직노동자, 양화공, 나전칠기공예사, 실크인쇄기사, 농기계수리공, 제과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운전수, 기공소
단순노무종사자	탄광노동자, 일용직노동자, 건설업, 경비원, 건축업
군인	
무직	
운동가	주간시민사인턴사원, 여성단체직원, 민주헌정동지회 실행위원, 전업활동가, NGO활동가, 노동운동가, 정당인
종교인	승려
학생	대학재적생, 대학생, 학생
기타	주부, 수배자, 수감중

고문을 당했을 당시 시국사건의 경우, 학생직군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가 40명으로 전체 대상자중 18.8%를 차지하였다.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에는 노동자, 노동조합간부, 생산직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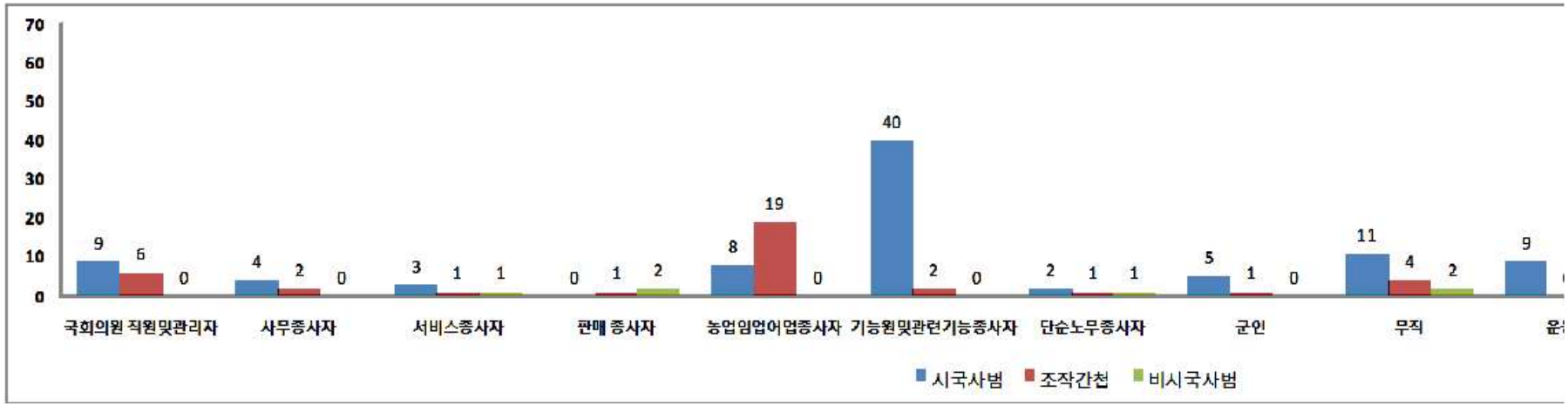
조작간첩인 경우에는 농업, 어업숙련 종사자들이 19명으로 조작간첩사건 연루자 중에서 44%를 차지하였다. 이는 조사참여자 가운데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표5-14］고문피해 당시 직업 명(%)

	국회의원 직원및관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임업어업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군인	무직	운동가	종교인	학생	기타	합계
시국사건	9	4	3	0	8	40	2	5	11	9	3	66	3	163
	(5.5)	(2.4)	(1.8)	(0)	(4.9)	(24.5)	(1.2)	(3.1)	(6.7)	(5.5)	(1.8)	(40.5)	(1.8)	(100)
조작간첩	6	2	1	1	19	2	1	1	4	0	0	5	1	43
	(13.9)	(4.6)	(2.3)	(2.3)	(44.1)	(4.6)	(2.3)	(2.3)	(9.3)	(0)	(0)	(11.6)	(2.3)	(100)
비시국사건	0	0	1	2	0	0	1	0	2	0	0	0	0	6
	(0)	(0)	(16.7	(33.3)	(0)	(0)	(16.7)	(0)	(33.3)	(0)	(0)	(0)	(0)	(100)
합계	15	6	5	3	27	42	4	6	17	9	3	71	4	212
	(7.08)	(2.8)	(2.3)	(1.4)	(12.7)	(19.8)	(1.9)	(2.8)	(8.0)	(4.2)	(1.4)	(33.5)	(1.9)	(100)

결측빈도 = 1

［그림5-1］ 고문피해 당시 직업



③ 고문 장소

본 조사에서 참여자들이 주로 고문을 당한 곳은 경찰서로 나타났다. 시국사건에서 52%, 조작간첩의 30%, 비시국사건에서 85%의 조사참여자가 고문가해의 장소를 경찰서로 꼽았다. 경찰서는 형사절차 상 피의자가 구속 인치되는 장소이므로 모든 사건의 고문피해자들에게는 공통적인 피해장소가 된다.

조작간첩사건의 경우, 경찰보다 안기부, 기무사, 보안수사대 등을 지목한 사례가 많았다. 이는 간첩사건 수사에서 안기부 등 수사기관들이 피해자들을 조사장소에 장기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은 직접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국/비시국/조작간첩 사건을 막론하고 검찰이 고문가해의 장소로 지목되었다는 점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 공소유지 뿐 아니라 공익을 대표해야 할 검찰이 고문장소로 지목된 것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여러 국가 과거사 조사기구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검찰은 고문장소일 뿐 아니라 직접 고문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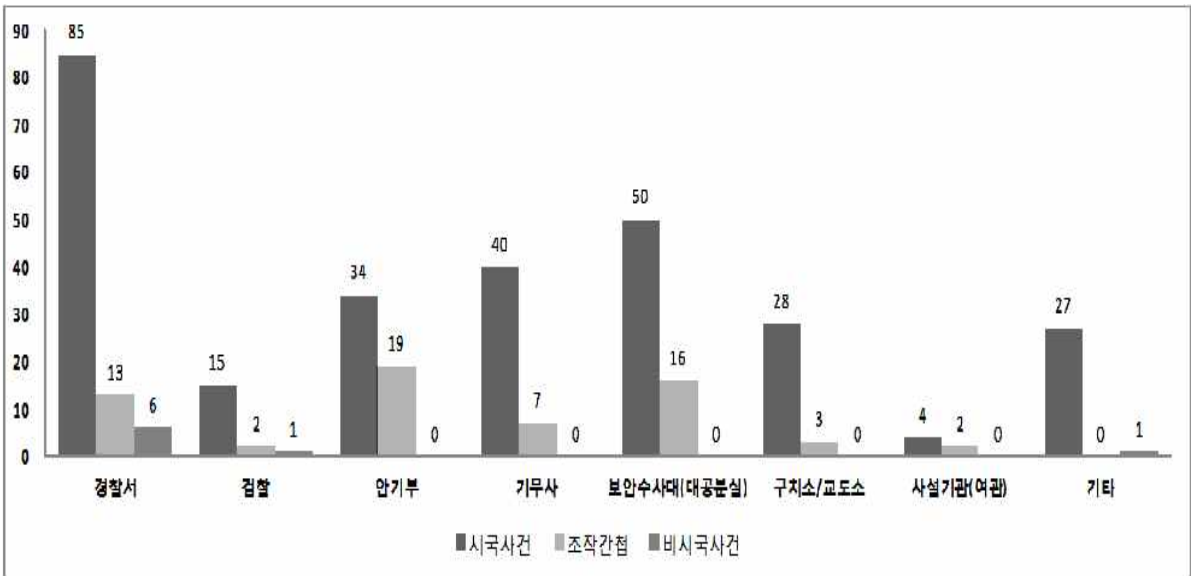
구치소/교도소의 비율도 적지 않은데, 시국사건과 조작간첩 사건에서 이 기관들이 단순 구금시설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연장이었음을 보여준다. 검찰은 구속 송치 후 피의자 신변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여관 등 사설기관은 납북어부 조작간첩 사건에서 수사 경찰이 불법구금을 은폐하기 위해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무대에서 고문을 당한 경우도 10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5.18관련자들이었다.

[표5-15] 고문을 당한 장소 명(%)

	인원 (%)	경찰서	검찰	안기부	기무사 (보안사)	보안수사대 (대공분실)	구치소/ 교도소	사설기관 (여관)	기타
시국사건	163(100)	85(52.1)	15(9.2)	34(20.9)	40(24.5)	50(30.7)	28(17.1)	4(2.5)	27(16.5)
조작간첩	43(100)	13(30.2)	2(4.7)	19(44.2)	7(16.3)	15(34.9)	3(6.9)	2(4.7)	0(0)
비시국사건	7(100)	6(85.7)	1(14.3)	0(0)	0(0)	0(0)	0(0)	0(0)	1(14.3)
합 계	213(100)	104(48.8)	18(8.5)	53(24.9)	47(22.1)	65(30.5)	31(14.6)	6(2.8)	28(13.1)

[그림5-2] 사건별 고문을 당한 장소



- 상무대 : 10명
- 계엄사령부(계엄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6명
- 삼청교육대, 수도경비사령부, 집, 지하실, 광주4수원지, 전투교육사령부헌병대, 보안대 특명반, 군시설, 눈을가려 장소를 모름, 차량안 각 1명

시대별로 고문장소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고문을 당한 곳은 경찰서로 나타났다. 1970년대는 경찰을 제외하면 안기부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1980년대는 고문장소로 안기부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기무사(보안사)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과거사 조사기구들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10·26사태 직후 1980년 보안사령관 출신의 전두환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보안사의 민간인 수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박정희를 시해한 김재규가 중정의 책임자였으므로 이후 12·12사태를 일으켜 권력장악에 성공한 보안사에게 중정이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발생한 정보기관 사이의 권력관계의 반영이라는 지적이 있다. 기무사(보안사)는 1990년 10월 보안사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사찰 관련 양심선언 사건 이후 활동이 위축된다.

[표5-16] 시대별 고문을 당한 장소 명(%)

	인원수 (%)	경찰서	검찰	안기부 (중앙정보부)	기무사 (보안사)	보안수사대 (대공분실)	구치소/ 교도소	사설기관
1970년대	65	38(58.5)	7(10.8)	27(41.5)	12(18.5)	23(35.4)	11(16.9)	4(6.2)
1980년대	127	54(42.5)	9(7.1)	20(15.8)	35(27.6)	37(29.1)	19(14.9)	2(1.6)
1990년대	13	6(46.2)	1(7.7)	5(38.5)	0(0)	5(38.5)	1(7.69)	0(0)
2000년이후	8	6(75.0)	1(12.5)	1(12.5)	0(0)	0(0)	0(0)	0(0)
합 계	213	104(48.8)	18(8.5)	53(24.9)	47(22.1)	65(30.5)	31(14.6)	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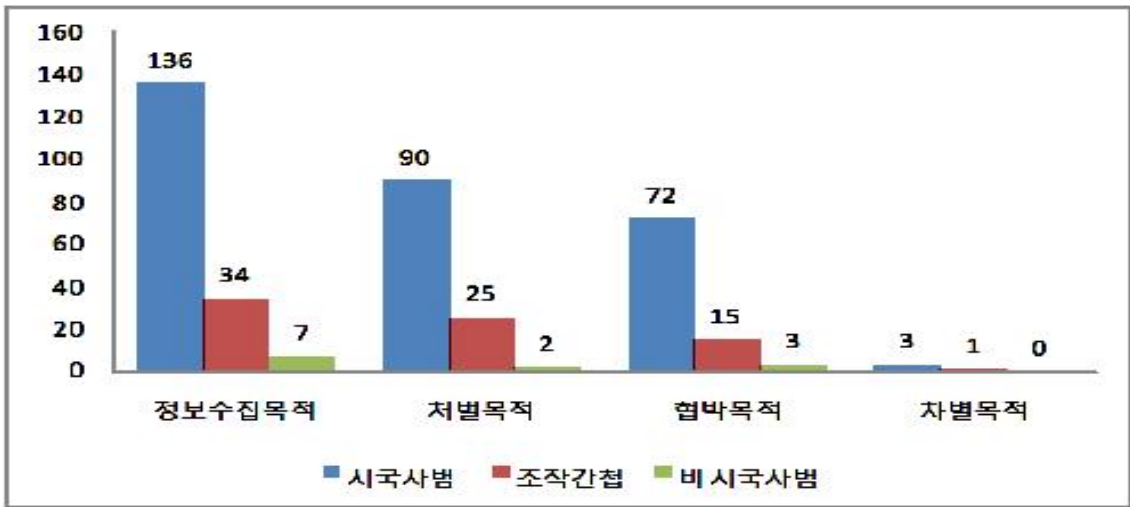
④ 고문을 당한 이유 (고문목적)

고문을 당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참여자들은 정보수집이 가장 큰 고문목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울러 처벌이나 협박 등도 복수 표기한 경우가 많았다. 시국사건과 간첩조작 사건의 경우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차별목적이라는 응답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표5-17] 고문을 당한 이유 (중복표기)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정보수집목적	136	34	7	177
처벌목적	90	25	2	117
협박목적	72	15	3	90
차별목적	3	1	0	4
합 계	301	75	12	388

[그림5-3] 고문을 당한 이유(중복표기)



⑤ 고문피해 당시 불법구금일과 투옥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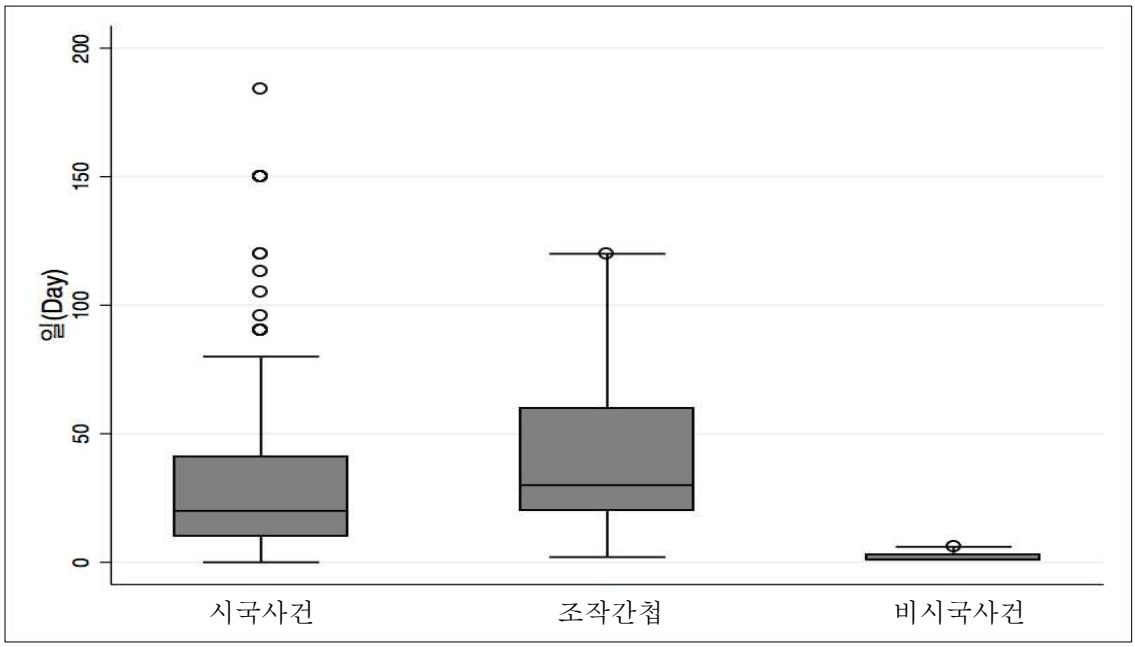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시국사건의 불법구금일은 평균 약 34일, 조작간첩 사건의 경우 약 40일, 비시국 사건의 경우 약 2일로 나타났다. 불법구금이란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나 영장 없이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불법행위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이며 유죄판결에 대한 중대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31]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긴급 체포의 경우라도 연행 후 48시간 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국사건과 조작간첩 사건의 경우 이러한 규정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상태로 나타났다. 시대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 약 32일에서, 1980년대 41일, 1990년 약 16일로 나타났다. 1980년대를 정점으로 1990년대에 들어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불법구금은 그 자체로 심각한 고문행위에 해당하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법 원칙을 위반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표5-18] 사건별 불법구금일

	인원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시국사건	161	34.3	35.8	1	184
조작간첩	43	40.0	30.6	2	120
비시국사건	7	2	1.91	1	6

31) 여기서 불법구금일은 영장없이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림5-4] 사건별 불법구금일



[표5-19] 시대별 불법구금일

	인원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970년대	64	32.4	27.7	2	120
1980년대	128	41.1	46.5	1	184
1990년대	12	16.1	11.5	1	40
2000년 이후	8	2.1	1.8	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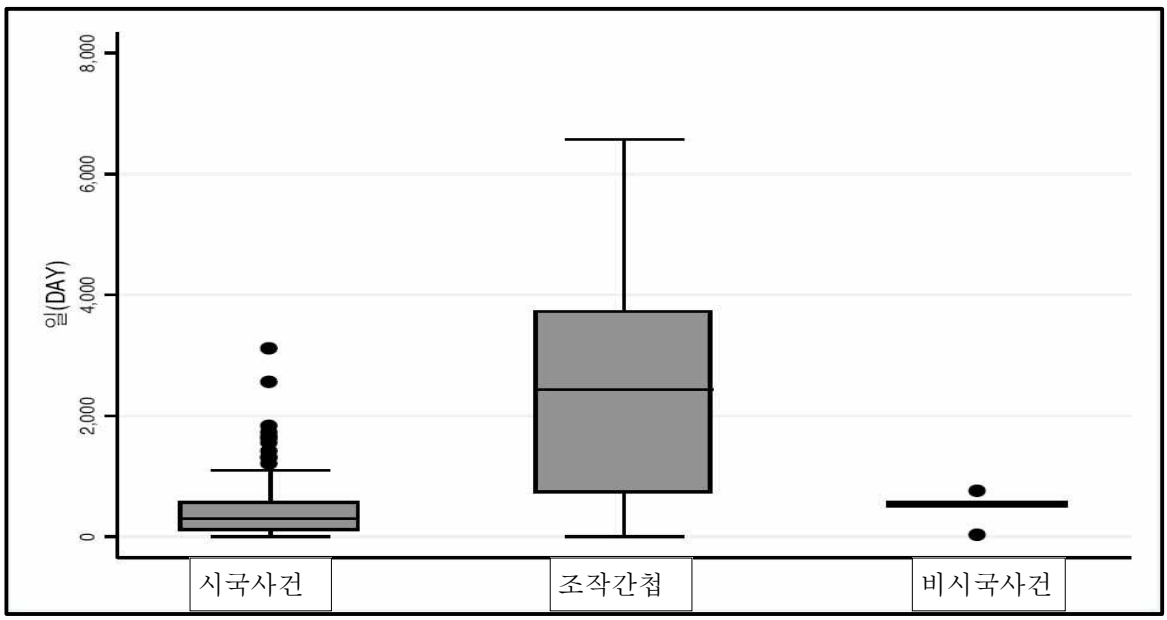
각 사건 범주별로 투옥일을 조사하였다. 투옥일은 피해자가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등지에 구금되었던 총일수를 말한다. 투옥일은 통상 법원의 선고형량이다. 시국사건은 평균 437일을 투옥된 상태에 있었고, 조작간첩에서 투옥기간은 평균 2566일이었으며 비시국사건은 475일 이었다. 조작간첩에 연루된 참여자의 투옥기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투옥기간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평균 3.8년 감옥에 있었고, 1980년대 이후 참여자의 경우에는 평균 2년 정도 투옥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5-20] 사건별 투옥일

	인원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시국사건	163	437.9	479.3	1	3100
조작간첩	43	2566.7	1988.66	1	6570
비시국사건	7	475	217.43	20	730

[그림5-5] 사건별 투옥일



[표5-21] 시대별 투옥일

	인원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970년대	64	1452.9	1754.4	1	6570
1980년대	128	621.6	1003.5	1	5840
1990년대	12	708	644.2	1	1825
2000년 이후	8	416	261.5	1	730

⑥ 고문피해자들이 사건에 연루될 당시 신념

고문피해자들이 사건에 연루될 당시 가지고 있던 신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시국사건에 연루된 참여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신념에 확신(약 73%)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운동은 매우 중요한 사회운동이라고 믿고(약 64%)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의 경우 80%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특별히 범죄로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연행당했다는 것이다.

비시국사건의 경우 사회적 신념에 확신에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자가 1명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사회 운동에 임함, 고문에 대한 예상과 각오에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자는 없었다.

[표5-22] 나의 사회적 신념에 확신이 있었다(사건별) 명(%)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전혀 아니다	11(7.0)	20(48.8)	5(83.3)	36(17.7)
보통이다	31(19.8)	9(22.0)	0(0)	40(19.6)
매우 그렇다	115(73.3)	12(29.3)	1(16.7)	128(62.8)
합 계	157(100)	41(100)	6(100)	204(100)

결측빈도 = 9

[표5-23] 나는 중요한 사회운동에 임하고 있었다(사건별). 명(%)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전혀 아니다	16(10.3)	33(80.5)	5(83.3)	54(26.6)
보통이다	39(25.0)	4(9.8)	1(16.7)	44(21.7)
매우 그렇다	101(64.7)	4(9.8)	0(0)	105(51.7)
합 계	156(100)	41(100)	6(100)	203(100)

결측빈도 = 10

[표5-24] 고문을 받거나 투옥당할 것이라는 각오(사건별) 명(%)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전혀 아니다	21(13.3)	29(70.7)	6(100)	56(27.3)
보통이다	41(26.0)	4(9.8)	0(0)	45(22.0)
매우 그렇다	96(61.0)	8(19.5)	0(0)	104(50.7)
합 계	158(100)	41(100)	6(100)	205(100)

결측빈도 = 8

시대별로 그 당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해보았다. 시국사건과 조작간첩사건 범주에서 당시 사회적 신념이나 운동에 확신을 가지지 않았다는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970년대부터 1990년대로 오면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신념에 대한 확신은 20%→14%→0%, 활동에 대한 믿음은 37%%→20%→7%).

고문을 받거나 투옥당할 것이라는 예상과 각오를 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조사참여자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걸쳐 평균 50%정도로 전체의 절반가량이 그럴 각오로 사회운동에 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25] 나의 사회적 신념에 확신이 있었다(시대별). 명(%)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이후	합 계
전혀 아니다	13(21.0)	18(14.8)	0(0)	5(71.4)	36(17.7)
보통이다	8(12.9)	29(23.8)	3(23.1)	0(0)	40(19.6)
매우 그렇다	41(66.1)	75(61.5)	10(76.9)	2(28.6)	128(62.8)
합 계	62(100)	122(100)	13(100)	7(100)	204(100)

결측빈도 = 9

[표5-26] 나는 중요한 사회운동에 임하고 있었다(시대별). 명(%)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이후	합계
전혀 아니다	23(37.1)	25(20.66)	1(7.69)	5(71.43)	54(26.6)
보통이다	11(17.74)	28(23.14)	4(30.77)	1(14.29)	44(21.67)
매우 그렇다	28(45.16)	68(56.2)	8(61.54)	1(14.29)	105(51.72)
합 계	62(100)	121(100)	13(100)	7(100)	203(100)

결측빈도 = 10

[표5-27] 고문을 받거나 투옥당할 것이라는 각오(시대별) 명(%)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이후	합 계
전혀 아니다	20(31.8)	30(24.6)	0(0)	6(85.7)	56(27.3)
보통이다	13(20.6)	25(20.5)	6(46.2)	1(14.3)	45(22.0)
매우 그렇다	30(47.6)	67(54.9)	7(53.9)	0(0)	104(50.7)
합 계	63(100)	122(100)	13(100)	7(100)	205(100)

결측빈도 = 8

2) 고문 당시 의료인의 개입

고문을 당하던 과정에서 의료인의 진료 경험 유무를 조사하였다. 고문 과정에서 의료인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52명(24.4%)이었다. 시국사건인 경우는 34(20.8%)명 이고 조작간첩은 18(41.8%)명으로 나타났다. 비시국 사건인 경우에는 진료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조작간첩이 시국사건보다 의료인의 진료를 받은 경험이 2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대별로 의료인의 진료를 받은 비율을 조사하였다. 각 시대별로 의료인의 진료경험이 있는 경우는 1970년대 이전과 1990년대의 참여자는 약 30%정도가 의료인의 진료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80년대 참여자들은 약 22%정도가 진료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에도 1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5-28] 의료인의 진료 여부(사건별) 명(%)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있었음	34(20.9)	18(41.9)	0(0)	52(24.4)
없었음	129(79.1)	25(58.1)	7(100)	161(75.6)
합 계	163(100)	43(100)	7(100)	213(100)

[표5-29] 의료인의 진료 여부(세부사건별) 명(%)

	정치·재야사건	노동운동	청년·학생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있었음	15(28.8)	12(24)	7(11.4)	18(41.8)	0(0)	52(24.4)
없었음	37(71.15)	38(76.0)	54(88.5)	25(58.1)	7(100)	161(75.5)
합 계	52(100)	50(100)	61(100)	43(100)	7(100)	213(100)

[표5-30] 의료인의 진료 여부(시대별) 명(%)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이후	합 계
있었음	19(29.7)	28(21.9)	4(30.8)	1(12.5)	52(24.4)
없었음	45(70.3)	100(78.1)	9(69.2)	7(87.5)	161(75.6)
합 계	64(100)	128(100)	13(100)	8(100)	213(100)

고문과정에서 의료인의 개입은 국제법과 의료계가 모두 금지하고 있다. 특히 1975년 세계의사회의 도쿄선언은 "의사는 고문이나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가 가해지거나 이러한 행위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어떠한 과정에도 가담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문가해자들의 요청에 의해 의료인이 고문피해자들을 진료하는 것은 고문이 지속되게 하거나 고문의 증거를 은폐해서 고문을 돕거나 방조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사협회의 윤리법사위원회는 "의사들은 고문현장에 참석해서는 안된다. 의사들은 만일 그들의 행위가 가장 이익이 된다면 재소자들이나 피구금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고문을 시작할 수 있을지 또는 고문을 계속해도 좋을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치료해서는 안된다....의사들은 고문피해자들에게 지원이 제공되도록 도와야 하며 언제든지 고문의의 진행이나 고문의 상황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인의 고문 과정에의 개입을 명백히 금하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한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에서 일부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당시 중정과 보안사 등에서 고문을 받던 일부 피해자들은 의사의 진료를 받았으며 이 의사들이 당시 고문정황에 대해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설문 조사의 결과에서 고문 과정에서 의료인이 취한 의료적 조치의 사례 중 '전기고문진행 중 의료인 참석', '의식 확인과 주사', '청진기를 가슴에 댐' 등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백히 고문의 진행을 돕거나 고문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의료행위로써 고문을 방조한 경우가 드러났다. 물론 치료적 목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설사 치료적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고문이 진행되는 것을 막지 않았거나 고문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고문 사건에 대한 방치로 의료인의 고문 개입 행위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표5-31] 고문 과정에서 의료인이 취한 조치

o 간단한 외상치료, 외상 치료하였음, 요오드링크로 사지에 칠해줌, 타박상치료, 타박상완화치료(송치목적), 매일 밤 고문 후 치료, 멍든 곳 마사지
o 경찰서에서 미리 봉합수술, 고문과정에서 난 상처를 꿰매는 수술, 컵으로 얼굴을 맞아서 상처를 꿰맸음, 어깨 붕대처치, 고막치료
o 전기고문진행 중 의료인 참석, 의식 확인과 주사, 혈압측정 후 투약, 청진기를 가슴에 댐, 혈압측정 후 주사, 진통제 처방
o 고문현장으로 들어온 의사가 아는 사람이어서 의사가 바로 나가버림. 그냥 왔다 감, 의사진찰 후 방치, 병원 이송됨, 병원에서 사진찍음, 정신과 진료

3. 고문의 유형과 피해

1) 고문의 유형

고문피해자가 겪은 고문유형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고문유형은 총27개이다.[32] 그 중 고문피해자에게 물리적 가해와 성적고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고문을 '신체고문'으로 분류하였고, 심각한 신체적 고통은 유발하지 않으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고문을 '비신체고문'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비신체고문을 세부적으로 '심리고문', '박탈고문', '노출고문'으로 구분하였다.

[표5-32] 고문 분류

고문분류		고문유형
신체고문	**신체고문**	온몸구타, 전기고문, 물고문, 매달기(통닭구이, 비녀꽂기), 각목고문(무릎에 각목 끼우고 밟기), 성기고문, 약물강제투여, 송곳찌르기, 따귀때리기, 열고문
비신체고문	**심리고문**	강간 또는 추가고문을 위협, 죽이겠다고 위협(엘리베이터고문), 가족에 대한 폭언·폭행 또는 고문하겠다고 위협, 다른 사람이 고문당하는 소리 들음, 성적으로 수치스럽게 함, 욕하고 모욕주기, 고문가해자의 태도돌변(잘해주다가 갑자기 가해함), 허위자백강요
	박탈고문	눈가림, 음식·물 안주기, 잠 안재우기, 의료박탈, 독방에 감금, 외부인과 단절
	노출고문	묶여있었음, 못 움직이게 함, 심한추위·더위에 노출,

고문피해자들의 고문유형을 가장 많이 받은 빈도순으로 살펴보면 욕하거나 모욕주기, 외부인과의 단절, 온몸구타로 조사되었고 이는 사건별로 공통된 고문유형이기도 하다. 기타 의견으로 날개꺾기, 손가락 사이에 볼펜 끼워 비틀기, 털 뽑기 등 다양한 신체적 고문을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본 연구에서는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는 협의의 고문의 정의 뿐 아니라 고문방지협약 제16조의 '부당한 처우' 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고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본문 39쪽 참조할 것.

조작간첩 사건의 조사참여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고강도의 고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조작간첩의 경우, 자백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은데 가족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이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유효한 수단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 가족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을 경험한 조사참여자가 시국사건의 48%보다 조작간첩사건에서 약 70%로 훨씬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가족에 대한 협박은 한국의 문화적 배경에서 고강도의 심리적 고문인 경우가 많다.

그 당시 고문피해자들이 당했던 고문과 고문을 받았던 장소, 불법구금일등을 종합해보면 평균 1달 정도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구치소, 중앙정보부, 기무사, 보안수사대에 감금해놓고 외부인과의 접견을 차단하면서 온갖 고문을 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5-33] 고문 유형 명(%)

	시국사건(N=163)		조작간첩(N=43)		비 시국사건(N=7)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신체 고문(성고문 포함)						
온몸 구타(손,발, 몽둥이 등을 사용)	32(19.6)	131(80.4)	4(9.3)	39(90.7)	0(0)	7(100)
따귀 때리기(고무신 등)	43(26.3)	120(73.6)	3(6.98)	40(93.0)	2(28.5)	5(71.4)
무릎 사이에 각목 끼우고 밟거나 각목 위에 몸 굴리기	98(60.1)	65(39.8)	14(32.5)	29(67.4)	6(85.7)	1(14.2)
물고문 (예: 고춧가루고문)	106(65.0)	57(34.9)	17(39.5)	26(60.4)	6(85.7)	1(14.2)
매달기(예: 통닭구이, 비녀꽂기)	104(63.8)	59(36.2)	19(44.1)	24(55.8)	7(100)	0(0)
전기고문	153(93.8)	10(4.6)	20(46.5)	23(53.5)	7(100)	0(0)
손톱 발톱 밑, 이마 등을 바늘, 송곳으로 찌르기	147(90.1)	15(9.2)	36(83.7)	7(16.2)	7(100)	0(0)
성기고문, 성폭행	153(93.8)	10(6.1)	36(83.7)	7(16.2)	6(85.7)	1(14.2)
열고문 (예: 담뱃불)	153(93.8)	9(5.52)	37(86.0)	6(13.9)	7(100)	0(0)
정체불명의 약물 강제투여	154(94.4)	9(5.5)	39(90.7)	4(9.3)	7(100)	0(0)
심리 고문 (심리적 조작 및 모욕적 대우)						
욕하거나 모욕주기, 조롱함	11(6.7)	152(93.3)	2(4.65)	41(95.3)	0(0)	7(100)
억지로 원치 않는 행동을 강	45(27.6)	118(72.4)	6(13.9)	37(86.0)	3(42.8)	4(57.1)

요 (예: 허위자백, 강제식사)						
고문가해자의 태도가 돌변함 (예: 잘해주다가 갑자기 가해함)	41(25.1)	122(74.9)	8(18.6)	35(81.4)	3(42.8)	4(57.1)
다른 사람이 고문당하는 것을 목격 (혹은 소리를 들음)	46(28.2)	117(71.)	13(30.2)	30(69.7)	5(71.4)	2(28.5)
죽이겠다고 위협함 (예: 생매장, 엘리베이터 고문)	70(42.9)	93(57.0)	11(25.5)	32(74.4)	3(42.8)	4(57.1)
가족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	84(51.5)	79(48.4)	13(30.2)	30(69.7)	2(28.5)	5(71.4)
벌거벗기기 혹은 성적으로 수치스럽게 함	107(65.6)	56(34.3)	23(53.4)	20(46.5)	5(71.4)	2(28.5)
강간 또는 추가 고문 위협함	127(77.9)	36(22.0)	23(53.4)	20(46.5)	6(85.7)	1(14.2)
박탈 고문 (기본욕구의 박탈)						
외부인과의 단절 (예: 가족, 변호사, 인권단체를 만날 수 없었음)	26(15.9)	137(84.1)	4(9.3)	39(90.7)	3(42.8)	4(57.1)
잠 안재우기	40(29.4)	115(70.6)	5(11.63)	38(88.3)	5(71.4)	2(28.5)
독방에 감금	59(36.2)	104(63.8)	9(20.9)	34(79.0)	6(85.7)	1(14.2)
눈가림	63(38.6)	100(61.4)	21(48.8)	22(51.1)	4(57.1)	3(42.8)
의료박탈(치료 안해줌)	90(55.2)	73(44.1)	16(37.2)	27(62.7)	2(28.5)	5(71.4)
음식, 물 안주기	112(68.7)	49(30.0)	28(65.1)	14(32.5)	6(85.7)	1(14.2)
노출 고문 (강요된 자세 및 감각적 불편감에 노출)						
묶여 있었음(예: 밧줄, 칠성판 등)	74(45.0)	89(54.6)	21(48.8)	22(51.1)	0(0)	7(100)
못 움직이게 함(계속 서있기 등)	80(49.0)	83(53.4)	20(46.5)	23(53.4)	6(85.7)	1(14.2)
심한 추위, 더위, 빛, 큰소리에 노출시킴	117(71.7)	46(28.2)	27(62.7)	16(37.2)	6(85.7)	1(14.2)

기타

강제노역, 날개꺾기, 머리잡고 빙빙돌리기, 앉았다섰다를 반복적으로 시키기, 물 적신 담요 씌우고 밟기, 손가락사이에 볼펜끼워 쥐어짜기, 회유, 털뽑기

고문을 신체고문 심리고문, 박탈고문, 노출고문으로 분류하고 사건별 시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건별 고문의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사건과 무관하게 신체, 심리, 박탈, 노출을 대체로 모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34] 사건별 고문 분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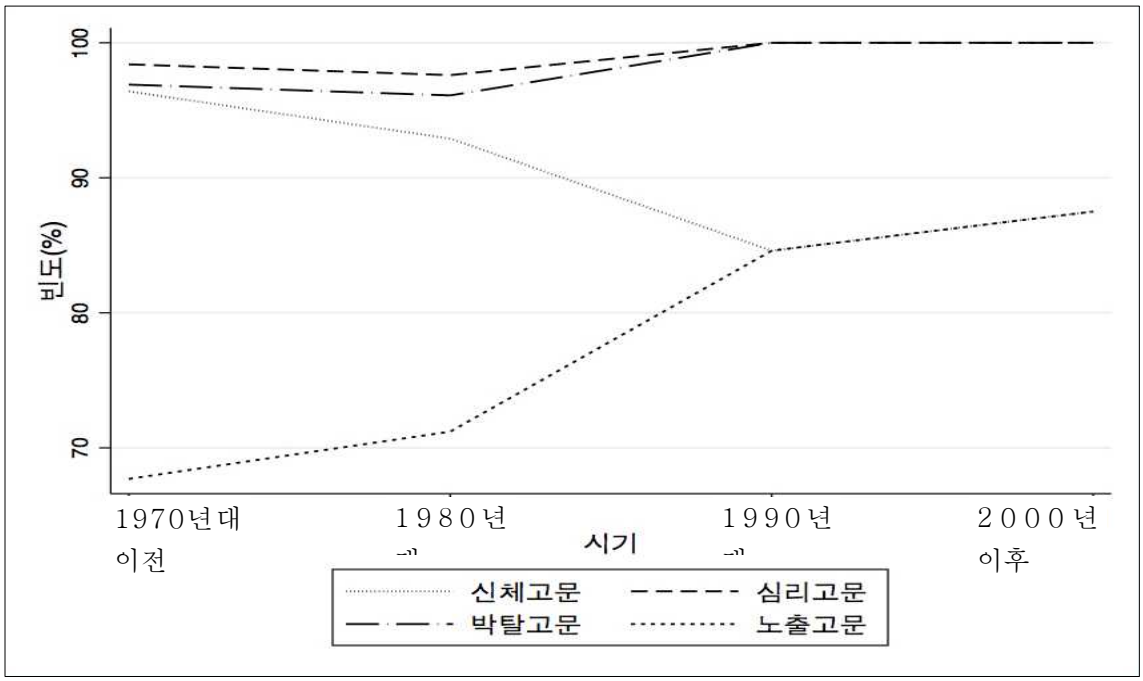
	인원수	신체고문	심리고문	박탈고문	노출고문
시국사건	163(100)	148(90.8)	159(97.6)	155(95.1)	124(76.1)
조작간첩	43(100)	43(100)	43(100)	43(100)	29(67.4)
비시국사건	7(100)	7(100)	7(100)	6(85.7)	7(100)
합 계	213(100)	198(92.9)	209(98.1)	204(95.7)	160(75.1)

시대별 고문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체로 비신체 고문이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해야 하겠다. 심리고문과 박탈고문은 시기에 상관없이 매우 높은 비율로 자행되었다. 노출고문 같은 경우 시대가 지남에 따라 다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신체고문 같은 경우는 과거 70년대에는 93%로 높은 비율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은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여전히 고문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신체고문은 심리고문과 박탈고문을 수반하고 있었고, 노출고문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5-35] 시대별 고문분류 명(%)

	인원수	신체고문	심리고문	박탈고문	노출고문
1970년대	65(100)	62(96.4)	64(98.5)	63(96.9)	44(67.7)
1980년대	127(100)	118(92.9)	124(97.6)	122(96.1)	98(77.2)
1990년대	13(100)	11(84.6)	13(100)	13(100)	11(84.6)
2000년 이후	8(100)	7(87.5)	8(100)	8(100)	7(87.5)
합 계	213(100)	198(93.0)	209(98.1)	204(95.8)	160(75.1)

[그림5-6] 시대별 고문분류



2) 고문당시 지각된 고통

①고문유형에 따른 고통수준

표에는 각 고문경험의 경험유무에 따른 참여자의 명수 및 백분율, 세 수준으로 구분한 지각된 고통수준에 평정한 명수 및 백분율, 지각된 고통수준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표5-36] 고문유형에 따른 고통수준

	경험빈도	지각된 고통수준			지각된 고통수준
	n (%)	0,1 n(%)	2,3,4 n(%)	5,6 n(%)	M(SD)
신체 고문(성고문 포함)					
온몸 구타(손, 발, 몽둥이 등을 사용)	177(83.1)	3(1.6)	23(12.9)	151(85.3)	5.37(1.1)
따귀 때리기(고무신 등)	165(77.4)	5(3.0)	66(40.0)	94(56.9)	4.58(1.4)
무릎 사이에 각목 끼우고 밟거나 각목 위에 몸 굴리기	97(45.5)	1(1.0)	8(8.2)	88(90.7)	5.55(0.9)

물고문 (예: 고춧가루고문)	85(39.9)	0(0.0)	6(7.0)	79(92.9)	5.65(0.7)
매달기(예:통닭구이, 비녀꽂기)	85(39.9)	3(3.5)	7(8.2)	75(88.2)	5.38(1.2)
전기고문	34(15.9)	0(0.0)	5(14.7)	29(85.2)	5.50(1.0)
손톱 발톱 밑, 이마 등을 바늘, 송곳으로 찌르기	22(10.3)	2(9.0)	1(4.5)	19(86.3)	5.23(1.8)
성기고문, 성폭행	18(8.4)	1(5.5)	2(11.1)	15(83.3)	5.22(1.5)
열고문 (예: 담뱃불)	15(7.0)	4(26.6)	1(6.6)	10(66.6)	4.13(2.7)
정체불명의 약물 강제투여	13(6.1)	3(23.0)	5(38.4)	5(38.4)	3.92(2.2)
심리 고문 (심리적 조작 및 모욕적 대우)					
욕하거나 모욕주기, 조롱함	201(94.3)	8(3.9)	75(37.3)	118(58.7)	4.59(1.3)
억지로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 (예: 허위자백, 강제식사)	162(76.0)	3(1.8)	39(24.0)	120(74.0)	5.01(1.2)
고문가해자의 태도가 돌변함(예: 잘해주다가 갑자기 가해함)	161(75.5)	3(1.8)	54(33.5)	104(64.6)	4.73(1.3)
다른 사람이 고문당하는 것을 목격 (혹은 소리를 들음)	149(69.9)	5(3.3)	36(24.1)	108(72.4)	4.93(1.4)
죽이겠다고 위협함 (예: 생매장, 엘리베이터 고문)	129(60.5)	6(4.6)	32(24.8)	91(70.5)	4.81(1.5)
가족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	114(53.5)	3(2.6)	40(35.0)	71(62.2)	4.75(1.4)
벌거벗기기 혹은 성적으로 수치스럽게 함	80(37.5)	2(2.5)	24(30.0)	54(67.5)	4.89(1.2)
강간 또는 추가 고문을 위협함	59(27.7)	1(1.6)	18(30.5)	40(67.8)	4.75(1.4)
박탈 고문 (기본욕구의 박탈)					
외부인과의 단절 (예: 가족, 변호사, 인권단체를 만날 수 없었음)	180(84.5)	4(2.2)	49(27.2)	127(70.5)	4.89(1.3)
잠 안재우기	155(72.7)	6(3.8)	28(18.0)	121(78.0)	5.05(1.4)
독방에 감금	139(65.2)	5(3.6)	49(35.2)	85(61.1)	4.60(1.4)
눈가림	126(59.1)	8(6.3)	58(46.0)	60(47.6)	4.25(1.6)
의료박탈(치료 안해줌)	105(49.3)	6(5.7)	30(28.5)	69(65.7)	4.77(1.5)
음식, 물 안주기	67(31.4)	5(7.4)	27(40.3)	35(52.2)	4.33(1.6)
노출 고문 (강요된 자세 및 감각적 불편감에 노출)					
묶여 있었음(예: 밧줄, 칠성판 등)	119(55.8)	5(4.2)	39(32.7)	75(63.0)	4.76(1.5)
못 움직이게 함(계속 서있기 등)	109(51.1)	3(2.7)	39(35.7)	67(61.4)	4.61(1.3)
심한 추위, 더위, 빛, 큰소리에 노출시킴	63(29.5)	3(4.7)	18(28.5)	42(66.6)	4.78(1.5)

가. 고문경험빈도

표에서 경험 빈도는 각 고문유형 내에서 백분율이 높은 순으로 제시하였다. 신체고문에서는 온몸구타(83.1%), 따귀 때리기(77.4%)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심리고문에서는 욕하거나 모욕주기, 조롱함(94.3%), 억지로 원치 않은 행동을 강요(76.0%), 고문가해자의 태도돌변(75.5%)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박탈고문에서 외부인과의 단절 경험(84.5%), 잠 안 재우기(72.7%)가 높게 나타났으며, 노출고문에서는 묶여있었음(55.8%)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나. 지각된 고통수준

각 고문종류에 대한 지각된 고통수준을 '매우 극심히 고통스러웠음'의 극단점 5,6점에 평정한 참여자들의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가장 낮게는 38.4%(약물강제투여)에서 가장 높게는 92.9%(물고문)의 참여자들이 각 고문유형을 '매우 극심히 고통스러웠음'의 극단편에 평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신체고문 경험이 박탈 및 노출 고문 경험보다 고통스럽게 평정된다는 점을 볼 수 있듯이, 극단편에 편향된 평정 경향성은 지각된 고통수준 척도의 변별력 문제이기 보다는 고문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경험이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려준다(Basoglu 등, 2007).

극단편에 평정한 참여자의 백분율이 90% 이상에 해당되는 경험으로는 물고문과 각목고문(무릎사이에 각목끼우고 밟기)이 있었고, 80% 대에 해당되는 경험으로는 매달기(통닭구이, 비녀꽂기), 송곳찌르기, 온몸구타, 전기고문, 성기고문이 있었으며, 70% 대에 해당되는 경험으로는 잠 안재우기, 억지로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허위자백 강요), 다른 사람의 고문을 목격, 외부인과의 단절, 죽이겠다고 위협이 있었다. 60% 대에 해당되는 경험으로 강간 및 고문 위협, 성적 수치심, 심한 감각적 고통에 노출과 열고문, 의료박탈, 고문가해자의 태도 돌변, 묶여있었음, 가족에 대한 폭력 및 협박, 못 움직이게 함, 독방 감금이 있었다. 이렇듯 신체고문뿐만 아니라 비신체고문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수준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이 나타났다.

신체고문 유형 내에서는 극단편에 평정한 참여자의 백분율이 물고문, 각목고문(무릎사이에 각목끼우고 밟기), 매달기(통닭구이, 비녀꽂기), 송곳찌르기, 온몸구타, 전기고문, 성기고문, 열고문, 따귀때리기, 약물강제투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신체고문 유형 중 심리고문 중에서는 억지로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허위자백 강요), , 다른 사람이 고문당하는 것을 목격, 죽이겠다고 위협, 강간 또는 고문 위협, 성적 수치감, 고문가해

자의 태도 돌변, 가족에 대한 폭력 및 협박, 욕하거나 모욕주기 조롱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탈고문 중에서는 잠 안재우기, 외부인과의 단절, 의료박탈, 독방 감금, 음식 및 물 안주기, 눈가림의 순으로, 노출고문 중에서는 심한 감각적 고통에 노출, 묶여 있었음, 못 움직이게 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② 고문유형에 따른 집단과 변인분석

고문고통은 상호 높은 상관을 보이면서 작용하므로, 개별 경험을 분리하여 분석하기 보다는 신체고문과 비신체고문의 상대적인 가중적 영향력을 살펴보겠다. 그러나 두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신체고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신체고문만 경험한 사람과 비신체고문만 경험한 사람을 이분하기는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가장 높은 빈도로 보고된 신체고문인 온몸구타와 따귀 때리기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자를 세가지 하위 유형, 즉, 비신체고문만을 경험한 집단(n=15)(집단 1), 비신체고문에 더하여 온몸구타 혹은 따귀 때리기를 경험한 집단(n=53) (집단 2), 비신체고문을 경험하고, 온몸구타 및 따귀 때리기를 경험하거나 경험하지 않으면서, 더하여 이외의 심각한 신체고문을 경험한 집단(n=145) (집단 3)으로 구분하였다. 집단 3에는 온몸구타 또는 따귀 때리기에 더하여 하나 이상의 추가적 신체고문을 경험한 자들이 포함되었다. 이 중 온몸구타와 따귀 때리기 둘다 경험하지 않은 자가 3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물고문, 열고문, 매달기 등 심각한 신체고문의 한 가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 2는 낮은 강도의 신체고문 경험집단으로, 집단 3은 높은 강도의 신체고문 경험집단으로 명명될 수 있겠다.

성별, 학력 집단에 따른 고문유형 집단별 비율을 분석하여 표에 제시하였다. 성별 집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높은 강도 신체고문 경험 집단에 해당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학력 집단에 따른 비율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chi^2(2)=1.298$, $p=.523$). 따라서 이후 변인 분석 시에서 성별 변인을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5-37] 고문유형에 따른 집단

	남	여	χ^2	*df*	*p*
비신체고문(집단 내 %)	6(40.0%)	9(60.0%)	27.454*	2	.000
비신체고문 +낮은강도 신체고문(집단 내 %)	40(75.5%)	13(24.5%)			
비신체고문 +높은강도 신체고문(집단 내 %)	131(90.3%)	14(9.7%)			
	고졸이하	대졸이상	χ^2	*df*	*p*
비신체고문(집단 내 %)	5(35.7%)	9(64.3%)	1.298	2	.523
비신체고문 +낮은강도 신체고문(집단 내 %)	16(31.4%)	35(68.6%)			
비신체고문 +높은강도 신체고문(집단 내 %)	58(40.3%)	86(59.7%)			

*기대빈도에 미치지 못하는 셀이 있음.

3)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

고문피해자들이 고문으로 인해 손상 받은 신체적 부위를 조사하였다. 대부분 물리적인 가해를 주로 받기 때문에 타박상위주의 장기의 손상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각 부위의 손상위주로 조사하였다. 또 물리적 고문으로 인한 합병증(2차 손상)도 조사하였다. 그리고 신체부위를 계통적으로 분류하여 사건별·시기별로 손상 받은 신체부위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표5-38]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의 계통적 분류(중복표기)

분류	신체부위
근골격계 부위	목/어깨, 팔/손, 허리, 다리/발
피부 부위	타박상, 자상, 열/전기에 의한 손상
신경계 부위	두통/어지로움, 뇌진탕, 뇌출혈
호흡기계 부위	만성기관지염, 호흡곤란
이비인후과 부위	고막파열, 난청
안과 부위	시력이 나빠짐, 눈이 안보임
비뇨/생식기 부위	항문손상, 성기출혈, 소변보기 어려움, 고환손상

고문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신체적 증상은 붓고 멍든 증상인 타박상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다음으로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였다. 고문으로 인해 손상 받은 신체적 부위는 목, 어깨, 허리, 팔/다리 순이었다.

[표5-39] 사건별 신체손상 유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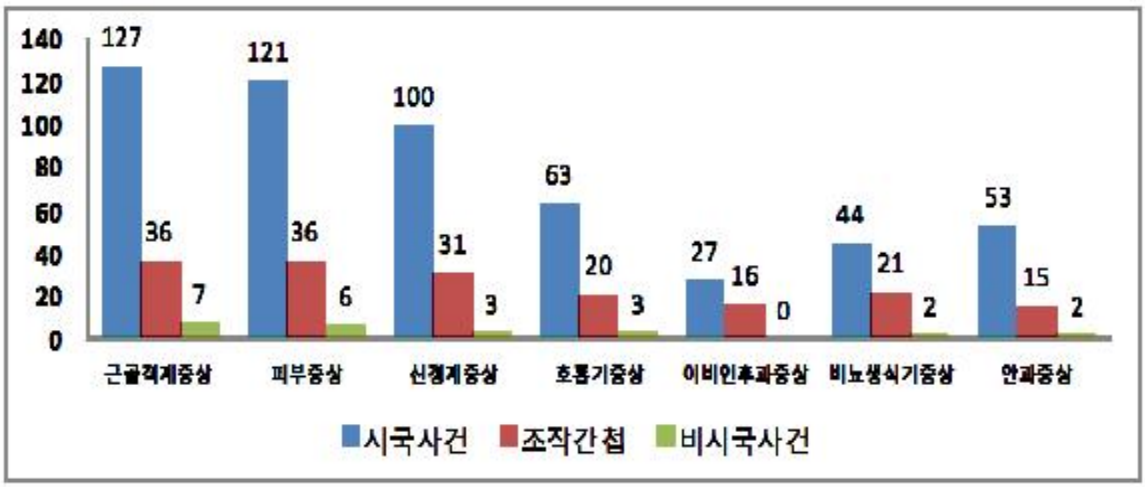
	시국사건(N=163)		조작간첩(N=43)		비 시국사건(N=7)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근골격계 손상						
머리	79(49.3)	81(50.6)	16(37.2)	27(62.7)	4(57.1)	3(42.8)
목과 어깨	70(43.2)	92(56.7)	14(32.5)	29(67.4)	2(28.5)	5(71.4)
팔과 손	80(49.3)	82(50.6)	18(41.8)	25(58.1)	2(28.5)	5(71.4)
허리 부위	70(43.2)	92(56.7)	12(27.9)	31(72.0)	3(42.8)	4(57.1)
다리, 발	79(49.3)	81(50.6)	16(37.2)	27(62.7)	4(57.1)	3(42.8)
피부 손상						
타박상 (붓고 멍듬)	54(33.3)	108(66.6)	8(18.6)	35(81.4)	1(14.2)	6(85.7)
자상 (베인 상처)	146(90.1)	16(9.8)	37(86.0	6(13.9)	7(100)	0(0)
열/전기 손상	154(95.0)	8(4.9)	34(79.0)	9(20.9)	7(100)	0(0)
신경계 손상						
두통, 어지러움	63(38.8)	99(61.1)	12(27.9)	31(72.0)	4(57.1)	3(42.8)
뇌진탕	143(88.2)	19(11.7)	37(86.0)	6(13.9)	6(85.7)	1(14.2)
뇌출혈	158(97.5)	4(2.4)	38(88.3)	5(11.6)	7(100)	0(0)
호흡기계 손상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126(77.7)	36(22.2)	28(65.1)	15(34.8)	5(71.4)	2(28.5)
호흡곤란	107(66.0)	55(33.9)	30(69.7)	13(30.2)	4(57.14)	3(42.8)
안·이비인후계 손상						
소리가 잘 안들림 (고막파열)	135(83.3)	27(16.6)	27(62.7)	16(37.2)	7(100)	0(0)
시력이 나빠짐	110(68.3)	51(31.6)	28(65.1)	15(34.8)	5(71.4)	2(28.5)
눈이 안보임	149(93.1)	11(6.8)	35(81.4)	8(18.6)	7(100)	0(0)
비뇨/생식기 손상						
소변보기 어려움	131(80.6)	31(19.1)	29(67.4)	14(32.5)	5(71.4)	2(28.5)
고환 손상 (남성)	159(98.1)	3(1.8)	40(93.0)	3(6.9)	7(100)	0(0)
항문 손상	149(92.5)	12(7.4)	36(83.7)	7(16.2)	7(100)	0(0)

[표5-40] 신체손상 유형 순위

순위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1	타박상(붓고,멍듬)	타박상(붓고 멍듬)	타박상
2	두통, 어지러움	두통,어지러움	목 어깨
3	허리, 목, 어깨부위통증호소	허리	팔 손
4	머리, 다리, 팔	팔과 손	허리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을 계통적으로 분류해 보았다. 가장 많이 손상을 받은 신체적 손상부위는 근골격계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피부증상, 신경계증상, 호흡기증상 순으로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림5-7] 사건별 신체손상 계통적 분류



사건별로 고문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신체부위에 대해 조사하였다. 시국사건인 경우에 근골격계증상(78.4%)과 피부증상(74.7%)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비뇨생식기 증상, 이비인후과증상, 호흡기증상은 낮게 표시하였다. 조작간첩은 시국사건보다 각 계통적 부위별로 호소하는 비율은 더 높았고, 근골격계증상(83.7%)과 피부증상(83.7%)을 가장 많은 빈도로 호소하였다. 세부사건별로 증상을 호소하는 신체부위를 살펴보아도 근골격계증상과 피부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5-41] 사건별 계통적 신체손상 빈도 명(%)

사건	인원수	근골격계	피부증상	신경계	호흡기	이비인후과	비뇨생식기	안과
시국사건	162(100)	127(78.4)	121(74.7)	100(61.7)	63(38.9)	27(16.7)	12(7.5)	53(32.9)
조작간첩	43(100)	36(83.7)	36(83.7)	31(72.1)	20(46.5)	16(37.2)	7(16.3)	15(34.9)
비시국사건	7(100)	7(100)	6(85.7)	3(42.9)	3(42.9)	0(0)	0(0)	2(28.6)
합 계	212(100)	170(80)	163(76)	134(63)	86(40)	43(20)	19(9)	70(33)

[표5-42] 세부사건별 계통적 신체손상 빈도 명(%)

사건	인원수	근골격계	피부증상	신경계	호흡기	이비인후과	비뇨생식기	안과
정치·재야	51(100)	45(88.2)	43(84.3)	37(72.6)	28(54.9)	11(21.6)	6(12.0)	28(56.0)
노동운동	50(100)	39(78.0)	35(70.0)	34(68.0)	19(38.0)	9(18.0)	3(6.0)	16(32.0)
청년·학생	61(100)	43(70.5)	43(70.5)	29(47.5)	16(26.2)	7(11.5)	3(4.9)	9(14.8)
조작간첩	43(100)	36(83.7)	36(83.7)	31(72.1)	20(46.5)	16(37.2)	7(16.3)	15(34.9)
비시국사건	7(100)	7(100)	6(85.7)	3(42.9)	3(42.9)	0(0)	0(0)	2(28.6)
합계	212(100)	170(80)	163(76)	134(63)	86(40)	43(20)	19(9)	70(33)

시대별로 호소하는 신체부위에 대해 조사하였다. 시대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질환은 근골격계질환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170명(80.1%)이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였고, 다음으로 피부증상을 호소하였다. 피부증상은 붓고 타박상과 같은 고문의 물리적 가해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신경계증상 134명(63.2%). 호흡기증상 86명(40.5%)이 손상을 받았다고 호소하였다.

[표5-43] 시대별 신체손상 유무 명(%)

시 대	인원수	근골격계	피부증상	신경계	호흡기	이비인후과	비뇨생식기	안과
1970년대	64(100)	53(82.8)	50(78.1)	43(67.2)	26(40.6)	18(28.1)	9(14.1)	21(32.8)
1980년대	127(100)	103(81.1)	101(79.5)	81(63.8)	53(41.7)	24(18.9)	9(7.1)	44(34.9)
1990년대	13(100)	7(53.8)	6(46.2)	6(46.2)	4(30.8)	1(7.6)	1(7.6)	3(23.0)
2000년이후	8(100)	7(87.5)	6(75)	4(50)	3(37.5)	0(0)	0(0)	2(25)
합 계	212(100)	170(80.1)	163(76.9)	134(63.2)	86(40.5)	43(20.3)	19(9)	70(33.2)

4. 고문사건 이후의 생활고통 분석

1) 고문 사건 이후의 생활 고통 유형

고문사건 이후의 생활 고통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통유형을 3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3가지로 유형화한 생활고통을 사건별, 시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본 조사 참여자들은 고문사건이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생활고통으로 사회경제적 고통을 꼽았다. 시대별 고문피해자 조사에서도 사회경제적 고통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에서 고통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44] 생활 고통 유형

유형	생활 고통
보안관찰 고통	보안관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지 못함. 보안관찰 때문에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했음. 보안관찰 때문에 경찰서에 자주 가야 하거나 담당형사와 자주 마주쳐야 했음.
사회경제적 고통	경제적으로 어려웠음. 취업에 제한이 있었음. 건강 문제로 생활에 제약이 있었음. 더 이상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없었음.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없었음.
사회적지지 부재	주위 사람들이나 이웃들이 외면하거나 배척하였음. 사건 피해와 관련한 어떠한 도움이나 지원도 받을 수 없었음. 고문경험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음. 고문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음. 친인척들이 외면하거나 배척하였음. 가족들이 외면하였음.(예: 이혼)

시국사건의 경우 사회경제적 고통을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조작간첩 사건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 부재로 인한 고통의 경험을 가장 많이 답했다.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의 경우, 시국사건과 비교해 오히려 사회적 지지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크게 받고 있음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사회·경제적 고통에는 취업 재한과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점, 건강문제로 생활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점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45] 사건별 생활고통 유형 명(%)

	인원수	보안관찰고통	사회경제고통	사회적지지부재
시국사건	158(100)	113(71.5)	146(92.4)	134(84.8)
조작간첩	43(100)	36(90)	39(90.7)	43(100)
비시국사건	6(100)	0(0)	1(16.7)	1(16.7)
합 계	207(100)	149(71.9)	186(89.8)	178(85.9)

결측빈도 = 6

[표5-46] 세부사건별 생활고통 유형 명(%)

	인원수	보안관찰고통	사회경제고통	사회적지지부재
정치·재야	52(100)	42(80.1)	47(90.4)	47(90.4)
노동운동	49(100)	33(67.4)	46(92)	42(84)
청년·학생	57(100)	38(66.7)	53(86.9)	45(73.8)
조작간첩	43(100)	36(90)	39(90.7)	43(100)
비시국사건	6(100)	0(0)	1(16.7)	1(16.7)
합 계	207(100)	149(71.9)	186(89.8)	178(85.9)

결측빈도 = 6

시대별로 보면, 사회경제적 고통은 큰 변화가 없는데 비해, 1980년대 이후 보안관찰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지지의 부재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표5-47] 시대별 생활고통 유형 명(%)

	인원수	보안관찰고통	사회경제고통	사회적지지부재
1970년대	64(100)	55(88.7)	60(93.7)	57(89.1)
1980년대	123(100)	88(71.5)	114(92.6)	112(91.0)
1990년대	13(100)	6(54.6)	11(84.6)	8(61.5)
2000년 이후	6(100)	0(0)	1(16.7)	1(16.7)
합계	207(100)	149(74.8)	186(89.9)	178(85.9)

결측빈도 = 6

2) 고문사건별 생활고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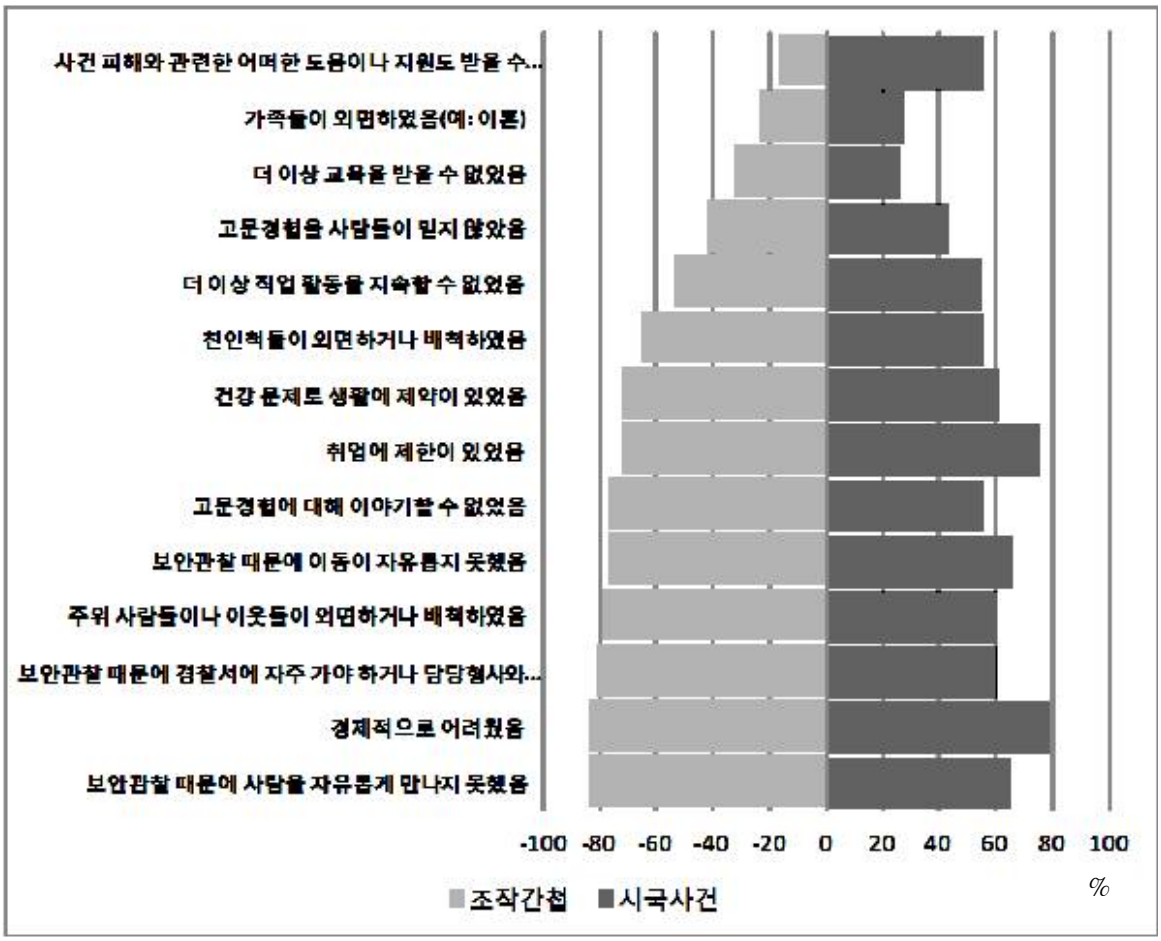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국사건에서 가장 많은 참여자들이 호소한 생활고통은 경제적 어려움, 취업제한문제였고, 다음으로 보안 관찰로 인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조작간첩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은 참여자들이 호소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보안관찰 문제였다.

조작 간첩사건의 경우, 앞서의 사회적지지 부재 응답 비율에 비해 조사참여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문항 배열과 비교 선택지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으로 앞서의 조사결과와 크게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표5-48] 사건별 생활고통 분석 명(%)

	시국사건(163명)		조작간첩(43명)		비시국사건(7명)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보안관찰고통						
보안관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음	55(33.7)	108(66.3)	10(23.3)	33(76.7)	6(100)	0(0)
보안관찰 때문에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했음	57(35.1)	105(64.8)	7(16.2)	36(83.7)	6(2.8)	0(0)
보안관찰 때문에 경찰서에 자주 가야 하거나 담당형사와 자주 마주쳐야 했음	65(40.1)	97(59.88)	8(18.6)	35(81.4)	6(100)	0(0)
사회경제적고통						
취업에 제한이 있었음	39(23.9)	124(76.0)	12(27.9)	31(72.1)	5(83.3)	1(16.5)
경제적으로 어려웠음	34(20.8)	129(79.1)	7(16.2)	36(83.7)	5(83.3)	1(16.5)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없었음	106(65.4)	56(26.54)	29(67.4)	14(32.5)	6(100)	0(0)
더 이상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없었음	74(45.4)	89(54.6)	20(46.5)	23(53.4)	5(83.3)	1(16.5)
사회적지지부재						
주위 사람들이나 이웃들이 외면하거나 배척하였음	64(39.2)	99(60.7)	9(20.9)	34(79.0)	5(83.3)	1(16.5)
친인척들이 외면하거나 배척하였음	73(44.7)	90(55.2)	15(34.8)	28(65.1)	5(83.3)	1(16.6)
가족들이 외면하였음 (예: 이혼)	118(72.8)	44(27.1)	33(76.7)	10(23.2)	6(100)	0(0)
건강 문제로 생활에 제약이 있었음	63(38.6)	100(61.3)	12(27.9)	31(72.0)	5(83.3)	1(16.5)
고문경험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음	92(56.4)	71(43.5)	25(58.1)	18(41.8)	5(83.3)	1(16.5)
고문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음	73(44.7)	90(55.2)	10(23.2)	33(76.7)	6(100)	0(0)
사건 피해와 관련한 어떠한 도움이나 지원도 받을 수 없었음	72(44.4)	90(55.5)	8(18.6)	35(16.5)	6(100)	0(0)

[그림5-8] 사건별 생활고통 개별 분석



3) 생활고통 유형에 따른 지각된 고통 수준과 변인 분석

보안관찰과 관련된 3문항의 지각된 고통수준의 총합을 보안관찰고통 총점으로, 사회경제활동 제한과 관련된 5 문항의 지각된 고통수준의 총합을 사회경제고통 총점으로, 사회적 지지 부재와 관련된 6문항의 지각된 고통수준의 총합을 사회적 지지 부재 총점으로 나타냈다. 총점의 평균(표준편차)을 살펴보았을 때 보안관찰고통은 7.88(±6.31), 사회경제고통은 13.44(±8.73), 사회적 지지 부재는 12.60(±9.84)으로 나타났다.

생활고통에 대하여 성별, 학력, 조작간첩사건 관련 집단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여 표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력집단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고졸이하 학력 집단은 보안관찰고통, 사회경제고통, 사회적지지부재가

모두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작간첩사건 관련 집단과 조작간첩 사건과 무관한 집단을 구분했을 때, 조작간첩사건의 경우 보안관찰고통, 사회적지지부재 수준이 보다 높았다. 사회경제고통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작간첩사건의 경우 보안관찰로 인한 고통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우리 사회에서 '간첩'이라는 낙인이 부과하는 심리적 압박과 사회적 고립이 이렇듯 높은 수준의 사회적지지부재의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따라서 이후 변인 분석 시 학력 및 조작간첩사건과의 관련성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5-49] 생활고통유형에 대한 변인 분석

	남	여	*t*	*df*	*p*
보안관찰고통	8.21(6.24)	6.26(6.50)	1.695	211	.091
사회경제고통	13.51(8.71)	13.08(8.94)	.271	211	.786
사회적지지부재	12.82(10.04)	11.50(8.84)	.733	211	.465
	고졸이하	대졸이상	*t*	*df*	*p*
보안관찰고통	9.40(6.3)	7.04(6.11)	2.675	207	.008
사회경제고통	16.26(8.56)	11.86(8.40)	3.643	207	.000
사회적지지부재	16.09(10.65)	10.55(8.77)	4.081	207	.000
	조작간첩사건 관련	조작간첩사건 무관	*t*	*df*	*p*
보안관찰고통	10.86(5.86)	7.12(6.21)	3.564	211	.000
사회경제고통	14.24(8.05)	13.23(8.90)	.678	211	.498
사회적지지부재	15.50(9.00)	11.87(9.94)	2.180	211	.030

5. 고문사건 이후의 건강 실태

1) 생활습관

고문피해자들의 음주는 전체 응답자 212명중 158명이 음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8명중에는 원래부터 술을 마신경우가 126명이었고, 32명은 사건이 일어난 후 마시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흡연은 전체응답자 212명중 103명이 흡연을 한다고 하였고, 그 중 22명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사건 이후에 피우게 됐다고 응답하였다. 알콜중독 선별결과, 응답자 210명중, 알코올의존성 경향을 보인 경우는 77명(36.6%)으로 나타났다.

[표5-50] 사건별 음주여부 명(%)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원래 안마신다	24(14.8)	11(25.5)	0(0)	35(16.5)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마셨다	96(59.2)	24(55.8)	6(85.7)	126(59.4)
원래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사건이후에 마셨다	26(16.1)	6(13.9)	0(0)	32(15.1)
마셨으나 끊었다	16(9.8)	2(4.6)	1(14.2)	19(8.9)
합 계	162(100)	43(100)	7(100)	212(100)

결측빈도 = 1

[표5-51] 사건별 알코올 의존성 여부 명(%)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알코올 의존에 해당되지 않음	98(61.2)	30(69.7)	5(71.4)	133(63.3)
알코올의존성	62(38.7)	13(30.2)	2(28.5)	77(36.6)
합 계	160(100)	43(100)	7(100)	210(100)

결측빈도 = 3

시대별로 알코올 의존성에 차이가 나는지를 보기위하여 분석을 하였다. 보통 20%정도의 알코올의존성을 보이는데 1980년대 고문피해자들은 40.8%가 알코올의존성이 보였다. 이는 다른 시대 고문피해자들보다 2배정도 높은 수치이다. 전체적으로 1990년대로 오면서 알코올 의존성 경향을 보이는 참여자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52] 시대별 알코올 의존성 여부 명(%)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이후	합 계
의존에 해당되지 않음	43(67.1)	74(59.2)	10(76.9)	6(75.0)	133(63.3)
알코올 의존성	21(32.9)	51(40.8)	3(23.1)	2(25.0)	77(36.7)
합 계	64(100)	125(100)	13(100)	8(100)	210(100)

결측빈도 = 3

[표5-53] 사건별 흡연 여부 명(%)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원래 안피운다	27(16.6)	16(37.2)	0(0)	43(20.2)
사건이일어나기 전부터 담배를피웠다	62(38.2)	14(32.5)	5(71.4)	81(38.2)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나 사건이후에 피우게 되었다	19(11.7)	3(6.9)	0(0)	22(10.3)
피웠으나 끊었다	53(32.7)	10(23.2)	2(28.5)	65(30.6)
합 계	162(100)	43(100)	7(100)	212(100)

결측빈도 = 1

2) 고문피해자들의 질병 진단

조사참여자들의 진단받은 질병을 계통적으로 살펴보면 만성질환, 소화기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순으로 질병을 진단받았다.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으로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된 유병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소화기질환이 2번째로 높은 질환으로 조사되었는데 소화기 질환에는 위·장관질환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높은 유병율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질환은 4번째로 많이 진단받은 질환으로 조사되었는데 고문피해자와 같은 고위험집단에서는 유병율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특이한 점은 질병을 진단받았지만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질환에서 정신질환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2006년 통계청 자료[33]에 의하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정신장애 평생유병율[34]은 연령을 보정한 상태에서 25.7%이고, 성과 연령을 보정한 상태에서 남자가 30.5%이고 여자는 20.5%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본 연구집단과 비교해보면 남자는 38.6% 여자는 30.5% (불면증 제외)로 조사되었고, 이는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남자는 1.26배, 여자는 1.48배 높은 수치이다. [35]

질환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울증은 고문피해자들에서 흔히 보이는 정신질환으로 200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령만을 보정한 상태에서 평생 우울장애 유병율은 5.6%인데 본 조사참여자들의 우울증 진단은 23.1%로 약 4배정도 높게 조사되었다. 조사참여자의 17.9%가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006년 통계청 자료의 6.4%에 비해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조사참여자의 11.3%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는데 2006년 통계청 자료에서 정신분열증 평생 유병율인 0.5%에 비해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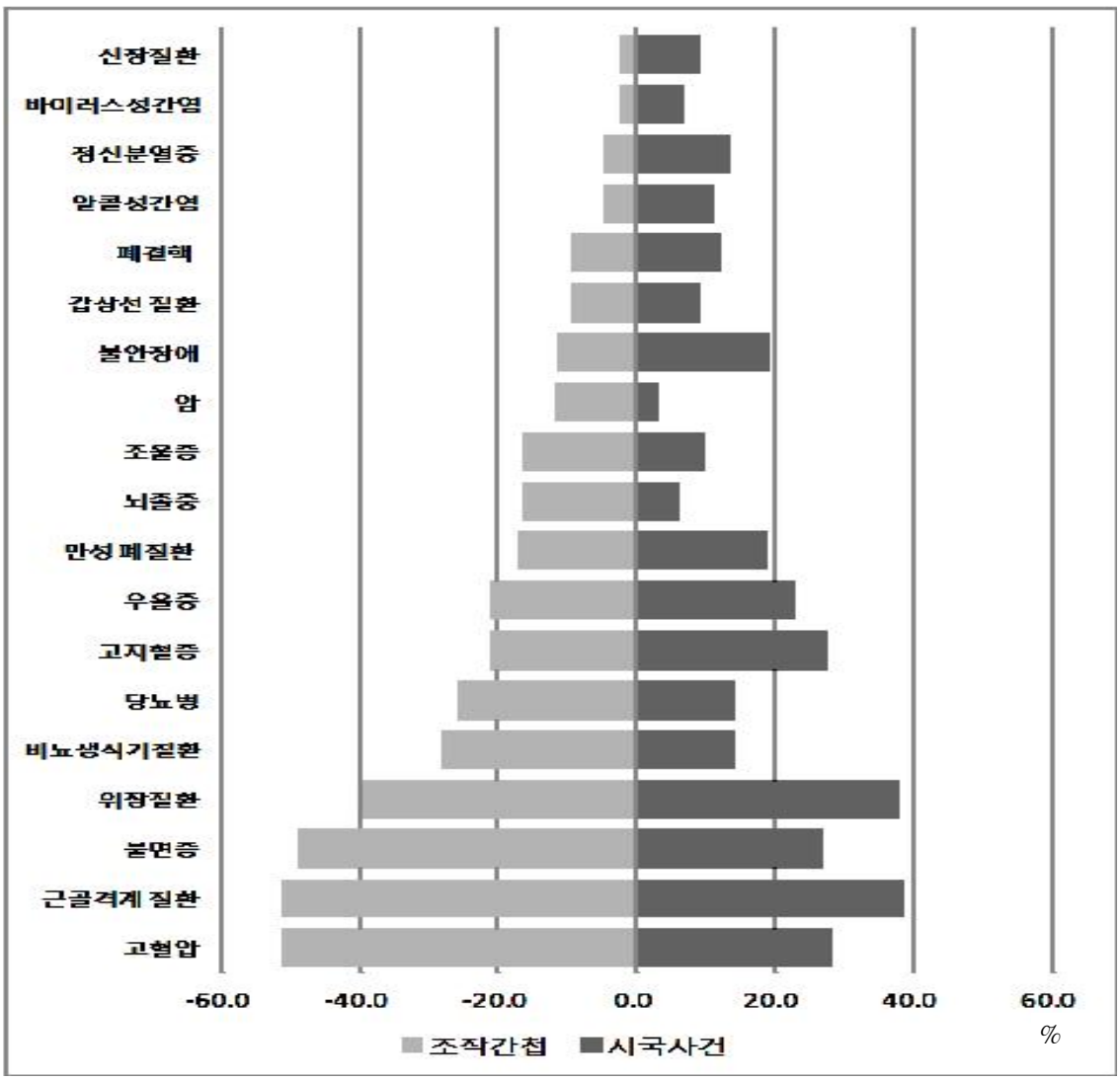
본 조사에서 정신질환은 질병을 진단 받았지만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질환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조사대상자에게 매우 취약한 질환으로 판단되고, 만성질환(고혈압, 당뇨)에 비해서 일반인구집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율을 보이므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3)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모든 정신장애의 범위는 알코올중독, 정신분열, 기분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신체형장애를 포함하고 있다.(니코틴사용장애제외)
34) 평생동안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앓은적이 있는 대상자
35) 본 조사에서는 성별만 보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령까지 보정한 통계청 자료와는 유병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5-54] 고문피해자들이 현재 진단 받은 질병

- 만성질환 :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 호흡기질환 : 만성기관지염, 폐렴
- 소화기질환 : 위·장관질환, 만성간염, 간경변
- 비뇨생식기질환 : 전립선비대증, 신장질환, 부인과질환
- 정신심리질환 :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정신분열, 불면증, 알콜의존증
- 근골격계질환 (척추디스크, 만성관절염)
- 뇌졸중(중풍)
- 갑상선질환
- 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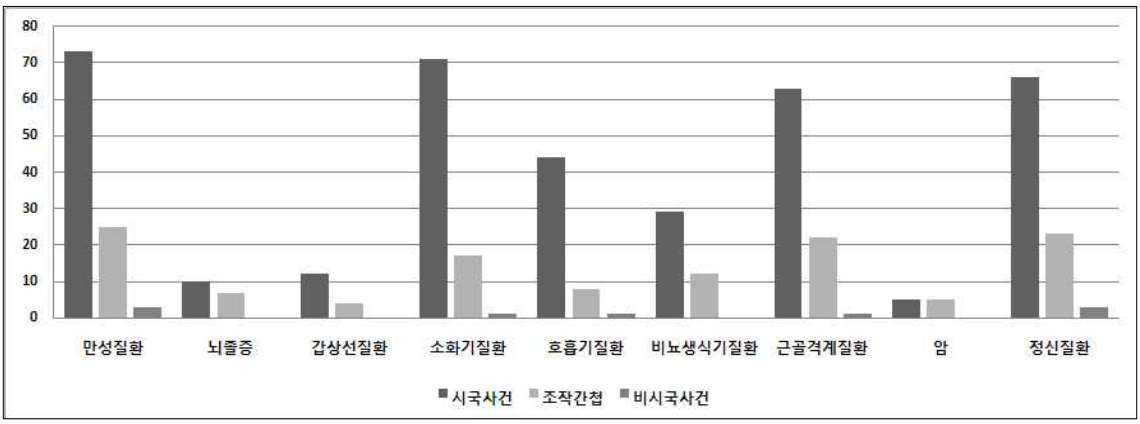
[그림5-9] 사건별 현재 진단 병력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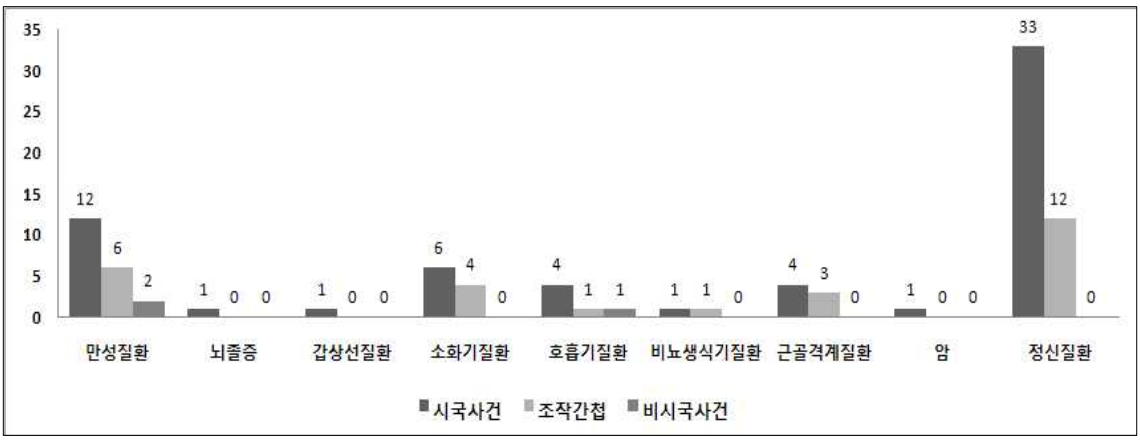
[표5-55] 사건별 현재 진단 병력 빈도 명(%)

	시국사건(63명)		조작간첩(43명)		비시국사건(7명)		합 계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만성질환								
고혈압	117(71.7)	46(28.2)	21(48.8)	22(51.1)	6(85.7)	1(14.2)	144(67.6)	69(32.4)
당뇨병	133(81.6)	30(14.0)	32(74.4)	11(25.5)	7(100)	0(0)	172(80.7)	41(19.3)
고지혈증	118(72.3)	45(27.6)	34(79.0)	9(20.9)	5(71.4)	2(28.5)	157(73.7)	56(26.3)
뇌졸중(중풍)	153(93.8)	10(6.1)	36(83.7)	7(16.2)	7(100)	0(0)	196(92.0)	17(8.0)
갑상선 질환	151(92.6)	12(9.3)	39(18.3)	4(9.3)	7(100)	0(0)	197(92.5)	16(7.5)
호흡기질환								
만성 폐질환	132(80.9)	31(19.0)	37(86.0)	6(16.9)	6(85.7)	1(14.2)	175(82.2)	38(17.8)
폐결핵	143(87.4)	20(12.2)	39(90.7)	4(9.3)	7(100)	0(0)	189(88.7)	24(11.3)
소화기질환								
만성간염, 간경변(바이러스성)	152(93.2)	11(6.7)	42(97.6)	1(2.3)	7(100)	0(0)	201(94.4)	12(5.6)
만성간염, 간경변(알코올성)	145(88.9)	18(11.0)	41(95.3)	2(4.6)	7(100)	0(0)	193(90.6)	20(9.4)
위·십이지장염 또는 궤양	101(61.9)	62(38.0)	26(60.4)	17(39.5)	6(85.7)	1(14.2)	133(62.4)	80(37.6)
비뇨생식기질환								
전립선비대증(남성) 부인과질환(여성)	140(85.8)	23(14.1)	31(72.0)	12(27.9)	7(100)	0(0)	178(83.6)	35(16.4)
만성신장(콩팥)질환 (신부전)	148(90.8)	15(9.2)	42(97.6)	1(2.3)	7(100)	0(0)	197(92.5)	16(7.5)
근골격계 질환	100(61.3)	63(38.6)	21(48.8)	22(51.1)	6(85.7)	1(14.2)	127(59.6)	86(40.4)
암	158(96.9)	5(3.0)	38(88.3)	5(11.6)	7(100)	0(0)	203(95.3)	10(4.7)
정신심리질환								
우울증	125(77.1)	37(22.8)	34(79.0)	9(20.9)	4(57.1)	3(42.8)	163(76.8)	49(23.1)
조울증	146(90.1)	16(9.8)	36(83.7)	7(16.2)	6(85.7)	1(14.2)	188(88.6)	24(11.6)
불안장애/공황장애	131(80.8)	31(19.1)	38(88.3)	5(11.6)	5(71.4)	2(28.5)	174(82.1)	38(17.9)
정신분열증	140(86.4)	22(13.3)	41(95.3)	2(4.6)	7(100)	0(0)	188(88.6)	24(11.3)
불면증	119(73.0)	44(26.9)	22(51.1)	21(48.8)	4(57.1)	3(42.8)	145(68.1)	68(31.9)

[그림5-10] 고문피해자들이 현재 **진단받은** 질병의 계통적 분류



[그림5-11] 질병을 진단 받았으나 **치료 받은 적 없는** 질병의 계통적 분류



조사참여자들 중에서 65세 이상 연령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은 만성질환(61.5%)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근골격계질환(48.7%) 소화기 질환(46.2%) 정신질환(33.3%)[36]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서 질병분포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시국사건인 경우에는 만성질환과 비뇨생식기질환, 정신질환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고, 갑상선질환 소화기질환은 여자가 더 많았다.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의사에게 뇌졸중 진단을 받은 분율은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5.1%이고, 성별(남자)을 보정하고 소득수준을 표준화한 분석에서 소득계층이 '하'인 집단의 뇌졸중 유병율은 6.3%로 조사되었다. 뇌졸중 유병율도 본 집단과 비교해보면 65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뇌졸중의 유병율이 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과 소득수준을 보정한 상태에서는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참여자들의 건강상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위험인자가 높은 집단을 기준으로 삼았다.

36) 통계청의 통계자료에는 정신질환에 불면증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질환에서 불면증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표5-56] 연령에 따른 질병진단 분포 명(%)

	인원수	만성 질환	뇌졸중	갑상선 질환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비뇨생식기 질환	근골격계질환	암	정신 질환
~44세	15	6	1	0	5	3	1	4	0	5
	(100)	(40.0)	(6.7)	(0)	(33.3)	(20.0)	(6.7)	(26.7)	(0)	(33.3)
45~54세	95	37	6	8	39	17	15	33	2	34
	(100)	(39.0)	(6.3)	(8.4)	(41.1)	(17.9)	(15.8)	(34.7)	(2.1)	(36.1)
55~64세	64	34	4	4	27	22	13	30	4	27
	(100)	(53.1)	(6.3)	(6.3)	(42.2)	(34.4)	(20.3)	(46.9)	(6.3)	(42.2)
65세~	39	24	6	4	18	11	12	19	4	13
	(100)	(61.5)	(15.4)	(10.3)	(46.2)	(28.2)	(30.8)	(48.7)	(10.3)	(33.3)
합 계	213	101	17	16	89	53	41	86	10	79
	(100)	(47.4)	(7.9)	(7.5)	(41.7)	(24.8)	(19.2)	(40.3)	(4.6)	(37.2)

[표5-57] 성별에 따른 질병진단 분포 **(남자)** 명(%)

	인원수	만성 질환	뇌졸중	갑상선 질환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비뇨생식기질환	근골격계질환	암	정신 질환
시국사건	130	62	10	8	55	35	24	50	3	50
	(100)	(47.7)	(7.7)	(6.2)	(42.3)	(26.9)	(18.5)	(38.5)	(2.3)	(38.7)
조작간첩	40	23	6	3	16	8	12	20	5	15
	(100)	(57.5)	(15.0)	(7.5)	(40.0)	(20.0)	(30.0)	(50.0)	(12.5)	(37.5)
비시국사건	7	3	0	0	1	1	0	1	0	3
	(100)	(42.9)	(0)	(0)	(14.3)	(14.3)	(0)	(14.3)	(0)	(42.8)
합 계	147	88	16	9	72	44	36	71	8	68
	(100)	(59.8)	(10.8)	(6.1)	(48.9)	(29.9)	(24.4)	(48.2)	(5.4)	(38.6)

[표5-58] 성별에 따른 질병진단 분포 **(여자)** 명(%)

	인원수	만성 질환	뇌졸중	갑상선 질환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비뇨생식기질환	근골격계질환	암	정신 질환
시국 사건	33	11	0	4	16	9	5	13	2	10
	(100)	(33.3)	(0)	(12.1)	(48.5)	(27.3)	(15.2)	(39.4)	(6.1)	(30.3)
조작 간첩	3	2	1	1	1	0	0	2	0	1
	(100)	(66.7)	(33.3)	(33.3)	(33.3)	(0)	(0)	(66.7)	(0)	(33.3)
합 계	36	13	1	5	17	9	5	15	2	11
	(100)	(36.1)	(2.7)	(13.8)	(47.2)	(25.0)	(13.8)	(41.6)	(5.6)	(30.5)

6. 고문사건 이후의 자살시도 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참여자들 중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는 52명으로 총 응답자 중 24.4%를 차지하였다. 시국사건인 경우는 전체 163명중에 34명(20.85%)이 자살을 시도하였고, 조작간첩은 전체 43명중에 17명(39.53%)이 자살을 시도하였다. 조작간첩인 경우가 시국사건인 경우에 비해 자살시도율이 약 20%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자살시도 횟수는 시국사건인 경우는 2~3회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작간첩인 경우는 3~4회 정도가 가장 많았다. 특히 조작간첩사건인 경우는 자살시도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도 2명이 있었다.

[표5-59] 사건별 자살시도 여부 명(%)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있다	34(20.8)	17(39.5)	1(14.2)	52(24.4)
없다	129(79.1)	26(60.4)	6(85.72	161(75.5)
합 계	163(100)	43(100)	7(100)	213(100)

[표5-60] 세부사건별 자살시도 여부 명(%)

	정치·재야	노동운동	청년·학생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있다	21(40.3)	4(8.0)	9(14.8)	17(39.5)	1(14.3)	52(24.4)
없다	31(59.6)	46(92.0)	52(85.3)	26(60.5)	6(85.7)	161(75.5)
합 계	52(100)	50(100)	61(100)	43(100)	7(100)	213(100)

[표5-61] 사건별 자살시도 횟수 명(%)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1회	9(26.4)	3(17.6)	1(100)	13(25.0)
2회	11(32.3)	3(17.6)	0(0)	14(26.9)
3회	7(20.5)	4(23.5)	0(0)	11(21.1)
4회	1(2.9)	4(23.5)	0(0)	5(9.6)
5회	2(5.8)	0(0)	0(0)	2(3.8)
6회	2(5.8)	0(0)	0(0)	2(3.8)
9회	1(2.9)	1(5.8)	0(0)	2(3.8)
10회	1(2.9)	0(0)	0(0)	1(1.9)
수십회	0(0)	2(11.7)	0(0)	2(3.8)

결측빈도 = 161

또한 조사참여자들에게 자살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자살을 계획한 사람의 비율은 시도한 사람의 비율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 이유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과 자살을 계획한 사람이 중복되어 표시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실제적으로 자살을 시도하지 않고 계획만 한 사람은 8명뿐이었다.

[표5-62] 사건별 자살계획 여부 명(%)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있다	32(20.1)	14(32.5)	2(28.5)	48(23)
없다	127(79.8)	29(67.4)	5(71.4)	161(77)
합 계	159(100)	43(100)	7(100)	209(100)

결측빈도 = 4

[표5-63] 사건별 참여자들의 자살계획 횟수 명(%)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1회	8(16.6)	2(4.1)	0(0)	10(20.8)
2회	14(29.1)	5(10.4)	0(0)	19(39.5)
3회	6(12.5)	1(2.1)	2(4.1)	9(18.7)
4회	0(0)	3(6.2)	0(0)	3(6.2)
5회	2(4.1)	0(0)	0(0)	2(4.1)
6회	0(0)	2(4.1)	0(0)	2(4.1)
9회	1(2.1)	1(2.1)	0(0)	2(4.2)
10회	1(2.1)	0(0)	0(0)	1(2.1)
수십회	32(66.6)	14(29.1)	2(4.1)	48(100)

본 연구에서 조사참여자들이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4.4%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 중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적이 있는 분율이 7.6% 인 것에 비해 4배정도 높은 수치이고, 2010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소득수준을 표준화하여 소득수준이 '하'인 계층에서 자살시도율 10.4%인 것에 비하면 2.4배 높은 수치이다. 이렇듯 고문피해자들은 정신질환에 쉽게 이환되기 쉽고 그 결과로 자살시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7. 고문으로 인한 정신심리적 후유증 분석

1) 심리적 후유증 위험군 선별

[표5-64] 고문사건 관련 심리적 후유증 위험군

복합성 외상후 증후군 하위 증상	n	%
부분 PTSD 증상 위험 가능	13	6.1
완전 PTSD 증상 위험 가능	163	76.5
신체화 증상 위험 가능	92	43.2
대인예민성 증상 위험 가능	59	27.7
우울증상 위험 가능	54	25.4
불안증상 위험 가능	68	31.9
적대감증상 위험 가능	59	27.7

참여자들이 보고한 심리적 후유증 중 PTSD, 신체화,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증상 등 복합성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의 하위 증상의 위험 수준을 분석하였다. PTSD증상은 IES-R-K의 부분 PTSD 절단점인 17점과 완전 PTSD 절단점이 24점 기준을 활용하여 위험 가능 집단을 규정하였고, 신체화,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등 SCL-90-R로 측정한 증상의 경우, 각 하위 척도의 총점을 T점수로 환산하여 65T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위험 가능성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완전 PTSD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해당되는 참여자가 163명(76.5%), 부분 PTSD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해당되는 참여자가 13명(6.1%), 신체화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92명(43.2%), 불안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68명(31.9%), 대인예민성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59명(27.7%), 적대감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59명(27.7%), 우울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54명(25.4%)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심 및 보상 집단 구분에 따른 차이 분석

국가기관을 통하여 재조사 신청 후 고문당한 사실을 인정받았다고 보고한 집단과 인정받지 못했다고 보고한 집단 간의 심리 후유증 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모든 증상별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5-65] 고문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심리적 후유증 비교

조사신청 결과	인정 받았다고 보고 (n=67)	인정 받지 못했다고 보고 (n=21)	*t*	*df*	*p*
PTSD증상	49.94(21.73)	45.05(17.89)	.936	86	.352
신체화증상	20.43(11.56)	20.10(11.09)	.115	86	.909
대인예민성증상	13.28(9.20)	10.47(8.31)	1.249	86	.215
우울증상	20.68(13.44)	19.15(13.00)	.457	86	.649
불안증상	14.64(11.26)	13.78(10.23)	.312	86	.756
적대감증상	7.54(6.45)	6.81(7.08)	.441	86	.660
기억증상	28.58(7.77)	26.98(6.35)	.858	86	.393

또한 법원 재판 결과 고문당한 사실을 인정받았다고 보고한 집단과 인정받지 못했다고 보고한 집단의 심리적 후유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신체화 증상에서 두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표5-66] 고문사건 재판 결과에 따른 심리적 후유증 비교

재판결과	인정 받았다고 보고 (n=31)	인정 받지 못했다고 보고 (n=20)	*t*	*df*	*p*
PTSD증상	50.46(19.46)	50.71(22.12)	-.042	49	.967
신체화증상	18.36(9.77)	26.09(12.26)	-2.493	49	.016
대인예민성증상	12.76(8.26)	15.40(8.83)	-1.085	49	.283
우울증상	18.53(12.79)	24.60(14.64)	-1.564	49	.124
불안증상	13.99(11.25)	18.35(11.83)	-1.323	49	.192
적대감증상	6.92(6.17)	9.65(6.50)	-1.513	49	.137
기억증상	27.03(7.21)	31.20(7.26)	-2.013	49	.050

3) 비시국사건과 시국 및 조작간첩사건 집단 구분에 따른 차이 분석

2000년대 이후 비시국사건으로 고문피해를 받은 집단과 70년대 이전에서부터 최근까지 시국사건 및 조작간첩 사건으로 고문피해를 받은 집단을 구분하여 이 두 집단의 고문피해유형을 알아보았다. 비시국사건 고문피해자 중 비신체고문에 더하여 낮은강도의 신체고문을 경험한 집단 2에 포함된 자들은 총 3명이었고, 비신체고문에 더하여 높은강도의 신체고문을 경험한 집단 3에 포함된 자들은 총 4명이었다. 2000년대 이후 비시국사건 고문피해자 모두 비신체고문에 더하여 심각한 신체고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비시국사건 집단과 시국 및 조작간첩 사건 집단의 심리적 후유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비시국사건 피해 집단의 참여자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통계학적 비교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두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을 표에 제시하였다. 두 집단이 보이는 심리적 후유증의 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5-67] 고문사건집단에 따른 심리적 후유증 비교

	비시국 사건 (n=7)		시국 및 조작간첩 사건 (n=206)	
	평균(표준편차)	범위 (최소값-최대값)	평균(표준편차)	범위 (최소값-최대값)
PTSD 증상	56.90(16.03)	43-82	42.15(23.42)	0-88
신체화 증상	18.71(9.38)	6-29	16.89(12.95)	0-48
대인예민성 증상	16.57(5.26)	7-23	10.39(9.20)	0-35
우울 증상	16.86(11.07)	1-35	17.17(14.13)	0-52
불안 증상	12.71(8.04)	1-23	12.80(11.54)	0-40
적대감 증상	6.86(3.76)	0-10	6.79(6.92)	0-24
기억증상	27.43(5.29)	22-37	26.29(8.08)	13-44

4) 조작간첩관련 집단 구분에 따른 차이 분석

조작간첩사건과 관련된 집단과 조작간첩사건과 무관한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두 집단 간 성별, 학력, 고문유형 집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성별 집단에 따른 조작간첩사건 집단에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학력집단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었는데, 고졸이하의 경우 조작간첩관련 집단에 해당되는 비율이 높았다. 고문유형집단에 따른 경향성이 발견되었는데, 높은강도 신체고문을 경험한 집단은 조작간첩사건 집단에 해당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5-68] 조작간첩사건 관련 집단 구분에 따른 비교

	남	여		χ^2	df	p
조작간첩사건 관련(집단내%)	40(93%)	3(7%)		3.778	1	.052
조작간첩사건 무관(집단내%)	137(80.6%)	33(19.4%)				
	고졸이하	대졸이상				
조작간첩사건 관련(집단내%)	25(59.5%)	17(40.5%)		10.551	1	.001
조작간첩사건 무관(집단내%)	54(32.3%)	113(67.7%)				
	비신체고문	비신체고문 +낮은강도 신체고문	비신체고문 +높은강도 신체고문			
조작간첩사건 관련(집단내%)	0(0%)	6(14.0%)	37(86.0%)	8.936*	2	.011
조작간첩사건 무관(집단내%)	15(8.8%)	47(27.6%)	108(63.5%)			

*기대빈도에 미치지 못하는 셀이 있음.

또한 조작간첩사건 집단 구분에 따른 복합성외상후유증 증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PTSD증상과 기억 증상의 경우 조작간첩사건과 관련된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69] 조작간첩사건 관련 집단 구분에 따른 심리적 후유증 비교

	조작간첩사건 관련 (n=43)	조작간첩사건 무관 (n=170)	*t*	*df*	*p*
PTSD 증상	50.77(18.74)	40.58(23.97)	3.000	81*	.004
신체화 증상	18.91(10.36)	16.46(13.37)	1.304	81*	.196
대인예민성 증상	11.14(8.72)	10.46(9.29)	.437	211	.663
우울 증상	18.74(12.13)	16.76(14.46)	.825	211	.410
불안 증상	11.95(9.52)	13.01(11.88)	-.618	79*	.539
적대감 증상	5.94(5.76)	7.01(7.08)	-1.034	77*	.304
기억증상	29.40(7.73)	25.55(7.90)	2.862	211*	.005

*동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5) 심리적 후유증 설명 변인 분석

앞선 분석을 토대로 심리적 후유증을 설명하는데 성별, 학력, 고문유형, 조작간첩사건관련 여부가 중요한 변인이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었다. 또한 고문 사건 이후 생활고통의 설명력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심리적 후유증을 종속변인으로 한 뒤, 단계 1에는 성별과 학력 변인을, 단계 2에서는 비신체고문유형에 더한 낮은강도 신체고문 경험과 높은 강도 신체고문 경험 변인을, 단계 3에서는 조작간첩사건에 따른 집단 구분 변인을, 단계 4에서는 세 유형의 생활고통 변인을 투입하였다. 이에 이전 단계에 투입한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고도 각 단계 변인의 설명력이 유효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PTSD, 신체화, 대인예민성, 우울, 기억문제를 설명하는데 학력, 높은강도 신체고문 경험, 사회적 지지의 부재가 유의미한 예언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고졸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강도의 신체 고문을 겪었다고 보고한 경우, 사회적 지지가 부재했다고 보고한 정도가 높은 경우에 이러한 심리적 후유증 수준이 높았다. 앞선 분석에서 조작간첩사건과 관련된 집단인 경우 PTSD, 기억증상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분석에서 학력과 높은강도의 신체고문경험 여부를 통제한 뒤에는 조작간첩사건 관련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화 증상을 설명하는데는 추가적으로 성별 변인이 유의미하였다. 즉, 여성인 경우 신체화 증상이

보다 높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안증상과 적대감 증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학력, 조작간첩사건에 따른 집단 구분, 사회적 지지 부재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5-70] 심리적 후유증 변인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조정된 R2	F	p	R2 변화량	p	β (4단계)	p (4단계)
PTSD증상	단계1	성별	.122	15.497	.000	.131	.000	.036	.548
		학력						.208	.001
	단계2	낮은강도신체고문	.190	13.224	.000	.075	.000	.143	.184
		높은강도신체고문						.313	.006
	단계3	조작간첩집단	.188	10.622	.000	.001	.540	-.007	.905
	단계4	보안관찰고통	.359	15.568	.000	.176	.000	.077	.298
		사회경제고통						-.081	.345
		사회적지지부재						.458	.000
신체화 증상	단계1	성별	.191	25.628	.000	.199	.000	-.144	.009
		학력						.320	.000
	단계2	낮은강도신체고문	.255	18.780	.000	.070	.000	.126	.205
		높은강도신체고문						.309	.003
	단계3	조작간첩집단	.255	15.219	.000	.004	.323	-.090	.107
	단계4	보안관찰고통	.454	22.654	.000	.203	.000	.001	.983
		사회경제고통						.085	.283
		사회적지지부재						.414	.000
대인예민성 증상	단계1	성별	.062	7.912	.000	.071	.000	-.028	.672
		학력						.184	.006
	단계2	낮은강도신체고문	.096	6.522	.000	.042	.009	.194	.110
		높은강도신체고문						.307	.016
	단계3	조작간첩집단	.097	5.459	.000	.005	.278	-.095	.162
	단계4	보안관찰고통	.194	7.262	.000	.107	.000	-.010	.903
		사회경제고통						.047	.626
		사회적지지부재						.317	.000
우울증상	단계1	성별	.113	14.312	.000	.122	.000	-.084	.168
		학력						.234	.000
	단계2	낮은강도신체고문	.152	10.336	.000	.047	.004	.136	.219
		높은강도신체고문						.254	.029
	단계3	조작간첩집단	.152	8.437	.000	.004	.352	-.096	.120

	단계4	보안관찰고통	.333	13.996	.000	.187	.000	.067	.377
		사회경제고통						.113	.195
		사회적지지부재						.333	.000
불안증상	단계1	성별	.114	14.364	.000	.122	.000	-.103	.078
		학력						.234	.000
	단계2	낮은강도신체고문	.144	9.738	.000	.038	.011	.059	.576
		높은강도신체고문						.198	.074
	단계3	조작간첩집단	.163	9.116	.000	.023	.018	-.181	.002
	단계4	보안관찰고통	.388	17.450	.000	.228	.000	-.007	.924
		사회경제고통						.176	.036
		사회적지지부재						.372	.000
적대감 증상	단계1	성별	.077	9.670	.000	.086	.000	-.034	.593
		학력						.210	.001
	단계2	낮은강도신체고문	.087	5.979	.000	.019	.116	.096	.401
		높은강도신체고문						.178	.139
	단계3	조작간첩집단	.111	6.199	.000	.028	.012	-.195	.003
	단계4	보안관찰고통	.275	10.883	.000	.171	.000	-.032	.682
		사회경제고통						.083	.364
		사회적지지부재						.393	.000
기억증상	단계1	성별	.100	12.603	.000	.109	.000	.020	.714
		학력						.147	.009
	단계2	낮은강도신체고문	.206	14.484	.000	.112	.000	.065	.518
		높은강도신체고문						.309	.004
	단계3	조작간첩집단	.205	11.727	.000	.003	.382	.007	.895
	단계4	보안관찰고통	.441	21.510	.000	.238	.000	.070	.314
		사회경제고통						-.049	.537
		사회적지지부재						.514	.000

요컨대, 본 연구에 참여한 고문피해자 중 PTSD, 신체화,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등 복합외상후유증의 하위 증상별로 위험한 수준에 해당되는 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리적 후유증의 수준은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한 고문 인정이나 법원 재판 결과 고문을 인정받은 바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판에서 인정받은 경우 신체화 증상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정받지 못한 경우 해결되지 못한 정서적 영향력이 신체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주요 복합성 외상후 증상의 개선에서는 조사나 법적 인정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러한 법적 개입 이외의 심리

치료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비시국 사건으로 고문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과거 시국 사건으로 고문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고문피해 유형이나 심리적 후유증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밝혀졌다. 따라서 현재 일어나는 고문 피해에 대해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후유증의 정도를 예언하는 설명변인 분석 결과,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높은 강도의 신체 고문을 경험한 경우, 투옥 이후 사회적 지지가 부족할수록 PTSD, 신체화, 대인예민성, 우울의 심리적 후유증이 보다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작간첩사건에 연루된 경우 PTSD 증상이나 기억증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조작간첩사건에 연루된 집단이 학력이 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높은 강도의 신체고문을 경험한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조작간첩사건과 관련된 경우 학력이 낮고 신체고문의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PTSD와 기억 증상이 심각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신체화 증상의 경우 이에 더하여 여성일수록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과 적대감 증상은 학력이 고졸 이하에 해당되고, 조작간첩사건과 무관할 경우, 사회적 지지의 부재가 심할수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볼 때, 심리적 후유증을 예언하는 설명 변인에 따른 개입 방안을 모색하여 심리적 후유증 완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겠다. 학력이 주요 변인으로 나타난 이유는 고문에 대한 심리적 대비성과 관련되어 보인다. 조작간첩사건인 경우 시국 사건 참여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졸 이상이 우세한 시국사건의 참여자들에 비해서 사회적 신념, 활동에 대한 확신이나 고문에 대한 예상과 같은 심리적 대비성이 낮다는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대졸 이상의 시국사건 참여자들의 경우 고문에 대한 심리적 대비성이 높았으므로 심리적 후유증의 정도가 낮을 수 있겠다. 그러나 고졸 이하의 경우가 더 많았던 비시국 사건이나 조작간첩 사건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대비하지 못한 고문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의 정도가 더 높을 수 있겠다. 따라서 심리교육,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 대한 교육,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교육 등 실질적 외부 지원이 이러한 심리적 대비성의 문제나 사회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한 증상의 악화를 완화시킬 수 있겠다. 또한 높은 강도의 신체고문을 경험한 집단에서 특정 외상 후유증이 높았는데, 따라서 강도 높은 고문 경험 기억에 대한 심리치료적 및 정신과적 개입이 필요하겠다. 이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증거기반[37]의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가 부재한 경우 증상이 보다 악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성이나 고문 경험의 강도와 같은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고도 사회적

37) 특정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된(evidence-based).

지지 부재의 변인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심리적 후유증의 정도를 예측했다는 점이 중요해 보인다. 다시 말해서, 고문 사건이 일어날 당시의 경험이 가혹하였더라도 이후에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었을 경우 증상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고문 피해자를 지원할 때 주변 대인관계, 사회, 국가로부터 고문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도움과 지원을 제공받는 등 사회적 지지가 가능할 경우 후유증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8. 고문피해자 가족의 고통 분석

1) 생활고통 분석

척도를 불완전하게 응답한 2명을 제외하고 총 10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에는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생활고통의 유형으로 사건관련 고통, 사회경제적고통, 사회적지지 부재, 피해자 폭력 악순환 등으로 구성된 13가지의 생활고통을 경험한 참여자의 명수 및 백분율, 이에 대한 주관적 고통감을 5,6의 '매우 극심히 고통스러웠음'에 평정한 참여자의 명수 및 백분율이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사건관련 고통, 사회경제적 고통, 사회적 지지 부재, 피해자 폭력의 악순환 경험을 매우 고통스럽게 지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표5-71] 고문피해자 가족의 생활 고통

		경험있음 n(%)	주관적고통감 5,6 n(%)
사건 관련 고통			
1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나 정보기관, 사법기관에서 취조를 받았음	4(40)	3(75)
2	고문피해 당사자의 고문피해 상태를 목격하였음	4(40)	3(75)
3	고문피해 당사자의 보안관찰로 인한 생활의 제약이 있었음	8(80)	3(37.5)
사회경제적 고통			
4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없었음	4(40)	3(75)
5	더 이상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없었음	4(40)	3(75)

6	취업에 제한이 있었음	6(60)	4(66.6)
7	경제적으로 어려웠음	9(90)	7(77.7)
사회적 지지부재			
8	주변인이나 이웃들이 배타하였음	8(80)	8(100)
9	친인척이 배타하였음	8(80)	6(75)
10	사건피해와관련해국가나사회로부터어떠한도움이나 지원도 받을수 없었음	9(90)	8(88.8)
피해자 폭력의 악순환			
11	고문피해 당사자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음	1(10)	1(100)
12	고문피해 당사자가 성적 폭력을 행사하였음	2(20)	1(50)
13	고문피해 당사자가 언어 폭력을 행하였음	4(40)	4(100)

2) 심리적 후유증 위험군 선별

완전 PTSD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참여자가 전체 10명(100%)이 모두 해당되었다. 가족의 고문피해와 관련된 기억의 재경험 증상이 이들에게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인예민성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5명(50%), 신체화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4명(40%), 적대감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4명(40%), 불안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3명(30%), 우울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3명(30%)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72] 복합성 외상후 증후군 위험도

복합성 외상후 증후군 하위 증상	n	%
완전 PTSD 증상 위험 가능	10	100
신체화 증상 위험 가능	4	40
대인예민성 증상 위험 가능	5	50
우울증상 위험 가능	3	30
불안증상 위험 가능	3	30
적대감증상 위험 가능	4	40

요컨대, 당사자의 고문피해가 가족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전이되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당사자 자신이 가족에게 가해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심리적 후유증의 경우 가족 또한 상당히 높은 비율로 PTSD, 신체화,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증상 등 복합성 외상후유증이 나타났다. 특히 PTSD 증상의 경우 10명 중 10명 모두가 PTSD 증상 위험 가능군에 속하였다. 이는 가족 역시 고문피해 경험에 대한 기억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본 조사 결과 당사자의 피해 경험이 가족에게로 전달되는 전이외상이 드러났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전이 외상에 대한 지원 역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다분해 보인다.

9. 국가구제조치에 대한 만족도

1) 국가 과거사관련기관 조사 신청

법원이 아닌 국가기관에 고문당한 사건을 신청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213명중 93명(43.7%)으로 조사되었다. 시국사건(36.2%)에 비해서 조작간첩 사건에 연루된 참여자의 사건 신청비율은 62.8%로 시국사건에 비하여 2배정도가 더 많았다. 시국사건 고문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곳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44건)이고, 다음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1건)이다. 조작간첩 관련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5건)에 주로 신청하였다. 비시국사건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한해 선별하였기 때문에 이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시국사건 참여자의 63%, 조작간첩 사건 관련 참여자의 37%정도는 고문피해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도 절반 이상(56%)의 참여자가 미신청인들이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고문피해자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노출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도 미신청비율이 이 정도라면 실제 은폐되고 잠재된 고문피해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겠다. 그동안 한시적인 국가 과거사조사기구나 민보상위원회 등에서 고문피해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추가 조사에 대한 잠재적 요구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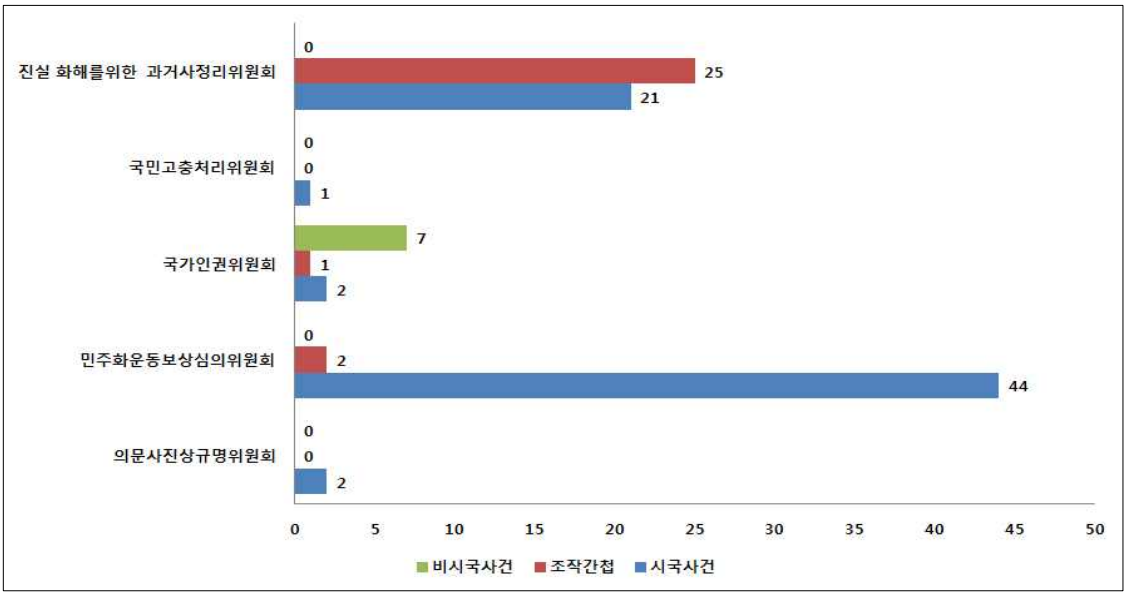
[표5-73] 국가 과거사관련기관에 고문 및 피해조사 신청유무(사건별) 명(%)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있다	59(36.2)	27(62.8)	7(100)	93(43.7)
없다	104(63.8)	16(37.2)	0(0)	120(56.3)
합 계	163(100)	43(100)	7(100)	213(100)

[표5-74] 국가 과거사관련기관에 고문 및 피해조사 신청유무(시대별) 명(%)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이후	합 계
있다	26(40.6)	57(44.5)	3(23.0)	7(87.5)	93(43.7)
없다	38(59.3)	71(55.4)	10(76.9)	1(12.5)	120(56.3)
합 계	64(100)	128(100)	13(100)	8(100)	213(100)

[그림5-12] 고문피해자들이 신청한 국가 과거사관련 기관별 빈도



국가기관에 신청 후 고문당한 사실을 인정받은 비율은 신청경험이 있는 88명중 67명(76.2%)으로 나타났다. 그 중 시국사건인 경우는 40명으로 71.4%를 인정받았고 조작

간첩인 경우는 20명(80%) 비시국사건인 경우는 7명(100%) 모두 인정받았다. 비시국 사건의 경우 인정받은 사례에 한해서 조사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며 실질적인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고문피해 신청자의 70%이상이 고문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지속된 피해자들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의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조사결과로 볼 수 있다.
재조사 신청 후 고문을 인정받은 경우를 시대별로 구분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고문피해를 당한 참여자들은 약 70%정도가 재조사 후 고문을 인정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기관에서의 재조사 결과 고문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비율도 약 23%정도이다. 그러나 고문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해당 사건에서 고문이 없었다거나 피해주장이 거짓이라고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실 우리사회에서는 욕설, 따귀 때리기, 밀실 구금, 얼차려, 외부와의 연락 제한, 기타 가족 협박 등 심리적 고문, 노출고문 등은 고문 유형으로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고문'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은 그동안 고문피해를 조사한 국가 기관에서의 재조사 과정과 판단과정에도 영향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실제 각종 과거사위원회에서 신청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육체적 고통을 느끼고 심리적 강박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호소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나 참고인 진술이 없을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가 없지 않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신청사건은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가 사건 판단의 핵심 기준이었다. 따라서 불법구금 등 재심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고문피해 조사를 아예 시작하지 못하거나 진실규명 결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향후 고문피해조사에서는 고문에 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표5-75] 국가기관 재조사 결과 고문당한 사실 인정여부(사건별) 명(%)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인정받음	40(71.4)	20(80.0)	7(100)	67(76.2)
인정받지 못함	16(28.5)	5(20.0)	0(0)	21(23.8)
합 계	56(100)	25(100)	7(100)	88(100)

결측빈도 = 5

[표5-76] 국가기관 재조사 결과 고문당한 사실 인정여부(시대별) 명(%)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이후	합 계
인정받음	17(70.8)	42(76.3)	1(50.0)	7(100)	67(76.2)
인정받지 못함	7(29.1)	13(23.6)	1(50.0)	0(0)	21(23.8)
합 계	24(100)	55(100)	2(100)	7(100)	88(100)

결측빈도 = 5

국가기관에서의 재조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시국사건인 경우에는 28명(73.6%)이 재조사결과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으며, 조작간첩인 경우에는 2명(10%)이 불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조작간첩의 경우, 재심을 통한 구제 방안이 열려 불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표5-77] 국가기관 재조사 결과에 대한 만족도(사건별) 명(%)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매우불만족	10(26.3)	0(0)	1(14.2)	11(16.9)
불만족	18(47.3)	2(10.0)	1(14.2)	21(32.3)
만족	9(23.6)	11(55.0)	2(28.5)	22(33.8)
매우만족	1(2.6)	7(35.0)	3(42.8)	11(16.9)
합 계	38(100)	20(100)	7(100)	65(100)

결측빈도 = 2

불만족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문피해자들은 고문피해 조사를 국가기관이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조사결과에서 고문인정을 받았더라도 가해자나 국가기관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단순히 돈으로 보상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불만족 한다고 하였다. 완전한 명예회복이 안 되고 있는 점, 낮은 보상금, 조사기구의 한시성을 지적하는 응답도 많았다. 또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고통인데 사후조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만

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5-78] 국가기관 재조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내용

국가기관의 재조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내용

- 국정원과거사위원회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가 자동적으로 진실화해과거사위로 연계 된 관계로, 본 사건은 진실화해과거사위와 관련이 없는 사건이고, 진실화해과거사위는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
- 고문피해보상부족, 기념비적 사업 미시행, 국가의 사과 미시행
- 상이등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보상비를 줄이고자 한 것 같다),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진실위에서 고문관련 조사를 하고 소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했지만 전원위에서 신청자격을 각하하여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순천향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전기물리치료 기억때문에 안한다고 했더니 검사를 안 거쳐서 보상금 지급을 제한함
- 당시 고문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못한 점
- 충분한 명예회복이 되지 않았고,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결여
- 제대로된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음
- 형식적이었고 구속기간에 대한 단순보상이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받았다.
- 고문사실을 국가기관이 매우 불성실, 불친절하게 진행하였고 마치 신청했다가 고문사실이 없다는 판정 통보를 받았을때는 내가 면죄부를 주었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 원인규명과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았고 가해자의 진정성있는 사과도 없었으며, 고문피해자들을 위해 피해보상이 미흡하였음
-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좀 더 정확하고 진실된 조사로 약자라서 당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사건을 해결했으면 한다.
- 명예회복차원에서 상당히 미흡, 보상부분도 불만족스럽다.
- 김영삼 정부시절에 13년 전 사건이라고 하여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개념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건의 개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 매우불만족(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10년간 실사구시적 조사의 완전 부재 하 기각결정, 1심 행정법원 기각주문-기각(2008년), 2심 고등법원기각주문-기각(2011년) 민주화운동의 자기완결적 개념도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도정을 망각한채 국가보안법 판결문만 가지고 법리에 끼워 맞추고 있음

- 불만족(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부분 진실규명결정은 현실적 사건전개와 논리적 사건규명사이에 괴리가 생기면서 일부 진실규명으로 결정 났으나 본인은 애초부터 국가보안법상 무죄이었음
- 진상규명에 어떤 조건이나 정권에 연관되어져서 조사조차도 받을 수 없는 점과 진실이라는 정의가 정치놀음에 휘말리는 코미디 각본 같다는 생각에 분노한다.
- 국가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 같다.
- 민주화운동보상심의원원회에서 보상받은 것은 고통과 후유증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고 돈으로만 받았다는 사실이 불만족스럽다.
- 이적단체인 범민련 관련사건 이라고 하여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음
- 지정병원 선택된 곳에서 장해진단 시 의료진이 불친절하다. 예약은 하고 병원에 갔지만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낸 서류도 보지않고 어떻게 오셨는지 간호원에게 서류요청, 건강상태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엑스레이를 찍고 무릎수술 부위를 대충 검사하였음. 특히 병원의사들에게 민주화관련인식이 매우 부정적임을 느끼고 씁쓸한 마음으로 병원 문을 나설 때 장해진단 시 사설병원이 아닌 국가기관에서 병원을 지정하고 객관적 진단이 되었으면 좋겠음
- 고문피해 조사를 면밀히 수사하지 않았음. 경찰에서도 조사는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
- 세월이 많이 흘러서인지 도무지 인정을 안한다.
- 경기도 부천에서 제과업을 하다가 아버님성묘 차 고향해남에 다녀오던 길에 5·18민주화운동을 만나 부상자 및 사망자를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일을 하다가 서울에서 김대중 선생님 지령을 받고 광주로 내려온 자로 총주동자로 잡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문을 약 40일 동안 받고 1년을 옥중에서 살다 다음해 8·15특사로 석방되어 병원치료비 등으로 가정 형제들을 학업까지 중단시키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음. 보상금은 전두환때 고문후유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던 금액의 10%도 안되는 금액이었음
- 진솔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없는 임시방편적 행정 편의적 조치. 피해당사자들의 현실적 여건을 완전히 간과했음. 보상도 55살까지 호프만식 산재계산방식을 활용함. 다른 국가유공자와 형평성에 차이가 있음. 정치권에서 고문은폐를 조작하거나 악용하려는 현실적 여건상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 80년 5·18당시 군부가 강제로 체포, 연행하여 죄를 만들어 씌우고 마음대로 판결하여 해직시킨 후 강제해직기간의 피해보상을 요청했으나 거절하였음. 거절사유는 사립대학이라는 이유였음
- 인권위원회 조사관이 경찰을 비호하며 사건을 은폐하고 있음
- 나의 정신질환의 원인을 고문으로 인한 것이라고 국가기관에서 인정 혹은 불인정하려는 미온적 태도가 보였기 때문에 억지로 판정을 받는 것 같아서 싫었다.
- 세월이 흐르며 육체적 통증은 경감되지만 정신적 통증은 깊어지고 그로인해 삶 자체가 변하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같은 총체적인 문제를 고려한 배상이 이루어 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인 보상에 그치기 때문에 불만이다.

- 당시 사건 관련자들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수사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함
- 진실위 조사기간 만료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함
- 전임강사 취직을 정보원이 막은 사실 등은 민주화 운동에 인정받지 못했음

2) 법적 구제 신청

고문피해와 관련하여 법원에 피해사실 인정에 관한 신청해 본 경우는 전체응답자 206명중 56명(27.2%)으로 나타났다. 사건범주별로 보면 시국사건이 29명(18.6%), 조작간첩이 23명(53.5%) 비시국사건이 4명(57.1%)을 차지하였다.
고문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 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 동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고문피해와 관련된 재판 신청은 대부분 재심신청과 연관되어 있는데 위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시국사건에 비해 조작간첩 사건에서 재판 신청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작간첩 사건의 경우, 고문을 통한 범죄사실 조작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아 재심신청 비율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5-79] 고문피해와 관련한 재판 신청 경험(사건별) 명(%)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있음	29(18.6)	23(53.5)	4(57.1)	56(27.2)
없음	127(81.4)	20(46.5)	3(42.9)	150(72.8)
합 계	156(100)	43(100)	7(100)	206(100)

[표5-80] 고문피해와 관련한 재판 신청 경험(시대별) 명(%)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이후	합 계
있음	17(27.0)	34(28.0)	1(7.7)	4(50.0)	56(27.2)
없음	46(73.0)	88(72.1)	12(92.3)	4(50.0)	150(72.8)
합 계	63(100)	122(100)	13(100)	8(100)	206(100)

고문피해와 관련하여 법원에 피해사실 인정에 관한 신청 후 고문당한 사실을 인정받은 비율은 답변한 51명중 31명, 약61%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고문사실을 인정받은 경우를 사건 범주별로 보면, 시국사건이 15명(신청 후 55.5% 인정), 조작간첩인 경우는 13명(신청 후 61.9% 인정), 비시국사건이 3명(신청 후 100% 인정)이었다. 이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 고문사건은 평균 60%정도가 인정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0년대 고문피해사건은 3건 모두 인정받았다.

법원에서의 인정 비율은 약 61%로 나타났는데, 고문피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었고, 법원과 검찰이 헌법기관으로서 '인권의 최후 보루', '공익의 대표자'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과거 공권력에 의한 고문피해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판단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과거 시국사건과 간첩조작 사건에서 보여준 사법부와 검찰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고문피해자들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 길이 될 것이다.

[표5-81] 재판 결과 고문당한 사실 인정여부(사건별) 명(%)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인정받음	15(55.5)	13(61.9)	3(100)	31(60.7)
인정받지 못함	12(44.4)	8(38.1)	0(0)	20(39.2)
합 계	27(100)	21(100)	3(100)	51(100)

결측빈도 = 5

[표5-82] 재판 결과 고문당한 사실 인정여부(시대별) 명(%)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이후	합 계
인정받음	9(60.0)	19(57.6)	0(0)	3(100)	31(60.7)
인정받지 못함	6(40.0)	14(42.4)	0(0)	0(0)	20(39.3)
합 계	15(100)	33(100)	0(100)	3(100)	51(100)

결측빈도 = 5

한편, 재판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77.5%가 불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사건 범주별로는 시국사건인 경우 23명(85.1%)이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조작간첩인 경우에는 7명(58.3%)가 불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22.5%만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이 조사 결과는 법원의 인정비율(77.5%)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법원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5-83] 재판 결과에 대한 만족도(사건별) 명(%)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합 계
매우불만족	12(44.4)	1(8.3)	0(0.0)	13(32.5)
불만족	11(40.7)	6(50.0)	1(100)	18(45.0)
만족	3(11.1)	4(33.3)	0(0.0)	7(17.5)
매우만족	1(3.7)	1(8.3)	0(0.0)	2(5.0)
합 계	27(100)	12(100)	1(100)	40(100)

결측빈도 = 16

법원 결정 후 국가구제조치에 대한 불만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에서 인정을 받기위한 처리과정이 너무 길다는 점과 인정을 받은 후에는 국가가 능동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고 개인이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불만족스럽다고 하였다. 또 금전적으로 흥정하려는 자세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수가 불만족 하다고 하였다. 즉 불법구금 일수에 대한 산정 문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

였지만 보상신청금액을 전액 보상하지 않은 점, 타당한 근거없이 보상기산점을 산정하는 점. 단순히 외상, 증상, 구속일수에 의한 보상만 이루어졌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고려가 없이 보상이 결정 난 점 등을 불만족한 이유로 꼽았다.

종합하면, 법원의 고문피해 인정에도 불구하고 구제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불만족의 원인이다. 정당한 배·보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가의 성실하고 능동적이며 포괄적인 피해 보상, 명예회복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법원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5-84〕법원 결정 후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 내용과 불만족 내용

법원 결정 후 국가 구제조치에 대한 불만족 내용

- 보상금 : 당시 학생신분으로 소득증명이 되지 않는 최하위 보상체계였으나 그 이후 취직불가로 인한 보상은 없음 2. 고문에 관한 어떤 피해도 인정되지 않음. 3. 울화로 인한 심리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정신과적 진료 및 사후관리조치가 없음.
- 불법구금기간에 대한 보상이 없음
- 처리과정이 길고, 능동적인보상 및 구제노력이 미흡함.
- 국가측이 계속 상소하여 위자료 지급정지, 계류 중에 있고, 대법원도 위자료, 이자삭감, 판례 불법변경 등의 부정행위를 반복하며 고문피해자의 위자료 액수를 가지고 장사꾼 흥정하듯이 함.
- 직장에 들어가 근무하다가 전과자라고해서 그만 둔적이 있었음. 아들은 군에 입대 못하게함.
-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가 알아서 민사보상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민사보상금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와 막대한 소송비용을 써가며 민사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만족.
- 민사보상금액을 원칙적으로 다 주지 않음.
- 보상금만 인정받고 사건으로부터 무죄판결기간의 이자는 충분히 못 받았다고 생각함.
- 법원에 신청해서 재판을 받았어도 고문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음.
-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다
- 현 정권에 대한 신뢰가 없다
- 현재 재판 진행 중이나 결과에 큰 기대는 하지 않으며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노동운동의 후배에게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내고 싶다
- 형사소송 시 상급자는 서면답변, 말단 경찰들만 법원에 출도하여 사건에 관하여 진술

하고, 검찰측도 피해자편에 서 주는척하면서 정작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고문으로 인한 한 노동자의 삶을 무참히 짓밟혀서 오랜 소송과정으로 인해 피곤에 지쳐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 대법원에서 타당한 근거없이 피해발생시점(보상기산점)을 재심 최종판결일로 잡은점.
- 고문당한 사실을 인정받은 후 그 결과를 근거로 당시 안기부 수사관 2명을 고소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소인(고문수사관)2명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정을 내림.
- 5·18내란 음모죄로 1년11개월 동안 공개수배 되었으나 구속일수만 인정하고 수배기간은 제외했기 때문에 불만족하다.
- 양동사업을 하면서 농림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왔으며 합격해서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면서 농업역군으로 살고자 했지만 고문으로 인한 신체장애 때문에 노동력상실, 사회취업도 제한된 상황에서 실업자로 전락하였다.
- 정부는 진정한 피해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고문 사실을 인정받아야 할 사람은 인정했으면 한다. 그렇지 못하기에 불만족한다.
- 본인은 물론 부모, 형제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혔을 뿐더러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생 고통속에 시달렸지만, 현재 민주유공자가 되었음에도 사글세방을 전전하고 있음.
- 단순한 외상, 증상, 구속일수에 의한 보상은 형식적이며 정신과적질환(예: 외상 후 스트레스) 및 경제적 어려움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법원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

10. 고문피해자 지원에 관한 요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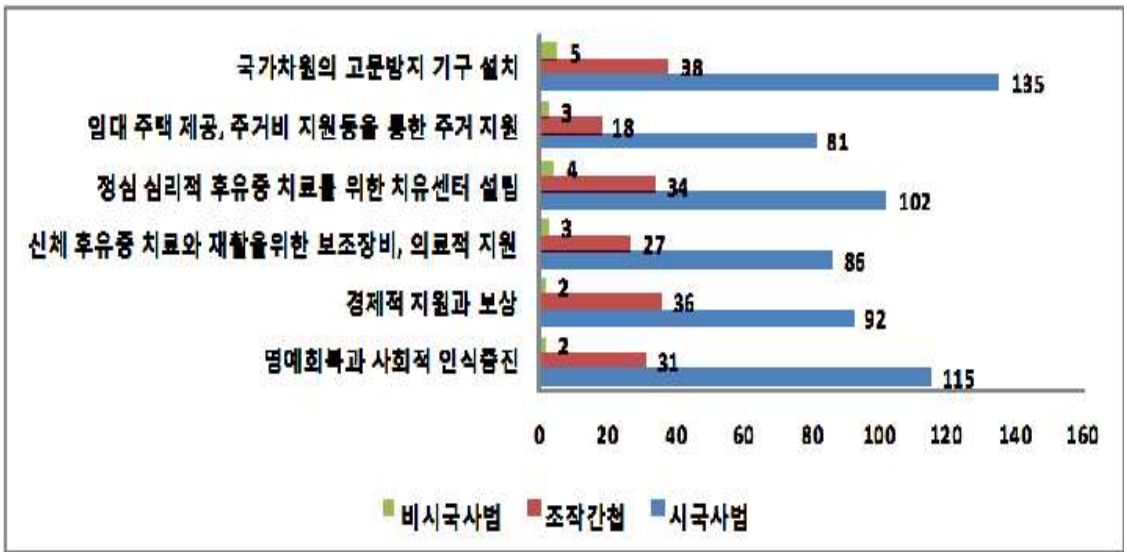
고문피해자들에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각 항목마다 필요없음, 조금 필요함, 필요함, 매우 필요함으로 구분하여 답을 표시 하도록 하였고, 분석결과에는 매우 필요하다에 표시한 응답자를 정리하여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고문피해자들의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국가차원의 고문방지기구 설치가 210명중에 178명(84.7%)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식 증진이 206명중 148명(71.8%), 정신·심리적 후유증치료를 위한 치유센터140명(66.3%), 경제적 지원과 보상 130명(62.8%), 신체후유증 치료와 재활을 위한 보조장비·의료적지원 116명(56.3%), 임대주택제공·주거비지원 102명(49.5%) 순이었다. 이렇듯 국가, 법 제도, 치유 및 재활, 생활과 복지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모두 지원 욕구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5-85] 고문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지원방안

	시국사건	조작간첩	비시국사건	명(%)
명예 회복과 사회적 인식 증진	115(55.8)	31(15.1)	2(0.97)	206(100)
경제적 지원과 보상	92(44.4)	36(17.4)	2(0.97)	207(100)
신체 후유증 치료와 재활을 위한 보조장비, 의료비 지원	86(41.8)	27(13.1)	3(1.5)	206(100)
정신·심리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치유센터 설립	102(48.3)	34(16.1)	4(1.9)	211(100)
임대 주택 제공,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한 주거 지원	81(39.3)	18(8.7)	3(1.5)	206(100)
국가차원의 고문방지 기구 설치	135(64.3)	38(18.1)	5(2.4)	210(100)

[그림5-13] 고문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지원방안



조사참여자들은 고문피해자 지원 방안에서 개인적인 치료나 경제적 지원 보다 국가차원의 대책과 사회적 명예회복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참여자들이 자신들의 고문피해를 대자적으로 인식하는 성숙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조사참여자들의 높은 정신질환 발병율, 자실기도, 알코올 의존 현실을 보여주는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심리적 장애 치료와 재활 대책이 뒤로 미룰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고문피해자 지원방안(아래 표 참조)은 크게 국가 차원의 과제, 법적 제도적 과제, 고문 후유증 치유 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국가 차원의 과제로는 공식적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 고문피해자 실태조사와 사건 추가 조사, 의료보호와 임대주택 등 생활지원, 충분한 배·보상, 인권교육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법적 제도적 과제로는 고문 가해자 처벌의 법적 근거 마련, 사법부 개혁, 고문 근절을 위한 입법, 고문피해자 지원 입법, 고문피해자 재심관련 특별입법, 고문방지 기구와 고문피해자 전담 지원기구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고, 고문 후유증 치유 대책으로는 고문피해자와 가족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전문 치유센터의 건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표5-86] 고문피해자 지원에 관한 요구 사항 내용

고문피해와 관련된 지원방안 요구

- 피해자들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국가가 직접 고문을 자행한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차원애서 경제적지원, 보상, 명예회복, 치유센터건립, 고문방지 기구설치가 필요함
- 고문피해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에서 재조사하고 판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함.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요란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 먼저 본인은 정실질환을 앓고 고생했기에 고문후유증이 치료되길 바란다./ 불법, 은폐의 고문사실이 시한이 넘어도 재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보안사 같은 성역이 지금도 존재하여 20년이 지난 고문 사실을 지금도 은폐, 회피하고 있다. / 고문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 / 가족·친지·친구·지인들이 트라우마에 대해 무지하여 고문피해자로 인해 같이 힘들어하는 관계를 갖게 된다. / 명예도 회복되어야 한다.
- 어떠한 형태로든지 고문은 국가적으로 막아야하고 이전의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문피해자들을 위해 치료하고 재활하여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이 보람과 긍지를 갖게끔 체계적인 국가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은 사람을 매우 황폐하게 한다. 국가기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살수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불한당같은 인간이 국가 지도자가 되어 민주노동자, 민주노조 공장 노동자들을 왜 괴롭혔는가 묻고 싶고 다시는 역사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뿐인 인생이니 노후에 병원치료 혜택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60-70년대 국가정책은 선성장후분배였고 이것이 2011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욱

이 60-70년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빨갱이의 누명을 씌우는 것도 모잘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기본생활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런 노동자들에게 정신적·경제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고문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 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정신적, 육체적 아픔이 치유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
- 고문방지를 위한 체제정비, 고문가해자와 기관에 대한 영구적 제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또 고문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
- 우선 고문방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명확한 선언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의 충실한 실천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과거 고문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 될 경우 민주화 운동 보상에 준하여 그 고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이를 위한 생활 지원이 있어야 한다.
-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한 검·경찰 등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세우고 견제와 감시기구가 있어야한다. 고문관련자들에 대한 추적처벌과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고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위한 예산 및 민·관이 주도하여 만든 고문방지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고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공정사회가 되는 꿈을 꾸며 이땅에 열심히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사는 노동자가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감시·사찰·해고·구속되는 억울한 일이 없으면 좋겠다.
- 관련자들의 관련사건에 대한 충분한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고문을 행한 안기부 수사관들에 대한 처벌 및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 못지않게 명예회복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물적, 정신적 지원방안은 1:1대면을 통해 피해상황을 기록·정리한 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문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기구나 방지센터가 필요하다.
- 무엇보다도 억울하게 누명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다.
- 의료보호, 임대주택지원 필요
- 고문피해자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법의 누명을 쓴 멍에 이다. 형사 소송법 목적이 백사람을 처벌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누명에서 구제해주는 것에 있음을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
- 가해자들의 진정한 자기과오의 인정과 사심 없는 사과가 필요하다.
- 고문자해자들이 사회에서 지위 때문에 고문피해자들만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고문가해자들이 사건과 관련하여 무처벌, 비밀유지 전제하에 자수기간을 법률적으로 선정해 이들로부터 고문사실을 근거로 그 피해자들이 재심을 받을수 있는 제도 및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 고문피해자들의 심적 고통과 일반인의 고문인식(인권인식)간극해소가 필요하다.
- 고문관련 피해는 일반 정신병환자와는 다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문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 일반 정신과 약물치료나 진료내용으로는 오히려 약물에 대한 중독성만 더 키워갈 뿐,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육체적 정신적 영적 치유가 필요할 뿐더러 고문 가해자들의 사과 및 처벌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정상치유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한 시대를 온몸으로 희생하며 살았던 삶이 현재에는 무능력자로 전락되어 그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 고문과 그 후유증은 일반적인 생활방식과 인생의 진로를 뒤틀어 놓기에 항상 불안정한 상태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적응력부재와 경제적 활동 위축, 자신감 결여 등을 치유하여 인간본연의 복된 가치와 삶을 회복하여한다.
- 고문피해자와 피해정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고, 치료 및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
- 정신적 치료가 가장필요하다. 현재 사회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자주 접한다. 주변사람들을 대할 때 단순히 성격이 안 좋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보면 성격이 안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울화가 있어서 그것이 자주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을 느낀다.
- 정부가 합당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해줘야 할 것이다. 현정부들이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다.
- 경제적지원-재산형성상 피해보상청구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가에서 고문피해에 따른 연금지급이 있어야 한다.
- 사회적 지위보장-사건의 조작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를 상실했을 경우 그 지위를 다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
-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도의 차이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고문은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하다. 특히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문피해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 국가 혹은 비영리 단체에서 고문피해자에 대해 치료와 치유, 요양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고문가해자에 대해 법에 근거한 처벌이 필요하다.
- 고문후유증에 대한 치료기관, 요양시설기관필요 및 경제적 지원 필요
- 고문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신적·물질적 배상이 이뤄져야 만이 정부기관에서 고문을 생각하지 못 할 것이다. 기관원의 생각 없는 고문행위가 엄청난 경제적(세금)손실을 야기 한다면 정부차원에서 막을게 아닌가? 피해자에 대

한 지원은 정신적후유증치료가 가장 시급하고 더불어 고문에 의한 가정파탄이나 기타 무혐의에 대한 완벽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됨

- 본인은 5·18 민주화 운동 관련으로 고문을 받았기에 다시는 5·18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본인과 같이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한 치유센터 건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빈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함.
- 명예회복과 경제적보상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인정한 유공자예우를 확실히 해줬으면 한다.
- 제도적으로 고문을 근절할수 있는 시스템과 법률을 완비하고 실천해야함
- 고문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고문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보상과 민사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국가가 법적·제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보상과 배상은 현실적 여건에 맞춰서 피해당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한다.
- 명예회복과 경제적보상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인정한 유공자예우를 확실히 해줬으면 한다.
- 제도적으로 고문을 근절 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률을 완비하고 실천해야함. 고문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고문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보상과 민사배상을 국가가 법적, 제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보상과 배상은 현실적 여건에 맞춰서 피해당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한다. 피해자의 명예회복은 국가의 책임이다. 상응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
- 국가로부터 받은 고문피해에 대하여는 시간이 흘러도 국가가 책임지고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위로가 필요하며 고문방지법제정과 고문피해자치유센터 같은 시설을 만들어 사후관리도 했으면 좋겠다.
- 우선 국가에서 각 고문 피해자에게 사과를 정중히 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폭력이 잘못되었다는 유·무형의 표시를 함으로 고문피해자에 대한 시각을 환기시켜줄 필요가 있다.
-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모아 고문 및 인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제제 법안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육과정에 그러한 사례 및 시대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국가차원의 고문방지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조사도 민간특별기구를 설치해서 조사했으면 한다. 또한 재정적 보상보다는 복지·재활 기능을 확대하고 의료복지를 중점으로 시행하면 좋겠다.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홍보, 교육도 필요하다.
- 고문을 당한 사람은 신고하라는 문구를 모든 경찰서의 사무실, 조사실등 모든 방에 의

무적으로 붙이도록 법을 정하고, 고문을 한 사람을 파면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또 학생들에게는 독재 정권하에서 고문,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는 넓은 의미의 고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넣을 것. 신체적 치료는 물론이고 심리적 치료를 하여 고문후유증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 신체적, 정신적후유증을 치료해 줄수 있는 기구의 설립,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자식, 부모가 정신적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가족에게 까지 치료의 손실이 미쳐야 한다.
- 고문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치료가 제공되어야한다. 아울러 정상적으로 사회, 경제활동이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 폭행과 막무가내식의 폭언 및 폭행부터 근절 되어여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범죄자일지라도 그가 확실히 법의 판결을 받기 이전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법에 의한 처벌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내에서 허위자백, 가족협박등의 문제가 근절되어야 한다.
- 설사 폭언과 같은 아무리 가벼운 고문일지라도 고문은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과 활동을 위축시키며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문가해자들을 처리하는 방식은 국가운영과 사회의 수준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문피해와 관련된 일들을 전담하는 기구와 사람이 필요합니다. 고문피해에 대한 경제적, 의료적 보상도 당연히 이루어져야만,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 사회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장. 고문피해자 심층면접조사 결과

1절.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선정과 구성

1. 참여자 선정

고문피해 경험을 가장 잘 기술할 수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목적적 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심리사회적 후유증이 높은 참여자를 선별하였다. 양적조사 질문지의 심리적 후유증 측정에서 PTSD 증상을 측정하는 IES-K-R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거나, 양적조사 실시 도중 조사원에게 과거 자살시도의 경험, 사회생활 및 대인/가족관계의 어려움을 보고한 경우 등이 이에 속했다. 이들 중 심층면담에 동의한 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중간분석 단계에서 이론적 포화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고, 표본 편향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별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에 극심한 심리사회적 후유증을 극복한 고문 생존자와 비시국사건 고문피해자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문 후유증을 회복하는 과정에 놓인 고문 생존자는 회복과 치유의 과정에서 체험하는 경험에 대한 기술을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포함하였다. 이들은 고문피해 경험에 대해 좋은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에 따라 네트워크 표출 방법을 바탕으로 선별하였다. 또한 설문 및 심층 조사 대부분이 과거 시국 사건 피해자라는 점에서 이들 시국 사건 피해자와의 경험 차이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비시국사건과 관련된 자를 선별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문을 인정한 결정례 중에서 2000년 이후 비시국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구치소, 교도소 수감 중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론적 포화를 이루었다고 판단하여 모집을 중단하였으며 이에 총 24명의 참여자의 심층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참여자 구성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이 18명, 여성 6명이었다. 연령대는 7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범위를 보였다. 시국사건관련 참여자는 20명, 비시국사건관련 참여자는 4명이었다. 시국사건의 경우 70년대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조작간첩사건, 노동운동, 정치재야운

동, 학생운동, 농민운동, 통일운동 등 여러 사건과 관련된 참여자들이 포함되었다. 비시국사건과 관련해서는 최근 2000년대에 고문피해를 경험한 자들로 구성되었다.

[표6-1]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성별	연령대	사건시기(년대)	관련사건
1	남	70대	1970	조작간첩
2	남	70대	1970	조작간첩
3	남	60대	1980	조작간첩
4	남	60대	1980	조작간첩
5	남	70대	1980	정치재야, 농민, 통일 운동
6	남	50대	1980	정치재야
7	남	60대	1980	빈민 운동
8	여	60대	1970,1980	노동,교육 운동
9	여	70대	1980	노동 운동
10	여	70대	1980	노동 운동
11	여	50대	1980	노동 운동
12	남	50대	1980	정치재야, 노동, 학생, 통일 운동
13	남	40대	1990	노동 운동
14	남	50대	1970	학생 운동
15	여	50대	1970	학생 운동
16	남	40대	1980	학생 운동
17	여	40대	1980	학생 운동
18	남	30대	1990	학생 운동
19	남	40대	1980	학생 운동
20	남	50대	1980	정치재야
21	남	40대	2000	비시국사건
22	남	30대	2000	비시국사건
23	남	30대	2000	비시국사건
24	남	30대	2000	비시국사건

2절. 심층면접조사 도구와 진행과정

1. 심층조사 과정 및 자료수집

1) 도구

MINI-국제 신경정신과적 진단도구(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정신장애진단통계편람-IV(DSM-IV)과 국제질병분류-10(ICD-10)의 정신과적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구조화된 진단 면접 도구로서 Sheehan 등(1998)이 개발하였다.

다차원적 외상 회복 및 심리자원-인터뷰(Multidimensional Trauma Recovery and Resiliency-Interview):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치료적 경험을 받지 못한 생존자들의 인생사와 언어표현을 얻기 위한 반구조화된 면접 도구로서 외상의 심리적 영향력과 회복 및 치유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Harvey et al., 2003). MTRR-I는 광범위하고 개방되어 있으며 참여자의 대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생이야기를 구술하도록 반구조화되어 있으므로 심층면접 자료 수집의 틀로서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진행과정

심층면접을 위해 정신과적 진단, 외상성 후유증에 관한 진단 및 치료의 경험이 풍부한 임상심리학자 2인과 정신과 전문의 1인이 면접 도구를 활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MINI 면담을 통해 고문이후 발생한 정신과적 장애의 유병률 및 현재 유병률을 조사하였다. 또한 MTRR-I를 바탕으로 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참여자의 인생사 내러티브를 수집하여 고문 이전의 삶과 고문 이후 변화된 삶의 양상, 고문피해와 관련된 심리적 후유증 및 핵심 정서의 작동 양상, 피해극복을 위해 요구되는 심리내적 자원, 피해자가 요구하는 외부 지원책 등 광범위한 질적 자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담자는 참여자와 일대일로 만나서 약 3-4시간 동안 MTRR-I와 MINI를 활용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참여자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해 비밀이 보장되는 조용하고 밝은 상담실에서 진행이 되었다. 일부 먼거리 참여자들의 경우 면담자가 참여자의 지역에 직접 방문하였으며, 면담은 참여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련 인권 기관의 비밀이 보장되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면담자와 일대일로 진행되었다. 비시국사건 피해자의 경우 참여자가 수감된 구치소로 면담자가 방문하였고, 구치소의 방문 절차에 따라 면담을 시작하였다. 면담은 구치소 내의 별도 공간에서 진행이 되었고, 구치소 관련자가 부재한 자리에서 면담자와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자는 참여자에게 본 면담이 설문조사에 이어 실시되는 고문피해자 인권실태조사의 일부로서 고문 피해자의 자서전적 인생 이야기를 경청하고 고문피해 극복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설명하였다. 우선 참여자에게 면담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뒤, 녹음이나 비밀보장에 관한 설명이 기록된 동의서에 동의를 구하였고, 이후 녹음기를 작동하여 MTRR-I와 MINI에 따른 면담을 시작하였다.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담자는 참여

자의 보고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3) 분석방법

MINI 진단을 통해 고문이후 시점으로부터 평생 유병률과 면담 진행 시점의 현재 유병률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병진단에 포함된 장애들과 해당 명수를 분석하였다. MINI 면담을 통하여 고문사건이 야기한 정신과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진단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MTRR-I의 심층면담 자료는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Colaizzi의 방법은 인본주의 심리학을 배경으로 고통에 던져진 참여자의 내적 경험을 참여자의 관점과 언어를 통해 이해하는데 적합하며 참여자 전체의 공통적인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참여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전체의 의미를 드러내어 고문피해자 중심의 피해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밝히는 것이 가능하다. 정신과적 진단 분석은 외부적 전문가의 입장에서 참여자의 체험을 규정하며 따라서 참여자가 치료 주체로 놓일 수 없다. 이는 참여자에게 통제권을 박탈하고 무력화시켜 참여자는 또 다시 수동적인 피해자 입장에 처하게 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현상학적 분석은 참여자 자신이 자신의 경험을 개념화한 이해의 틀을 존중하여, 참여자가 곧 치료 주체가 되도록 한다. 자신의 경험을 직접 의미부여하고 실존적 함의를 모색한다는 것은 내담자가 주도하는 회복과 성장의 기반으로서 이것이 곧 역경 후 회복과 성장의 기본 바탕이다(Tedeschi & Calhoun, 2004). 이에 면담자는 참여자가 최대한 자신이 이해한 자신의 인생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감적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면담 이후 개별 면담자는 자신의 면담내용을 각자 녹취하여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일차적으로 의미있는 서술을 추출하였다. 각 서술에 대한 의미를 결정한 뒤 심층조사를 총괄하는 임상심리학자와 의미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반복적인 확인절차 및 토론을 거치면서 의미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주제로 조직화하였다. 각 의미의 차이점과 유사점, 관계의 비교가 조직화의 바탕이 되었으며, 이를 통합하여 주제 묶음과 범주 바탕으로 현상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였다. 분석자는 전문적 용어나 이론적 이해의 틀을 걸러내고자 괄호치기를 거듭하여 고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최대한 참여자와의 대화상의 맥락과 과정을 고려하여 이들 언어표현 속에서 현상의 의미와 개념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 결과를 전체 연구진과 자문위원의 검토를 바탕으로 타당화하였다.

3절. 심층면접조사 결과

1. 정신과적 진단결과

표에는 각 축 I 장애 및 축 I에 해당되는 수준은 아니나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증상과 이에 해당되는 참여자의 명수와 백분율이 제시되었다. 과거에 고문과 관련된 축 I 장애가 없었던 자는 2명(8.33%), 현재 고문 관련 축 I 장애가 없는 자는 3명(12.5%)이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유의미한 증상(정서조절문제 혹은 강박 증상)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6-2 〕MINI진단 결과

	축 I 장애 및 기타 유의미한 증상	n(%-중복진단)
과거 진단(고문사건이후로부터)		
축 I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9(37.5)
	적응장애	4(16.6)
	주요우울장애	8(33.3)
	기분부전장애	3(12.5)
	공황장애	4(16.6)
	물질관련장애	6(25)
	해리성 장애	1(4.1)
	정신증적 장애	1(4.1)
축 I 장애 외의 유의미한 증상	정서조절문제(억압된 분노)	2(8.3)
	강박증상	1(4.1)
	고문관련 과거 축 I 진단이 발견되지 않는 참여자	2(8.3)
현재 진단 (면담실시 시점)		
축 I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8(33.3)
	적응장애	3(12.5)
	주요우울장애	4(16.6)
	기분부전장애	6(25)
	범불안장애	1(4.1)
	공황장애	2(8.3)
	물질관련장애	5(20.8)
	수면장애	2(8.3)
	정신증적 장애	1(4.1)
축 I 장애 외의 유의미한 증상	정서조절문제(억압된 분노)	3(12.5)
	강박증상	2(8.3)
	고문관련 현재 축 I 진단이 발견되지 않는 참여자	3(12.5)

공병 진단[38]에 관한 표를 제시하였다. 공병진단을 살펴봤을 때 과거 진단 중 4개의 공병진단이 있는 자가 1명, 3개의 공병진단이 있는 자가 3명, 2개의 공병진단이 있는 자가 5명이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주요우울장애 및 기분부전장애), 공황장애, 물질관련장애가 공병진단에 해당되는 주요 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단에서 3개의 공병진단이 있는 자가 3명, 2개의 공병진단이 있는 자가 5명이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공황장애, 물질관련장애, 수면장애가 공병진단에 해당되는 주요 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대부부분 하나 이상의 공병진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병진단의 조합과 해당 명수가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6-3］공병진단

	공병진단	n
과거진단	적응장애 + 우울장애 + 물질관련장애 + 해리성장애	1
(고문 사건	PTSD + 우울장애 + 공황장애	1
이후로부터	PTSD + 우울장애 + 물질관련장애	1
과거 시점)	PTSD + 공황장애 + 물질관련장애	1
	PTSD + 우울장애	3
	PTSD + 물질관련장애	1
	우울장애 + 공황장애	1
현재 진단	PTSD + 우울장애 + 공황장애	1
(면담 실시	PTSD + 물질관련장애 + 수면장애	1
시점)	범불안장애 + 수면장애 + 물질관련장애	1
	PTSD + 우울장애	3
	PTSD + 물질관련장애	1
	공황장애 + 물질관련장애	1

38) 정신과적 진단이 두 개 이상인 경우

2. 심층 면담의 현상학적 분석

현상학적 질적분석을 바탕으로 PTSD라는 서구의 정신병리학 개념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고문에 대한 참여자 개개인의 복잡한 체험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같은 문화권 내의 연구자들이었기에 가능한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 고문피해자의 경험을 이들의 언어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본 분석은 개인의 경험을 병리화하거나 피해자들을 치료 대상으로 삼으려는 관점에서 벗어나 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체험하고 해석하고 의미화할 수 있는 주체라는 치료적 입장을 실현하였다.

참여자들의 고문경험과 삶이라는 체험의 진술들은 21개의 주제묶음과 6개의 범주로 개념화되었다. 6개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고통의 시작점으로서 고문경험, (2) 고통의 끝없는 반복과 악순환, (3) 타인/외부세계와 단절되고 내면으로 고립, (4) 불의에 대한 분노와 한맺힌 개인삶, (5) 생, 관계, 존재의 상실, (6) 통합, 수용, 이해, 정의회복을 통한 나아감.

진술자를 밝히는 익명의 알파벳은 무작위로 할당한 것이며 특정 이니셜과 무관함을 밝힌다.

1) 고통의 시작점으로서 고문경험

고통의 시작점으로서의 고문경험이라는 범주는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폭력과 심리적 조정, 인간 정체성 유린, 인간에 대한 신념 변형, 굴복과 저항*이라는 4가지 주제묶음으로 구성되었다.

①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폭력과 심리적 조정

고문은 인간의 예측을 넘어섰고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었던 가혹함 그 자체였다. 특히 자기 삶에서 고문피해가 일어나리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 심리적 충격은 더욱 심각하였다. 고문 경험은 '무작정 잡아와가지고 때린다'거나 '어처구니 없는 죄목으로 말도 안되게' 혹은 '잠깐 가시면 된다고', '거짓말로 꾀어내져' 시작되었다. 70대

여성 E씨가 끌려간 경험에 의하면,

"젊은 청년 2명이 **이네 집이 맞나 묻고 물어볼 애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잠깐 가시면 된다 해서 슬리퍼 신은 대로 월남치마 입은 대로 위에 남방 하나 입은 대로 그러고 갔지. 경찰서에 들어가니까 캄캄한데 대번 다짜고짜 귀때기를 왕복으로 5-6대 때리고 그러니 볼이 이만해. 그래 내가 '이유나 알고 맞읍시다. 무슨 이유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다짜고짜 때리는 겁니까' 하니까 '이게 말빨이 좋다'며 더 때리더라고."

물론 사회운동가로서 고문을 당할 수 있다는 예측을 미리 했던 참여자도 있었다. 이렇듯 예상된 상황이었을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비해서 심리적 충격은 덜 했다. 그러나 특정 유형의 고문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각오 속에서 느끼는 사전의 공포감이 선명하였다. 50대 여성 Z씨가 그러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힘든. 잡혀갔을 때 뭐가 기다리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 막연하게 공포감은 있죠. 선배들 이야기 속에서 감옥이 어떻다는 말은 들었지만, 잡혀가서 죽기야 하겠나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굉장히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있었죠."

고문은 몸을 통제할 수 없는 체험이었다. 고문은 '아 이러다 사람이 죽는구나'하는 생각이 스쳐갈 정도로, '살려주시오'하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올 정도로 가혹하였다. 70대 남성 C씨의 경험이 그러했다.

"40분 동안을 20명한테 군화로 맞았어요. 살아남으면 또 물 끼얹고. 수갑은 있는 대로 다 이빨을 누르면 여기가(팔목) 새까매요. 피가 안 통하니까. 포승줄을 막 발목하고 허리로 뒤에서 막 동긍동글 만들어놓고 뒤에서 발로 차고. 공수부대 빠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잡고 막 관절 마디마디를 찍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찍는데 나도 모르게 '살려주시오' 소리가 나와. 그런 꼴을 당했어요. ... 너는 공산당 악질이니까 총탄이 아깝다. 그러면서 밟아버리고."

신체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었다. 묶여있거나 눈이 가려진 등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을 물론, 저항할수록 더 큰 폭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통제란 불가능하였다. 40대 남성 J씨의 이야기이다.

"눈을 가리고 어디론가 가는데 계속 방향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하다가 마지막에는 나를 몇 바퀴 돌리니까 정말 방향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러니까 거기가 보통이 아닌 데구나 하면서 무섭긴 했다. ... 취조를 하는데 누군가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사람이 육감이 있지 않나? 취조하는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날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것. 그래서 좀 무서웠어. 그런데 질문에 내가 뭔가 좀 생각을 하거나 대답이 늦어지면 바로 내 뒤에서 주먹이 날아 왔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내가 대답을 잘 못하면 때리는 것은 무서운 일이야."

고문은 이렇듯 몸은 물론 마음을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 자기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참여자들은 신체적 고문 못지않게 심리적 고문이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고립된 상황 자체가 주는 심리적 공포감, 감시하는 눈길, 성적인 수치감과 위협감, 누군가가 고문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소리를 듣는 경우 모두 실제로 자신이 겪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경험이었다. 50대 여성 F씨가 전했다.

"나랑 남자 둘이랑 한 방에 있다는 게 무서운 거야. ... 그 상황에서 건장한 수사관 두 명이 나 하나를 앉혀놓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 차라리 여러 명이서 매 맞는 건 안 무서워. 그런데 나 혼자 고립되어서. ... 그 때가 공포스러운 거 같애."

특히 가족을 고문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임신한 아내나 여동생을 신체적, 성적으로 위협하는 가해자의 말에 너무도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한 참여자는 동료의 고문을 목격하면서 공포와 위협에 더하여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과 비참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참여자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하였다. 참혹한 신체적 폭력과 심리 조정은 인지기능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세뇌라는 극단적 형태의 심리적 조작을 가하여 저항을 원천봉쇄하였다. 70대 여성 T씨와 60대 남성 B씨의 이야기였다.

"두드려 패는 사람이 '니 말을 어떻게 믿겠냐.' 해서 내가 두드려 패지 말고 조사만 하라고. 그런데 너무 두드려 패서 정신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고 아는 사람도 누군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 하도 두르려 패고 머리를 들고 지랄하고 휘두르고 정신이 없어서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누군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

"가자마자 옷을 다 벗기고 통닭처럼 매달아 놓고 면 같은 천을 얼굴에 덮고는 물을 부어서 코에 들어가고 계속 잠을 며칠이고 못 자게 해요. 졸기는 졸지만 졸면 맞고. 그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개, 돼지만도 못하게 취급을 당해요. 그러면서 계속 진술서를 쓰게 하고 안 한 것도 했다고 강요하고 그러니 나중에는 정신도 없고 환각처럼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꼭 내가 한 것같이 느껴져요. 그렇게 강요받고는 유치장으로 갔는데 같이 잡혀

갔던 다른 **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한테 '선생님 정신 차리셔야 해요'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는 정말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세뇌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 때 보니까 저만 그렇게 12일 동안이나 잠을 재우지 않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나가서 복수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등 심리적으로 회유하려 했던 경우도 있었다. 70대 여성 T씨는 다음을 경험했다. 그에게 가해자는 '불교를 믿는 사람은 나쁜 짓을 안한다'고 말하면서 마치 T씨를 이해하는 것처럼 굴었고 다음과 같이 회유하였다.

"다 잊어먹으라고 하는거야. ... 바른말 나올 때까지 때려야지 안 때리면 어떻게 말이 나오냐고. 골병들었으니 약을 해 먹고 다 잊어 먹으래. 당신이 여러 사람 위해서 고통 받았으니 좋은 일했다 치고 잊어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좋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절대로 나가서 원수 갚으려 하지 말래."

② 인간정체성 유린.

참여자들은 고문을 겪으면서 시국사건과 관련된 경우 빨갱이나 공산주의자로, 간첩조작사건과 관련된 경우 간첩으로, 비시국사건과 관련된 경우 범죄자로 불렸다. 고문을 당하는 중에 '빨갱이', '공산주의자', '범죄자', '살인마'로 점차 몰려갔고,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면서 마치 고문을 가하는 게 마땅하다는 취급을 받았다. 한 참여자는 지금은 분하고 속상하지만 당시 생각으로는 맞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했다. 60대 여성 U씨는 '빨갱이'로 자신을 몰려는 고문의 목적에 직면하였다.

"근데 거기(안기부)는 다 불순분자, 공작원, 간첩, 빨갱이 그런데다 다 연결을 시키더라구. 그러면서 몰아가는 거예요. 조사를 몇 시간씩 하면서 쉬는 시간에는 조사한 놈들이 다 내방으로 와가지고는 '이제 20%밖에 못 칠했어. 영 칠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은 빨갱이로 빨갛게 만들어야 되는데 20%밖에 못 칠했다는 거야. 어떤 놈들은 '야, 다 칠했다' 뭐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막 그럴 때마다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런 거야."

다음은 40대 남성 I씨의 경험이었다.

"니가 **을 했는데도 모르냐고. 내가 **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지검 **층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옷 다 벗고 수갑을 찬 상황에서 무작정 맞은 거예요. 말 안하고 무조건 계속 그냥 구타한 거예요. 가끔가다 '니가 ** 했는데 왜 모르냐고.' '아

모른다고 모르는데 자꾸!'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박스 테이프로 눈을 가렸어요. 7,8시간 계속 맞았죠. 우리 와이프도 연관 있으니까 데리고 온다 하고 난 아니다 계속 했는데. ** 년전 몇월 몇일 몇시에 뭘했냐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고 했더니 '니가 했으니까 기억 못하지' 그러면서 계속 고문을 당한 거예요."

고문의 목적 자체를 도무지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서적 고통은 극심하였다. 참여자들은 거짓된 이름이 덧씌워지는 분노와 울분, 답답함을 느꼈다. 한 참여자는 '덜컥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사형당하지 않을까'하는 공포감도 느꼈다. 조작간첩사건과 관련된 참여자의 경우 '사상적으로 무장되지도 않았던'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혼란스러웠다. 70대 남성 Y씨가 말했다.

"예전에는 그냥 무섭기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만 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내가 만약 어떤 투철한 사상적인 무장이라도 되어 있었다면 예상이라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난 그러지도 않았어. 그저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그런데 내가 무슨 그런 걸 해요."

신체적 고통에 더하여 이러한 억울함과 울분, 답답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은 중요한 정서로 체험되었고 이후에도 뚜렷한 고통으로 남아있었다. 60대 남성 D씨의 체험이다.

"조사도 안 받고 올 때 갈 때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픈데 나중에는 내장까지 찌릿찌릿해요. 고통이 무지하게 심하고. 그럼 이제 아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비시국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맞고 검찰 조사에서 얘기해야 겠다'는 식으로 견딜 수밖에 없다는 점, 혹은 가해자에 비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자신이 '힘이 없으니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체험이 두드러졌다. 30대 남성 L씨의 이야기이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리쳐봐야 들리지도 않겠다'고 생각하고 아예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했어요. 또 뭐 수갑을 뒤로 묶는데 제가 어떻게 하지도 못했고,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검찰 조사 가서 얘기하면 되겠다' 생각만 하고 그냥 있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정체성을 유린하기 위한 고문의 또 다른 형태는 사람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취급하면서 굴복시키는 것이었다. 많은 참여자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 수치심과 모

멸감을 느꼈고 완전한 무력감에 사로잡혔다. 참여자들은 '쓰레기 취급', '동물 취급', '범죄자 취급',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취급'을 당한 것에 대한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의 억울함, 또 죽이고 싶을 정도의 분노, 수치스러움과 창피함을 이야기하였다. '빨갱이놈', '좌익'이라고 따돌림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경험도 있었다. 60대 남성 D씨는 이것이 자신을 정신적으로 괴롭힌다고 말했다.

"내가 모멸감이 드는 것이 '전라도 놈, 전라도 빨갱이 놈' 하면서 차렷 자세 해놓고 군대식으로 가죽 장갑 끼고 배를 때린다거나 가슴을 때린다던가 해서 모멸감이 들게."

한 비시국 사건 관련 참여자는 '자신이 힘과 능력이 없어서 무력할 뿐'이라고 말했다. 비인간적인 취급을 하면서 오명을 씌우는 경우 고문 가해가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에게 오명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그대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굴복을 야기하고 결국 오명에 순응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30대 남성 M씨에 의하면,

"부모님 욕을 막 하더라구요. 그리고 우리집에 막 신발신고 들어오고, 자는 방에서 막 신발로 밟고 다니고. 그리고 그냥 얘기해도 알아듣는데 왜 그랬나, 왜 때리나 싶은 마음이 들고. 자기네는 경찰이라는 이유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신발 신고 들어오면 어떡하냐' 했더니 방에 있는 수건을 갖다가 나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닦았으니까 됐지? 됐지?'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저는 짜증나는 거죠. 만약 자기가 그런 신분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못 했을 거 아니예요.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제가 ...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때 당시 범죄자니까. 그래도 꼭 죽을 죄 진 사람처럼 꼭 그렇게까지."

③ 인간에 대한 신념 변형

고문이라는 극단의 체험 속에서 참여자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을 깊이 느꼈다. 또한 고문 가해를 목격하면서 인간이면서 어떻게 인간에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인간상의 무너짐을 체험하였다. 이것은 훗날 참여자들의 관계 체험 안에서 메아리를 쳤다. 50대 여성 F씨의 체험이다.

"후배들 맞는 소리를 막 들려줘요. 그러면 너무너무 그게 괴로운 거예요. 내가 너무 힘이 들고.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 개 패듯이 팰 수 있을까. 때리는 소리가 퍽퍽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능력한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사람이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맞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앉아있는. 그러면서 걔네들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을 똑같이 쓰라고 강요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됐기 때문에. 나는

내가 당하는 것 보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④ 굴복과 저항.

극단적 고통 속에서 참여자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과 있는 힘껏 저항하려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일부는 고통의 압박으로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허위자백하기도 했다. 40대 남성 I씨의 이야기이다.

“차라리 당장 죽는 것보다 한번이라도 기회가 오면 재판장에 가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아무리 허위자백 했지만 증거가 없는데 내가 **하지 않았는데. ... 여기서 시인하고 내가 재판장에 가서 고문 없는 곳에 가서 재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잘 한 거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죽었듯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특히 가족을 고문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어찌할 수 없이 굴복하게 되었던 체험은 면담하는 상황에서도 생생한 고통으로 떠올랐다. 50대 남성 O씨의 고통이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족을 들먹이면서 협박을 했을 때. 내 여동생을, 그리고 내 친구 여동생 이름을 들먹이면서 잡아와 보지털을 세 개만 뽑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고 했어.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 나를 수괴로 몰아가면서 그렇게까지 말을 하다니. 정말 내가 한 것 아니니 거기에다 내가 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아니라고 하며 버틸 수 있었는데. 그런데 여동생 말을 할 때는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 굴복하고 형을 받게 된 거야.”

그럼에도, 참여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무조건 버텨낸 경험도 이야기했다. 통제할 수 있는 만큼 통제를 시도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 했던 경험들이 곧 저항의 경험이었다. 한 참여자는 이 저항 속에서 흥분감과 승리감을 느꼈다. 다음은 50대 여성 Z씨의 경험이다.

“바로 지하에 가두는데 지하에 방이 욕조가 이렇게 있어요. 변기가 있었던가. 책상이 있는데 쇠로 된 철제 책상인데 바닥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의자가 달랑 있고. ... 이 방에 가둬놓는데 옆방에서 사람 고문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죠. 여기서 저는 말로만 듣던 기무사구나 이런 생각에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 된다. 겁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는게 없나 싶어서. 혼자 가둬놓고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전술인거 같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나 싶어서 책상 밑도 보고 살펴보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더라고요. 굉장히 무력감 이런 걸 느꼈는데. 최대한 정신을 차려햐 한다는 생각으로 있었죠."

2) 고통의 끝없는 반복과 악순환

고통의 끝없는 반복과 악순환의 범주는 *재현되는 고문 체험, 인생을 통제하려는 반복적 시도와 악순환, 고통의 세대 전이*의 세 가지 주제묶음으로 구성되었다.

① 재현되는 고문 체험.

고문의 체험은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악몽, 고문관련 단서에 대한 정서적 고통, 고문 기억의 침투, 고문 기억의 감각-지각적 활성화, 해결되지 못한 감정의 신체화, 존재 부인에 대한 분노 폭발, 과경계, 신체리듬 깨짐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 악몽은 지속되게 나타났다. 고문당하는 꿈은 물론, 쫓기거나 추궁당하는 꿈, 누명을 쓰는 꿈이 많이 나타났으며, 자신이 누군가와 싸우거나 누군가를 가해하는 꿈도 있었다. 이러한 악몽은 고문과 관련되어 있다고 선명하게 체험되었다. 반면, 고문 관련 단서에 대한 정서적 고통은 고문경험과 의식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정서적 고통은 고문 경험에서 비롯되었으나 참여자들의 인식 없이 무의식적이거나 암묵적인 양상으로 체험되기도 했다. 어둠, 감금, 경찰, 공무원 등과 같은 고문 관련 단서는 특히 신체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한 시국사건 관련 참여자는 '노동조합이 당하는 뉴스'를 접하면 입이 써서 며칠씩 밥도 먹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어두움과 혼자됨에 관한 50대 여성 F씨의 말이다.

"저는 지금도 커튼 치고 이런 거 싫어해요. 바깥이 안 보이는 세상이 싫어요. 불 다 켜놓고 베란다 문 다 열어놓고. 해가 안 보이는 게 싫고. 어두우면 안 좋아요. 어두우면 잠이 안 와요. 밝아야 편안하고. 지금도 늘 TV를 틀어놓고 자고. 혼자 있는 거 싫어하고.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 너무 싫어요. 바깥이 안 보이는 닫혀진 세상. ... 인식 못했는데. ... 아 맞네요. '꼭 감방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고문 경험은 원치 않아도 반복적으로 의식에 침투하거나, 떨쳐버리려 해도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으로 나타났다. 고문은 '없어지지 않고', '억지로 안하려 해

도 자꾸 떠오르고', '자꾸 되돌려 생각이 나고', '생각이 스쳐가고', '생각에 젖어있고', '오매불망 생각나는', '계속 리플레이 되는' 기억이었다. 70대 여성 E씨의 말이다.

"신경이 가뜩 들어 있는게. 뭐가 하나가 스쳐가면 다른 게 또 스쳐가고, 스쳐가고, 계속 스쳐가다 보면 밤 12시가 넘어서. ... 옛날에 고통당했던 게 그런 게 자꾸 그렇게 스쳐가지. 그러니까 신경이 점점 날카로워지지."

이러한 침투 기억은 단지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생히 체험되는 감각-지각적 기억의 형태를 띠기도 하였다. 가해자의 욕하는 얼굴이 생생히 나타나기도 하고, 가해자의 모습이 나타나 마치 고문을 당할 때처럼 '벌벌 떨리고 까무라치는' 체험을 하기도 했다. 또한 생생한 후각적, 청각적, 시각적 기억이 떠올라 마치 지금 다시 고문이 일어나는 것 같은 체험을 하기도 하였다. 70대 남성 C씨의 체험이다.

"지금도 5월에 꽃피고 그럴 때면 화약 냄새가 코를 진동을 하죠. 죽어가는 사람들, 총 맞은 사람들이 눈에 비치고. 고문하는 소리 들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하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점점 강해요."

고문의 기억은 신체적으로 각인된 형태로도 남아있었다. 현재 고문과 무관하지만 마치 고문 당시와 유사한 장면에 처할 때, 몸은 고통을 기억하고 있었다. 50대 남성 R씨의 설명이다.

"치과 갈 때. 고문과 비슷해서 떠오르죠. 생각이 납니다. 얼굴에 천을 씌우면 물고문 같고. 마사지나 물리치료 받으면 전기고문 같고. 숨 막히고 터질 듯해서 용을 써요. 숨을 못 쉽니다. 아, 몸이 기억하는 게 이런 거구나."

단지 고문 기억뿐만 아니라, 고문 경험과 관련하여 해결되지 못한 정서적 고통이 신체 체험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특히 공포, 분노, 울화와 같은 감정이 신체적으로 체험되는 경우가 잦았다. 심장이 뛰고 두근거리고, 가슴이 따갑고 쑤시고 조여지고 뜨겁고, 숨이 차고, 땀과 열이 나는 등의 신체 증상은 곧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 체험 그 자체였다. 대개는 이러한 체험들이 신체 질환으로 오해되어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내과를 전전하거나, 약물을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재현되는 여러 감정들 중 분노의 주제는 특히 중요했다. 특정 상황에서 분노가 폭발하는 체험들이 있었는데, 이는 고문으로 인해 존재가 부인당한 경험과 유사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현재 조금이라도 구속당하거나 고립되는 상황, 인정받지 못하거나 남들이 믿

어주지 않는 상황, 자신의 도덕 기준이나 가치가 위반되는 상황, 권력이 개입되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매우 예민해졌고 폭발적인 분노와 답답함을 체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곧 고문체험이 재현되는 상황과 같았던 것이다. 이를 한 참여자는 '표현할 수 없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상황이라고 묘사하였고, 또 한 참여자는 '고문 당하고 나서 정말 해소될 수 없는 분노가 계속 있고 그것을 풀지를 못하고 참고 살려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권력이 개입되는 상황에서는 권위자가 아랫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실제보다 더욱 예민하게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노가 폭발하면서 때로는 과도하게 대처하게 되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였고, 아예 소극적으로 전혀 대처하지 못하면서 무능력감을 느끼는 경험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50대 여성 F의 설명이다.

"사람이 사람을 개 패듯이 때릴 수 있다는게 용납이 안돼요. 내 아이가 (학교에서) 매를 맞아서 왔는데 통제가 안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나만) 길길이 뛰는거야. 애가 말렸어요. ... 어떻게 해야될지 모를 정도로 분하고 떨구지를 못해서. ... 왜 내가 아무런 저항, 항거를 왜 내가 못했을까. 무능력해지는 자신이. 그럴 때마다 막 자신에게 화가 나는거지. 특히 폭력에 대한 거는. ... 그 안에서 너무 강요를 많이 당한거야. 사실이 아닌걸 사실이라고 하라 하는. ... 지금도 나는 어떤 어른이고 나에게 강요하는 얘기를 하면, 회사 사장에게도 덤비고, 시아버지에게도 덤비고. 덤비고 나서는 또 왜 못 참고 그랬나 싶고."

실제로 고문 당시 사회운동가로서 소중히 여기던 도덕적 가치가 조롱당하고 폭력에 굴복당한 경험은 매우 깊은 치욕감을 야기했을 것이다. 고문에서 느꼈던 치욕감은 현재 동료 관계 안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것은 자기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에 대한 억울함이었다. 50대 남성 R씨의 경험이었다.

"폭력적인 게 막 올라오는 게 그런 것이 아닌가. 나하고 어긋난 사람에 대한 미움 같은 게 있거든요. 용서해버리면 되는데 오래 가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질서, 상식, 그런 것들을 깨는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권위에 자존심에 도전한다고 느끼는 건지 싶고. ... 억울해서 엉엉 운적도 있어요."

재현은 이렇게 존재가 부인당한 경험에서도 오지만,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도 지속되었다. 한 참여자는 '누가 오는 소리만 들어도 다시 나를 붙잡으러 오는 것 같은 공포가 느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계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의심스러운 믿음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다음은 50대 남성 O씨의 이야기이다.

"고문 이후였다. 항상 엎드려서 한 쪽 다리는 펴고, 한 쪽 다리는 구부린 채로 자세를 취해야 잠이 온다. 쭉 펴고 못 잔다. 언제든 깨면 도망가는 자세로 자게 되었다. 그래야 잠이 온다."

고문 경험은 신체 리듬 전반이 깨지는 형태로도 지속되었다. 많은 참여자들이 사건 이후 불면증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는 주로 '잠을 중간에 꼭 깨고', '잠을 자려 해도 안 자지고', '자다 깨다를 반복하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낮에 잠이 쏟아지는' 등 수면의 곤란함으로 나타났다. 끊을 수 없는 생각이 침투하거나 지나치게 경계하고 있어 수면에 문제가 오는 경우도 신체리듬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술이나 수면제에 의존하여 잠을 청했던 경험들이 무수했다.

② 인생을 다시 통제하려는 싸움과 악순환.

고문이 재현되는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을 강박적으로 통제하거나, 정치적/도덕적 신념에 몰두하게 되거나, 정서적으로 회피하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고통을 역으로 표출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였다.

고문 경험은 마치 한 순간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 대처한 대가였다고 각인되어 있었다. 이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던 고문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통제권을 찾으려 분투한 결과일 것이다. 여러 참여자들은 현재 미세한 실수조차 용납할 수 없게 되었다. 끊임없이 '정돈하고', '단속하고', '확인하고', '뭐든 제대로 해야 하고', '통제'해야만 안전한 것이었다. 50대 남성 G씨도 그러했다.

"그 한 순간에 인생에 치명적인 운명이 결정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조그만 거 하나라도 우습게 여겼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이 돼버린다는 교훈을 배운 거죠. '내가 지금 이걸 안 하면 다 크게 불행해진다'. 그걸 교훈으로다가 아주 조그만 거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거 같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 될 수가 있다 하고, 그걸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해놔야 다음 일이 되지. 그걸 방치한다는 건 큰 불행을 방치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확인을 안 하면 다음 일이 안 되죠."

정치적 도덕적 신념에 몰두하는 모습도 고통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통제하려는 시도 속에 나타났다. 한 참여자는 자신의 문제는 '분단이 종속되는 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하였다. 자신의 고통을 정치적 신념의 언어로 풀이하고자 한 것이다. 어떤 참여자의 경우 '도덕 기준에 집착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인 것 같은' 자기 안의 이분법을 토로하였다. 그는 '불의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개입해야 하게 됐다'고 하였다. 또 한

참여자는 겉으로는 '혁명적 지식인'이라고 하면서도 혼자 고립되어 있었던 상황을 떠올렸으며, 당시에는 사치를 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비참해야 했고 '가짜로 초라해야만 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몰두 속에서 참여자들은 최소한 일시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아예 체념하고 포기했던 경험들도 있었다. '이런 일도 겪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막 살자'는 충동적인 결정이나, '어떻게든 해보려 했는데 힘든' 자포자기식의 무력함이 있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고자 했던 경험들도 있었다. 약물이나 술에 의존하여 고통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속했다. '매일같이 술을 먹고 속상하니까 또 먹는' 경험의 연속이었다. 과거에는 술을 잘 마시지 않았으나 고문 사건 이후에 술이 늘어난 참여자들이 많았고, 스스로 중독이라고 느낄 정도로 술에 의존하고 술로 마음을 푸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한 참여자는 힘들어질 것 같은 예상이 들면 처방없이 미리 안정제를 먹어버린다고 하였고, 어떤 참여자는 접하기 싫은 장면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 안정제를 먹는다고 하였다. 한 참여자는 암페타민계 약물에 손을 대어 이후 큰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고문과 관련된 상황에 접하게 될 경우 아예 그 상황을 피하려는 모습들도 있었다. 미디어에서 고문과 관련된 상황이나 폭력적인 장면이 등장하면 피하게 되었다. 한 참여자는 폐쇄되고 갇힌 상황이 고통스러워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피하는 모습들로 인해 생활에 제약이 따르는 것이었다.

반대로 취약함과 고통 속에 빠질 때 역으로 강한 감정을 표출하는 경험들이 있었다. 가족에게 오히려 폭력을 쓰게 되거나 사람들을 과격하고 포악하게 대하게 되는 등 감정을 과잉되게 보상하거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화를 심하게 내면서 조절이 어려워졌다고 하였다. 70대 여성 E씨도 그러했다.

> "내가 아주 성질이 난폭해졌다니까..... 아이들한테도 자꾸 포악해지고, 점점 나이가 들면 성질이 점점 죽어야 되는데 성질이 점점 더 날카로워져서 내가 생각해도 큰일이다 싶어. 늘 상 그렇지는 않은데, 나한테 좀 언짢은 소릴 어찌어찌 한다 그러면 대번에 화가 확 올라오는 거야. 그럼 또 소리를 팍 지르고."

40대 남성 S씨는 고통의 역표출 속에서 오히려 피해자였던 자신이 누군가를 가해하는 편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제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참 이상해요. 사회적으로 국가 폭력이 있고 그걸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였고요. 그런데 그게 조직 내에서도 반복이 되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조직 내에서 또 갈등이 있고. ... 그런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또 조정하는 것이 어렵고."

③ 고통의 세대전이

고문의 고통은 한 세대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에게도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당사자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 환경의 한계가 자녀에게 전달되는 경우, 당사자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건강한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전달되는 경로들이 발견되었다. 여러 참여자들은 자신의 자녀가 실제로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거나, 사회적응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70대 남성 A씨도 그러했다.

"아들들은 군에도 입대 안 시키고. 안 받아줘요. 학교도 다 못 나오고. ... 그건 지금까지도 맘이 아프죠. ... 관계가 안 좋죠. 자기들은 자기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있어요. 도움이란 건 생각할 수도 없죠. 나도 생각도 안 하고. ... 나도 이젠 지칠 때로 치쳐버렸어요 이젠 줄 것도 없고."

3) 타인/외부세계와 단절되고 내면으로 고립

타인/외부세계와 단절되고 내면으로 고립됨이라는 세 번째 범주는 *낙인과 추방, 현실적 고립, 완전한 고립에 대한 공포, 내면의 단절과 소외, 관계 단절과 소외*라는 다섯 개의 주제묶음으로 엮였다.

① 낙인과 추방

고문은 참여자들에게 '빨갱이', '범죄자'라는 낙인을 씌웠다. 이 낙인이 이들을 관계 체험에서 고립시키고 추방하였다. '블랙리스트'는 가장 먼저 이들의 생계를 끊어놓았다. 낙인은 더 이상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다. 쫓겨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배제되기 일쑤였던 것이다. 70대 남성 A씨와 60대 여성 U씨의 이야기이다.

"전과자라고 빠꾸시키는 거야. 그럼 또 쫓겨나는 거야. 그럼 다시 딴 데로 가. 그래서 몇 번 직업 옮기고. ... 한 번은 직장을 소개받았는데 신원 보증이랑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 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로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속상하더라구요.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내가 다른 건 할 수 없고 하니까 오며 가며 신문을 줍고. 처음에는 아주 힘드니까 살이 쪽 빠졌어요."

"다 길거리로 쫓겨나고 그랬는데. 취직을 할라고 그래도 ** 다녔다는 것만 알면 그냥 그대로 해고당하고. 어떻게 억지로 면접에 합격되어서 취직이 된다 해도 3개월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또. 블랙리스트 명단을 전국에 뿌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나라를 팔아먹은 죄를 지었나 어쨌나 어쩜 그렇게 잔인하게. 말하자면 노동자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 그건 나는 죽음보다 더 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블랙리스트를 돌려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을 시키는 그런 잔인한 짓을 한 거예요.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로 표현이 안 돼."

고향으로 돌아가도 이웃의 냉대와 비난으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경험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알레르기와 터부시'도 심했다. 정치 활동을 주변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비방하거나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했다. 따돌림과 괴롭힘은 빨갱이기 때문에 정당화되었다. 이와 같은 체험은 '자꾸 음지로 나 혼자 있다', '나 혼자 방안에서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는 극단적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

② 실질적 고립

실질적인 고립도 두드려졌다. 고문 이후 정신증이 발병하거나 약물 중독이 야기되었는데도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당하는 경험이 있었다. 또한 석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의 대상이 되는 현실로 인해 사회적 관계로부터 끊임없이 고립 당하였다.

③ 완전한 고립에 대한 공포

이러한 고립 경험은 극단의 완전한 고립에 대한 심리적 공포로 체험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갇힌 곳, 막힌 곳, 밀폐된 곳에 대한 공포감, 죽을 것 같은 느낌, 미치는 느낌을 체험하였다. 이것은 완전히 고립되고 단절당하는 극대한 공포에 관한 상징적 체험이었다. 60대 남성 W씨와 40대 남성 S씨의 체험이다.

"독방에 있는데 갑자기 벽이 막 좁혀져 오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죽을 것 같았어요."

"저는 좁은 공간에 가고 감옥에서 혼자 독방에 들어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처음에 감옥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게 정말 너무 싫어요. 지하철에서도 전에 한 번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지하철 기다리는데 정말 저쪽에서부터 뭐가 막 밀려와요. 어떤 기운들이 그냥 밀고 와요. 그 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④ 내면의 단절과 소외

고통스러운 내면의 체험은 타인과 소통되거나 타인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사적인 영역으로 소외되었다. 70대 남성 Y씨도 말할 수 없었다.

"원래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야. 그냥 참고, 말도 잘 안 하지. 워낙에 난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이니까. 그 이후로 나와서는 어디다 말도 못하지. 그 때 시절이 어떤 때인데. 요즘에도 사람들을 만나긴 해도 내가 그 때 이야기는 안 해. 내가 그게 나 스스로한테는 정말 결백한 일이라도 어차피 난 형을 살고 나왔으니까. 누가 알아주겠어?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그게 거짓이었다는 것, 내가 결백하다는 것이 밝여져야 되는데, 이제 살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주지 않을 것이며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혹은 수치스럽거나 민망하여, 혹은 비방하는 타인의 반응을 접하면서 참여자들은 고통을 속으로만 묻어두게 되었다. 70대 여성 T씨의 말이다.

"얘기하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말을 실컷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 말을 들어주고 삭일 사람이 없다고. 답답하고 신경쓰다 보니까 병이 나고. 좀 얘기도 좀 하고 말동무도 있고 좀 하면 속이 좀 후련해가지고 할텐데 답답해가지고."

이로 인해 자신의 내면을 이해받을 기회가 없었던 참여자가 대다수였다. 이러한 기회가 박탈되면서 자기의 내적 경험이 이상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고립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함께 사회 운동을 한 동료 집단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으나, '다 그냥 사는 이야기만 하지', 내적인 고통 체험을 나누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 단절에서도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에게 고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참여자들이 소통하려던 시도가 좌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이해받지 못했다는 강한 기억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했다. 40대 남성 I씨와 50대

여성 Z씨가 그러했다.

"하루하루가 죽고 싶더라고요. 그분(의사)한테 내가 이만저만해서 ... 고문당해서 공황장애가 있다. 아 그러냐고 해서 진단하시더니 그냥 수면제 처방해주시더라고요. 그 때 당시 나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 일단 (치료자가) 굉장히 피곤해 보였어요. 피곤한 상태에서 제 말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을 틀에 맞춰서 규정을 하려는 거예요. 물론 진단을 하려는 거니까 그렇겠죠. ... 그러면서 저의 상황을 운동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안갔죠, 그 뒤로는."

더하여 고통의 회복은 사적인 영역에 속한 것으로 강하게 인식되었다. 혼자서 노력하여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60대 남성 W씨의 이야기이다.

"저도 좀 그 관련해서 책도 보고 해서 나 혼자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 이겨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병원에) 몇 달 다니다가 안 갔어요. 그랬지만 나아지지 않았죠. 그래도 버티고 싶어서 10년 이상 이런 증상이 자주 발생을 했는데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특히, 고문 경험이 현재의 고통 체험과 의식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원래부터 자기 성격이 그렇다'고 삼키며 소통을 구하지 못하기도 했다. 50대 여성 F씨도 그랬다.

"그냥 천성적으로 그런가 보다, 신경이 예민하고 워낙 성질이 급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 ...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안 해봤어요. 그거랑 연관시켜서 내가 아프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⑤ 관계 단절과 소외

감시, 배신, 불신의 경험은 이후에도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확인하고 경계하는 습관으로 남았다. 지하철 정거장을 미리 내린다거나, 일부러 골목길로 다닌다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자동차 번호를 확인하는 행동 습관이 생겼고, 무관한 사람을 일단 의심부터 하는 습관으로 때로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다. 어떤 참여자는 형사로 의심되는 중년 남성을 경계하기도 했고,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프락치'를 경험했던 참여자들은 사람 일반에 대한 경계심을 느끼기도 했으며, 한 참여자는 가해자가 남성이었기에 남편에게 경계심을 느끼기도 했다.

이러한 경계심은 전반적인 대인을 향한 공포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 참여자는 사람들 앞에서 횡설수설하게 되고 자격지심이 생겨 사람을 피하게 되고, 몸이 뻣뻣해져 음식을 먹거나 마실 수조차 없었던 체험을 이야기하였다. 또 한 참여자는 '사람이 지긋지긋하다', '사람이 질색이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사람에 대한 신념이 변형된 결과이기도 했다. '저것이 인간인가 싶은' 고문 가해자에 대한 기억, 가해자의 회유에 의해 그를 인간적으로 대하게 되었는데 결국 배신당한 기억은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파괴된 관계 체험은 '사람들끼리 모두 적이 되어 내 존재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과 같이 자기 체험을 변형시켰고, '잔혹하고 인정사정 없는 세상'과 같이 세상에 대한 신념을 파괴하기도 했다.

또한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등장하였다. 50대 여성 Z씨는 타인과 완전히 단절된 체험의 결정체를 표현했다.

> "전경들이 끌고 내려오는데, 옆에 교련복을 입은 남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지나가는데. 나는 구호도 외칠 줄을 모르고 양쪽 잡혀서 끌려가는데 옆에 남학생들이 제 눈을 피하면서 겁에 질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 오로지 그냥 외롭고 눈물이 저절로 나고. 나중에 생각해봤을 때 외로움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구나. 철판을 얼굴로 때리는 듯한 외로움. 얼굴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 너무 외로워서.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는데 저는 잡혀서 끌려가는데 눈을 피하면서 가니까. 그 얼굴이 마비되는 얼얼한 느낌."

4) 불의에 대한 분노와 한맺힌 개인 삶

불의에 대한 분노와 한맺힌 개인 삶은 *세상의 불의에 대한 분노와 용서할 수 없음, 원통하고 한 맺힌 삶*이라는 두 개의 주제묶음으로 나타났다.

① 세상의 불의에 대한 분노와 용서할 수 없음.

과거에 자신을 가해했던 사람이 현재 사회의 권위자가 되는 현실은 참여자들에게 견디기 힘든 분노와 분함을 떠안겼다. 특히 이러한 체험은 사회 정의와 세상 이치에 대한 이들의 관념과 잇닿아 있었다. 때로는 단지 개인적인 원한이기 보다는 부당함과 불의에 대한 의분이 느껴지기도 했다. '가해자가 오히려 잘 사는 세상의 불의', '고문을 인정해주거나 책임지지 않는 수동적이고 무덤덤한 국가', '못난 놈이 고역을 겪기 마련인

세상 이치', '이 더러운 세상'을 겪으며 여전히 세상이 바뀌지 않고 역사가 제자리걸음 하는 것을 체험했다. 참여자들은 강한 분노를 느꼈다. 50대 남성 O씨의 이야기이다.

"그 때 일이 떠오른다. 그 당시 정치인들, 나를 괴롭힌 사람들의 소식들을 접하게 되니까 힘들어지는 것 같다. ... 나를 고문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고, 그 사람들 소식이 원치 않게 들리니까 정말 그 때마다 화가 난다. 내가 그 사람들을 언젠가는 죽이러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 세상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이해가지 않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맞는 것은 아니지 않나?"

70대 여성 E씨의 생각이다.

"세상에는 똑똑하고 잘난 놈만 살게 되어 있나, 못난 놈도 끼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어."

E씨는 이것을 해결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고 말했다.

"국가서 풀어야 되고 국가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덤덤하게 두고 하느냐고. 그런 게 내가 지금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하는 거야. 이런 건 개인을 원망해도 안 되고, 가족을 원망해도 안 되고, 이건 전체 국가 책임이야. 보상을 해도 국가서 해야 되고, 말 한 마디 위로를 해도 국가서 해야 되지. 진짜 누구도 내 마음을 달래줄 사람은 국가밖에 없어요."

② 분하고 원통한 한맺힌 삶.

한편으로는 이러한 불의의 세계가 개개인의 인생으로 파고들어갈 때에는 원망, 원통, 억울함, 한맺힘의 정서가 체험되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불의가 개인의 고통으로 전가되는 결과였다. 참여자들은 '고통과 죽어버린 삶에 대한 한없는 원망과 분함', '분함과 원통함의 앙금'을 표현했다. '억울한 생각만 하다가 죽겠다', '한이 많아 눈을 못 감는다', '원수들 끝을 보고 눈을 감겠다' 하였다. 부당한 세상을 개인으로서 겪어 내야 했던 이들의 삶이 곧 한맺힘 체험이 되었다. 60대 남성 D씨와 70대 여성 T씨의 한맺힘 표현이다.

"내가 이렇게 천당을 왔다 지옥을 왔다 왔다갔다해요.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확 울어버려요. 그냥 확 울어버리면. 죽을 때에도 그 생각 하면서 죽을 거 같아요. 억울한 생각만

하다 죽을 거 같아요.”

“죄 없이 당하고 살았다는 게. 아이구 너무너무 힘들고.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원수를 푸나 그 한을 푸나. 그 한을 풀고 살다 죽었으면. 내가 눈도 못 감고 죽겠다 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5) 생, 관계, 존재의 상실

생, 관계, 존재의 상실 범주는 *생에 대한 상실감, 관계에 대한 상실감과 죄책감, 자기 상실*이라는 세가지 주제묶음으로 나타났다.

① 생에 대한 상실감.

‘고문 이후의 아픈 세월’, ‘우여곡절 속의 불행한 인생에 대한 슬픔’은 고문으로 인해 인생의 일부를 상실당한 체험을 드러냈다. 이러한 상실감, 슬픔, 우울감, 비참함은 생을 단절 내려는 시도나 다짐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농약을 사서 몇 년 째 집에 두고 사는‘ 삶, ’계절이 바뀔 때마다 순환하듯 찾아오는 우울과 죽고 싶은 마음‘, 실제로 죽음을 기도했다가 깨어난 뒤의 비참한 마음은 생에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상실감의 체험이었다. 70대 남성 Y씨의 인생 표현이다.

“요즘에는 많이 우울해.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나. 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 참 불행한 인생이었지.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해.”

② 관계에 대한 상실감과 죄책감.

동료와 가족에게 느끼는 슬픔과 죄책감은 관계 속에서의 상실감과 같았다. 고문경험 이후 사회운동을 계속 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 같은 미안함, 동지와 함께 죽지 않고 살아남은데 대한 생존자 죄책감은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상실과 외로움의 체험이었다. 함께 감옥에 있다가 이후 죽어서 발견된 친구에 대한 슬픔은 상실감에 대한 애도체험과 같았다. 40대 남성 J씨의 체험이었다.

“감옥에 있을 때 몇 개월 같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나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서 발견된 것을 뉴스에서 알게 되었어. 그 친구 어머니를 출소할 때 뵈었는데. 지금 생각

해도 눈물이 난다. 정말 뭐라고 해야 하나? 죽는 사람이 나였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부모님 생각도 나고. 내가 그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 때 당시 빈소 방문한 것 밖에 없었어."

가족에 대한 상실의 경우 죄책감과 자기비난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많은 참여자들은 투옥된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가족이 고생하고 죄인 취급당한 것을 자기 탓으로 느꼈다. 이 죄책감과 상실감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것은 불명예로 체험되기도 하였다. 70대 남성 A씨와의 대화이다.

"제가 거기 들어가고 나서 식구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농사를 여자가 짓기 힘들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보릿배를 치고 모를 심고 하는데..... 그래 우리 집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면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도 만나면 속상하고 하니까. 어머님은 저 때문에 홧병이 나서 돌아가셨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니까. 지금도 그 얘기만 하면 가슴이 떨리고 속상하고 말 안 했으면 하는."

한 참여자는 그 동안 함께 고통을 나눈 부인을 최근 사고로 잃게 되면서 이것이 자기 탓이라고 느끼기도 하였다. 고통을 함께 견딘 부인에 대한 미안함, 감사함, 슬픔이 뒤섞인 상실 체험이 자기 탓이 되고야 마는 것이었다. 70대 남성 Y씨의 이야기이다.

"부인이 죽은 건 내 탓이야. 내가 갔어야 했지. 내가 있어봤자 소용도 없고, 부인은 평생 고생만 했었는데, 그래도 내 옆에 있었는데. 화 한 번 안내고 내 탓 한 번 안하고."

③ 자기상실.

자기상실의 주제묶음은 세계 속의 존재 상실, 해리된 인생 경험, 정체성 혼란과 저항, 자신을 향한 수치심과 분노 저항, 영구히 변형된 자기, 사회적 상실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세계 속의 존재 상실이란 '어느 순간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공포', '죽음', '증발해버린', '투명 인간이 된', '존재감이 없는', '나 자신을 모르겠는' 체험이었다. 세계 속에 내 존재가 없다는 느낌은 끝없이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자해 충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존재 상실감은 여성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두드러지는 체험이었다. 50대 여성 Z씨의 표현이다.

"사람이 증발한 것 같고. 투명인간 된 느낌. 제가 존재감이 하나도 없고. 그 전에는 운동

하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있고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힘들어도 근거지이고 테두리였는데. 이제 세상 속에 제가 던져졌는데. ... 제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듯한 느낌이 심해지는. 그 때는 일부러 자살하겠다는 생각은 없는데, 건물 높은 곳에 가면 제 자신도 모르게 제가 뛰어내릴 것 같고. 날카로운 물건 보면 제가 막 자해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고."

자기 상실 체험 중에는 자신의 체험과 기억이 하나의 개인사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되고 조각나 버리는 경험도 있었다. 구타당한 기억이 '비현실적인 꿈처럼 남아있고', 개인사의 일부가 '별개의 부분, 이질적인 부분'으로 느껴지는 체험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고통스러운 감정에 골똘히 빠져있다 보니 맥을 못 잡고 횡설수설함', '얼빠진 상태' 등 자기 행동을 온전히 통합하지 못하는 체험도 이와 유사했다. 자기와 자기지각이 유리된 체험 역시 자기가 통합되지 못한 자기 상실 체험에 포함되었다. 50대 남성 O씨가 자기와 자기지각이 유리된 체험을 기술하였다. 극한의 고통과 소진 상태에서 자기와 자신이 분리된 체험은 이후 삶에서도 소진 상태에서 자기 지각이 분리되는 체험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체험은 그 자체로 고통스러웠다.

"문득 문득 가만히 있다가, 그냥 생활하다가 내가 마치 고문당하고 쓰러져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장면이 떠올라.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다. 내가 하도 많이 고문을 당하고 체력적으로 소진하다보니 그 때 당시 내가 마치 내 몸에서 나와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그 때 그런 느낌이 문득 문득 든다. 그 때 기억을 자극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래요. 그러면 참 힘들다. 그리고 그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고."

정체성 혼란에 대한 저항도 자기 상실체험으로 개념화되었다. 고문으로 정체성을 파괴당하고 혼란스러웠던 경험은 계속적으로 자기를 확인하고 혼란스러움에 저항하려는 시도를 낳았다. 한 참여자는 고문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신념으로 무장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계속 확인하고자 하였다. 극심한 고통 체험 속에서 자기 정체성의 특별함과 중요성에 주목하는 자기 확인의 경험은 하나의 저항으로 강화되고 있었다. 또한 한 조작간첩사건 관련 참여자는 간첩으로 조정당하고 세뇌당하고 배척당한 경험 속에서 반복적으로 자신과 가족이 결백한 정체성을 지닌다는 자기 확인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한편으로는 고문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한 모멸감과 수치심 속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향해 분노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팔푼이 바보 웃음거리가 되는 느낌에 자살충동이 이는' 것처럼, '목이라도 매고 싶은 것처럼' 죽어 없어지고 싶을 만큼의 모멸감이었다. '어그러짐에 대한 분노', '비굴한 짐승같은 꼬라지', '굴복했던 수치심'에는 굴

복당한 모멸감에 대한 자기 비난이 담겨 있었다. 50대 남성 R씨의 이야기이다.

"당시에는 분노가 없었어요. 폭력 앞에 길이 들여지더라고. 그런데 교도소에서는 분노가 나더라. 살려달라고 빌었던 수치감. 나에 대한 분노. 나를 짓밟았던 걔네에 대한 분노. 수사기관에서의 수치심은, 내 인격이 부서지는 것에 대한 분노인데, 이제 나를 향하는 것 같기도 하다. 세수하라고 화장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욕이 나온다. 나에 대한 거부감. 폭력에 굴복하는 비굴함. 머리나 가슴은 아니었지만 몸이 이기지 못했던."

그러나 이것은 '머리나 가슴이 아닌 몸이 이기지 못했던 거부감'이었다. 이것은 몸이라는 한계가 야기했던 어그러짐, 비굴함, 굴복함 체험 속에서도 다시 인간성을 일으켜 세우려 분투하는 분노로서 저항 체험과 유사하였다.

한편, 한 비시국 사건 관련 참여자는 '고문을 당한 것은 쉽게 보인 내 탓'에 있다는 생각을 했다. 고문이라는 고통 체험은 개인을 '쓰레기처럼 취급하여' 무력하게 만들었고 그 무력함조차 자기 탓으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또 다른 비시국 사건 관련 참여자는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생기지만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능력이 힘 밖이니까 참을 수밖에 없다'는 무력감을 체험하였다. 비시국관련 사건 참여자의 경우 고문에서 굴욕당한 경험에도 저항할 수 없다는 권력의 무자비함을 느끼면서 자기비난을 하거나 무력감을 체화했다.

영구히 변형된 자기체험 속에서 참여자들은 고문으로 인해 스스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병들고 말았다는 '망가져버리고 다 파괴된 느낌', '비참하고 망가진 기분'을 느꼈다. '원래 느긋했던 성질은 조급하고 잘 삐치고 못 참는' 성격으로, '원래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기분이 다운되는' 성격으로 변형되었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무슨 짓을 할 것 같은 불안감', '정신적으로 미친 짓을 함'은 자신이 망가졌으며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과 같았다. 한 참여자는 '망가뜨려진 자신이 아깝다'고 느꼈다. 그는 '끝났고', '젊은 날은 파괴' 되었다.

지속되는 신체적 통증 역시 영구히 변형된 자기의 모습 중 하나였다. '생을 마감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통증, 통증으로 '맥을 못 추는 몸', '골병이 든 몸'이 곧 자신의 신체상이 되었다. 70대 남성 C씨와 70대 여성 T씨의 말이다.

"그럴때 더 그러죠. 내가 이게 뭐냐.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신이 아니잖아요. 다 극복할 수가 없잖아.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워낙 통증이 심하니까 내가 생을 마감해야 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억지로 살았지. 그 모진 목숨이 산 거 생각하면 그리 힘들게 살았지만도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살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렇게 했는가. 세상 천지에 ... 골병이 들었는데 살면 뭐하나.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괜찮을걸. 골병이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고문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지속하지 못해 열등감을 느끼고 자신의 꿈이 막힌 상실감을 사회적 상실감으로 개념화했다. 50대 여성 F씨의 경험이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민주사회로 발전되기 까지 공헌했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 약게 살지 못했나. 말만하고 지 살길 찾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나는 미련하게. 어느 순간 그게 미치도록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40대 남성 Q씨는 '예전엔 열혈청년이었지만 지금은 바보고 주변인'이 되었다고 했다.

"이제 바보가 됐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나 대화상대로 쳐지더라구요. 그러니까 주변인이 되어버리고, 예전에는 열성분자고 열혈청년이고 똑똑했다면 이제 어리버리해지고. 친구들은 이제 사회 생활하면서 홍망사, 회사얘기하고 그런데 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인으로 빠지더라구요."

또 다른 사회적 상실감 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꿈이 따로 있었는데 시대적으로 '살아남은 자의 원죄의식에 끌려 살아오면서 꿈을 이루지 못한 회의감'이 포함되었다.

6) 통합, 수용, 이해, 정의회복을 통한 나아감

통합, 수용, 이해, 정의회복을 통한 나아감이라는 범주는 *정체성 통합과 이해, 고통의 이해, 관계적 수용, 사회정의 회복*이라는 네 가지 주제묶음으로 구성되었다.

① 정체성 통합과 이해.

고문이라는 폭력을 겪은 이후에도 그 이전과 일관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내적인 동기가 회복 과정에서 발현되었다. 특히 시국사건 관련 참여자들의 경우가 여기에 속했다. 어린 시절부터 굳어진 사회적 신념은 고문을 겪은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의지 안에 신념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회복의 중요한 징표였다. 이러한 참여자들은 '후회

하지 않았다'. 이것은 폭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강한 의지의 실현이었다. 40대 남성 J씨는 어릴 때부터 굳어진 심지를 지금도 이어나간다고 이야기하였다.

"중학교 때부터였다. 그 때 선생님한테 대들진 않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뉴스에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퍼졌었다. 그냥 그 때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냈지만 자유에 대한 욕망은 있었다. 우리가 그 기본적인 것을 왜 누리고 못하고 사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그것을 실현시키고 싶었다. 나는 심지가 굳은 편이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죽 밀고 나가는 편이다. 지금도 그렇다."

시국 사건과 관련된 여러 참여자들은 수감생활 이후에도 '운동가', '활동가'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강화하는 등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유지하였으며, '자부심', '부끄럽지 않음', '강한 의지'를 느꼈다. '다시 태어나도 그런 일을 당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상당수의 참여자들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작고 큰 행동들을 실천하고 있었다. 50대 남성 O씨는 자신의 생각을 현재까지도 지켜온 것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했다.

"내가 고문을 당하고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 생각이 변하진 않았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은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일관된 정체성과 더불어 긍정적 정체성의 통합 역시 회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경로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을 했고 '양심에 따라 당당하게 저항'했다는 '자부심', '자랑스러움', '보람'을 느꼈다. 이를 '헌신했던 인생의 훈장', '아름다운 희생'이라고 표현한 참여자도 있었다. 또 한 참여자는 인간적인 삶을 살기로 한 것은 자신의 자율적인 선택이었으며 그것이 가치있고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했다. 또한 여러 참여자들은 사회활동을 하면서 당시 느꼈던 기쁨과 공동체 내의 유대감, '너무 좋았던' 경험 역시 기억하고 있었다. 40대 남성 Q씨의 이야기이다.

"전 (그 때) 생각하면 행복해요. 전 돈이나 출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떤 보람을 느끼고 소명의식을 깨닫고 대의명분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강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에 대한 보람 양심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긍정적이면 그 인생은 만족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죽어도 후회는 없을 거 같아요. 내 인생을 방탕하거나 무미건조하게 살진 않은 것 같거든요. 학생 때는 학생 양심에

입각해서 독재 거부했던 게 맞고, 독재 거부했던 후 폭풍 결과로 고문당해가지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왜곡시켰는데. ... 후회는 없어요."

고문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해내는 체험들이 회복으로 걸어가는 길목마다 자리했다.

어떤 참여자들은 시와 글쓰기, 기도처럼 언어를 통하여 자신과 자신의 감정 체험을 이해하였고, 이로서 정체성을 통합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한 참여자는 '내 안으로 들어가 시를 쓰는'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또 한 참여자는 '나를 돌아보는 기도'로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다. 60대 남성 W씨는 다음을 이야기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생각이 문득 날 때마다 그것을 글로 표현하려고 구상도 하고 써보고 합니다. 시가 완성이 될 때마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감옥에서 있었던 일, 검사에 관한 생각들, 지하 감옥방에 관한 것, 고문자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지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소리에 민감해지거나 불안해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사라지더라고요. 지금도 시를 쓰는 것이 저는 좋고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② 고통의 이해

시국사건관련 참여자의 경우 신념을 지킨다는 정체성의 이름으로 고통을 이해했다면, 사회운동을 하지 않았던 참여자의 경우 다른 양상으로 고통을 타당화했다. 70대 여성 T씨는 신앙적 의미를 통해서 자신이 겪은 고통을 타당화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고문은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신이 벌준 대가로 이해되었지만, 신이 훗날 고통에서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신은 동시에 감사와 감동의 대상이 되었다.

"내가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살려줬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먹을 녹을 준다고. ... 진짜 신이 있구나 싶더라고. 옥황상제가 너는 하도 효성이 지극하여 먹을 녹을 줄 것이다. ... 심장이 떨려. 감동이 되어가지고. 눈물이 나올려고 해. ... 진짜 감사하고요. 그랬었어. ... 지금도 너무 신기해. 눈에도 안 보이는 신이 나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진짜로 도와주고."

또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은 망하고, 마음이 착하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은 사람은 흥한다'는 권선징악의 뜻으로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기도 하였다. 이에 울분을 참고 평생을 복수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왔다고 하였다. 한 참여자는 감옥 안에서

자신이 보다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통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체험은 고통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었다. 70대 남성 A씨의 생각이다.

"저는 어느 사람이건 교도소 한 번씩 다녀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진실한 사람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안에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고통을 타당화할 수 있는 다른 통로는 타인과의 연결성을 통해서였다. 한 참여자는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민주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였다. 어떤 참여자는 '세상이 좋아진 걸로 다 보상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였다. 자신은 불행했지만 타인과 연결되고 타인을 지지하면서 고통에서 나아가고자 했던 참여자도 있었다. 70대 남성 Y씨이다.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 살아야지. 내가 인생이 불행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죽는 것보다야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잘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남을 돕는 거지. 내 힘이 되는 만큼 말이야. 난 별 것을 해 온 게 없어. ... 내가 가진 것은 얼마 없지만, 그게 내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고 죽는 것이 남은 소원이야."

연결성은 가해자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데로 나아가기도 했다. 60대 여성 U씨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이 연결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분노를 해결해갈 수 있었다.

"그 때는 너무 막 화나는 감정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또 막 뭐랄까 내가 막 원수는 아니지만 '저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잡는다'고, 저것들을 꺾지 않는 한 살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많이 다듬어 지잖아. 피정 이후에. 그러면서 '아, 그럴 수밖에 없는 당신들도 내 처지와 같구나'하는 동질감이 들더라고."

또한 사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고통도 이해할 수 있었다. 40대 남성 J씨의 말이다.

"삶은 죽음보다 낫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그것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었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겪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죽은) 친구도 살아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무엇이 되었든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고 본다."

③ 관계적 수용

회복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발판은 관계에 있었다. 참여자들은 고통 체험을

드러내어 사람들과 사회에게 수용 받으면서 힘을 얻었다. 면담 도중 어떤 참여자는 한 번도 이야기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체험을 두려워하거나 면담자를 경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한번도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고 싶은 마음과 속 시원한 심정을 이야기하였다. 이렇듯 고통 경험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미치겠는' 편이며 참여자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였다. 한 참여자는 가혹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서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을, 또한 훗날 드디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50대 남성 V씨의 경험이다.

> "내가 다짐을 했어요. 반드시 살아 나가서 여기서 있었던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요. 그리고 그 친구도 죽으면서 나에게 그런 당부를 했고요. ... 그러게 내가 말로 풀어내고 글도 쓰고 그러면서 증상이 나아졌던 거예요. 숨도 가쁘지 않고 머리도 안 아파지고 악몽도 줄고. 약을 그러면서 먹지 않게 되었죠. 내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책으로 써서 내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 저기 강연을 다니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게 나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치유 효과 같은 거요. ... 그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말 하게 되니까요."

이 참여자는 과거에 군인들에게 폭력을 당했으나, 현재 군인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설교로 전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신의 섭리로 느꼈다. 치유는 고통 경험을 사회에 드러내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로 나타났다.

많은 참여자들은 실제 주변 인간관계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였다. 가족, 친구, 동료, 주변 이웃의 변함없는 지지와 지원은 회복의 원천이 되었다. 주변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었을 때, 함께 마음 아파하고 서로의 감정을 수용했을 때,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었을 때 참여자들은 그 연결됨 속에서 치유되었다고 말했다. 한 참여자는 어릴 때 부모님이 자신을 지지하고 믿어주었던 경험이 지금 자신에게 힘이 된다고 느끼기도 했다.

또 하나의 수용은 종교를 통해서였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온전하고 조건없이 수용된 경험으로 위로를 받았다. '신만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의지가 인간에게서 얻은 고통을 치유해 주었다.

④ 사회정의회복.

참여자들은 정의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원통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기쁨을 느끼며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과거청산과 재심판결은 정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세상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재건하고 사회로부터 정당한 인정을 받은 체험이 되었다. 50대 남성 V씨와 60대 여성 U씨의 경험이다.

"절 고문했던 사람에게 예전에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역사도 인간이 쓰는 거야. 너희는 인간이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 5공 비리 청문회에서 ... 제가 다시 그 사람에게 '이래도 역사가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했죠. 다들 쳐다보는데 얼굴이 하얗게 되서는 아무 말도 못했죠."

"이제 무죄 받았죠. 30년 만에.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면 기쁨도 있었고, 희열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당하고 살아온 게 새로운 희망이지 좌절은 아니에요."

또한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구조적 관점 역시 매우 필요했다. 30대 남성 P씨의 생각이다.

"이런게 뭔가 대안을 가지고 극복이 되어야지. 왜 하필 나에게 이래버리면 정말 정신병처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게 나만의 재수없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제도적인 문제니까. ... 그렇게 안 보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 이게 사회문제구나 하면 의지도 생기고 어렵지만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런게 중요한 거 같아요."

7) 최종기술

고문경험은 고통의 시작점이었다. 고문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이 몸과 마음을 조정하고 정체성을 유린하였으며 인간의 무력함과 비인간성에 직면하게 하는 경험이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굴복과 저항의 순간을 체험했다. 이러한 고문 경험은 이후의 삶에서 끝없이 반복되고 순환되었다. 고문 고통은 삶의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었고 사람들은 이 재현을 통제하기 위한 싸움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싸움 안에서 악순환이 일어났고 고통은 세대로 전이되기도 하였다. 관계 체험 안에서 사람들은 타인/외부세계와 단절되었으며 내면으로 고립되어 갔다. 관계와 삶의 터전에서 낙인찍히고 추방당했으며 실질적으로 고립되었다. 이는 완전히 고립당하는 극한의 상징적 공포체험으로 드러났다.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서도 단절과 소외를 체험했고 관계 속에서도 단절과 소외를 체험하였다. 또한 사람들은 세상의 불의에 대한 분노했고 용서할 수 없었으며 개인으로서는 원통하고 한이 맺힌 삶을 이어갔다. 이들은 생을 잃었고, 관계를 잃었

고, 자기 자신을 잃었음을 느꼈다. 생은 의미를 잃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마치 자기 탓 같았다. 세계 속에 자기 존재가 없어지고, 인생이 조각나 버리고,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수치스러우며, 사회적으로 전락했고, 자기 자신은 영구히 변형되어 버렸다고 느꼈다. 그럼에도 이 온 삶의 과정 속에서 이들은 죽음에서 생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분투하였다.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통합하며, 고통의 이유를 이해하고, 관계를 통해서 다시 수용 받으며, 사회정의 회복에 의지하여 의미와 회복과 희망을 발견하고자 투쟁하였다.

제7장. 범죄 및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방문조사 결과

이 장에서는 앞서 제3장 1절에서 소개한 UN의 “범죄피해자와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칙” 선언(이하 피해자인권선언)의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권고사항을 기초로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현황을 살펴본다. 이 선언은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법과 공정한 처우, 원상회복, 손실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권고조치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권력남용에 의한 피해자화(victimization)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주요 절차를 담고 있다.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이 선언의 영향 하에 2004년부터 검찰청의 지원 하에 ‘민간법인’으로서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58개 지원센터가 활동 중에 있다. 현재 이 지원센터가 고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문 등 권력남용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문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반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지원 실태의 검토는 향후 국가차원의 고문피해자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데 일정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절. “범죄피해자와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칙” 선언의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권고사항

피해자 인권선언의 적용을 위한 「UN 피해자 사법핸드북」(1985. 이하 사법핸드북)에서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제공할 9가지의 서비스 항목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피해자 사법핸드북은 각각의 서비스 항목들이 “정서적 외상에 대한 대처, 형사사법 절차 참여, 배상 획득, 피해자화의 충격으로 인한 관련 문제 대처에 대하여 피해자를 더 잘 원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시행 및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관한 기준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39] 다음은 그 주요 내용들이다.

① 위기 개입

- 정서적 지원 ; 사망통보 등

39) 국가인권위원회&유엔 마약통제 및 범죄예방 사무국 국제범죄예방센터, 『범죄 및 힘의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리 선언의 적용을 위한 피해자사법 핸드북』(이하 「피해자사법 핸드북」), 2008. 한학문화. p34.

- 직접적 지원 ; 의복, 응급시설, 교통, 범죄현장 청소 및 응급 수리

- 정보 ; 피해자 권리와 관련된 응급 재정적 원조

② 카운슬링

- 정서적 지원 ; 지지적 카운슬링, 외상에 대응하는 장기적 카운슬링, 정신보건 개입

- 직접적 원조 ; 보호시설 소개, 도난 파손된 문서 재산의 수리 교체

- 정보 ; 약물남용 예방, 사회적 신체적 보건 서비스에 관한 정보, 인권협회, 외부의 법적 구제에 관한 정보

③ 옹호

- 직접적 원조 ; 피해자의 신용, 주거, 고용의 지속을 위한 보상, 보험, 개인 신청에 관한 원조, 보호명령, 형사사법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이사, 쉼터 등 일반적 옹호 서비스

④ 범죄수사 단계의 지원

- 정서적 지원 ; 피의자 확인, 신문·증거조사시 동행, 범죄현장 확인시 동행, 사망통지

- 직접적 원조; 재산의 반환, 피해자 보상, 원상회복, 보호명령, 안전한 장소의 제공, 범죄현장 청소, 범죄자 확인 절찰, 법의학적 검사 시 의료적 원조

- 정보 ; 수사경과, 형사사법 절차, 피해자 권리, 용의자의 구금, 보석, 배상확보 수단, 법의학적 검사를 위한 증거 보호, 법의학적 검사 시 의료적 원조, 피해자화 예방 등에 관한 정보. 대안적 구제과정 및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 수사 정보기관에 관한 확인

⑤ 기소 및 재판단계의 지원

- 정서적 지원 ; 심리, 인터뷰, 증언 및 재판에서의 개인적 지원, 외상 카운셀링, 집단 지원 조정

- 직접적 원조 ; 출석 횟수 최소화, 교통비 제공, 재판 출석 조정, 형사사법 절차 참여에 관한 원조, 안전한 장소 제공, 증인 방어, 임금손실 보전, 의류 제공, 아동 돌봄 서비스

- 정보 ; 피해자 권리, 사법 절차 - 고소 및 재판의 경과에 관한 정보, 각 절차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기대되는 것에 관한 정보, 양형의 공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정보

⑥ 사건 처분 이후의 지원

- 정서적 지원 ; 항소 절차 중 지지적 카운슬링

- 직접적 원조 ; 원상회복 명령 집행, 보호관찰 철회, 가석방·사면 절차 참여에 관한 원조

- 정보 ; 처분 이후 피해자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자의 지위 및 석방에 관한 정보
- 기타 ; 피해자 -범죄자의 대화 조정, 피해자 교육

⑦ 관련 전문가 훈련
- 각 전문분야 협력적 T/F 설치
- 능동적 전문가 양성을 위한 훈련 및 교육 실시

⑧ 공공 교육서비스
- 공공 교육계획 개발 시행
- 미디어와 공조
- 선정주의, 공개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개발 배포

⑨ 예방 서비스
- 공적/사적 기관 및 공식적/비공식적 조직과 함께 피해자화예방위원회 설치
- 미디어 캠페인 / 교과과정에 통합교육

9가지 각 항목의 서비스 내용은 기능에 따라 각각 정서적 지원, 직접적 지원, 정보 지원 분야로 나누고 있고 각 지원 분야는 다시 필수 지원내용과 권장 지원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 지원내용은 피해자의 원상 회복을 위한 핵심적 내용이며 일부 서비스 내용은 항목에 따라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원조의 일관성 확보와 제공을 위해 중복되기도 한다. 피해자 사법핸드북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다른 지원체계와 중복될 경우, 반드시 이러한 서비스 전부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한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다른 기관을 통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2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현황

1.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

우리나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2003년 9월 김천·구미지역센터, 같은 해 11월 대전지역센터에서 자원봉사단체로 처음 설립되어 2011년 7월 현재 전국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다.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자발적인 지역 민간 자원봉사자 단체를 표방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민법 32조 내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기초하여 설립되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으로 등록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다.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 심리 상담 등 각종 상담
·-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정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한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병원 후송, 응급진료 및 치료
·-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과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구조신청에 대한 안내 등 법률구조지원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소 등의 운영
- 그 밖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활동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지역 소재 5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2011년 7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5개 조사대상 지원센터를 본문에서는 A, B, C, D, E로 표기한다. 조사방법은 조사원들이 직접 지원센터 사무실을 방문하는 면접조사였고 사전에 질문지를 보냈다. 면접조사의 대상은 각 지원센터의 대표 혹은 실무 책임자였다. 면접조사 시 위 피해자 사법핸드북의 9가지 지원항목 외 윤리강령 제정 여부를 포함한 10개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항목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 피해자지원 서비스 항목 외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와 관련한 조직, 인력, 재정에 관한 내용도 질문에 포함하였다.

2. 운영 현황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2004년 10월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 대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립방안'이 만들어지고, 같은 해 대검찰청의 주도로 10월 13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립기획단'이 발족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곧이어 각 지역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립추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심포지움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조사대상 서울지역 5개 지원센터 역시 동일한 설립과정을 거쳐 창립되었는데 창립시기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에 걸쳐있다.

지원센터의 조직은 (총회) - 이사장 - (운영위원회) - 사무처 - 각 분과위원회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센터의 이사진은 기업가, 병원장,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 경력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해당 지역에서 상당 시간 범죄예방위원회 등 사회단체 활동을 해왔다. 운영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운영위원들로 구성되는 데 주로 지원센터의 재정과 주요 사업을 심의한다. 이사회는 년1~4회, 운영위원회는 년 2~4회, 부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사무처(국)는 처장 1인 외 사무간사 1~2명이 근무하고 지원센터의 일상 업무와 범죄피해자 지원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무처장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근무했거나, 법조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있었고, 병원과 구청 비서실 근무경력자도 있었다. 지원센터의 사무처장 중 범죄피해자 지원활동과 관련있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무처장은 1명(사회복지사)이었다. 실무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은 법무부, 피해자학회 등에서 개최하는 연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센터 사무처장의 임면은 이사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분과위원회 편제는 각 지원센터 마다 대동소이하고 법률지원, 상담, 의료, 구조, 생활지원, 홍보, 조정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분과위원들로 구성되고 회의 개최는 월1회, 혹은 분기별 1회, 년 1~2회 정도 개최되는데, 분과위원들의 개인 일정상 회의개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분과위원들의 활동은 주로 사무처가 의뢰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의료, 생활지원활동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분과위원회 가운데 상대적으로 활동이 활발한 분과는 생활지원, 의료분과, 조정분과이다.

전체적으로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이고,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사무처장과 이사장 사이 결재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센터의 재정규모는 대체로 년 2~3억원이고, 조사대상 중 1곳은 4~5억원이었다. 일반적으로 수입은 지방자치단체(구청)로부터의 지원(사회단체교부금)이 수입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법무부 지원금 2,500만원, 자체 출연금 2,500~8,600만원으로 이루어진다.[40] 전체 수입예산에서 자치단체와 법무부 지원금을 제외한 자체 수입(회비, 기부금, 출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평균 15~30%정도이다. 자체 수입내역은 가장 큰 규모는 이사장 및 이사들의 회비, 출연금인데 이사는 년 200~300만원, 이사장은 적게는 2천만원, 많게는 1억원을 연회비로 출연하고 있다. 일부 지원센터는 일반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거나 개인후원을 받고 있으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5% 내외이거나 그 이하이다. 한편, B 지원센터 사무처장은 “올해 초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의 시행으로 벌금의 4%가 기금으로 조성되었으나 센터에는 아직 지원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에서 인건비 지원으로 3만원이 추가되었다.”고 말했다.[41]

40) 조사대상 지원센터 중 한 곳인 E 지원세터의 수입 예산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2억5천만원, 수입은 법무부 지원금 2,500만원, 자치단체(5개구청, 구당 3,000만원), 자체 출연금 3,500만원, 이월금 4,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1)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2011.1.1시행)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4 이

전체 예산 중 50~60%는 피해자 지원사업비로 지출되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된다. 조사대상 지원센터 가운데 한 곳인 B 지원세터의 예산 지출내역을 보면, 피해자 지원에 64%, 운영비(인건비 포함) 28%, 기타 홍보비 등에 18%를 지출하고 있다.

3. 지원서비스 실태 분석

가. 위기개입

위기 개입은 피해자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개입에서 최우선의 과제는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이다. 피해자가 신체적 위험을 벗어나 응급 의료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음이 명백할 때까지 다른 문제는 차치해야 한다. 신체적으로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상처나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알지 못할 수 있음을 위기개입자는 깨닫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는 다음의 경우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다.

o 피해자가 경찰이 가해자를 신문하는 과정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경우
o 피해자가 공격 발생장소에서 신문받는 경우
o 피해자에게 찢어지거나 잃어버린 옷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경우
o 피해자가 춥고 배고프고 불편한 경우
o 가해자가 체포되지 않았고 보복을 협박하는 경우
o 피해자가 범인을 알고 있는 경우
o 피해자의 가족 또는 친구 또는 증인이 협박을 받는 경우

또한 피해자/생존자가 안전과 보안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는 앉아서 이야기 하는 것, 피해자 또는 생존자에게 어디서 이야기 하면 안전할 것 같은지를 묻고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 피해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 안심시키는 것, 소속과 성명 등을 밝히고 비밀유지 원칙을 설명해주는 것, 가능한 경우 피해자 또는 생존자에 대한 미디어의 접근을 막거나 미디어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센터 가운데 심리지원 분야의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고

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

있는 곳은 없었다.

직접 지원 분야는 “파손된 재산 수리”, “범죄현장 청소 및 긴급 수리”, “피해자 응급/보호시설”, “접근 금지 명령 등을 통한 긴급 보호” 제공 등 부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 피해자 응급/보호 시설로는 법무부가 관할하는 정신 심리치료 시설인 「스마일 센터」를 공통적으로 후송시설로 꼽았다. B 지원센터는 범죄현장 청소의 실제 사례로 범죄현장의 실내 벽지 도배를 지원하기도 했다.

정보 지원 분야는 일부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생활지원금의 제공 범위와 한도에 대한 안내 등을 실제 사례로 들었다.

한편 위기개입 상담(72새간 이내), 긴급 후송 또는 의료 지원 서비스와 피해자 응급/보호시설 제공 서비스의 경우 피해발생 24시간 혹은 72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센터의 경우도 대부분 피해발생 직후에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은 대부분의 지원대상자들이 경찰로부터 인계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범죄 발생 초기에 수사와 영장 청구 등에 매달리고 있어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응급지원이 늦어지고 있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 인계될 때는 이미 범죄피해가 발생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가 대부분이다.

나. 카운슬링(상담)

범죄피해자들에게 정신보건적 치료를 제공해야만 하는 이유는 첫째, 피해자가 형사사법시스템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적 위기 개입 또는 지지적 카운슬링이 필요하다. 기소 후 활동과 공판 전의 문제도 괴로움과 우려의 원인이 되거니와 공판 자체도 스트레스 반작용을 촉발시킬 수 있고, 공판이 끝난 후에 피해자는 평결이나 양형 또는 형집행방식으로 인해 다시 한번 외상을 입을 수 있다.
둘째, 범인이 체포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형사사법시스템이 그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식하게 되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범죄 발생 후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 피해자의 삶에 추가적인 위기 반작용을 촉발시킬 수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다 다른 재앙이 닥치거나 혹은 이혼, 출산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원래의 범죄 기억이 되살아나는 경우도 있다.
넷째, 피해자에 따라서는 피해자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남들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사람마다 피해자화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고 따라서 치유의 경로나 시간도 다르다.

피해자 카운슬링은 단순히 정서적지지, 옹호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현실적 요구 역시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가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강간을 당한 그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는 한 피해자가 안전함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피해자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을 얻기 위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발언하기 위하여, 절도 발생 후 연체된 청구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상의하거나, 법원의 증인으로 설 시간을 얻기 위해 사용자와 상의하거나, 단순히 법정이 어디인지 찾으려고 할 때조차 카운슬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적 카운슬러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정신보건 카운슬링, 종교적 지도 또는 필요한 경우 전통적 치유사를 알려주어야 한다.

카운슬링 항목에서는 대부분의 지원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 내용에서 각 지원센터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시설로 후송 또는 보호시설 제공” 의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스마일센터」를 보호시설로 들고 있다. 조사대상시설이 서울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호시설이 부족하거나 기존의 시설·기관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직접지원 분야의 경우, 보호시설로의 후송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도난·파손·소실된 서류나 재산의 대체, 수리와 같은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은 없었다.

B 지원센터의 경우, 심리지원 분야에서 “개별 및 집단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나 ‘피해자 자조 그룹’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심리 지원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음을 들었다.

정보지원 분야의 경우, 범죄예방협의회 등 민간단체의 지원을 사례로 많이 들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나 민간의 전문 인권단체에 대한 정보 지원을 사례로 든 경우는 없었다.

다. 옹호, 지지

옹호의 목적은 피해자의 합법적 이익을 대변하고 (해당 사건의 구체적 행위를 통한) 잘못된 판단에서 드러날 수 있었던 행동, 태도, 가치, 전통 또는 법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옹호는 피해자화 후 카운슬링과 연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범죄 후에 경험하는 “이차적 피해자화”는 피해자 또는 그 옹호자로 하여금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둘째,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향후에는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변을 바꾸려는 노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셋째, 행동주의는 일반적으로

우울의 해독제 이며 정서 표현의 건설적 방법이다.

다수 국가의 피해자 옹호자들은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피해자가 가지는 권리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입법의 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엔총회의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에 관한 근본적 사법원칙 선언」 채택 또한 대체로 이 선언이 전세계의 수많은 피해자를 개선하는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피해자 옹호자들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지역 각 지부 지원센터에서는 부분적으로 피해자 옹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B 지원센터의 경우 피해자에 대해 구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지원의 시점이 피해발생 후 2~3개월이 지난 후였다.

또한 각 지원센터가 지방검찰청사에 소재해 재판소 접근을 위한 피해자 쉼터 제공에 이점이 있었다.

라. 범죄수사 단계에서의 지원

모든 피해자는 관습적 사법, 전통적 절차, 소송 절차, 행정 및 민사 절차, 국제재판소 등 사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는 사법시스템에 참가하려고 노력할 때의 직간접적인 수단인 중요 단계 및 판단에 관한 적기의 통지, 절차 및 과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피해자의 중요 단계 출석지원, 신문 기회가 있는 경우의 원조 등을 통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 또한 사법시스템의 구조는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접근하려고 할 때 문화, 인종, 언어, 재원, 교육, 연령 또는 시민권 등의 요소로 인하여 마주치는 장애물을 고려하여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피해자의 요구, 관심 및 권리는 그에 마땅한 관심을 얻지 못해왔다.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구제수단과 보호적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번 조사의 결과, 대부분의 지원센터에서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D 지원센터의 경우, 수사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피해자의 경우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경찰을 통해 소개받아 오는 경우가 많았다(A, C, D 지원센터). 각 지원세터는 공통적으로 수사절차와는 관계없이 범죄피해자의 긴급생활지원, 의료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E와 B 지원센터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필요한 심리적, 직접적, 정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경우, 비록 간접적이고 부분적인 서비스 제공이지만 지원센터 실무진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동 수사단계서 경찰과 협력하고 있는 A 지원센터와 C 지원센터의 경우 초기 위기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마. 기소 및 재판단계에서의 지원

모든 피해자가 사법시스템 및 사법절차에 전반에 대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고 사법시스템은 피해자가 정의를 구하는 과정에 직면할 수 있는 장애물을 최소화해야 한다. 「피해자 인권선언」에 따르면 피해자의 요구에 대한 사법 및 행정 절차의 응답성은 다음에 의하여 촉진되어야 한다.

o 중대 범죄와 관련된 경우 및 피해자가 정보를 요청한 경우 피해자에게 소송 및 사건 처분 과정에서의 역할, 범위, 시기 및 경과에 관한 정보 제공
o 피해자의 관점과 관심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적절한 단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고, 관련 국내 형사사법 시스템에 따라 제출되어 고려될 수 있도록 함.
o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적절한 원조 제공
o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사생활을 보호하며, 협박 및 보복으로부터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피해자측 증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함.
o 사건 처분 및 피해자 보상을 인정하는 명령의 실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지연 회피.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A 지원센터의 경우 피해자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 외에 다른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은 반면, 다른 각 지부 센터의 경우 부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C 지원센터를 비롯 일부 센터의 경우 응답자들은 '현실적으로 수사단계에서의 지원은 못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는 동행 등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반면 E 지원센터의 경우 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부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공판부에 적극적으로 정보 협조('피해자 지원카드')를 요청하고 피해자에게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으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바. 사건 종결 이후의 지원

범죄자 기소와 유죄 판결만으로 피해자의 원상회복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소와 재판 단계 이후의 피해자 회복조치로는 범죄자-피해자 간의 조정, 국가

및 범죄자에 의한 재정적 보상 및 기타 배상적 조치(사과, 기념사업, 공공 보험) 등을 들 수 있다.

조정 프로그램은 원상회복과 화해를 위해 범죄자와 피해자를 대면시키는 것이다. 이 조정 절차는 피해자와 범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주선될 수 있다. 1993년 프랑스와 1994년 독일은 피해자-범죄자 조정을 형사절차에서 전면 인정하였다.

다른 배상 방법으로는 범죄자의 사과, 기념행사와 기념비 건립, 공원 또는 지역 명칭 부여, 범죄피해자를 위한 공공 보험시스템 등이 있다.

국가보상 프로그램은 피해자 원조의 주요한 축이다. 국가보상 프로그램은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기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범죄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금과 과태료가 "범죄 피해자 기금"으로 예치된다.[42]

서울 지역 각 피해자 지원센터들은 사건 종결 이후에도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항소과정에서 지지적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직접적인 피해자-범죄자 조정이나 보호관찰의 철회, 가석방, 사면 절차 참석에 관한 지원 등 실질적인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사. 관련 전문가 훈련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은 피해자 원조에 관한 학제적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각 전문분야 협력적 T/F를 설치하고, 적어도 경찰인력과 검사에 대하여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학제적 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경우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전문가 집단을 모두 확인하고, 해당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피해자 문제에 관한 예비적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능동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설계 및 시행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서울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 조직내부에 법률지원, 의료지원, 생활지원, 상담지원, 구조지원 등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각 분과위원회에는 10명 내외의 위원들이 소속되어 있고, 위원들은 변호사, 의사, 상담가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전직 교사, 사업가, 일반 봉사자, 은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운영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별 지원센터의 분과위원회는 제각기 월1회에서부터 분기별 1회, 년1~2회 등

42) 위 「피해자사법 핸드북」, p.87. 특히, 집단범죄 피해자와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배상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칠레, 엘살바도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손실보상이 국가적 화해의 기초로서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집단피해자와 권력남용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사례로서, 제2차 세계대전 중 강제수용당한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미국의 국가보상, 토지를 빼앗긴 원주민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한 캐나다, 권위주의 체제하 실종, 의문사한 가족·친인척, 고문피해자에 대해 국가보상한 브라질의 사례가 있다.

부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어 상시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문가들의 학제적 협력도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훈련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년1회 연수교육을 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각 지역별 지원센터에서 자체 설계 및 시행하는 경우는 없었다. 필수 평가항목인 경찰과 검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센터도 전혀 없었다.

아. 대중 교육 서비스

범죄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은 공공 교육계획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 또 가능한 경우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미디어와 공조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화를 가증시킬 수 있는 미디어의 선정성과 공개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용가능한 실무기준(윤리강령)을 개발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필수평가항목인 대중교육에 관하여 실행하고 있다는 응답한 지원센터의 경우, 팜플렛이나 홍보물을 배포한다고 답변하였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는 매년 10월 넷째 주를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설정하고 홍보와 교육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 조사대상 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대중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은 없었다. 미디어와의 공조는 연예인 홍보대사 임명(B 지원센터)과 보도협조 등 홍보 관련 협력이 많았다. 일선 실무자들의 경우, 선정적 미디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지니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나 윤리강령으로 공식화한 경우는 드물었다.

자. 예방 서비스

많은 형태의 범죄에서 반복적 피해자가 경찰 및 피해자 서비스 업무량의 실질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원조프로그램은 재피해자화를 예방할 수 있는 피해자 원조전략으로서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통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경우 피해자화 예방에 관한 포괄적인 전략을 조정하기 위한 공적/사적 기관 및 비공식적 조직과 함께 피해자화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디어 캠페인 및 모든 교육단계의 교과과정에 피해자화 예방 정보를 통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피해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더욱 정확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현재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법무부 훈령에 근거한 민간봉사단체로서 '범죄예방위원

회'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각 지원센터들은 범죄예방 업무의 경우 '범죄예방위원회' 지역 협의회가 담당하고 있어 연계업무 외 자체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데에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따로 피해자 정보를 수집 저장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차. 실무에 관한 기준 및 윤리강령 마련

피해자지원 프로그램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접촉하는 사람뿐 아니라 동료 및 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서면의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기준의 일관성은 특히 국제적 활동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욱 중요하다.

지역별 지원센터 일부에서 실무 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통일된 실무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4. 소결

고문방지협약 및 선택의정서는 고문 금지의 원칙과 고문방지를 위한 조사 원칙을 밝히고 있으나, 고문피해자에 대한 세부적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앞서 제3장에서 소개한 UN의 "범죄피해자와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칙" 선언은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고문 등 권력남용에 의한 피해자와 범죄피해자들을 위하여 사법과 공정한 처우, 원상회복, 손실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권고조치를 담고 있고 피해자화(victimization)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주요 절차를 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04년경부터 활동 중에 있다. 이번 조사에서 비교적 활동이 활발한 서울지역 5개 센터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재정, 조직, 운영 면에서 독립성과 자생성, 전문성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센터는 발족 초기부터 법무부와 검찰청의 지시와 주도에 의해 조직되었고, 운영에서도 대표(이사장) - 사무처 중심의 협소한 의사결정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 지원금이 대부분이었고,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5~30%선에 머물고 있었다. 자체 수입도 이사장의 출연, 기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불안정한 상태였다.

피해자 지원활동에서도 9가지 지원서비스 항목 중 임시 보호시설 제공, 카운슬링, 조정 기능, 피해자 구조금 지원과 의료 연계 등에서 일부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나 48

시간내 위기상황 개입, 심리 지원,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개입과 지원, 옹호지지, 전문가 훈련 체계, 대중교육, 예방 업무 분야에서는 거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국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UN 피해자 사법선언에 포괄하고 있는 '권력남용에 의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나 대책, 구제 사례가 없었다. 이는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경찰과 검찰의 지원에 크게 힘입고 있는 실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현 단계에서 국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고문 등 권력남용 피해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럴 의사나 능력도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고문피해자들을 위한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지원센터의 설립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8장. 결론

1절. 조사결과의 요약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1) 조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과 인권관련 단체, 개인들의 도움을 받아 여전히 음지에서 생활하는 고문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을 통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상자선정, 대상자면담 등의 어려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조사에 참여한 고문피해자들은 213명으로 시대별로 구분하면 1970년대 이전은 2명, 1970년대 62명, 1980년대 128명, 1990년대는 13명, 2000년 이후는 8명이었다. 그 외 고문피해자 외 피해자 가족 10명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참여자를 당시 연루된 사건 영역별로 구분해보면 정치·재야사건은 47명, 노동사건은 48명, 청년·학생 사건은 61명, 농민·빈민 사건은 2명, 교육·통일·여성 사건은 3명, 종교·문화 사건은 2명(이상 시국사건 163명, 76.5%), 조작간첩은 43명(20.1%), 비시국사건은 7명(3.2%)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고문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시국사건인 경우는 53.7세, 조작간첩은 68.6세, 비시국사건은 40.5세로 조작간첩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가장 나이가 많았다. 대부분 남자가 주를 이루었고 사는 곳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였으며, 충청지역이 가장 적었다. 조사 대상자들의 학력은 대졸이상인 경우가 113명(53%)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만 졸업한 경우도 28명(13.3%)이나 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한 달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4.9%로 조사되었다.

2) 고문 사건 분석

고문이란 피해자의 정체성을 유린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측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형태의 폭력으로 피해자에

게 가해졌음이 드러났다. 본 조사에 참여한 고문 피해자들은 고문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인간성과 정체성을 말살당하고 굴복해야 하는 극단의 고통을 겪었다고 하였다. 가해자는 여러 형태의 고문 기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이러한 상태에 처하게 하였다.

고문유형은 크게 신체고문, 심리고문, 박탈고문, 노출고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신체고문은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적 가해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심리고문은 욕하기, 조롱함, 행동의 강요, 위협, 가해자의 태도 돌변 등 심리적 조작 및 모욕주기의 행위들이 포함된다. 박탈고문은 기본욕구를 박탈시키는 가해행위로서 외부인과의 단절, 감금, 수면/섭식/빛/의료 박탈 등이 포함된다. 노출고문은 특정 자세를 강요하거나 감각적 불편감을 가하는 행위로 묶여있거나 못 움직이게 하기, 심각한 감각적 고통에 노출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참여자(고문피해자)들 가운데 시국사건과 조작간첩 사건 관련 피해자들은 평균 30~40일 가량 경찰, 보안사, 안기부 등 정보수사기관에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온몸 구타', '모욕주기', '물고문' 등 신체적, 비신체적 고문과 박탈/노출 고문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조사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경험된 고문은 '욕하거나 모욕주기', '외부인과의 단절'의 심리적 고문과, '온몸구타'의 신체고문이었다.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과 같은 심각한 강도의 고문도 높은 빈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히 조작간첩사건 피해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높았다. 특히 조작간첩 피해자의 경우 가족에 대한 위협과 협박이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강도 높은 고문이었음이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고강도 신체고문을 줄어들었으나 비신체(심리)고문, 박탈고문, 노출고문 역시 신체고문과 유사한 수준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문유형 중 물고문, 각목구타 등이 90% 이상의 극단적 고통으로 지각되었고, 전기고문, 온몸 구타, 성기고문 등과 같은 가혹한 형태의 신체고문이 높은 수준의 고통을 유발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신체고문만이 아니라 심리고문, 박탈 고문, 노출 고문과 같은 비신체고문도 신체고문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수준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고문유형의 시대별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197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높은 강도의 신체고문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사한 고통을 야기하는 이러한 비신체 고문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비신체고문이 야기하는 고통에 대한 인식 증진 및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해 보인다.

고문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했던 장소는 경찰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안수사대 안기부 기무사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불법구금일은 약 30~40일 정도였고 투옥기간은 1년 6개월~8년까지 다양하였다.

3) 고문과정에 의료인의 개입

고문과정에서 의료인의 진료를 경험한 경우가 응답자의 24.4% 정도로 나타났다. 고문 과정에서 의료인이 취한 의료적 조치의 사례 가운데 '전기고문 진행 중 의료인 참석', '의식 확인과 주사', '청진기를 가슴에 댐' 등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백히 고문의 진행을 돕거나 고문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의료행위로써 고문을 방조한 경우가 드러났다. 치료적 목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설사 치료적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고문이 진행되는 것을 막지 않았거나 고문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고문 사건에 대한 방치로 의료인의 고문 개입 행위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고문과정에서 의료인의 개입은 국제법과 의료계가 모두 금지하고 있다. 특히 1975년 세계의사회의 도쿄선언은 "의사는 고문이나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가 가해지거나 이러한 행위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어떠한 과정에도 가담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문가해자들의 요청에 의해 의료인이 고문피해자들을 진료하는 것은 고문이 지속되게 하거나 고문의 증거를 은폐해서 고문을 돕거나 방조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사협회의 윤리법사위원회는 "의사들은 고문현장에 참석해서는 안된다. 의사들은 만일 그들의 행위가 가장 이익이 된다면 재소자들이나 피구금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고문을 시작할 수 있을지 또는 고문을 계속해도 좋을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치료해서는 안된다....의사들은 고문피해자들에게 지원이 제공되도록 도와야 하며 언제든지 고문의 진행이나 고문의 상황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인이 고문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명백히 금하고 있다.

4) 고문피해자들의 일상에서 지속되는 심리사회적 고통

고문 피해는 단지 고문폭력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로도 이어졌다. 따라서 고문 폭력에 더하여 피해자들의 일상에서 지속되는 심리사회적 고통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생활상의 심리사회적 고통을 보안관찰 관련 고통, 사회경제적 고통, 사회적 지지 부재의 고통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조사참여자들이 현재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통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이는 고문으로 인한 피해가 일생생활 전반으로 파급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취업 제한, 건강문제, 사건피해와 관련된 지원 부재, 가족 친척의 배척, 고문 경험에 대한 주위의 외면 등을 생활고통으로 겪고 있었다. 특히 조작간첩 사건과 관련된 경우 보안관찰고통과 사회적 지지부재 순으로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 우리 사회에서 조작간첩사건으로 고문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수한 생활고통의 맥락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5) 고문피해자들의 건강 상태와 자살시도

본 조사결과 조사참여자의 36.6%에서 알코올 의존경향을 보이고 있고, 질병 분포는 만성질환, 소화기질환, 정신질환, 근골격계 질환 순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은 고문피해자와 같은 고위험집단에서는 유병율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조사 결과 특이한 점은 질병을 진단받았지만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질환에서 정신질환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남자의 경우 38.6% 여자의 경우 30.5% (불면증 제외)로 조사되었고, 이는 2006년 일반 인구집단의 유병율(남 30.5%, 여 20.5%)에 비해 남자는 1.26배, 여자는 1.48배 높은 것이다. 우울증은 기분장애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본 조사에서는 22.8%로 조사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우울장애 평생 전체유병율에 비해 약 4배정도 많은 수치이다. 불안장애는 17.9%로 조사되었는데 불안장애 평생 전체유병율보다 2.8배 높은 수치이다. 특히 본 조사참여자들의 정신분열증 유병율은 11.3%로 이는 정신분열증 평생 전체 유병율인 0.5%보다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자살을 시도한 비율도 총 응답자의 24.4%에 달했는데.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의 경우 자살시도율은 39.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 중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적이 있는 비율이 7.6%인 것에 비해 4배정도 높은 수치이고, 2010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소득수준을 표준화하여 소득수준이 '하'인 계층에서 자살시도율 10.4%인 것에 비하면 2.4배 높은 수치이다. 이렇듯 고문피해자들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에 쉽게 이환되기 쉽고 그 결과로 자살시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높은 정신질환의 유병률과 빈번한 자살 시도는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심리적 치료개입의 위급성과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다.

6) 고문 피해자들의 심리적 후유증

복합적인 고문 관련 피해는 만성적인 심리적 후유증으로 나타났다. 복합적인 피해 경험으로 인한 만성적 심리적 후유증은 복합성 외상후 증후군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도 피해자들이 만성적인 복합성 외상후 증후군을 높은 비율로 호소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피해와 위험이 현재에도 지속되는 것처럼 체험하는 재경험 증상, 사건과 관련된 단서에 대한 행동, 감정, 사고의 억제가 따르는 회피 증상, 지속적인 과다각성과 과다경계 증상으로 구성됨) 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신체적 증상으로 지각하는 신체화 증상, 대인관계 적응 문제, 그 밖의 우울, 불안, 적대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체 213명의 참여자 중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한 자가 76.5%(163명), 신체화 증상 43.2%(92명), 대인예민성 27.7%(59명), 우울증상 25.4%(54명), 불안증상 31.9%(68명), 적대감증상 27.7%(59명)로 나타났다.

특히, 조작간첩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보다 높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는 조작간첩 사건과 관련된 경우 이들이 고문에 대해 전혀 예상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고통을 경험했고, 특히 상대적으로 보다 강도 높은 고통의 고문유형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가기관의 재조사를 통해 고문당한 사실을 인정받거나, 법원 재판 결과 고문당한 사실을 인정받았음에도 심리적 후유증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7) 고문피해자 가족의 전이외상

본 조사에서는 고문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만성적인 심리적 고통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가족 참여자의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고문 피해의 전이외상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고문피해자의 고통은 그대로 가족에게 전이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피해자 가족 10명 모두는 완전 PTSD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해당되었다. 전이 외상으로 나타난 심리적 후유증의 경우 PTSD, 신체화,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증상 등 복합성 외상후유증으로 나타났다. 또 고문 피해자가 가족 내에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고문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과 관련하여 취조를 받거나, 고문피해자의 피해상태를 목격하거나, 보안관찰을 겪었으며, 교육이나 직업 활동이 제한되면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주변사람들과 친인척의 외면과 배척, 국가나 사회의 지원 부재 등 사회적 지지부재의

고통을 겪었다. 피해당사자에 대한 지원조차 부재한 환경에서 특히 가족으로서 겪은 특수한 피해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지지받은 경험은 더욱이 부족했을 것이며, 경험 공개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의 가능성 때문에 지원의 기회를 얻기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관련 고통, 사회경제적 고통, 사회적 지지 부재, 피해자 폭력의 악순환 경험을 매우 고통스럽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문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8) 국가조사기관의 구제조치에 대한 만족도

전체 응답자의 43.7%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각종 과거사위원회, 등에 고문피해 관련 재조사를 신청한 경험이 있었다.. 고문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곳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44건)이고, 다음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1건)이다. 국가기관에 신청 후 고문당한 사실을 인정받은 비율은 신청경험이 있는 88명중 67명(76.2%)으로 나타났다. 고문피해 신청자의 70%이상이 고문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지속된 피해자들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시국사건 참여자의 63%, 조작간첩 사건 관련 참여자의 37%정도는 고문피해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도 절반 이상(56%)의 참여자가 미신청인들이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고문피해자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노출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도 미신청비율이 이 정도라면 실제 은폐되고 잠재된 고문피해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문피해자들은 재조사 신청결과에 대해 49.2%가 불만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시국사건 관련 피해자의 경우 불만족 비율은 73.6%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불만족 이유로는 충분한 재조사가 되지 않은 점, 국가기관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단순히 돈으로 보상하려는 태도, 명예회복이 안 되고 있는 점, 낮은 보상금, 고문 후유증에 대한 보상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었다.

9) 재심을 통한 법원의 구제조치에 대한 만족도

법원에 고문사실 인정에 대한 재판을 신청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는 27%정도로 국가조사기관에 신청한 것보다 절반정도 수준이었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조작간첩(53.5%)인 경우가 시국사건(18.6%)인 경우에 비해서 3배정도 더 많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문사실을 인정받은 비율은 55~60%정도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재심 등 법원의 구제조치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가 불만족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인정을 받기위한 처리과정이 너무 길다는 점과 인정을 받은 후에는 국가가 능동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고 개인이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불만족스럽다고 하였다. 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만족 하다고 하였다. 즉 불법구금일에 대한 보상을 고려하지 않은 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보상신청금액을 전액 보상하지 않은 점, 타당한 근거 없이 보상기산점을 산정하는 점. 단순히 외상, 증상, 구속일수에 의한 보상만 이루어졌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고려 없이 보상이 결정 난 점을 불만족한 이유로 꼽았다.

10) 고문피해 지원에 관한 요구도

마지막으로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84.7%)가 국가 차원의 고문방지기구의 필요성으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식 증진(71.8%), 정신·심리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치유센터 건립(66.3%), 경제적 지원과 보상(62.8%), 신체적 후유증 치료와 재활을 위한 보조장비, 의료비 지원(56.3%), 임대주택 등 주거비 지원(49.5%)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고문피해자 지원방안은 크게 국가 차원의 과제, 법적 제도적 과제, 고문 후유증 치유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먼저, 국가 차원의 과제로는 공식적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 고문피해자 실태조사와 사건 추가 조사, 의료보호와 임대주택 등 생활지원, 충분한 배·보상, 인권교육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법적 제도적 과제로는 고문 가해자 처벌의 법적 근거 마련, 사법부 개혁, 고문 근절을 위한 입법, 고문피해자 지원 입법, 고문피해자 재심관련 특별입법, 고문방지 기구와 고문피해자 전담 지원기구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고, 고문 후유증 치유 대책으로는 고문피해자와 가족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전문 치유센터의 건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2. 심층면접조사 결과 요약

24명의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자들의 정신과적 진단 결과 이들이 만성적인 외상 관련 후유증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문 사건 이후로부터 과거 시점에서 주요 I 축 정신과적 진단이 부재한 참여자는 단지 2명(8.33%)에 불과했고 이들 또한 주요 진단이 부재할 뿐이지 생활에 명백한 고통을 유발하는 유의미한 정서조절 문제나 강박 증상을 지녔다. 마찬가지로 면담 현재 시점에서 주요 I 축 정신과적 진단이 부재한 참여자는 3명(12.5%)에 불과하였다. 이들 역시 정서조절문제나 강박 증상 등 기타 주요 증상을 겪고 있었다. 즉 고문사건이 일어난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참여자가 고문 사건과 관련된 정신과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 정신과적 장애로 중복 진단을 받은 참여자도 과거 시점 진단 9명(37.5%), 현재 시점 8명(3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요하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공황장애, 물질관련장애, 수면장애의 고통을 중복되게 겪고 있었다.

24명의 참여자의 인생 내러티브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문 경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인간으로서 상징적으로 살아남고자 분투한 체험의 이야기였다. 이들의 고문 경험은 면담하는 순간에도 생생히 살아있는 상태였으며, 현재의 내러티브는 이러한 생생한 정서적 체험과 더불어 고문이라는 가혹한 폭력 속에서 생존하고자 했던 내면의 의지로 기술되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상황을 이해하고 통제해 보고자 애쓰며 삶을 이어가고자 투쟁하는 이야기였다.

고문 경험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시작점이었다. 현재의 고통체험은 과거 고문 사건 당시의 기억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으며 고문 당시의 기억은 현재 고통의 주제와 맥락을 담고 있었다. 고문을 겪고 길게는 수십 년이 더 지난 현재, 해결되지 못한 고문의 기억으로 여전히 고통은 지속되고 있었다. 자신에게 가해진 고문은 끝났으나 그 고통은 생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고문이라는 폭력과 이후 삶의 고통이 연결되지 못하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버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점은 큰 시사점을 남긴다. 제 1범주의 고문 경험이 나머지 제 2-5범주의 고통 주제에서 반복 확인된다는 점은, 고문이라는 체험이 어떻게 개인 삶 속에 확장되고 삶을 지배해 버리는지를 잘 보여준다. 고통 체험의 지배 안에서 가해자가 증발되었다고 하여 이를 개인의 성격적 문제나 개인 탓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이후 삶 속에서 가해의 존재가 기저에 이어지고 있음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

통제 불가능했던 고문 경험은 이후 인생을 통제하려는 시도들 안에서도 재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의 시도들은 과거에 갇힌 채 과거의 경험을 통제하려는 시도들이었다. 이는 고통을 반복하여 체험하게 만들며 참여자들을 악순환에 놓이게 하였다. 즉, 때로는 고통을 단절 내려는 지난한 시도들이 오히려 고통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은 어떻게든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통을 통제하고자 하나, 때로는 이러한 통제 시도들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통제 시도들은 현재 지금-여기에 충실하면서 고통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고 있었고 때로는 폭력과 고통을 재현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과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든 자기 치유를 하고자 하는 힘 있는 행동의 주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심리치료적 개입은 상당히 중요하다. 과거의 경험을 현재 없던 것으

로 바꿀 수는 없으나, 현재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주목하여 이를 치유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치유 체험이 참여자들의 현재와 미래를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인간은 힘 있는 치유의 주체이기에 이러한 개입은 가능하다. 이러한 개입은 인간 중심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이들이 직접 자기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인간이 가한 폭력이었기에 폭력은 다시 인간관계 체험 속에서 재현되었다. 관계 체험은 고문폭력의 핵심 체험으로 표면에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었다. 사람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폭력을 당하고 사람과 단절된다는 고통은 인생에서 크나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치유의 또 다른 열쇠는 관계 회복에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사람에게서 얻은 고통은 사람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었다. 불신의 체험을 신뢰와 연결의 체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중요했던 것이다. 이들의 내적 경험은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관계 중심적 치유의 태도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 자행된 폭력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의 열쇠가 다시 인간의 손에 있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이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참여자들에게 두드러지는 또 다른 핵심 주제는 불의에 대한 분노와 한이었다. 이는 아무리 개인이 자기 인생경험을 이해하고자 애써도 결코 개인 혼자의 힘만으로는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고통의 핵심을 반영한다. 개인적인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고통의 핵심은 치유에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대변한다. 세상의 불의에 대한 분노와 한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응답이 필수적이다.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는 태도와 적극적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문 경험이 생, 관계, 자기존재에 가한 변형은 참여자의 인생 이야기에 중요한 주제였다. 이들은 고문으로 인해 생을, 사람을,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체험을 겪었다. 참여자들은 상실을 슬퍼하고 애도하였고 미안해하였다. 또한 잃어버린 자신에 대해 슬퍼하고 분노하였다. 때로는 자신을 위해, 때로는 자신을 향해 분노하였다. 이점은 사회적 폭력이 어떻게 개인화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개인의 삶 구석구석에 가해지는 상실의 경험은 모두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된다. 그럼에도 참여자들은 혼란스러운 자기 상실 체험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확인하고 잃어버린 생의 조각들을 통합하고자 분투하였다.

다만 지적해야 하는 부분은, 비시국 사건과 관련된 경우 이러한 고통의 개인화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낮았다는 점이다. 참여자들 중 비시국 사건과 관련된 자들은 대부분 가족과 동료,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었고 스스로 '배운 것, 가진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국가 기관이 자행하는 행위를 더욱 강압적으로 느꼈고, 상대적으로 힘없는 개인으로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느꼈다. 때로는 자신이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서 과거 시국사건과 다르게 오늘날의 고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고문이 가해되고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더하여 사회적 지원 체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들이 고문의 가해의 목적을 그대로 체화하고 고립될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참여자들의 삶을 체험 과정으로 엮었을 때, 그들이 자신의 고통체험을 통합하고, 수용하고, 끊임없이 이해하고자 느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행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신념과 정체성을 지키고, 고통 속에서도 긍정적인 체험과 의미를 통합하였다. 또한 신과, 다른 사람들과, 생을 향한 긍정적 태도와 연결되면서 피할 수 없었던 고통의 존재와 실존적 조건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통의 이해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홀로 고통의 이유를 납득하기 위하여 어떻게 분투해야 하는가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사회의 도움 없이 홀로 고통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들은 고통에 대한 자신만의 이유를 찾아야 했다. 그 결과 때로 부당한 고통이 정당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고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당사자에게만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이들이 각자의 삶을 이해한 방식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이 홀로 고통의 이유를 찾아내야 했던 오랜 세월 동안 과연 사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사회정의 회복의 기운이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위한 기쁨과 희망의 토대였음을 짚어야 하겠다. 세상의 정의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 이 고통에 사회적 속성이 있으며 단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관점의 확장은 이들의 생 투쟁 과정의 기반이 되었다.

결국 치유의 과정 속에서 개인은 언제든 생을 위해 분투하고 의지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분투를 무력화하는 것은 개인을 단절시키고 고립시키는 외부 체계이다. 외부의 구성 체계들은 따라서 다각적인 협력을 통하여 치유를 위한 지원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충족되어야 만이 고문이라는 폭력에서 벗어나 개인과 사회가 함께 치유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2절. 고문방지와 고문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언

1. 고문피해에 관한 지속적 조사

1) 지속적인 조사의 필요성

고문피해 지원의 첫 단계는 공정한 조사와 진실규명이다. 이번 고문피해자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시국사건 피해자의 63%, 조작간첩 사건 관련 피해자의 37%정도는 고문피해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56%)의 참여자가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 각 과거사위원회,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등에 피해사건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조사참여자 가운데 76%정도가 고문당한 사실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과거사위원회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등에 피해사건을 신청한 경우에도 시국사건의 경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73.6%에 달하고 있다. 불만족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고문피해자들은 고문피해 조사를 국가기관이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수행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여러 과거사위원회에서 과거 고문피해 사건을 조사했으나 여전히 다수의 고문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조사나 진상규명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고, 국가의 재조사를 경험한 피해자들 중에서도 다수는 조사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실정임이 확인되었다.

2) 이스탄불 의정서의 고문 피해조사 기준

2000년 이후 국내에서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 차원의 고문행위에 대한 조사기구들이 설립되어 활동하였으나 조사활동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기법에 관한 기준과 지침은 제시된바 없다.

고문피해는 대부분 '밀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또한 현대의 고문기법은 의학, 심리학 등 과학의 발달에 따라 더욱 교묘해지고 있고, 심리적 파괴력이 극심하며 고문의 과정 또한 체계적이고 의식적으로 진행된다. 더욱이 고문은 정부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본질적 특성이다.[43]

---

43) 페터 엘사스, 최현정 역, 『고문·폭력 생존자 심리치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p.28~30.

오늘날 고문의 범주는 1971년 북아일랜드에서 발생한 고문사례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판단(1979)보다 훨씬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지만, 고문에 관한 피해자와 일반 시민들의 판단기준은 물고문, 전기고문, 칠성판과 통닭구이라는 전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고문을 부인 혹은 정당화하는 정부 및 가해자들의 허구적 논리와 주장이 고문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고문에 관한 조사, 기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준다. 동시에 고문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문 행위에 관한 조사와 기록은 더욱 긴요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앞서 제3장에서 언급한 「이스탄불 의정서」는 고문방지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고문 행위에 대한 조사와 기록에 관한 지침서이다. 이 국제적 지침서와 2000년 이후 국내 과거사조사활동의 경험을 종합하여 고문피해의 지속적 조사를 위한 제언에 가름하고자 한다.[44]

첫째, 국가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진정, 신고된 고문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고문조사의 원칙은 적합성, 공정성, 독립성, 신속성, 철저함이다. 필요한 경우 국가는 독립적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인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조사범위와 조사대상의 한계로 인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자행된 고문피해에 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조사활동이 불가능하므로 보다 광범위한 고문피해 조사를 위해서 독립적인 국가조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국가기구는 고문피해에 관한 조사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고문근절 캠페인, 고문피해자 지원·치유사업, 교육과 국제협력 사업 등 고문방지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고문조사의 목적은 고문 사건의 책임자들을 밝히고 그들의 기소를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보상을 얻기 위한 다른 절차의 범주 내에 사용하기 위해서 고문혐의 사건에 관련된 사실들을 확증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의 주체는 최소한 고문 피해자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해야 하고, 고문 가해자의 기소에 도움이 되는 의학적 증거를 포함한 고문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재생하고 보존해야 하며, 유력한 증인들을 찾아서 진술서를 확보해야 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문 사건이 발생했는지 와 고문을 유발한 모든 양태 또는 계책 계략을 읽어내야 한다.

고문에 대한 조사와 기록의 목적은 ① 진상 규명 및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개인과 국가 책임의 수립과 인정, ② 재발 방지에 필요한 대책 수립, ③ 조사결과 책임자로 지명된 사람들을 기소하거나 그에 합당한 징계 처분을 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경제

44) 아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이스탄불 의정서』, 2008. 에 언급된 지침 내용을 재구성하고,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내 과거사조사기구의 활동의 경험을 일부 포함한 것이다.

적 보상 및 치료와 재활을 포함하여 국가로부터의 보상과 구제를 표명하는 것이다.

2000년 이후 국내 과거사 조사기구는 고문 가해자에 관한 처벌이 불가능하였다. 현 단계에서는 반인간적 범죄에 관한 형법상 공소시효문제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고문가해자 처벌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스탄불 의정서는 고문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뿐만 아니라 가해자 처벌과 고문피해에 대한 보상과 치유, 재활 등이 국가의 의무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셋째, 조사 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또한 혐의 상에 있는 모든 관료들을 포함한 증인들에게 출두를 명하고 증거 제출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한다.

국내 과거사위원회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사과정에서 접근할 수 없었던, 혹은 가해기관으로 의심되는 국가기관들의 비협조로 인해 차단되었던 더 많은 자료와 증인들이 있다. 또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다수의 고문피해사례가 계속 수집되고 증언되고 있다. 조사기구의 불충분한 조사권한은 고문피해조사의 중복 및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며, 근본적으로 조사활동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한다.

넷째, 고문 피해자들과 그들의 법정 대리인은 심리와 조사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보받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밖의 다른 증거를 제시할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다섯째, 조사위원과 조사관은 혐의가 있는 가해자와 그들이 속한 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어야만 하고, 능력이 있고, 공명정대해야 한다. 조사위원들은 고문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국가 단체, 정당 또는 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고문피해자의 치유와 재활단체 관계자들 또는 피해자가 회원으로 있는 단체의 회원이라는 사실이 배타의 구실이 되면 안된다. 또한 조사위원들의 자질로서 법률, 의학 및 기타 적합한 전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조사위원들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직함과 공평함에 대한 평판이 있어야 한다.

조사관들은 공정한 의료인들 또는 기타 전문가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에 의한 직권, 조사의 권한을 받아야 한다. 조사 수행에 필요한 방법들을 최고 전문가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조사관들은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 기술적 재원을 임의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조사관들은 공적 자격으로 고문에 관련된 모두를 출두시켜 증언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국내 과거사위원회의 경험을 돌아보면, 조사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인권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관들의 경우도 차별없이 공정하게 충원하되 인권의식과 조사실무역량에 관한 검증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조사대상자는 조사의 모든 단계에서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는 최소한의 절차상 보호장치를 보장받아야 한다. 조사대상자, 혹은 고문가해 혐의가 있는 증인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상황을 조성해야 한다. 중대한 증언에 대한 처벌면제, 신분보장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고문조사의 절차. ① 고위 공무원이 고문에 가담한 것이 의심되거나 묵인이 의심되는 경우, 고문 기법이 국가가 지원한 고문에 의한 것일 경우, 국가와 관련된 자가 고문조사를 방해, 지연하려고 시도한 경우, 기타 독립적 조사가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와 전문성, 공정성 등 일반 조사기관의 조사가 의심되는 경우 국가는 '특별히 공정한 조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② 국가는 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폭력, 폭력의 위협, 또는 다른 형태의 위협으로부터 고문피해자와 증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보호해야 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통보받아야 하고 정기적으로 조사과정에 대해 통보받아야 한다. 피해자는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호 단체나 치유 단체에 관한 연락처 정보를 받아야한다. ③ 조사관을 선정하는데 있어 동일한 성별, 같은 문화적 배경, 또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한 피해자의 선호에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조사관은 고문사건을 문서로 증명하는 사전 훈련이나 경험이 있고, 고문을 포함한 외상(트라우마) 피해자와 일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④ 조사관은 조사 정황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필요한 예방조치와 보호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고문피해자와의 면담은 긴박히 위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신중해야 한다. 조사관의 언어 선택과 태도는 피해자의 면담능력과 자발성에 큰 영향을 준다. 면담장소는 화장실과 간식이 제공되는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어야 한다. 조사관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피해자를 면담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관은 피해자 증언의 외상적인 본질을 감안하여 어조와 질문의 표현법과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증인은 언제든지 질문을 중단하고 필요시 휴식을 취하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⑤ 고문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또는 상담서비스는 고문피해자와 증인, 조사관들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상담자는 고문피해자와 동일시되어 피해 진술에 대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상담자가 고문경험을 듣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내심 피해자의 경험을 축소시키는 오류나 위험을 인지해야 한다. ⑥ 고문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조사관들을 비롯해 피해자, 증인들, 그들의 가족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통제나 권력이 미치는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조사관들은 피해자와 다른 증인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증인들이 그들의 증언으로 인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사관은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찾아야 한다. 조사가 기소 또는 다른 공개적인 진상규명 포럼으로 이어지는 경우, 조사관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신원이 드러나

는 이름과 정보를 삭제해야 하고, 증인이 영상이나 음성변조장치, 또는 폐쇄회로 TV으로 증언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대책을 고안해야 한다. 이 방안들은 가해자들에게도 일관되어야 한다. ⑦ 이상적으로 통역자는 조사단의 일원이고 고문 문제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⑧ 피해자 진술에는 체포, 납치, 구금을 포함하여 고문에 이르기까지의 상황, 고문의 대략적 날짜와 시간, 고문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의 존재 여부,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의류, 흉터, 키, 체중 신체적 특징과 언어 또는 발음의 특이점, 기타 가해자에 대한 상세한 묘사, 피해자가 듣거나 질문당한 내용들, 구금장소에서의 일상과 비인도적 처우의 유형, 고문방법과 고문에 대한 사실묘사, 성폭행 피해 여부, 고문과정에서 입은 신체적 손상, 무기 및 사용된 고문도구, 고문에 관련된 사건의 목격자 신원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 진술은 녹음되어야 하며, 녹음내용은 문자화되어야 한다. ⑨ 가해자 진술에는 이름, 성별, 키, 체중, 인상착의, 출신지역, 사투리 사용,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 근무경력, 사회단체 활동경력, 상벌 사항 등 일반적 확인사항과 고문사건 당시의 소속, 직위, 직급, 소속 기관의 지휘체계와 운영실태, 주요 지휘자의 이름과 동료들의 이름, 기관시설의 위치와 평면도, 조사실의 위치, 조사실의 내부 집기, 벽과 바닥, 천정의 구조와 설비, 고문 가해 당시의 상세 묘사(고문도구와 유형, 강도, 빈도, 가담자, 구체적 행위, 피해자의 상태 등), 고문을 실행키로 결정한 조직 단위와 결정 책임자, 조사팀의 구성과 역할 구분(고문가해와 진술조서 작성), 국정원 보고와 검찰 송치 과정, 사건 담당 검사와의 면담·지시하달 내용, 공판 대응전술, 교도소 전향공작 면회 내용, 피해자 가족에 대한 관리, 피해자 외 참고인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다. ⑩ 증거의 수집. 대부분의 고문은 애당초 물적 증거의 보존이나 무제한 접근이 어렵고 불가능한 감금 형태로 구금시설에서 이루어진다. 조사관은 국가로부터 모든 장소와 구역에 제한받지 않고 출입할 권한을 부여받고 고문이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대상 건물 또는 지역은 폐쇄되어야 하고 조사관들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증거는 증거의 오염, 변경, 또는 분실을 막기 위해 적절하게 수집되고 취급되고 포장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고문이 행해진 것으로 추측되는 구역이나 장소의 스케치는 일정한 비율로 그려서 건물 층, 출입구, 창문, 집기 등 세부 사항을 묘사해야 한다. 칼라사진도 찍어야 한다. 조사지역에 출석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고문사건 증인을 찾아야 한다. ⑪ 고문의 신체적 상흔은 고문 후 6주 내에 치유되고 전혀 흉터를 남기지 않거나 기껏해야 불분명한 흉터를 남긴다. 이런 결과는 고문가해자들이 신체적 흔적을 제거하는 방법(소고기 붙이기, 연고 바르기)을 사용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진찰 소견이 정상범위 이내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것이 결코 고문의 주장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급성 상처에 대한 관찰과 그 후의 치유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한다면 종종 특정 고문 또는 비인도적인 대우의 혐의를 확정하는 중요한 증거의 출처가 될 수 있다. ⑫ 고문의 주

된 목적 중 하나는 개인을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기능의 황폐를 초래하는 극심한 무력감과 괴로움의 상태로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문은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기능의 근본적인 상태를 공격하는 수단이다. 물론 고문을 받은 모든 사람이 정신 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은 깊은 감정적 반응과 심리적 증상을 경험한다. 고문과 관련되는 주된 정신과 질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주요 우울증이다. ⑬ 한국의 고문피해 사건 조사의 중요한 경험은 고문이 신체적, 심리적 손상 외에 피해자가 속한 공동체의 심각한 붕괴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문은 부모, 부부, 자식, 기타 가족 구성원간의 친밀한 관계를 손상시키고 또한 피해자와 그가 속한 공동체 간의 관계를 깊이 손상시킬 수 있다. 실제 고문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가까운 이웃이나 동료조차도 고문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증거조작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동체의 신뢰 기반은 무너졌다. 진실화해을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한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에서 이러한 사례가 특히 두드러졌다.

여덟째, 적정 기한 내에 만들어진 서면보고서는 조사의 범위, 증거를 평가하기 위해 쓰여진 절차와 방법, 그리고 진상에 대한 조사결과와 적용 법규에 근거한 결론과 권고를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는 완성이 되면 공표되어야 한다. 또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사건들과 증거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신변 보호를 위해 신원이 보류된 사람들을 제외한 증인들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국가는 반드시 적정 기한 내에 이 조사보고서에 답변하도록 강제되어야 하며, 적절하다면 답변에서 추가조치를 제안해야 한다.

3) 소결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 드러내지 않는 - 고문피해자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는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동안 여러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성과가 작다 할 수 없으나 다수의 고문피해자들은 국가 차원의 추가 조사와 성의있는 진상규명 조치를 바라고 있다. 또한 UN 고문방지협약과 선택의정서는 가입 당사국에서의 고문방지를 위한 제한없는 조사와 국가차원의 독립적인 고문예방기구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스탄불 의정서는 고문피해 조사의 원칙과 세부 기준을 밝혀놓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6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정부에 권고한바 있으나, 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추가적인 권고와 정부의 이행 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

2. 고문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노력

1) 처벌 규정의 문제점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이란, ①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 동의, 묵인 아래, ② 가)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 또는, 나)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 또는 다)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 또는 ④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③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형이 확정된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가혹행위와 비인도적 행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고문 처벌 규정인 형법 제125조는 수사관이 아닌 공무원에 의한 고문, 수사나 재판에서 조사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고문 예를 들어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한 고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고문방지위원회도 1996년 한국 정부의 1차 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형법상 고문의 정의와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은 점을 우려하였다. 고문방지협약 제4조에서 '①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자기나라의 형법에 따라 범죄가 되도록 보장하며, 고문 미수, 고문 공모 또는 가담에 해당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다룬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형법 제125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형법 제125조는 행위 태양을 '폭행 또는 가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의 부재는 실제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고문행위를 은폐하거나 고문이 근절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죄명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문'이라고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직접 사람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가혹행위'란 폭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고문' 용어가 갖는 역사성, 국제적 보편성, 사회적 함의를 고려할 때 '폭행 또는 가혹행위'라는 용어보다 '고문'이란 용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고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은 고문방지협약 제1조 정의 규정상의 행위와 고문방지협약 제16조의 '부당한 처우' 중 가벌성이 있는 행위까지 해석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문방지협약 제4조 제2항에서 당사국은 고문범죄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형벌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125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다. 이는 일반 상해죄의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57조)보다도 가벼운 형이다. 고문행위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의해 가중처벌 되지만, 기본 처벌규정은 고문범죄의 심각성이 고려된 중대한 범죄의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정형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형법에서 '고문'범죄를 신설할 경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각 법률에 산재해 있는 고문 관련 규정들과의 관계, 입법 체계(고문범죄를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각 법률 규정의 의도, 내포하는 의미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법률의 취지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공소시효 배제

공소시효제도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제도로서, 정의의 이념이 법적 안정성의 이념에 양보한 결과 생겨난 제도이다.

그러나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나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정의에 현저하게 위반될 뿐 아니라 국가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를 국가가 승인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시효라는 도피처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 합의이다. 유엔도 1968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tion of Statutory Limitation to War Crime and Crimes against Humanity)을 채택함으로써, 범행의 시점과 범죄의 완성도를 불문하고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정부 이래 과거사청산 작업이 진행되면서 공권력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 8.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권력 남용 범죄에 대한 시효적용 배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5년과 2007년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나왔는데, 특히 이원영 전 의원이 2005년에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에 대하여는 조작 또는 은폐 행위 시부터 그 조작 또는 은폐행위가 공연히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의 적용을 정지하고, 민사상 소멸시효 규정도 그 적용을 배제 또는 정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정질서파괴범죄와 집단살해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과 관련하여,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벌어진 반인권적 범죄에 행위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하는 입법을 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소급효금지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1항(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위반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우선 시효가 진행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급효(부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행위 당시 행위자의 모든 판단과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안전 및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자의 판단과 신뢰만을 보호하는 것이고,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소추권 소멸에 대해 갖는 기대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0. 5. 16.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서도 부진정소급효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 소급하여 공소시효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진정소급효)은 자신의 안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능성을 뒤흔드는 것이므로, 부진 소급효와 달리 진정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하지만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의 경우 처음부터 불법과 범인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진실규명의 의지조차 없는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진행되었다는 점, 수사 및 소추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이 범죄행위를 알고도 수사 및 소추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효를 적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보다 더 큰 정의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헌법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사건에,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심히 중대한 반면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경우에는 왜곡된 한국 반세기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과 아울러 집권과정에서의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공익이 있는 반면, 공소시효는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지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예상된 시기에 이르러 반드시 시효가 완성되리라는 것에 대한 보장이 없는 불확실한 기대일 뿐이므로 공소시효에 대하여 보호될 수 있는 신뢰보호이익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바7, 95헌바13).

3) 소멸시효 배제

지금까지 법원은 고문 등 공무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객관적 장애사유)', 또는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뒤 신의성실 원칙에 기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행위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5년 또는 10년의 시효를 적용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소멸시키는 것은,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이, 국가가 국가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을 고문하고 이를 통하여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 제10조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다수 의견도 공무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2004헌바54 결정 참조).

그러면서 이강국, 민형기, 이동흡 재판관은 해석을 통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김희옥, 송두환 재판관은 입헌자에게 합헌적인 법률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조대현 재판관은 바로 위 규정의 위헌을 선언하였다.

법원에 의한 소멸시효 제한 해석은 피해자에게 과도한 입증의 부담을 주고 주장, 입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반인권적이고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을 개정

하여 공권력의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시효를 배제한다는 규정을 추가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2005년에 이원영 전 의원 등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의하면,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된 범죄에 대해서는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 조작 또는 은폐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그러한 조작 또는 은폐사실이 공연히 밝혀질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4) 기타 형사절차적 보장

① 긴급체포 통제장치 보완.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긴급체포 제도를 두고 있다.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하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찰이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점,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관의 사후 통제가 전혀 없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다가 그냥 풀어주어도 문제가 없다는 점, 굳이 번거롭게 법원의 영장발부절차를 밟지 않고 긴급체포를 하더라도 사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 현행 긴급체포는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구속을 하는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충분하므로, 사실상 수사기관은 48시간 동안 아무런 사후승인절차 없이(법관의 통제 없이) 개인의 신병을 필요에 따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더 나아가, 2002년에 발생한 조천훈 고문치사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체포 직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의 간첩조작사건에서도 많은 경우 고문이 체포 직후부터 이루어졌다.

따라서, 긴급체포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긴급체포의 경우 체포 후 즉시 체포장을 청구하게 하고 체포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긴급성 때문에 영장 없이 체포하더라

도 사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도록 하여 법관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② 국가보안법 사건의 구속기간 연장의 문제

국가보안법 제19조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보았을 때 경찰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을 10일 더 연장할 수 있고, 검찰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을 2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로 그 위헌성으로 인한 폐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유엔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오히려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부당한 처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수사기관으로서는 이적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의자 진술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고문 사건들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더 이상 고문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지만, 그 전이라도 다른 범죄와 차별하여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국가보안법 제19조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5) 선택의정서 가입

고문방지협약이 채택된 지 18년 후인 2002. 12. 18. 57차 유엔총회에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표결에 의해 채택되었다.

주된 내용은, 고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국제기구(방지소위원회)와 국내기구(국가예방기구)를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구금 장소를 방문하여 고문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다.

국내 차원의 국가예방기구는 ①피구금자의 처우를 조사하고, ②고문방지와 관련하여 당국에 권고할 권한이 있으며, ③관련 현행법률 혹은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이나 조사결과 등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데,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하며 다양한 전문가의 균형적인 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①피구금자 수, 구금 장소, 위치에 대한 무제한 정보 접근, ②피구금자에 대한 처우, 구금상태에 대한 무제한 정보 접근, ③피구금자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와의 입회 없는 면담, ④원하는 장소와 면담자 선택권, ⑤국제적 차원의 방지소위원회와 연락하고 회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허용하여야 한다.

한편, 국제적 차원의 방지소위원회는 구금지역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당사국에 권

고를 할 수 있고, 국가예방기구 및 당사국에 관련 사안에 대하여 조언과 조력을 제공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고문방지를 위하여 국제, 지역적, 국제적 협력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고문방지협약에서도 고문방지위원회의 현장 방문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떤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 하며, 영토 방문에 대해 관련 당사국고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국이 고문방지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한을 수락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택의정서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에 대한 유보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가입하면 국내 소재 또는 대한민국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구금 장소는 국제기구, 국내기구의 제한 없는 정기적인 방문에 따른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와 상치되는 법령은 개폐되어야 한다.

선택의정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문제도는 사후 조사나 제재가 아니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국내 기구와의 협력, 소통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고문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정부는 선택의정서 채택에는 찬성했으나 아직까지 서명,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고문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증거 조작 또는 은폐의 가능성이 높은 반인권적 범죄라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하며,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정기적인 감독은 고문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신속히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법률에 의하여 재정적으로 독립한 국가예방기구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및 그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국가예방기구에 관한 의견표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관련규정과 동법 시행 후의 활동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예방기구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선택의정서는 국가예방기구에 대하여 독립성과 재정자립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구금 및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 집행기구(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는 국가예방기구가 될 수 없다. 행정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이미 독립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고 구금시설 방문 조사 등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예방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 반인권적 위헌법률에 기한 판결의 무효화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많은 고문이 반인권적 위헌 법률 집행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긴급조치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위 각 법은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는데, 위 각 법에 대하여 위헌무효결정(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서는 위 대법원 2010도5986. 국가보위에 관

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92헌바18)이 이루어졌음에도 엄격한 재심요건 때문에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반인권적 위헌법률에 의한 형사 피해자를 일괄구제하기 위해 형사판결을 무효화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참고로 이은영 전 의원 등이 17대 국회 때 발의한 「긴급조치 등 인권유린법령에 기한 판결의 무효화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1호 제3항 제6호,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특정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의3, 계엄사포고 제1호·제2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계엄사포고 제1호, 긴급조치1호·제4호·제7호·제9호, 구 형법 제104조의2,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8조, 포고령 10호, 1961년 5월 16일 이후의 법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과도하게 억압한 것에 의한 유죄 판결의 효력을 상실하고, 위 법령에 따라 징역형이나 그 밖의 형벌 또는 인권유린피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과거사청산을 기구의 활동 연장 또는 상설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고문범죄의 특성으로 국가가 진상규명을 하지 않은 이상 고문 피해자 구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통치시기를 오래 거쳤고 재일교포 등 아직까지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진실화해을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부활하여 활동 기간을 연장하거나 더 나아가 과거사 청산기구를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고문피해자 재활을 위한 치유센터설립의 필요성

1) 고문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치료적 지원의 필요성

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여러 형태의 고문 상황에서 인간성과 정체성을 유린당하고 죽음의 위험을 경험했던 조사참여자들에게서 심각한 정신·심리적 후유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고문피해자 213명 중 163명(76.5%)에서 완전 PTSD 증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TSD 외에도 신체화,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등 복합외상후유증과 같은 증상들 또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상들은 고문의 경험에서 시작되었지만 고문 사건이 발생한 지 20~30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문피해자들이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특히 높은 강도의 신체적 고문을 경험하였거나 고문사건 이후 사회적 지지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심리적 후유증은 국가기관의 재조사를 통한 고문 인정이나 법원 재판 결과 고문을 인정받은 사실과 무관하게 나타났다. 즉 과거사 관련 국가기관의 재조사 결과 진실이 규명되거나 재판을 거쳐 고문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신체화 증상을 제외한 여러 심리적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이는 국가구제조치를 통한 진실 규명이나 법적 결과에 따른 경제적 보상과 배상에도 불구하고 고문 피해자들의 정신·심리적 후유증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조사참여자들의 높은 수준의 자살 계획과 시도는 이들에 대한 정신·심리적 지원의 시급성과 절실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문피해자가 고문 사건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원래의 삶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나 법적 구제조치 이외에 심리치료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 실태조사 결과에서 고문피해 당사자의 피해 경험이 가족에게로 전달되는 전이외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 또한 상당히 높은 비율로 PTSD, 신체화,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증상 등과 같은 심리적 후유증이 나타났다. 이는 고문피해 당사자의 피해가 가족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전이되는 것으로 특히 고문피해 당사자가 가족들을 가해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고문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역시 고문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가족의 전이외상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최근 일반형사사건으로 고문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과거 시국사건으로 고문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고문피해유형이나 심리적 후유증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 일어나는 고문피해에 대한 조사 후 배상과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고문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2) 고문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적 기준 및 노력들

1987년 6월26일에 발효된 유엔고문방지협약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문과 비인도적인 대우를 금하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미군에 의한 아부그라이브 수용소 포로들의 고문사건을 비롯해 전 세계 국가의 반 이상에서 공권력에 의한 고문과 가혹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2010년 양천서 고문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유엔고문방지협약에서 고문과 비인도적인 대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폭력은 국가가 개인들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치유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유엔고문방지협약은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협약 제14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자국의 법체계 안에서 고문피해자들이 구제 조치를 받고, 또한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엔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고문 피해를 물질적으로 배상함은 물론이고 국가가 피해자 재활을 위한 의료적 치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1985년 11월, 유엔총회는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45]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이하 피해자 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공정한 재판과 원상회복, 손실보상, 지원 등에 관한 권고조치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권력남용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주요 절차와 지침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선언 제19조는[46] "물질적 의료적 정신적 사회적 지원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는 "반드시 존중심과 배려로 대우되어야 한다." 고 하면서 피해자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다.

지난 30년 간 국제사회는 위와 같은 국제 문서의 원칙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고문방지 장치와 제도, 고문피해자들의 재활 시스템들을 발전시켜왔다. 또한 전 세계에 도처 하는 많은 의사들은 고문이나 재판을 거치지 않은 구금, 그리고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해 왔다. 고문피해자들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계의 노력은 의학의 새로운 전문 영역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그 시작은 1974년 국제 앰네스티 소속 4명의 의사가 덴마크에 망명해온 칠레난민들을 대상으로 고문여부를 진단하고 고문의 후유증들을 보고하면서부터였다.[47] 국제 앰네스티 의료진들은 고문후유증의 심각성에 대한 식견이 생기면서

45) "권력남용 피해자"란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내 형법 위반은 아니지만 인권에 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위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 정서적 고통, 경제적 손실 또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입은 자를 말한다.

46) "피해자 인권선언" 제19조: 국가는 권력남용을 금지하고 그런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준을 국내법에 편입시킬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그러한 구제에는 피해 배상 및/또는 피해 보상 그리고 필요한 물질적, 의료적, 정신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담을 필요가 있다.

고문피해자 재활센터의 설립의 필요성들을 논의했다. 그 결과 1982년 덴마크 코펜하겐에 고문피해자 지원과 고문방지를 위한 고문피해자재활센터(Rehabilitation Center for Torture Victim, RCT)가 세계최초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약 70여 개국에 200개가 넘는 고문피해자 재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과거 독재정권에 의해 고문과 같은 국가폭력을 경험했던 터키, 칠레, 아르헨티나는 물론이거니와 고문의 상처를 입고 조국을 떠나 이주해온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유럽과 미국은 수많은 고문피해자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는 30개 이상의 고문피해자 치유센터가 있으며 미국으로 이주해온 약 50만 명의 고문피해자들을 지원하는데 미국정부는 이들의 지원을 위해 구제기금을 마련해왔다.[48)]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 정부는 고문 피해를 물질적으로 배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 재활을 위한 의료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제 법안은 고사하고 고문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치유 및 재활 시스템이 전무한 현실이다. 간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거쳐 무죄선고를 받았던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배상금과 보상금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국가적 사회적 시스템이 형식적이거나 물질적 지원에만 치중되었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외상에 대한 의료적 지원을 소홀히 해왔다. 본 실태조사 결과에서처럼 고문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고문 사건이 발생한 후 20~3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비롯한 여러 심리적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으나 정신 심리적 의료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부족했었다. 본 조사 참여자들은 고문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직접적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을 높은 비율로 요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고문피해자 재활을 위한 지원체계의 도입을 위해서는 고문피해자 구제 법안을 마련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 범죄이니만큼 국가 예산으로 고문피해자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3) 고문피해자 재활을 위한 치유시스템 도입 방안

① 고문피해자 구제법안의 제정

47) http://www.irct.org,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Victims (국제고문피해자협의회)
48) http://www.cvt.org, Center for Victims of Torture (고문피해자센터)

1985년 UN에서는 "피해자 인권선언"을 통해 공권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조하였다. 피해자 인권선언은 국가가 법규범에 권력 남용을 금지하고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조항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이 구제 수단에는 배상 및/또는 손실보상 및 물질적, 의료적, 심리적 및 사회적 원조와 지원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선언 제21조에는[49] 국가는 기존 입법 및 실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공권력 남용금지와 예방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도입을 위해 법률을 제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권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구제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권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 정부는 1998년부터 '고문피해자 구제법안 (Torture Victims Relief Act of 1998)'[50]을 제정하고 미국과 외국의 고문피해자들의 치유센터를 지원해왔다[51]. 미국 정부의 '고문피해자 구제법안'에 의한 2006년도 예산을 보면 고문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금액은 2500만 달러로 한화로 약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양산한 고문피해자도 아닌데 외국의 고문피해자들을 위해 구제법안을 만들고 연간 약 300억 원을 사용하고 있으나 인권이사국인 한국 정부는 고문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안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반인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여 오히려 고문가해자들을 보호해오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인권의학연구소는[52]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통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 회복, 정상적 사회활동으로의 복귀를 위한 노력으로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 지원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2009년 12월 국회의원 36인에 의해 발의되었다.[53] 이 법안은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인권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활한 치유와 지원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그리고 피부양자를 피해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권력 피해자

---

49) "피해자 인권선언" 제21조: 국가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률과 실무를 정기적으로 개선하고 필요에 따라 정치적 권력 내지 경제적 권력의 중대한 남용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며, 그런 행위를 방지할 정책과 대책을 촉구하는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나아가 그런 행위의 피해자에게는 즉시 적절한 구제와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50) The Torture Victims Relief Act of 1998 (TVRA), provides funding for a comprehensive program of support for survivors of torture. The TVRA recognizes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refugees, asylees, and asylum seekers entering the United States have suffered torture. These torture survivors, now living in the United States, should be provided with the rehabilitative services which would enable them to become productive members of our communities.

51) http://www.acf.hhs.gov/programs/orr/programs/services_survivors_torture.htm

52) http://www.imhr.or.kr, Institute for Medicine & Human Rights (인권의학연구소)

53)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강기갑・강창일 곽정숙・권영길・김부겸 김영진・김재균・김춘진 김희철・문학진・박기춘 박영선・박지원・백재현 서종표・신 건・신낙균 심대평・오제세・우윤근 유성엽・유원일・이성남 이용희・이정희・이종걸 전현희・정장선・조배숙 조승수・조영택・주승용 최규식・최인기・홍희덕의원(36인), 2009.12.17

의 피해정도,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상응하여 상담, 의료 서비스, 법률구조, 취업관련 등의 모든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공권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피해자의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해야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위한 원상회복이나 지원 또는 법령이나 제도의 시정 등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까지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토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폐기될 위험에 처해있다.

② 고문피해자 재활 전문 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제언

본 실태조사에 의하면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면담 실시 시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33.3%, 적응장애가 12.5%, 주요우울장애가 16.7%, 기분부전장애가 25%, 범불안장애가 4.2%, 공황장애가 8.3%, 술이나 약물 의존과 같은 물질관련장애가 20.8%, 수면장애가 8.3%, 정신증적 장애가 4.2%로 나타났다. 고문피해자들의 이와 같은 정신과적 진단 결과는 일반인의 일년 정신질환 유병률 결과[54]와 비교했을 때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고문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물론이지만 고문 경험과 필연적 관계가 없는 진단인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공황장애도 외국의 고문피해자에게처럼 높은 수준으로 발견되었다. 이 경우, 만약 고문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자에게 자신의 고문 경험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장애의 치료는 피해자의 실제 상황과 별개로 진행되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고문피해자들이 자신의 고문 피해에 가장 적합한 특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고문피해자 재활전문 치유센터'와 같은 전문적인 치료공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한 고문피해자들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서는 고문이나 가혹행위와 같은 국가폭력 경험의 여부에 대해 치료자들이 필수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고문 피해 및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관한 인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의료진 대상 교육과 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유발하는 가장 충격적 사건은 성폭력이나 고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고문피해자와 폭력피해자의 외상 치유와 재활을 위해 일찍이 전문적인 공간과 시스템을 마련해 왔다. 공적지원 시스템의 경우, 미국에서는 카운티(우리나라 구청단위) 별로 피해자지원센터를 갖추고 보건복지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지원센터의 '위기센터'에는 폭력이나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 위기 상황에 있는 피해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위기개입, 안정화 및 필요한 서비스에

54) 보건복지부의 2006년 국내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의하면 일반인의 일년 정신질환유병률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0.7%, 주요우울장애가 2.5%, 기분부전장애가 0.3%, 범불안 장애가 0.3%, 공황장애가 0.1%, 알코올의존장애가 3.2%, 정신증적 장애가 0.1%이었다.

접근하도록 지원한다.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위기센터에는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상담사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한 입원실이 제공되고 그 비용은 정부에서 지불된다. 보통 사건 발생 72시간 이내에 위기개입이 시작되는데 사건 현장으로 위기개입팀이 출동하거나 피해자들이 위기센터로 의뢰되어 온다.[55] 성폭력, 가정폭력은 물론이고 공권력에 의한 가혹행위나 각종사고(교통사고, 화재, 천재지변 등)로 인해 정신심리적 트라우마를 입은 피해자들이 그 대상이다. 위기개입 이후에는 심리치료를 포함한 포괄적 서비스가 지원된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 권리와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지속적 심리상담, 그리고 경제적 보상에 대한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피해자의 정신심리적 지원을 비롯한 포괄적 지원을 위해 정신과 의사, 심리상담가, 사회복지사들이 상근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보수는 주정부 예산에서 지급된다. 피해자 지원 내용을 종합해 보면 24시간 피해자 방문상담서비스 (병원, 경찰서), 24시간 위기상담, 정보제공, 연계, 피해자 대상 정신 심리적 평가와 치료,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지원 (동행), 범죄손해보상위원회에 보상신청 지원, 정부보상기금으로 피해자 수입 보상, 피해자권리 교육, 전문가그룹 교육 등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미국의 공적 시스템은 1996년 "UN 피해자 사법 핸드북".[56]의 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은 지원센터를 지원·감독하는 법무부의 지원으로 나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에 의한 피해자 지원 관련한 활동은 미미하다. 이와는 달리 미국 정부는 모든 종류의 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위기개입부터 심리상담, 보상, 교육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본 실태조사의 피해자 지원기관 방문조사 결과, 현행 범죄피해자지원 시스템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 대검찰청의 주도로 본격화되면서 법인형태로 설립되어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민간단체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센터가 검찰청 내부에 위치했으며 법무부 지원금 2,500만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의 지원 그리고 자체 출연금으로 구성된 연 수입 규모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과 센터를 운영하는 행정직원들의 급여를 겨우 지불할 정도였다. 행정직원 이외 사회복지사나 정신 심리적 전문 치료진을 고용할 정도의 수입 구조가 없기 때문에 지원서비스 내용이 피해자 지원금 제공 위주였고 그 외 지원 내용은 제한적이고 형식적이었다. 즉 센터에는 법률지원, 의료지원, 생활지원, 상담지원, 구조지원 등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상시적 지원 체계가 아니었고 전문가들의 학제적 협력도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종합해보면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는 피해자 위기개입이나 심리 상담이 상시적 지원체계로 제공되지 않았고 피해 지원금 제공과 같은 물질적 지

55) http://vasap.org (성폭력 및 범죄피해자 지원프로그램)

56) 국가인권위원회&유엔 마약통제 및 범죄예방 사무국 국제범죄예방센터, 『범죄 및 힘의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리 선언의 적용을 위한 피해자사법 핸드북』(이하 「피해자 사법 핸드북」), 2008. 한학문화. p34.

원에 그치고 있으며,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의 이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전문가들의 학제간 협력이 없었다.

충격적 사건으로부터 피해자의 삶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피해자 지원의 주 목적이라면 고문과 같은 국가폭력피해자들의 정신·심리적 심리치유와 재판과정에의 동행 및 경제적 보상과 같은 포괄적 지원체계 운영의 주체는 법무부보다는 보건복지부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문피해자의 경우, 고문의 주체가 정부의 수사기관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부분 지방검찰청 내에 위치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고문피해자 지원의 역할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고문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는 피해자의 고통을 되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산안기부" 장소도 고문피해자의 정신·심리적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또한 고문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센터라면 현재에도 그 고통이 진행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정신·심리적 후유증 치유를 위해 정신과의사, 심리상담가와 사회복지사가 상근해야하고, 직원들의 신분과 보수를 안정적으로 지급하여 피해자 지원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체계가 기본적 조건이라고 하겠다. 즉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위해 의료, 심리, 법률, 복지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team approach가 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를 고문피해자 지원체계의 주체 부서로 고려하였지만 현재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부 부서 간 협조나 연계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보면 지원체계 운영의 주체는 개별 부처보다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을 위해 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적절할 것이다.

③ 고문피해자 재활을 위한 지원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제언

본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심리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신·심리적 지원의 내용은 심리적 후유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요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심리적 후유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요소로서 학력과 높은 강도의 신체적 고문을 경험한 것,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없는 경우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학력은 고문에 대한 심리적 대비성과 관련되어 보인다. 즉, 대졸 이상의 시국사건 참여자들의 경우 고문에 대한 심리적 대비성이 높았으므로 심리적 후유증의 정도가 낮을 수 있겠다. 그러나 고졸 이하의 경우가 더 많았던 비시국 사건이나 조작간첩 사건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대비하지 못한 고문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의 정도가 더 높을 수 있겠다. 따라서 이를 위한 지원서비스에는 심리교육,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 대한 교육,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교육 등 실질적 외부 지원이 이러한 심리적 대비성의 문제나 사회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한 증상의 악화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높은 강도의 신체고문을 경험한 집단에서 특정 외상 후유증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강도 높은 고문 경험 기억에 대한 심리 치료적 및 정신과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증거기반의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 이외에도 사회적 지지가 부재한 경우 고문을 인한 심리적 후유증 증상이 보다 악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성이나 강도 높은 고문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지지 부재의 변인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심리적 후유증을 확인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고문 사건 당시의 경험이 가혹하였더라도 이후에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었을 경우 심리적 후유증 증상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고문 피해자를 지원할 때 주변 대인관계, 사회, 국가로부터 고문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도움과 지원을 제공받는 등 것과 같은 사회적 지지가 가능할 경우 후유증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정신·심리적 심리적 후유증은 높은 자살시도와 함께 광범위한 복합성 후유증이었다. 따라서 이를 다룰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치료적 개입과 분야 간 협력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고문 체험의 반복과 악순환의 고통, 정체성 상실과 같은 증상에 대해서는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야기 통합치료, 노출치료 및 인지행동치료 등 증거기반의 개인 심리치료적 개입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한 정체성 및 성격 변형과 같은 고통을 다룰 수 있는 장기적인 개인 심리치료 지원, 상실감과 관계 단절을 다룰 수 있는 집단 심리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고문 관련 정신증적 후유증(예: 망상, 환청)에 대한 이해와 외상 경험을 고려한 약물치료적 개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신증의 경우에는 특히 외상 경험과 상관없이 별개의 치료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외상 경험으로 인한 정신증의 발병에 대한 의료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체리듬의 불균형과 신체 통증, 각종 만성 신체 질환에 대한 지원으로 치료 및 재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치료 및 재활 서비스와 더불어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이 맞물릴 때 가장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 본 조사 결과, 사회적 국가적 대응책으로서 국가 기관의 재조사를 통해 고문 사실을 인정받거나 법원 재판 결과 고문 사실을 인정받았음에도, 심리적 후유증은 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됐다. 즉, 치료 및 재활 서비스가 부재한 사회적 국가적 대응책은 부분적 지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참여자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은 이후에도 사회의 불의와 부당함에 직면할 때 심각한 정서적 고통이 재발한다는 점을 진술하였다. 이것은 단지 치료와 재

활 서비스만으로는 피해자 지원이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치료 및 재활 지원과 더불어 사회 정의회복, 피해자와 사회와의 연결성 재건이 매우 중요한 사항임이 드러났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역사적 지식 및 법적 지식에 대한 교육, 정의 회복을 위한 사회적 움직임과 활동의 결합, 법적 지원의 통합과 국가적 대응책 마련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요컨대, 신체적 심리적 정신과적 치료와 재활, 사회적 역사적 지식에 대한 교육, 정의회복을 위한 사회활동과 국가적 대응책 마련과 같은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3절. 고문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이 목적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법령, 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과의 협력,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고유업무로 하고 있다.(동 법 제19조)
따라서 고문과 같은 대표적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입법 권고, 예방, 교육, 방지, 홍보, 국제 협력은 국가인권위의 본연의 과제라 할 것이다.

본 조사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문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제언한다.

1. 「고문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실천 지침」의 마련

한국의 대표적 인권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문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본 조사연구의 결과에서도 여전히 많은 고문피해자들이 음지에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권위주의 통치를 경험한 우리 사회에서 위법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을 그대로 두고는 사회통합과 미래를 위한 화해를 기대할 수 없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 없이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할 수 없다할 것이다.

고문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문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실천 지침” 매뉴얼을 개발하고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고문방지지침에는 본 연구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내외의 조사, 연구결과에 토대하여, 고문에 관한 정의와 인권보호의 목적, 고문

의 유형과 수단, 수사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적법한 수사절차, 고문에 관한 법원의 판례, 신고 상담시설 설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고문방지를 위한 실천 지침"의 제작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검찰, 변호사 단체 등과 적극적인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고문방지 지침을 사법연수원과 경찰학교, 각급 수사기관 및 연수시설에 비치하고 의무적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와 국가 고문예방기구의 설립

고문은 국가권력의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되고 실제 고문에 대한 수사나 기소율이 상당히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또 고문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증거 조작 또는 은폐의 가능성이 높은 반인권적 범죄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국가 조사기구 및 고문방지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국가가 진상규명을 하지 않은 이상, 고문 피해자 구제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예방기구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아직까지 서명,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한국 정부에 대해 신속히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법률에 의하여 독립된 국가 고문예방기구를 신설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및 그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국가예방기구에 관한 의견표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관련규정과 동법 시행 후의 활동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예방기구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선택의정서는 국가예방기구에 대하여 독립성과 재정자립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구금 및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 집행기구(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는 당연히 국가예방기구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예방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다만,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제17조)에 의하면 국가예방기구는 비준 1년 이내에 하나 혹은 복수로 운영, 지정, 설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 민간 인권단체, 고문피해자들의 폭넓은 의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다.

3. 고문피해자의 외상 치유 및 재활을 위한 입법 권고

현재 고문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구제는 생명과 신체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그 기준조차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조사 결과, 고문 피해에 대한 국가조사기관의 재조사나 법원 재판 결과 고문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의 정신·심리적 후유증은 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치료 및 재활 서비스가 부재한 사회적 국가적 대응책은 부분적 지원에 지나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고문피해자가 고문 사건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원래의 삶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나 법적 구제조치 이외에 심리치료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조사참여자들의 높은 수준의 자살 계획과 시도는 이들에 대한 정신·심리적 지원의 시급성과 절실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엔고문방지협약은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고문피해의 물질적 배상은 물론 국가가 피해자 재활을 위한 의료적 치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엔 "피해자 인권선언"은 공권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규범에 공권력 남용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배·보상과 함께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지원조항을 구체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권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심리적 외상 치유를 통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 회복, 정상적 사회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위한 법안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고문피해자 구제법안"처럼 고문피해자를 위한 독립적인 법안이나 또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국가폭력 피해자 또는 공권력 남용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문피해자의 피해정도,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상담, 의료 서비스, 법률구조, 취업관련 등의 모든 지원 대책을 지원해야함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고문피해자 또는 공권력 피해자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피해자의 정신·심리적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해야함을 포함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문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진정접수, 조사, 시정 권고 및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심리적 외상 치유를 위한 지원을 권고하여야 한다. 고문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란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실복구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긴급지원(위기개입), 의료적 지원, 심리적 지원, 법적인 지원(상담), 사회적 지원을 포함한다. 이에 고문피해자 재활을 위한 지원체계 도입을 위한 구제법안의 제정과 정부 예산으로 치유센터를 설립, 운영하도록 정책 권고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문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할 것, 고문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위해 고문피해에 대한 조사・교육・연구・홍보할 것, 고문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시행할 것 등을 정부에 권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대학교 법사회학회, 거짓과 진실 -고문과 죽음의 기록- , 198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및 힘의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 사법원리 선언의 적용을 위한 피해자 사법 핸드북, 2008; 박병식 번역해설, 범죄피해자의 인권,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UN ODCCP, Handbook on Justice for Victims

국가인권위원회, 이스탄불의정서, 2008, 국가인권위원회; UN, Manual on the Effective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Istanbul Protocol, 1999.

국가인권위원회, 이스탄불 의정서의 실천 지침서 - 변호사용, 심리학자용, 의사용-, 2009,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 관련 주요 쟁점 분석, 2005.

김경빈, 한광수, 이정국, 이민규, 김유관, 김철규, 한국형 알코올 중독 선별 검사 제작을 위한 예비연구(III): 국립서울정신병원형 알코올 중독 선별 검사. 신경정신의학, 1991,30:569-581.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1984. 서울:중앙적성출판사

김귀옥, 윤충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경험과 기억, 200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종순, 격동의 민족사 10 - 안기부와 보안사」대한서적, 1989.

김병진, 보안사, 소나무, 1988.

대한기독교교회협의회고문대책위원회, 1985년 고문대책위원회보고서, 1985.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고문피해의 증언, 고문근절대책공청회, 1987.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등,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1994.

민경식,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중앙법학』, 제7집, 중앙법학회, 2005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등, 신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199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 문제를 중심으로 본 2000인권실태보고서, 2000.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엮음, 나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 거름, 1987.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사망자 유족 후유증(정신과적 장애) 실태조사 보고서, 2007.

박원순, 고문의 한국현대사 야만시대의 기록 1, 2, 3권, 역사비평사, 2006.

변주나, 한국의 고문피해자 실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보고사례를 중심으로, 2002, 대한스트레스 학회지 제10권 제2호.

변주나, 김록호, 박원순, 고문 생존자 - 외상과 재활 -, 현문사, 2003; L. Jacobsen & K. Smidt-Nielsen, Torture Survivors - Traum and Rehabilitation, RCT, 1987.

오병두,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형사실체법적 쟁점 - 고문 범죄의 처벌을 중심으로『민주법학』, 통권 37호, 관악사, 2008.

오수성 등, 5.18 민주유공자 생활실태 및 후유증실태 조사연구 보고서, 2006, 5.18기념재단.

오수성 등, 심리적 피해현황 조사보고서 - 조사의 신뢰성 제고와 치료 및 재활 측면의 화해방안 모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2007.

오수성 등, 5·18민주유공자 생활실태, 후유증 실태 조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 5.18기념재

단, 2007.
이화영 옮김, 배반당한 히포크라테스선서(고문에 가담한 의료인들), 백산서당, 2008; Steven Miles, Oath Betrayed, Random House, 2006.
이훈진 등, 예기치 못한 죽음을 경험한 유족의 심리적 외상 관련 조사연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8.
정경수, 구금장소 방문의 제도화를 통한 갇힌 자의 인권보호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분석과 국내 도입문제를 중심으로- 『인권평론』, 통권 제2호, 한국인권재단, 2007.
조갑제,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 -고문에 의한 인간파멸과정의 실증적 연구-, 한길사, 1987.
최현정 옮김, 고문폭력 생존자 심리치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Peter Elsass, Treating Victims of Torture and Violence, New York University, 1997.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고문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민중사, 198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1~5권 -기독교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민주쟁취와 인권 1991년도 인권주간 자료집, 199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반민주악법철폐와 인권실현, 1986년도 인권주간 자료집, 198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고문·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반고문·반폭력 인간선언' 198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제1회 형사사법포럼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지원정책', 2010.

Amris S, Prip K. Falanga torture.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RCT, 2001.
Amris S. Chronic pain in survivors of torture -psyche or soma? In: Berliner P, Arenas J, Haagensen JO, eds.Torture and organized violence: contributions to a professional human rights response. Copenhagen: Danish Psychology Publishers, 2005:31-70.
Astrom C, Lunde I, Ortmann J, Boysen G, Trojaborg W. Sleep disturbance in torture survivors. Acta Neurologica Scandinavia, 1989;79:150-4.
Basoglu M, Livanou M, Crnobaric C. Torture vs other cruel, inhumna, and degrading treatment.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007; 64: 277-285.
Basoglu, M., Jaranson, J., Mollica, R., & Kastrup, M. (2001). Torture and mental health: A research overview. In E. Garrity, T. Keane, & F. Tuma(Eds.), *The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torture (pp. 35－62).* New York: Plenum Publishers.
Basoglu M, Paker M, Paker Ö, Özmen E, Marks IM, Incesu C et al. Psychological effects of torture: a comparison of tortured with non-tortured political activists in Turke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94a;151:76-81.
Basoglu, M., Paker, M., Tasdemir, O., Ozmen, E., & Sahin, D. (1994b). Factors related to long-term traumatic stress responses in survivors of torture in Turkey.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2(5),* 357－363.
Basoglu, M., Prevention of torture and care of survivors: An integrated approach.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93;270(5):606－611.

Bloom AI, Zamir G, Muggia M, Friedlaender M, Gimmon Z, Rivkind A.Torture rhabdomyorhexis: a pseudo crush syndrome. Journal of Trauma 1995;38:252-4.

Campbel TA. Psychological assessment, diagnosis, and treatment of torture survivors: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07:27;628-641.

Carlsson JM,Olsen, DR, Mortensen EL, Kstrup M. Mental health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2006; 194: 725-731.

Colaizzi FU(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gist views it. In R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Eitinger L.Torture. A perspective in the past. Journal of Medical Ethics 1991;17(suppl):9-10.

Elsass P. The existence of a torture syndrome.Torture 1998;8:58-64.

Genefke I.Torture, the most destructive power against democracy.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Peace 1994;10:73.

Harvey MR. An ecological view of psychological trauma and trauma recover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996:9;3-23.

Harvey MR, Liang B, Harney PA, Koenen K, Tummala-Narra P, Lebowitz L.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assessment of trauma impact, recovery and resiliency.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003:6;87-109.

JAMA 1996. Editorial. 276,416-417

Jaranson JM, Kinzie JD et al. Assessment, diagnosis, and intervention. In: Gerrity E, Keane TM, Tuma F, eds. The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torture.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2001:249-75.

Kastrup MC, Arcel L. Gender specific treatment. In: Wilson JP, Drozdek B, eds. Broken Spirits: the treatment of traumatized asylum seekers,refugees, war and torture victims. New York: Brunner-Routledge Press, 2004:547-71.

Kagee, A. (2004). Present concerns of surviv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South Africa. *Social Science & Medicine, 59,* 625-635.

Lavie P. Sleep disturbances in the wake of traumatic event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01;345:1825-32.

Maercker A, Schutzwohl M. Long-term effects of political imprisonment: a comparison stud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1997;32:435-42.

Mollica, R. Surviving tortur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04;351*:5－7.

Moreno A, Grodin MA.Torture and its neurological sequelae. Spinal Cord 2002;40:213-23.

Parker M, Parker O,Yuksel S. Psychological effects of torture: an empirical study of tortured and nontortured non-political prisoners. In: Basuglu M, ed.Torture and its consequences: current treatment approach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72-82.

Peel M, Hinshelwood G, Forrest D. Difficulties in identifying torture survivors.Torture 2001;11: 59.

Petersen, H., & Jacobsen, P. (1985). Psychical and physical symptoms after torture: A

prospective controlled study.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1985;29:*179－189.

Quiroga J & Jaranson JM. Poilitically-motivated torture and its survivors: A desk study review of the literature. Torture, 2005:16;No.2-3.

Sheehan, D.V., Lecrubier, Y., Sheehan, H., Amorim, P., Janavs, J., Weiller, E., Hergueta, T., Baker, R., & Dunbar, G.C. (1998). 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tructured diagnostic psychiatric interview for DSM-IV and ICD-10. *JournalofClinicalPsychiatry,59[suppl20],*22-33.

Silove D. The psychosocial effects of torture, mas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refugee trauma: toward an integrated conceptual framework. Jourj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99;187:200-7.

Silove D, Tarn R, Bowles R, Reid J. Psychosocial needs of torture survivor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1991;25:481-490.

Sinding R. The late ear, nose, and throat region sequelae of torture.Torture 2000;9:20-2.

Somnier F,Vesti P, Kastrup M, Genefke IK. Psychosocial consequences of torture: current knowledge and evidence. In: Basoglu M, ed.Torture and its consequences: current treatment approach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56-71.

Summerfield, D. (). A critique of seven assumptions behind psychological trauma programmes in war affected areas. *Social Science & Medicine,* 1999:*48:*1449-1462.

Tedeschi, R.G., & Calhoun, L. G. A clinical approach to posttraumatic growth. In P.A. Linley & S. Joseph (Eds.), *Positive psychology in practice (pp. 405-419).* Hoboken, NJ: John & Wiley & Sons., 2004.

Turner S, Gorst-Unsworth C. Psychological sequelae of torture. In: Wilson JP, Raphael B,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traumatic stress syndromes. New York: Plenum Press, 1993:703-13.

Wenzel T, Griengl H, Stompe T, Mirzaei S, Kieffer W. Psychological disorders in survivors of torture: exhaustion, impairment and depression. Psychopathology 2000;33:292-6.

White DP. Tragedy and insomnia.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01;345:1846-7.

Witterholt S, Jaranson J.Treating torture victims on site: Bosnian refugees in Croatia. In: Jaranson J, Popkin M, eds. Caring for victims of tortur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1998:243-52.

Yehuda R, Schmeidler J, Elkin A, Wilson GS, Siever L, Binder-Brynes K et al. Phenomenology and psychobiology of the intergenerational response to trauma. In: Danieli Y, ed. International handbook of multigenerational legacies of trauma. New York: Plenum Press, 1998:639-55.

<부록 1> 심층면접 분석표

범주 1: 고통의 시작점으로서 고문경험			
재진술	의미구성	주제	주제묶음
-무작정 와서 때림 -어처구니없는 죄목으로 잡아감 -친구약속처럼 불러내어 거짓말을 하고 태워감. -시위 시도를 하면서 고문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낌. -고문 경험을 미리 예측해서 충격이 덜하였음.	-예상치 못함 -어처구니없음 -거짓말을 함 -사전의 공포와 불안 -고문 예상 가능성이 충격을 완화	-예상할 수 없었던 고문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폭력과 심리적 조정
-잠깐 가자고 해서 가는데 다짜고짜 때리고 말발이 좋다며 더 때림 -안했다고 해도 끌고 가서 수갑 채우고 때림 -수갑 채우고 눈 가리고 옷을 벗긴 상태에서 모르거나 기억못한다고 하면 맞음. 어처구니없고 억울함 -끌려가는 방향을 알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무서움. 대답을 하지 못하면 바로 주먹이 날아 옴 -좋게 생각하고 원수 갚지 말라고 가해자가 회유함	-저항하면 더욱 가해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더욱 가해 -회유	-신체폭력, 심리적 공포 조성, 심리적 조정 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죽음에 대한 생각에 이를 때까지 지속된 가혹한 구타 -하도 휘두르니 정신이 없어져서 누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음 -가혹한 신체고문으로 인하여 세뇌당한 뒤 나중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경험	-가혹한 신체폭력으로 인지적 혼란 -세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음	
-눈구멍 뒤의 눈동자 공포스러움 -고립된 상황이 주는 심리적 공포감 -성적인 위협감을 주면서 심리적으로 무력화시키고자 함 -성적인 수치감을 주는 말을 계속함 - 동료가 옆방에서 맞는 소리를 들려줌 -가족을 고문하겠다고 위협함 -동료의 고문을 목격할 때 비참함과 무력감	-신체 폭력만큼 공포스러운 심리적 위협 -성적 위협 -가족에 대한 위협 -동료에 대한 위협	-심리적 위협과 공포	
-빨갱이로 아직 덜 칠했다는 가해자의 말에 답답하고 화가 남 -빨갱이, 공산당이라고 불리면서 가혹하게 신	-빨갱이, 공산주의자, 범죄자로 몰려감 -분노와 답답함	- 거짓된 이름이 덧씌워지는	인간정체성 유린

체 고문을 당함 -살인마로 추궁함 -맞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음 -공산주의자로 몰려 사형 당할 것 같은 공포 -사상적 무장도 없었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왜 이런 일이 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음 -내장이 찌릿할 만큼 고통스럽고 억울하였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때리면 맞고 검찰조사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당함	-공포 -혼란스러움 -억울함 -무력감	분노와 억울함, 답답함, 공포, 혼란스러움, 무력감	
-쓰레기 취급에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말할 수 없음 -쓰레기 취급에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억울하고 화가 남 -동물취급 당한 것에 대해 죽여버리고 싶은 분노와 자존심 상함 -동물취급 받는 것은 사람이 참을 수 있을만한 것이 아니다. -범죄자 취급 받으면서 경찰이랍시고 막 대함. -전라도놈 빨갱이놈 하면서 때려 모멸감 들었음 -좌익이라고 교도소에서 따돌림 당하고 창피를 당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지만 힘과 능력이 없어 무력하여 홧병이 생김	-쓰레기, 동물, 범죄자, 빨갱이 취급 -분노, 모멸감 -수치심, 창피당함 -약자로서 무력감	인간 이하의 존재로 굴복당하는 분노 및 모멸감, 수치심, 무력감	
-고문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느낌과 무력감 -인간이 인간에게 저렇게 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	-자신에 대한 무력감 -인간의 비인간성	-인간의 무력함과 비인간성	-인간에 대한 신념 변형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살려고 허위 자백함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압박 -가족을 위협하여 허위자백 하게 되었고 굴복한 분노	-살기 위한 허위자백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굴복	-한계에 직면 -굴복함	-굴복과 저항
-고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조건 버팀 -고문에 대해 저항하고자 버팀 -저항하면서 느낀 흥분감과 승리감	-버팀 -저항 -흥분과 승리	-저항의 경험	

범주 2: 고통의 끝없는 반복과 악순환			
재진술	의미구성	주제	주제묶음
-가해자들이 몽둥이 들고 서있는 꿈	-악몽으로 나타나	-악몽	- 재현되는

-고문당하거나 쫓기거나 끌려 다니거나 추궁당하는 꿈 -목을 졸리는 꿈 -살인죄 누명을 쓰는 꿈 -군대나 깜방에 끌려가는 꿈 -싸우고 때리고 누군가를 죽이는 꿈 -가위눌림	는 공포 -추궁당하고 누명쓰는 악몽 -악몽으로 나타나는 분노 -가위눌림 -반복되는 악몽		고문 체험
-어두우면 잘 수 없고 어두운 곳을 피하게 된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너무 무섭다. -문짝이나 지하실만 봐도 무섭고 땀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뛴다. -밝고 개방된 곳에 있어야만 한다. -경찰서나 공무원을 보면 고문당할 때 기분이 떠오른다. -노동조합이 당하는 뉴스를 보면 밥도 며칠 못 먹고 입이 쓰다.	-어둠, 지하실, 막힌 곳 - 경찰, 공무원을 대할 때 -노동조합의 나쁜 소식을 접할 때 -무서움과 답답함	-고문관련 단서에 대한 정서적 고통	
-고문피해 기억이 없어지지 않는다. -기억을 억지로 안하려고 해도 자꾸 떠오른다. -생각 안하려 해도 자꾸 되돌려 생각이 나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생각이 맴돈다. -옛날에 고통당했던 생각이 스쳐가고 그런 생각에 젖어 있다보니 신경이 점점 예민해진다. -오매불망 고생한 생각 -생각하기 싫어도 꼬리를 물고 리플레이 되는 구타 장면 때문에 죽어버리고 싶다.	-고문의 기억, 생각이 반복적으로 침투하여 고통스러움	-고문 기억의 침투	
-가해자의 일그러진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나를 패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서 벌벌 떨리고 까무라침 -당시의 냄새와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소리가 그때가 되면 떠오르면서 자살하고 싶다. -치과 갈 때나 물리치료 갈 때 숨막히고 터질 듯한 몸의 기억	-시각, 청각, 후각의 기억 -신체에 각인된 기억	-고문기억의 감각-지각적 활성화	
-심장에 이상이 없는데도 날카로운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림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가슴이 따가움 -숨이 차고 가슴이 따갑고 쑤심 -심장이 막혀 금방 죽을 것 같은 공포 - 가슴이 조여지고 뜨거워서 잠을 잘 수 없다.	-공포, 분노, 울화가 몸으로 나타남. -약을 많이 먹게 됨	-해결되지 못한 감정의 신체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가슴에 쇠파이프를 박은 듯 아프고 땀과 열이 남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화가 되어 울화가 치밀고 가슴이 답답함 -약을 엄청 먹어서 속도 망가짐			
- 구속당하는 상황이 생기면 자유로부터 갇혀 있는 울분에 찬다. -바깥이 안 보이는 닫힌 세상에 혼자 격리되는 상황이 감방 같아서 너무 싫다. -나의 도덕적 질서와 상식을 깨면 밉고 불편하고 억울하다. -저항을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분노감이 들고 권력에 대해 예민해진다. - 나를 믿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미친듯이 나타남 -내가 인정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하게 화가 난다.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분노 폭발하고 성질이 난다.	-갇히거나 격리된 상황에 대한 울분과 두려움 -도덕적 질서를 깨는데 대한 분노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분노 -권력에 대한 예민함 -인정받지 못하거나 믿어주지 않는 분노	-존재 부인에 대한 분노 폭발	
-언제든 도망갈 수 있는 자세로 잠을 자야 한다. -누가 오는 소리만 들리면 다시 나를 붙잡으러 오는 것 같은 공포 -누가 날 따라다니는 것 같은 망상	-위협에 대한 경계와 공포반응	- 과경계	
- 사건 이후에 불면증이 생겼다. - 중간에 꼭 잠을 깨고 잠을 자려해도 안 자진다. - 자다깨다를 반복한다. - 감옥에서 수면 리듬이 불규칙적해서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낮에 잠이 쏟아지고 계속 잠만 잔다. - 약을 타 먹어야만 잘 수가 있다.	-불면증 -수면 곤란 -수면을 물질에 의존	-신체 리듬의 깨어짐	
-뭐든 제대로 해야 한다. -한 순간에 운명이 치명적으로 결정나니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해야 한다. 방치하면 큰 불행이 된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 -조그마한 실수의 결과를 용납할 수 없어서 항상 확인해야 하고 민감해진다. -무엇이든 정돈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감 -확인, 점검, 단속 행동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	-강박적 통제	- 인생을 통제하려는 싸움과 악순환

- 상황 대처를 잘 못하면 사람들에게 또 고생당하고 큰 일 난다는 감이 와서 무섭다.			
-내 문제는 분단이 종속되는 한 해결되지 않는다. 인간 같은 놈이 나와 죽어야 한다. -혁명적 지식인이라고 하면서도 혼자 고립되어 있었다. -비참해야 했고 가짜로 초라해야 했고 사치를 누리면 안될 것 같았다. -도덕기준에 집착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인 것 같다. 불의에 개입하는 것은 의무이다.	-정치적 신념에 전념 - 도덕 기준에 집착	-정치적 도덕적 신념에 몰두	
-한번 큰일을 당하니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막 살자 싶어졌다. -어두운 마음과 자포자기 심정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자포자기 -무력함	-정서 회피와 포기	
- 속상하니까 매일같이 술을 먹게 되었다. 남들은 모른다. - 조금만 힘들어지면 자포자기하면서 약물에 의존하게 된다. - 20대 초반이었을 땐데 알코올 중독 상태로 지냈다. - 방황하다가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다. -힘든 상황이 예상되면 미리 신경안정제를 먹어 버린다. -경험하기 싫은 장면이나 소리에 불안해서 약을 먹는다.	-술, 약물 의존		
- 비행기를 타기 힘들다. -폭력적인 영화, 철창살 장면 보기가 힘들다. -TV에서 싸우고 때리고 고문당하는 장면, 동물이 죽는 장면이 나오면 화면 자체를 바꾼다.	-고문 관련 단서에 대한 회피 반응		
-아내한테 폭력을 쓰게 됨 -부인과 싸우면서 과격해진다. -화를 심하게 낸다. -사회생활 하면서 갈등 조정이 힘들고 내가 가해하는 편이 됨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포악함 -사회적 갈등상황에서 가해하는 역할	- 고 통 의 역표출	

-성질이 난폭해지고 날카로워서 아이들한테도 포악해진다.	-분노 조절이 어려움		
-자식이 학교도 못 나오고 사회적응을 못해서 마음이 아픔 -자식과 관계 단절되면서 지쳐버림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애를 떼어야 하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함	-2세가 적응하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	-2세의 고통	-고통의 세대 전이

범주3: 타인/외부세계와 단절되고 내면으로 고립

재진술	의미구성	주제	주제묶음
-빨갱이 낙인으로 인해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움 -직장에서 쫓겨나고 새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경제적 고통이 극심함 -범죄자 누명으로 사회 활동이 제한되면서 점차 고립되어감	-빨갱이/범죄자 낙인 -낙인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대인관계적 고립	-낙인으로 인한 경제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	-낙인과 추방
-나 혼자 방안에서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 -빨갱이, 국외자로 낙인 받은 뒤의 고향에서 쫓겨나 모든 게 싫어짐 -주변 사람들의 알레르기, 터부시 -빨갱이로 낙인, 이지메 경험과 그로 인한 대인관계 불안과 초조함 -타인의 비난이 더 힘들었다.	-사람들과의 단절감 -쫓겨남, 알레르기, 터부시, 낙인, 이지메, 비난 -낙인으로 인해 자신을 향한 폭력이 정당화됨	-타인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비난당함	
-고문이후 정신증이 발병했는데도 방치된 채 입영되었다. -고문피해를 인정받은 뒤에도 치료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음	-치료방치	-지원부재	-실질적 고립
-도청을 하고 있다는 공문과 현실적으로 계속 신경이 쓰임 -감시감독 때문에 아무도 만날 수 없고 답답함 -감시 감독으로 인한 사적 관계의 제약에 두고 보자 싶은 마음	-실질적 감시감독의 지속 -제약과 답답함	-감시 감독의 지속	
-독방에서 벽이 좁혀지는 지각과 죽을 것 같은 공포감 -막힌 곳(지하철)에 있으면 알 수 없는 기운이 몰려들어 곧 죽을 것만 같은 느낌 -독방처럼 갇힌 곳, 막힌 상황에 있으면 불안	-갇히거나 막힌 장소 -공포감 -죽을 것 같은 느낌 -답답함	-폐쇄공포	-완전한 고립에 대한 공포

하고 무섭고 미친다. -혼자서 밀폐되는 것에 대한 무서움 -속이 답답하고 차오르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에서 심장이 뛰다가 멈추는 경험	-해리경험		
-공개하는 것이 민망하다. -고민을 혼자 삭인다. -나의 결백이 밝혀지지 않는 한 누가 알아주겠는가. 말도 못했다.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이므로 이야기할 수 없다. -진실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므로 이야기할 수 없다. -주변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비방, 빨갱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얘기할 수 없다. -수치심. 다른 사람에게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 -얘기하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다. -믿을만한 친구가 없다. -운동했던 사람들과 만나도 그 때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음 -진실을 알아주지 않음 -수치스러움 -믿을만한 사람이 없음 -이야기를 피함	-소통할 수 없음 -내면을 이해받지 못함	- 내면의 단절과 소외
-혼자서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 -의사가 운동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규정당한 느낌에 기분이 나빠서 병원에 다시 가지 않았다. -연관되서 아프다는 생각을 못하고 천성이 그렇다고 생각했다.	-혼자 극복해야 하는 것 -치료에 대한 불편함 -고문과 고통체험의 단절	-사적 영역으로서의 회복	
-감시당한 경험 이후 사람을 못 믿게 되고 행동을 신경쓰는게 힘들다. -믿다가 배신당하면 다시 고통을 감내해야 하니까 믿지 않으려 한다. -의심이 가서 항상 확인하고 엄한 사람들과 싸운다. -항상 주의하고 사람믿는게 힘들어졌다. -덩치 큰 중년 남자를 보면 경계하는 게 몸에 베었다. -사람이 나를 찾으면 덜컥 겁이 난다. -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렇게 무섭고 애를 먹는다. - 남자를 보면 겁이 난다. 남편조차 나를 죽이지 않을까 불안하다. -사람을 만나서 믿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한	- 불신의 경험 -의심, 확인, 경계 -겁이 남	-타인 경계와 불신	-관계 단절과 소외

번 믿으면 오래 간다.			
-사람들 앞에서 횡설수설하고 눈물부터 나오고 자격지심이 생겨 만나기 싫어짐 -사람들 앞에서 몸이 뻣뻣해짐 -사람들 모이는 데가 딱 질색이다.	-사람들 앞에서 불안함 -사람이 질색임	-대인공포	
-저게 인간인가 싶은 고문자에 대한 기억 -사람이 지긋지긋함 -가해자 유혹에 넘어가 믿고 도와줬는데 배신당한 경험이 가장 마음이 아픔 -연루되었던 한 개인에 대한 억울함과 원망감 -사람들끼리 적이 되니 존재가 없어진 것 같고 허전하다. -잔혹하고 인정사정 없는 세상이 슬프다.	-인간같지 않은 고문자 -배신당한 경험 -원망 -사람이 사람에게 적 -인정사정 없는 세상	-인간에 대한 신념의 변형	
-술에 취해서 외로움에 눈물만 줄줄 흘리던 기억 -연행되는 과정에서 타인이 눈을 피하는 모습을 보며 마비되는 듯한 외로움 을 느낌	-외로움	-혼자됨	

범주 4: 불의에 대한 분노와 한맺힌 개인삶			
재진술	의미구성	주제	주제묶음
-가해자가 오히려 잘 사는 것에 대한 분노, 용서할 수 없음 -가해자가 멀쩡히 잘 지내는 모습을 접하니 힘들다. -가족을 위협한 그들을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그들은 멀쩡하게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고 있다. -당시에는 부당해도 당연시 여겼던 것에 대해 속상하고 분함 -못난 놈의 삶은 고역이 되는 세상에 대한 원망감 -더러운 세상 -그 시절과 지금이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아 내가 정신이 잘못 된 건가 헷갈린다.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도 없고 역사적 변화도 없어 울화가 치민다. -국가에게 유공자 신청을 했더니 적반하장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나를 믿지 않아 분	-가해자가 오히려 잘 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음 -국가의 무관심에 대한 호소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부당함에 대한 분함 -세상에 대한 원망 -바뀌지 않는 세상 이치	-세상의 부당함, 무관심, 변치 않음에 분노하고 용서할 수 없음	-세상의 불의에 대한 분노와 용서할 수 없음

노가 치밀어 오름 -나는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고문당한 실체가 떠오르는데 국가는 아니라고 하니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찬다. -고문당한걸 밝히라 했는데 다 정년퇴직해서 모른다는 말뿐이다. -돌아가신 어머니 무죄를 받게 하고 명예회복 하는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가가 원망스럽고 대통령에게 호소하고 싶다. -국가 편만 드는 것에 대한 미움과 원망 -대통령이 좀 알고 갚아줬으면 좋겠다. -국가가 무덤덤해서 속상하다. 내 마음을 달래줄 사람은 국가밖에 없다.			
-내가 뭘 잘못했거나 무슨 한이 내게 맺혀서 내게 이러는지에 대한 원망과 반감 -나의 고통과 죽어버린 삶에 대한 한없는 원망과 분함 -분하고 원통함이 앙금이 되어 가슴이 조여오고 잠을 못 잠 -억울한 생각만 하다가 늘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 -생고생이 억울해서 눈물만 나온다. -죽을 때에도 억울한 생각만 하다 죽을 것 같다. -죄없이 힘들었던 한이 많아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 -억울해서 원수들 끝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눈을 감겠다.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원망 -분하고 원통한 삶 -억울함 -한맺힘 -죽지못함 -원수, 복수	-고통스러운 삶이 원통하고 한 맺혀 눈을 감을 수 없음	-원통하고 한 맺힌 삶

범주 5: 생, 관계, 존재의 상실			
재진술	의미구성	주제	주제묶음
-고문 이후의 아픈 세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농약을 사서 몇 년 째 집에 두고 있다. -자살 시도했다가 깨어난 뒤의 비참함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울이 옴 -우여곡절 속의 불행한 인생에 대한 슬픔	-자살시도 -우울감 -비참함 -슬픔	- 생에 대한 의미가 없음	-생에 대한 상실감
-함께 감옥에 있다가 죽어 발견된 친구에 대한 애도 -사회운동을 계속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사회운동을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 같은 미안함 -죽은 동지를 따라가야 하는데 살아서 뭐하나.	-애도 -미안함 -생존자 죄책감	-함께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과 죄책감	- 관계에 대한 상실감과 죄책감

-평생 고생한 부인의 죽음은 내 탓이다. -가족의 사회생활이 막힌 것으로 내가 나쁜 놈이라는 느낌 - 가족이 고생하고 어머님이 홧병으로 돌아가셔서 속상하고 불명예스러움	- 가족의 고통은 내 탓이고 불명예	- 가족으로 전이되는 고통에 대한 죄책감	
-어느 순간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 -죽음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오름 -세상에 던져졌을 때 증발해버린, 투명인간이 된,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느낌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듯한 느낌으로 자해충동이 일어남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	-존재상실의 공포 -죽음에 대한 생각 -자해충동 -사회 속에 존재감 없음	-세계 속의 존재상실	-자기 상실
- 별개의 부분, 이질적으로 들어온 부분의 이야기가 뭔가 잘 표현되지 않는다. - 꿈같은, 전쟁 영화같은, 현실 같지 않은 기억 -실수하고 맥을 못 잡고 횡설수설함 -얼빠진 상태 - 내 몸에서 나와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	-통합되지 않은 인생사 -자기행동 통합이 어려움 -자기와 자기지각의 분리	-해리된 인생경험	
-나는 중요한 인물인데 정치인들은 조무래기들 뿐이다.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은 독한 요술을 부렸다.	-신념과 특별함으로 무장함	-정체성 혼란에 대한 저항	
- 나는 우리 가족이 결백하다는 것을 믿는다.	-조정, 세뇌의 혼란스러움과 이에 대한 저항		
-나의 어그러짐에 대한 분노 -폭력에 굴복했던 비굴함에 대한 수치심과 나를 향한 분노 -비굴한 짐승같은 내 꼬라지 -고문피해 당한 데는 쉽게 보인 내 탓이 있다. -팔푼이 바보, 웃음거리가 되는 느낌에 자살충동이 인다.	-비굴한 자기 -수치심 -바보, 웃음거리	-자기 자신을 향한 수치심과 분노 저항	
-아까운 나 자신이 망가져버린 느낌, 다 파괴된 느낌 -비참하고 망가진 기분 -원래 느긋했는데 성질이 조급하고 잘 삐치고 참기 어려움	-비참함 -영원히 망가지고 파괴되어 버림 -심리적으로 병듦	-영구히 변형된 자기	

-원래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기분이 좋다가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다운 된다.			
-날씨만 궂으면 아프고 잠을 못 잔다. -신체통증이 심해서 생을 마감해야 겠다고 생각 -골병이 들었음 -통증으로 괴로우니 뛰어내리고 목매달고 싶다. -통증으로 맥을 못 춘다. -날이 궂으면 온 몸의 천지가 다 쑤신다.	-극심한 신체통증 -골병든 몸		
-사회 일을 못하고 커리어가 없는게 답답하고 안타깝고 열등감이 느껴짐 -내 꿈을 펼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상실감과 우울 -사회에 대한 원죄의식으로 끌려서 맞춰 살아온 전체에 대한 회의감 -예전에는 열혈청년이었는데 이제는 바보고 주변인으로 전락	-사회적으로 쳐진 열등감 -상실감 -회의감 -전락	-사회적 상실감	

범주 6: 통합, 수용, 이해, 정의회복을 통한 나아감			
재진술	의미구성	주제	주제묶음
- 다시 태어나도 그런 일을 다시 당해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고문을 당하고 수감생활을 해도 내 생각이 옳고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살았을 것 - 활동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고 해야 할 일이고 옳았다. 계속 활동 할 것이다. - 어릴 때부터 고민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했고 특별한 경험을 했다. - 어릴 때부터 생각이 있었고 심지가 굳었다. - 신념을 지켰다는 자부심과 부끄럽지 않음 - 이후 활동을 계속했고 사람들이 나를 운동가라고 불렀다. -나의 신념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고 있다.	-과거로부터 이어진 일관된 신념 -신념을 지키고 있음	-일관된 정체성	-정체성 통합과 이해
-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너무 좋았다. -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의미있었다. -정당한 활동을 했다는 자부심 -양심에 입각해서 살았기 때문에 보람이 있고 내 인생은 만족스럽다.	-활동에 대한 긍정적 기억 - 가치 실현, 양심에 따름, 정당한 활동, 인	- 통합된 정체성	

-청년 때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면서 헌신했던 것은 나의 훈장이다. -양심을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저항한 게 자랑스럽다. -인간적인 삶을 사는데 도모하며 살기로 자율적으로 선택함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자부심 -내가 했던 일은 모두 나에게 의미있는 일이었다.	간적인 삶을 향한 자율적 선택,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옴 -보람, 만족감, 자부심, 자랑스러움 -의미있음		
-겪었던 일을 시와 글로 표현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불안과 답답함이 사라짐 -내면으로 들어가 시를 씀 -나를 돌아보는 기도를 함	-시와 글, 말로 표현함. -정서적 카타르시스	- 언 어 화 를 통한 자기이해	
- 신이 나를 벌하신 것이다. - 눈에 안 보이는 신이 나를 도와준 것이 감동이고 감사하다.	-신앙을 통한 고통의 이해 -신에 대한 감사	- 고통의 타당화	-고통의 이해
-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은 못 산다. 나는 마음이 착하고 남에게 해롭게 안 했다. -많이 배우고 느껴 진실한 사람이 되었다.	-권선징악을 통한 고통의 이해 -성장 체험을 통한 고통의 이해		
-지금 민주화된 것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이 좋아진 걸로 다 보상을 받았다. -내 인생이 불행했지만 죽기보다는 내 힘이 되는 만큼 남을 도우며 살겠다.	-민주화의 의미 -타인과의 연결성	- 연 결 성 을 통한 고통의 타당화	
- 성서말씀으로 원수들 처지에도 동질감이 들고 분노의 다듬어짐	-신앙을 통한 연결성		
- 죽는 것보다 사는 인생이 의미있다.	-생에 가치 부여	-생의 의미	
-마음 속에 있는 걸 얘기하고 싶었다. -말할 수 없다는 게 미치겠다. -살아남아서 여기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다짐함 -내가 제일 싫어했던 군인들에게 이제 내가 할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로 풀어내고 글을 쓰면서 증상이 나아졌다.	-이야기하고 싶음.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다짐 -드러냄을 통한 치유	-불의와 고통의 사회적 인정	-관계적 수용

-같이 활동을 하는 아내의 이해 -우여곡절에도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아내의 지지 -말이 통하는 친구들과의 만남 -단체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 아파하고 같이 많이 울었다. -주변 이웃들의 변함없는 관계가 계속되고 있음 -어릴 때부터 이어온 가족의 지지	-가족, 친구, 동료, 주변 이웃의 지지 -이해와 정서적 지지, 변치않는 관계 -어릴 때부터의 지지	-관계적 연결성	
-종교적으로 수용받는 기쁨 -기도, 묵상, 미사등 종교적 체험으로 감정을 풀음 -성경말씀을 통한 위로	-종교적 수용 -종교 체험 -종교적 위로	-종교를 통한 온전한 수용.	
-살아남았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했다. -나만의 재수없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문제라고 생각하니 의지가 생기고 극복이 되었다. -재심판결을 통한 기쁨과 희망	-정의회복을 통한 원통함 해소 -사회의 문제 -사회의 인정을 통한 희망	-사회구조적 관점과 사회의 역할 확인 -정의로운 세계 신념 재건	-사회 정의 회복

<부록 2> 고문피해 실태조사 지침서(안)

Ⅰ. 개요

□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고문피해자 인권실태조사'의 일환으로서 이번 조사는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은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고문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발생한 고문피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를 권고한바 있으나 여전히 이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대책과 조치는 부진함. 진실화해위원회의 경우, 인권침해사건 238건(총 768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하고 피해자 회복조치를 국가에 권고함. 현재 재심 진행 중인 일부 사건 외 다른 피해사건에 대한 국가조치는 거의 전무한 상황임

Ⅱ. 법적 근거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법 19조(업무) 4항 (인권 실태조사)

Ⅲ. 기본 방향

□ 조사대상은 국가기관 및 민간기구에서 고문피해를 인정받은 고문피해자와 가족

- 고문피해자 리스트는 국가인권위와 민간 인권단체를 통해 파악 입수 예정

□ 조사기간은 2011. 4. ~ 2011. 10.

□ 조사팀은 인권의학연구소 연구진 외 민간 전문가 참여로 구성

Ⅳ. 조사내용 및 방법

□ 조사내용

- 고문피해 현황과 고문피해의 유형
-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 심리적 후유증의 실태
- 출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건강상태
- 국가의 구체조치와 지원방안

□ 조사방법

- 양적 조사 대상자는 직접면접조사(questionnaire interview)와 우편조사를 병행

- 심층면접대상자는 임상심리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진행

Ⅴ. 면접조사시 유의사항

① 질문지를 사전에 숙독하여 내용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각 질문항목의 의도를 이해한다.
③ 원칙적으로 질문지 내용과 순서 그대로 질문한다.
④ 문항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묻는다.(무응답은 무응답으로 표시한다)
⑤ 응답을 유도하거나 시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서둘지 말 것
⑥ 응답자의 안색과 피로도를 살펴 잠깐의 휴식으로 진행을 원활하게 한다.
⑦ 고문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사무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공무원에 대한 적대감 존재).
⑧ 친근한 태도로 신뢰감을 주되,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

Ⅵ. 질문지 주요 항목 설명

□ 질문지 작성 대상
- 국가기관(진실화해위원회, 민보상 등)에 의해 고문피해를 인정받은 사람과 그 가족
- 민간 인권단체에 고문피해를 신고한 사람과 그 가족
- 그 외 고문피해자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과 그 가족

□ 고문의 정의
- 공무원이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들의 명령·동의·묵인 아래,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개인에게 의도적으로 가하는 행위 (UN고문방지협약 참조)

□ 질문항목 설명

1. 고문현황 관련
1-1. 해당 분야의 보기가 없을 경우, 기타 란에 정서체로 기재한다.
1-2, 1-3. 보기 중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기표한다.
1-5. 피해당시 우리 나이를 기재하고, 모를 경우 생년월일 혹은 생년을 기재한다.

1-6. 3년이상 동거 혹은 사실혼은 결혼에 포함한다.

1-8. 무학은 '초졸 이하'에 표기하고, 대학중퇴는 '대졸이하'에 표기한다.

1-9. 불법구금 일수를 정확히 모를 경우, '약 00일', 혹은 '약 0개월'로 기재한다.

1-10. 투옥기간을 정확히 모를 경우, '약 0년 0개월'로 기재한다.

1-12. 의료인이 취한 조치에는 치료를 받은 장소를 기재한다.

2. 고문종류 관련

: 표기의 예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기재한다. 해당 경우는 모두 표기한다.

2-28. 그 외 고문종류는 보기 외의 피해사례를 정서체로 기재한다. 쓰기가 힘들 경우 질문지 여백을 이용할 것

3. 신체적 후유증 관련

: 고문피해를 입을 당시의 손상 부위와 고통 정도를 기재한다.

4. 심리적 후유증(1)

: 최근 1개월 동안의 증상에 해당하는 보기에 모두 표기한다.

5. 심리적 후유증(2)

: 최근 1주일 동안의 증상에 해당하는 보기에 모두 표기하고, 고문과의 관련성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느낀 증상을 표기하도록 한다.

6. 심리적 후유증(3)

: 최근 1개월 동안의 증상에 해당하는 보기에 모두 표기한다.

7. 출소 이후 생활 관련

: 교도소뿐만 아니라 구금시설이나 기관에서 나온 뒤 생활상의 어려움에 모두 표기한다.

8. 건강상태 관련

8-1. 최근 1년 동안 금주하였다면 사유와 금주이전의 음주량을 기재한다.

8-7. 의사가 진단한 질환의 병명을 모를 경우,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족의 도움을 받아 기재한다. 약국이나 민간치료는 진단 '없다'에 표기

9. 국가의 구제조치 관련

9-1.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개인의견을 18쪽 자유의견란에 기재하도록 한다.

10. 피해자 지원 항목 관련

: 기타 의견은 18쪽 아래의 자유의견란에 기재하도록 한다.

<인구학적 질문항목>

: 거주지역에서 국외는 여백에 해당 국가를 기재하도록 한다.

: 한달 수입은 가구전체 수입을 기준으로 표기한다.

<부록 3> 설문지- 당사자용

◇ 설문 일시 : 2011. . .

		-			

고문 피해자 인권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고문피해자 인권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은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고문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됩니다.

본 설문지는 어떠한 고문을 겪으셨는지, 사건 이후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현재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신지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연구분석될 뿐이며, 개인 신상 등 응답내용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참여를 통해서 고문피해의 현황을 정확히 밝혀내고, 이후 고문피해자를 지원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문의처 : 이화영 소장 / 남상덕 사무국장 ☎ 02-711-7588,팩스 02-711-7589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9 마포트라팰리스 A-2704. http://www.imhr.or.kr

연구 참여 동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동의합니다” 네모칸에 V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서면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는데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 본 설문지에 응답하면서 불편함이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응답을 그만둘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2011년 _____월 ____일

고문이란

공무원이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들의 명령·동의·묵인 아래,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개인에게 의도적으로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UN 고문방지협약 중에서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장부터는 선생님께서 겪으신 사건, 고문의 종류, 그리고 고문피해와 관련된 몸과 마음의 후유증에 관한 질문들이 시작됩니다.

문항 지시를 꼼꼼히 읽어보신 뒤, 각 질문에 대해 생각나시는 대로 편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에도 '내 생각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으로 떠오르시는 대로 응답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대한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해주신다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만 힘드신 경우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1. 고문 현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기입해주시거나 ○표 해주십시오.

1-1. 어떤 분야의 사건에 연루되어 고문을 당하셨습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① 정치, 재야 분야 ② 노동 운동 ③ 청년, 학생 운동
④ 농민, 빈민 운동 ⑤ 조작 간첩 ⑥ 교육, 통일, 여성 분야
⑦ 종교, 문화, 언론 분야 ⑧ 기 타 (_____)

1-2. 고문을 당한 곳은 어디입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① 경찰서 ② 검찰 ③ 안기부(중앙정보부) ④ 기무사(보안사) ⑤ 보안수사대(대공분실)
⑥ 구치소/교도소 ⑦ 사설기관(여관 등) ⑧ 기 타 (_____)

1-3. 어떤 이유로 고문을 당하였습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① 사건과 관련된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정보수집 목적)
②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벌 목적)
③ 본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협박 목적)
④ 출신 지역, 학력, 성별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목적)

1-4. 고문피해를 당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① 1970년 이전 ② 1970년대 ③ 1980년대
④ 1990년대 ⑤ 2000년 이후

1-5. 고문피해를 당했을 당시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_____세)

1-6. 고문피해를 당했을 당시 혼인 관계는 어떠하셨습니까?

① 결혼 ② 별거 ③ 이혼 ④ 사별 ⑤결혼 안함

1-7. 고문피해를 당했을 당시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_____)

1-8. 고문피해를 당했을 당시 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이하 ③ 고졸 이하 ④ 대졸 이하 ⑤ 대학원 이상

1-9. 고문을 당한 기간(불법구금일)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 (일/개월/년)

1-10. 투옥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 (일/개월/년)

1-11. 연행되기 이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시고,

0(전혀 아니다)에서 6(매우 그렇다) 사이 가장 알맞은 숫자에 ○ 표시해 주십시오.

		← 전혀 아니다						매우 → 그렇다
1	나는 나의 사회적 신념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0	1	2	3	4	5	6
2	나는 중요한 사회운동에 임하고 있었다.	0	1	2	3	4	5	6
3	나는 고문을 받거나 투옥당할 것이라는 예상과 각오를 하고 있었다.	0	1	2	3	4	5	6

1-12. 고문을 당하던 중 의료인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의료인이 취한 조치:_____) ② 아니오

■ 2. 겪으신 고문의 종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고문의 종류들입니다. 직접 겪은 고문을 '있었음' 네모칸에 ∨표시해주십시오. 그 다음 '당시의 고통의 정도'를 0(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음)에서 6(매우 극심히 고통스러웠음) 사이의 알맞은 숫자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겪은 고문종류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해당되는 고문을 받지 않았으면 표시하지 마십시오.

※ 기억나시거나 떠오르시는 대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예	*매달기(예: 통닭구이)*	☑	0	1	2	③	4	5	6

종 류 \ 평정척도		있었음	평 정 척 도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음						매우→ 극심히 고통스러웠음
2-1	온몸 구타(손,발, 몽둥이 등을 사용)	□	0	1	2	3	4	5	6

종 류 \ 평정척도		평 정 척 도							
		있었음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음						매우→ 극심히 고통스러웠음
2-2	전기고문	□	0	1	2	3	4	5	6
2-3	물고문 (예: 고춧가루고문)	□	0	1	2	3	4	5	6
2-4	열고문 (예: 담뱃불)	□	0	1	2	3	4	5	6
2-5	묶여 있었음(예: 밧줄, 칠성판 등)	□	0	1	2	3	4	5	6
2-6	매달기(예: 통닭구이, 비녀꽂기)	□	0	1	2	3	4	5	6
2-7	무릎 사이에 각목 끼우고 밟거나 각목 위에 몸 굴리기	□	0	1	2	3	4	5	6
2-8	성기고문, 성폭행	□	0	1	2	3	4	5	6
2-9	정체불명의 약물 강제투여	□	0	1	2	3	4	5	6
2-10	손톱 발톱 밑, 이마 등을 바늘, 송곳으로 찌르기	□	0	1	2	3	4	5	6
2-11	따귀 때리기(고무신 등)	□	0	1	2	3	4	5	6
2-12	눈가림	□	0	1	2	3	4	5	6
2-13	음식, 물 안주기	□	0	1	2	3	4	5	6
2-14	잠 안재우기	□	0	1	2	3	4	5	6
2-15	의료박탈 (치료안해줌)	□	0	1	2	3	4	5	6
2-16	못 움직이게 함(계속 서 있기 등)	□	0	1	2	3	4	5	6
2-17	강간 또는 추가 고문을 위협함	□	0	1	2	3	4	5	6
2-18	죽이겠다고 위협함 (예: 생매장, 엘리베이터 고문)	□	0	1	2	3	4	5	6
2-19	가족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	□	0	1	2	3	4	5	6
2-20	다른 사람이 고문당하는 것을 목격 (혹은 소리를 들음)	□	0	1	2	3	4	5	6
2-21	벌거벗기기 혹은 성적으로 수치스럽게 함	□	0	1	2	3	4	5	6

종 류 \ 평정척도		있었음	평 정 척 도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음						매우→ 극심히 고통스러웠음
2-22	욕하거나 모욕주기, 조롱함	□	0	1	2	3	4	5	6
2-23	고문가해자의 태도가 돌변함 (예: 잘해주다가 갑자기 가해함)	□	0	1	2	3	4	5	6
2-24	심한 추위, 더위, 빛, 큰소리에 노출시킴	□	0	1	2	3	4	5	6
2-25	억지로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 (예: 허위자백, 강제식사)	□	0	1	2	3	4	5	6
2-26	독방에 감금	□	0	1	2	3	4	5	6
2-27	외부인과의 단절 (예: 가족, 변호사, 인권단체를 만날 수 없었음)	□	0	1	2	3	4	5	6
2-28	기타: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 )	□	0	1	2	3	4	5	6

■ 3.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후유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고문으로 인해 손상 받은 신체 부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고문으로 인해 손상을 받았던 부위나 그로 인한 증상이 있었을 경우, '있었음' 네모칸에 ∨표시해주십시오. 그 다음, 해당 증상에 대한 '당시의 고통의 정도'를 0(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음)에서 6(매우 극심히 고통스러웠음) 사이의 알맞은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겪은 증상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해당되는 증상이 아니면 표시하지 마십시오.

※ 기억나시거나 떠오르시는 대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예) 머리	☑	0	1	2	③	4	5	6

종 류 \ 평정척도		있었음	평 정 척 도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음						매우→ 극심히 고통스러웠음
근 골격계 증상 (붓고 통증, 움직이기 어려움, 골절 등)									
3-1	머리	□	0	1	2	3	4	5	6

종 류 \ 평정척도		평 정 척 도							
		있었음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음						매우→ 극심히 고통스러웠음
근 골격계 증상 (붓고 통증, 움직이기 어려움, 골절 등)									
3-2	목과 어깨	□	0	1	2	3	4	5	6
3-3	팔과 손	□	0	1	2	3	4	5	6
3-4	허리 부위	□	0	1	2	3	4	5	6
3-5	다리, 발	□	0	1	2	3	4	5	6
	피부과 증상								
3-6	타박상 (붓고 멍듬)	□	0	1	2	3	4	5	6
3-7	자상 (베인 상처)	□	0	1	2	3	4	5	6
3-8	열/전기에 의한 손상	□	0	1	2	3	4	5	6
	신경계 증상								
3-9	두통, 어지러움	□	0	1	2	3	4	5	6
3-10	뇌진탕	□	0	1	2	3	4	5	6
3-11	뇌출혈	□	0	1	2	3	4	5	6
	호흡기계 증상								
3-12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	0	1	2	3	4	5	6
3-13	호흡곤란	□	0	1	2	3	4	5	6
	이비인후과 증상								
3-14	소리가 잘 안들림 (고막파열)	□	0	1	2	3	4	5	6
	소화기계 증상								
3-15	항문 손상	□	0	1	2	3	4	5	6
	안과 증상								
3-16	시력이 나빠짐	□	0	1	2	3	4	5	6
3-17	눈이 안보임	□	0	1	2	3	4	5	6

종 류 \ 평정척도		평 정 척 도							
		있었음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음						매우→ 극심히 고통스러웠음
비뇨/생식기계 증상									
3-18	소변보기 어려움	□	0	1	2	3	4	5	6
3-19	고환 손상 (남성)	□	0	1	2	3	4	5	6
3-20	성기 출혈	□	0	1	2	3	4	5	6

■ 4. 고문으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1)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의 목록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셨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 상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고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나에게 그 때의 감정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0	1	2	3	4
4-2	나는 수면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0	1	2	3	4
4-3	나는 다른 일들로 인해 그 고문 사건을 생각하게 된다	0	1	2	3	4
4-4	나는 고문사건 이후로 예민하고 화가 난다고 느꼈다	0	1	2	3	4
4-5	고문 사건에 대해 생각하거나 떠오를 때마다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했다	0	1	2	3	4
4-6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고문 사건이 생각난다	0	1	2	3	4
4-7	고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꼈다	0	1	2	3	4
4-8	고문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들을 멀리하며 지냈다	0	1	2	3	4
4-9	고문 사건의 영상(이미지)이 마음 속에 갑자기 떠오르곤 했다	0	1	2	3	4
4-10	나는 신경이 예민해졌고 쉽게 깜짝 놀랐다	0	1	2	3	4
4-11	고문 사건에 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0	1	2	3	4
4-12	나는 고문 사건에 관해 여전히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0	1	2	3	4

	증 상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3	고문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이 무감각하고 둔해질 때가 있었다	0	1	2	3	4
4-14	나는 마치 고문 사건 당시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거나 행동할 때가 있었다	0	1	2	3	4
4-15	나는 고문 사건 이후로 잠들기가 어려웠다	0	1	2	3	4
4-16	나는 고문 사건에 대한 강한 감정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0	1	2	3	4
4-17	내 기억에서 고문 사건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했다	0	1	2	3	4
4-18	나는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0	1	2	3	4
4-19	고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에도 식은땀, 숨쉬기 어려움, 메스꺼움, 두근거림 같은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0	1	2	3	4
4-20	나는 고문 사건에 관한 꿈을 꾼 적이 있었다	0	1	2	3	4
4-21	내가 주위를 경계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4-22	나는 고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0	1	2	3	4

■ 5. 고문으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2)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에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느낌을 나열하였습니다.

주의 깊게 읽어 보시고, 오늘을 포함하여 최근 일주일 동안 자신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 상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5-1	머리가 아프다	0	1	2	3	4
5-2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	0	1	2	3	4
5-3	가슴이나 심장이 아프다	0	1	2	3	4
5-4	허리가 아프다	0	1	2	3	4
5-5	구역질이 나거나 토한다	0	1	2	3	4

	증 상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5-6	근육통 또는 신경통이 있다	0	1	2	3	4
5-7	숨쉬기가 거북하다	0	1	2	3	4
5-8	목이 화끈거리거나 찰 때(냉할 때)가 있다	0	1	2	3	4
5-9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쩌릿쩌릿하다	0	1	2	3	4
5-10	목에 무슨 덩어리가 걸린 것 같다	0	1	2	3	4
5-11	몸의 어느 부위가 힘이 없다	0	1	2	3	4
5-12	팔다리가 묵직하다	0	1	2	3	4
5-13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보인다	0	1	2	3	4
5-14	이성을 대하면 어색하거나 부끄럽다	0	1	2	3	4
5-15	쉽게 기분이 상한다	0	1	2	3	4
5-1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다	0	1	2	3	4
5-17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불친절하다고 느낀다	0	1	2	3	4
5-18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다(열등감을 느낀다)	0	1	2	3	4
5-19	남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거북해진다	0	1	2	3	4
5-20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나의 언행에 신경을 쓰게 된다	0	1	2	3	4
5-21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기가 거북하다	0	1	2	3	4
5-22	성욕이 감퇴되었다	0	1	2	3	4
5-23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0	1	2	3	4
5-24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0	1	2	3	4
5-25	울기를 잘한다	0	1	2	3	4
5-26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 나올 수 없는 기분이 든다	0	1	2	3	4
5-27	자책을 잘한다	0	1	2	3	4
5-28	외롭다	0	1	2	3	4

	증 상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5-29	기분이 울적하다	0	1	2	3	4
5-30	매사에 걱정이 많다	0	1	2	3	4
5-31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0	1	2	3	4
5-32	장래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0	1	2	3	4
5-33	매사가 힘들다	0	1	2	3	4
5-34	허무한 느낌이 든다	0	1	2	3	4
5-35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0	1	2	3	4
5-36	몸이나 마음이 떨린다	0	1	2	3	4
5-37	별 이유없이 깜짝 놀란다	0	1	2	3	4
5-38	두려운 느낌이 든다	0	1	2	3	4
5-39	심장(가슴)이 마구 뛴다	0	1	2	3	4
5-40	긴장이 된다	0	1	2	3	4
5-41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0	1	2	3	4
5-42	안절부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0	1	2	3	4
5-43	낯익은 것들도 생소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낀다	0	1	2	3	4
5-44	무슨 일이든 조급해서 안절부절 못한다	0	1	2	3	4
5-45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0	1	2	3	4
5-46	자신도 걷잡을 수 없이 울화가 터진다	0	1	2	3	4
5-47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0	1	2	3	4
5-48	무엇을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0	1	2	3	4
5-49	잘 다툰다	0	1	2	3	4
5-50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내 던진다	0	1	2	3	4

■ 6. 고문으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3)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사람들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 느끼는 기억의 문제들입니다. 주의 깊게 읽어 보시고, 최근 한 달 동안 자신의 경험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번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 상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심하게 그렇다
6-1	고문경험은 대개 사진처럼 혹은 이미지로 기억난다.	1	2	3	4
6-2	고문경험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1	2	3	4
6-3	고문경험이 기억날 때, 마치 고문을 당했을 때 들렸던 소리가 다시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 같다.	1	2	3	4
6-4	고문경험이 기억날 때, 마치 당장 고문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1	2	3	4
6-5	고문경험이 기억날 때, 마치 고문을 당했을 때 맡았던 냄새가 다시 나는 것 같다.	1	2	3	4
6-6	나는 고문경험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있다.	1	2	3	4
6-7	나는 고문경험이 몇 개의 장면들로 기억나고, 각 순간은 사진처럼 떠오른다.	1	2	3	4
6-8	고문 경험은 마치 계속 틀어놓은 영화처럼 기억난다.	1	2	3	4
6-9	고문 경험은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억난다.	1	2	3	4
6-10	고문 경험은 마치 마음속의 사진을 보는 것처럼 기억난다.	1	2	3	4
6-11	고문경험이 기억날 때, 마치 고문을 당했을 때 취했던 몸의 자세를 다시 취하게 되는 것 같다.	1	2	3	4

■ 7. 다음은 출소하신 이후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우, '있었음' 네모칸에 ∨표시해주십시오.

또한 그 경험에 관련된 '고통의 정도'를 0(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음)에서 6(매우 극심히 고통스러웠음) 사이의 알맞은 숫자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겪은 일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해당되는 일이 아닌 경우 표시하지 마십시오.

종 류 / 평정척도		평 정 척 도							
		있었음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음						매우→ 극심히 고통스러웠음
7-1	보안관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음	□	0	1	2	3	4	5	6
7-2	보안관찰 때문에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했음	□	0	1	2	3	4	5	6
7-3	보안관찰 때문에 경찰서에 자주 가야 하거나 담당형사와 자주 마주쳐야 했음	□	0	1	2	3	4	5	6
7-4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없었음	□	0	1	2	3	4	5	6
7-5	더 이상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없었음	□	0	1	2	3	4	5	6
7-6	취업에 제한이 있었음	□	0	1	2	3	4	5	6
7-7	경제적으로 어려웠음	□	0	1	2	3	4	5	6
7-8	주위 사람들이나 이웃들이 배타하였음	□	0	1	2	3	4	5	6
7-9	친인척들이 배타하였음	□	0	1	2	3	4	5	6
7-10	가족들이 배타하였음 (예: 이혼)	□	0	1	2	3	4	5	6
7-11	건강 문제로 생활에 제약이 있었음	□	0	1	2	3	4	5	6
7-12	고문경험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음	□	0	1	2	3	4	5	6
7-13	고문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음	□	0	1	2	3	4	5	6
7-14	사건 피해와 관련한 어떠한 도움이나 지원도 받을 수 없었음	□	0	1	2	3	4	5	6
7-15	고문사건과는 별개로 매우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일을 겪었음 (예: 교통사고, 사별, 자연재해 등)	□	0	1	2	3	4	5	6

■ 8.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의 깊게 읽어 보시고, 아래 질문에 따라 알맞은 번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8-1. 술을 드십니까? 지난 1년 동안 드신 평균 횟수와 한번 드실 때 양은 얼마입니까?

	거의 없다	월 1회	월2-3회	주 1회	주 2-3회	주 4-5회	매일	**주량**
소주	□	□	□	□	□	□	□	□ 병 / □ 잔
맥주	□	□	□	□	□	□	□	□ 병 / □ 잔

8-2. 다음에 대하여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1. 자기연민에 잘 빠지며 술로 인해 이를 해소하려 한다.	1	0
2. 혼자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1	0
3. 술 마신 다음날 해장술을 마신다.	1	0
4. 취기가 오르면 술을 계속 마시고 싶은 생각이 지배적이다.	1	0
5.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거의 참을 수 없다.	1	0
6. 최근에 취중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6개월에 2번 이상)	1	0
7.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술이 해로웠다고 느낀다.	1	0
8. 술로 인해 직업기능에 상당한 손상이 있다.	1	0
9. 술로 인해 배우자(보호자)가 나를 떠난다고 위협한다.	1	0
10. 술이 깨면 진땀, 손떨림, 불안이나 좌절 혹은 불면을 경험한다.	1	0
11. 술이 깨면서 공포(섬망)나 몸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경험하거나, 헛것을 보거나 헛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1	0
12. 술로 인해 생긴 문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1	0

8-3.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원래 안 피운다

②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담배를 피웠다.

③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나 사건 이후에 피우게 되었다.

④ 피웠으나 끊었다.

8-4. 사건 이후 자살을 실제 시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횟수:_____회) ② 아니오

8-5. 다음 중 최근 일주일간 본인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O 표시해 주십시오.

①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② 나는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③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④ 나는 자살할 계획이 있으며 기회만 있으면 시도하겠다.

8-6.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8-7. 귀하는 과거에 병·의원에서 의사로부터 아래의 질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만약 “있다”라면 아래 "치료경과"란에 자세히 기입해 주십시오)

질 환	의사의 진단		치 료 경 과			
	없다	있다	완치	현재 치료 중	치료받은 적 있으나, 현재 치료하지 않음	치료받은 적 없음 (미치료)
1. 고혈압	1	2	1	2	3	4
2. 당뇨병	1	2	1	2	3	4
3. 고지혈증	1	2	1	2	3	4
4. 뇌졸중(중풍)	1	2	1	2	3	4
5. 갑상선 질환 (기능항진 또는 기능저하증)	1	2	1	2	3	4
6. 만성간염, 간경변 (바이러스성간염)	1	2	1	2	3	4
7. 만성간염, 간경변 (알코올성간염)	1	2	1	2	3	4
8. 위·십이지장염 또는 궤양	1	2	1	2	3	4
9. 만성 폐질환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1	2	1	2	3	4
10. 폐결핵	1	2	1	2	3	4
11. 전립선 비대증	1	2	1	2	3	4
12. 만성 신장(콩팥)질환 (신부전)	1	2	1	2	3	4
13. 근골격계 질환 (척추디스크, 만성관절염 등)	1	2	1	2	3	4
14. 암	1	2	1	2	3	4
15. 우울증	1	2	1	2	3	4
16. 조울증	1	2	1	2	3	4
17. 불안장애 또는 공황장애	1	2	1	2	3	4
18. 정신분열증	1	2	1	2	3	4
19. 불면증	1	2	1	2	3	4
20. 알콜 의존성 장애 (알콜중독)	1	2	1	2	3	4

■ 9. 고문 피해와 관련한 국가의 구제조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기입해주시거나 ○ 표를 해주십시오.

9-1. 법원이 아닌 국가기관에 고문을 당한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조사를 신청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만약 "아니오"라면 다음쪽의 문항 9-6으로 가세요)

9-2. 신청은 어디에 하셨습니까?

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②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③ 국가인권위원회 ④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⑥ 기타 (국가기관명 :_____)

9-3. 재조사 신청 후 고문당한 사실을 인정받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4. 재조사 결과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0에서 6사이의 알맞은 번호에 ○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스러움						매우 만족스러움
0	1	2	3	4	5	6

9-5. 만족하지 않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6. 법원에 고문 피해와 관련한 재판을 신청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만약 "아니오"라면 다음 쪽의 문항 10으로 가세요)

9-7. 법원의 재판 결과 고문당한 사실을 인정받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만약 "아니오"라면 다음 쪽의 문항 10으로 가세요)

※ 위 9-7.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신 경우, 아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9-8. 법원으로부터 고문당한 사실을 인정받은 후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과 보상 등 구제조치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9-9. 법원의 결정 후 국가로부터 받은 구제조치에 만족하십니까?

0에서 6 사이의 알맞은 번호에 ○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스러움						매우 만족스러움
0	1	2	3	4	5	6

9-10. 만족하지 않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0. 현재 피해자에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0부터 3사이의 해당되는 번호에 ○ 표를 해주십시오.

지원 항목		필요 없음	조금 필요함	필요 함	매우 필요함
10-1	명예 회복과 사회적 인식 증진	0	1	2	3
10-2	경제적 지원과 보상	0	1	2	3
10-3	신체 후유증 치료와 재활을 위한 보조 장비, 의료비 지원	0	1	2	3
10-4	정신·심리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치유센터	0	1	2	3
10-5	임대 주택 제공,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한 주거 지원	0	1	2	3
10-6	국가차원의 고문방지 기구 설치	0	1	2	3

■ 고문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지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써주십시오.

■ 아래 질문은 앞서 주신 답변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에 기입해주시거나 ○표 해주십시오.

1. 현재 나이 _____세 (_____년생)

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3. 현재 거주 지역

① 서울·경기·인천지역 ② 강원지역 ③ 충청지역 ④ 경상지역 ⑤ 전라·제주지역

4. 현재 학력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이하 ③ 고졸 이하 ④ 대졸 이하 ⑤ 대학원 이상

5. 현재 직업 (_____)

6. 현재 주거 상태

① 자기 소유 자택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타 (_____)

7. 현재 혼인 관계

① 결혼 ② 별거 ③ 이혼 ④ 사별 ⑤ 결혼 안함

8. 귀 댁의 한 달 수입은 평균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만원 이상

9.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종교 없음 ⑤ 기타( )

10. 현재 의료보장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공·교보험 ② 직장보험 ③ 지역보험 ④ 의료보호 ⑤ 없음

<오랜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추가 피해 상담이나 심층인터뷰를 원하시는 분은
인권의학연구소(02-711-7588)로 연락주시거나
조사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9 마포트라팰리스 A-2704. http://www.imhr.or.kr

<부록 4> 설문지- 가족용

◇ 설문 일시 : 2011. . .

		-			

고문 피해자 인권실태조사 <가족용>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고문피해자 인권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은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고문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됩니다.

본 설문지는 가족 구성원의 고문경험으로 인해 주변 가족이 받는 영향 및 현재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신지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시문을 잘 읽어보시고 기억나거나 떠오른 대로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는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연구분석될 뿐이며, 개인 신상 등 응답내용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참여를 통해서 고문피해의 현황을 정확히 밝혀내고, 이후 고문피해자를 지원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문의처 : 이화영 소장 / 남상덕 사무국장 ☎ 02-711-7588,팩스 02-711-7589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9 마포트라팰리스 A-2704. http://www.imhr.or.kr

연구 참여 동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동의합니다” 네모칸에 V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는데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 본 설문지에 응답하면서 불편함이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응답을 그만둘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2011년 _____월 ____일

고문이란

공무원이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들의 명령 · 동의 · 묵인 아래,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박 · 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극심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개인에게 의도적으로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UN 고문방지협약 중에서**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장부터는 선생님께서 가족으로서 겪으신 사건과 관련된 몸과 마음의 후유증에 관한 질문들이 시작됩니다.

문항 지시를 꼼꼼히 읽어보신 뒤, 각 질문에 대해 생각나시는 대로 편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에도 '내 생각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으로 떠오르시는 대로 응답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대한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해주신다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만 힘드신 경우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개인 신상 (해당 사항에 기입해주시거나 혹은 ✓, ○표 해주십시오)

1. 현재 나이 _____세 (_____년생)

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3. 현재 학력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이하 ③ 고졸 이하 ④ 대졸 이하 ⑤ 대학원 이상

4. 현재 직업 ( )

5.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나이 ( ) 세

6.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

7. 귀하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① 피해자의 자녀 ② 피해자의 부모 ③ 피해자와 부부 ④ 피해자의 형제 자매
⑤ 기타 (_____)

■ 1. 다음은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셨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 상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고문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나에게 그 때의 감정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0	1	2	3	4
1-2	나는 수면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0	1	2	3	4
1-3	나는 다른 일들로 인해 고문사건을 생각하게 된다	0	1	2	3	4
1-4	나는 고문사건 이후로 예민하고 화가 난다고 느꼈다	0	1	2	3	4
1-5	고문사건에 대해 생각하거나 떠오를 때마다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했다	0	1	2	3	4
1-6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고문사건이 생각난다	0	1	2	3	4
1-7	고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꼈다	0	1	2	3	4
1-8	고문사건을 상기시키는 것들을 멀리하며 지냈다	0	1	2	3	4
1-9	고문사건의 영상(이미지)이 나의 마음 속에 갑자기 떠오르곤 했다	0	1	2	3	4
1-10	나는 신경이 예민해졌고 쉽게 깜짝 놀랐다	0	1	2	3	4
1-11	고문사건에 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0	1	2	3	4
1-12	나는 고문사건에 관해 여전히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0	1	2	3	4
1-13	고문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이 무감각하고 둔해질 때가 있었다	0	1	2	3	4
1-14	나는 마치 고문사건 당시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거나 행동할 때가 있었다	0	1	2	3	4
1-15	나는 고문사건 이후로 잠들기가 어려웠다	0	1	2	3	4
1-16	나는 고문사건에 대한 강함 감정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0	1	2	3	4
1-17	내 기억에서 고문사건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했다	0	1	2	3	4
1-18	나는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0	1	2	3	4
1-19	고문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에도 식은 땀, 숨쉬기 어려움, 메스꺼움, 두근거림 같은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0	1	2	3	4
1-20	나는 고문사건에 관한 꿈을 꾼 적이 있었다	0	1	2	3	4
1-21	내가 주위를 경계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1-22	나는 고문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0	1	2	3	4

■ 2. 다음에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느낌을 나열하였습니다.

주의 깊게 읽어 보시고, 오늘을 포함하여 최근 일주일 동안 자신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숫자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 상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2-1	머리가 아프다	0	1	2	3	4
2-2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	0	1	2	3	4
2-3	가슴이나 심장이 아프다	0	1	2	3	4
2-4	허리가 아프다	0	1	2	3	4
2-5	구역질이 나거나 토한다	0	1	2	3	4
2-6	근육통 또는 신경통이 있다	0	1	2	3	4
2-7	숨쉬기가 거북하다	0	1	2	3	4
2-8	목이 화끈거리거나 찰 때(냉할 때)가 있다	0	1	2	3	4
2-9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쩌릿쩌릿하다	0	1	2	3	4
2-10	목에 무슨 덩어리가 걸린 것 같다	0	1	2	3	4
2-11	몸의 어느 부위가 힘이 없다	0	1	2	3	4
2-12	팔다리가 묵직하다	0	1	2	3	4
2-13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보인다	0	1	2	3	4
2-14	이성을 대하면 어색하거나 부끄럽다	0	1	2	3	4
2-15	쉽게 기분이 상한다	0	1	2	3	4
2-1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다	0	1	2	3	4
2-17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불친절하다고 느낀다	0	1	2	3	4
2-18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다(열등감을 느낀다)	0	1	2	3	4
2-19	남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거북해진다	0	1	2	3	4
2-20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나의 언행에 신경을 쓰게 된다	0	1	2	3	4
2-21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기가 거북하다	0	1	2	3	4
2-22	성욕이 감퇴되었다	0	1	2	3	4
2-23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0	1	2	3	4

	증 상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2-24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0	1	2	3	4
2-25	울기를 잘한다	0	1	2	3	4
2-26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기분이 든다	0	1	2	3	4
2-27	자책을 잘한다	0	1	2	3	4
2-28	외롭다	0	1	2	3	4
2-29	기분이 울적하다	0	1	2	3	4
2-30	매사에 걱정이 많다	0	1	2	3	4
2-31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0	1	2	3	4
2-32	장래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0	1	2	3	4
2-33	매사가 힘들다	0	1	2	3	4
2-34	허무한 느낌이 든다	0	1	2	3	4
2-35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0	1	2	3	4
2-36	몸이나 마음이 떨린다	0	1	2	3	4
2-37	별 이유없이 깜짝 놀란다	0	1	2	3	4
2-38	두려운 느낌이 든다	0	1	2	3	4
2-39	심장(가슴)이 마구 뛴다	0	1	2	3	4
2-40	긴장이 된다	0	1	2	3	4
2-41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0	1	2	3	4
2-42	안절부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0	1	2	3	4
2-43	낯익은 것들도 생소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낀다	0	1	2	3	4
2-44	무슨 일이든 조급해서 안절부절 못한다	0	1	2	3	4
2-45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0	1	2	3	4
2-46	자신도 걷잡을 수 없이 울화가 터진다	0	1	2	3	4
2-47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0	1	2	3	4
2-48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0	1	2	3	4
2-49	잘 다툰다	0	1	2	3	4
2-50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내 던진다	0	1	2	3	4

■ 3. 다음은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이후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우, ‘있었음’ 네모칸에 ○ 표시해주십시오.
또한 그 경험에 관련된 ‘고통의 정도’를 0(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음)에서 6(매우 극심히 고통스러웠음) 사이의 알맞은 숫자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겪은 일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해당되지 않으면 없었음에 표시해주세요.

종 류 \ 평정척도		평 정 척 도								
		없었음	있었음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음						매우→ 극심히 고통스러웠음
3-1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나 정보기관, 사법기관에서 취조를 받았음	0	1	0	1	2	3	4	5	6
3-2	고문피해 당사자의 고문피해 상태를 목격하였음	0	1	0	1	2	3	4	5	6
3-3	고문피해 당사자의 보안관찰로 인한 생활의 제약이 있었음	0	1	0	1	2	3	4	5	6
3-4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없었음	0	1	0	1	2	3	4	5	6
3-5	더 이상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없었음	0	1	0	1	2	3	4	5	6
3-6	취업에 제한이 있었음	0	1	0	1	2	3	4	5	6
3-7	경제적으로 어려웠음	0	1	0	1	2	3	4	5	6
3-8	주변인이나 이웃들이 외면하거나 배척하였음	0	1	0	1	2	3	4	5	6
3-9	친인척이 외면하거나 배척하였음	0	1	0	1	2	3	4	5	6
3-10	고문사건 피해와 관련해 국가나 사회로부터 어떠한 도움이나 지원도 받을 수 없었음	0	1	0	1	2	3	4	5	6
3-11	기타 ( )	0	1	0	1	2	3	4	5	6
3-12	고문피해 당사자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음	0	1	0	1	2	3	4	5	6
3-13	고문피해 당사자가 성적 폭력을 행사하였음	0	1	0	1	2	3	4	5	6
3-14	고문피해 당사자가 언어 폭력을 행하였음	0	1	0	1	2	3	4	5	6

■ 4.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의 깊게 읽어 보시고, 아래 질문에 따라 알맞은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술을 드십니까?

① 원래 안 마신다

②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술을 마셨다

③ 원래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사건 이후에 마시게 되었다

④ 마셨으나 끊었다.

4-2. 다음에 대하여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해 주십시오.

내 용	아니요	예
1. 자기연민에 잘 빠지며 술로 인해 이를 해소하려 한다.	0	1
2. 혼자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0	1
3. 술 마신 다음날 해장술을 마신다.	0	1
4. 취기가 오르면 술을 계속 마시고 싶은 생각이 지배적이다.	0	1
5.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거의 참을 수 없다.	0	1
6. 최근에 취중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6개월에 2번 이상)	0	1
7.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술이 해로웠다고 느낀다.	0	1
8. 술로 인해 직업기능에 상당한 손상이 있다.	0	1
9. 술로 인해 배우자(보호자)가 나를 떠난다고 위협한다.	0	1
10. 술이 깨면 진땀, 손떨림, 불안이나 좌절 혹은 불면을 경험한다.	0	1
11. 술이 깨면서 공포(섬망)나 몸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경험하거나, 헛것을 보거나 헛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0	1
12. 술로 인해 생긴 문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0	1

4-3.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원래 안 피운다

②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담배를 피웠다.

③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나 사건 이후에 피우게 되었다.

④ 최근에 끊었다.

4-4. 사건 이후 자살을 실제 시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횟수:_____회) ② 아니오

4-5. 사건 이후 자살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횟수:_____회) ② 아니오

4-6. 다음 중 본인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십시오.

①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② 나는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③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④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4-6.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4-7. 귀하는 과거에 병·의원에서 의사로부터 아래의 질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질 환	의사의 진단		치 료 경 과			
	없다	있다	치료받은 적 없음 (미치료)	치료받은 적 있으나, 현재 치료 하지 않음	현재 치료 중	완치
1. 고혈압	0	1	0	1	2	3
2. 당뇨병	0	1	0	1	2	3
3. 고지혈증	0	1	0	1	2	3
4. 뇌졸중(중풍)	0	1	0	1	2	3
5. 갑상선 질환 (기능항진 또는 기능저하증)	0	1	0	1	2	3
6. 만성간염, 간경변(바이러스성)	0	1	0	1	2	3
7. 만성간염, 간경변(알코올성)	0	1	0	1	2	3
8. 위·십이지장염 또는 궤양	0	1	0	1	2	3

질 환	의사의 진단		치 료 경 과			
	없다	있다	치료받은 적 없음 (미치료)	치료받은 적 있으나, 현재 치료 하지 않음	현재 치료 중	완치
9. 만성 폐질환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0	1	0	1	2	3
10. 폐결핵	0	1	0	1	2	3
11. 전립선비대증(남성) 부인과질환(여성)	0	1	0	1	2	3
12. 만성 신장(콩팥)질환 (신부전)	0	1	0	1	2	3
13. 근골격계 질환 (척추디스크, 만성관절염 등)	0	1	0	1	2	3
14. 암	0	1	0	1	2	3
15. 우울증	0	1	0	1	2	3
16. 조울증	0	1	0	1	2	3
17. 불안장애 또는 공황장애	0	1	0	1	2	3
18. 정신분열증	0	1	0	1	2	3
19. 불면증	0	1	0	1	2	3
20. 알콜 의존성장애 (알콜중독)	0	1	0	1	2	3
21. 기타( )	0	1	0	1	2	3

■ 5. 고문 피해와 관련한 국가의 구제조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기입해주시거나 ○ 표를 해주십시오.

5-1. 법원이 아닌 국가기관에 가족의 고문을 당한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조사를 신청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만약 "아니오"라면 다음쪽의 문항 5-6으로 가세요)

5-2. 신청은 어디에 하셨습니까?

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②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③ 국가인권위원회　　④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⑥ 기타 (국가기관명 :_____)

5-3. 재조사 신청 후 가족의 고문당한 사실을 인정받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4. 재조사 결과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0에서 3사이의 알맞은 번호에 ○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스러움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스러움
0	1	2	3

5-5. 만족하지 않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6. 법원에 가족의 고문 피해와 관련한 재판을 신청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만약 "아니오"라면 다음 쪽의 6번 문항으로 가세요)

5-7. 법원의 재판 결과 가족의 고문당한 사실을 인정받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만약 "아니오"라면 다음 쪽의 6번 문항으로 가세요)

※위 5-7.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신 경우, 아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5-8. 법원으로부터 가족의 고문당한 사실을 인정받은 후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과 보상 등 구제조치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5-9. 법원의 결정 후 국가로부터 받은 구제조치에 만족하십니까?

0에서 3 사이의 알맞은 번호에 ○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스러움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스러움
0	1	2	3

5-10. 만족하지 않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6. 현재 고문피해자와 가족에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0부터 3사이의 해당되는 번호에 ○ 표를 해주십시오.

지원 항목		필요 없음	조금 필요함	필요 함	매우 필요함
6-1	명예 회복과 사회적 인식 증진	0	1	2	3
6-2	경제적 지원과 보상	0	1	2	3
6-3	신체 후유증 치료와 재활을 위한 보조 장비, 의료비 지원	0	1	2	3
6-4	정신·심리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치유센터 설립	0	1	2	3
10-5	임대 주택 제공,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한 주거 지원	0	1	2	3
10-6	국가차원의 고문방지 기구 설치	0	1	2	3

■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고문 피해에 대한 지원, 건강보호와 증진 방안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써주십시오

<오랜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추가 피해 상담이나 심층인터뷰를 원하시는 분은
인권의학연구소(02-711-7588)로 연락주시거나
조사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9 마포트라팰리스 A-2704. http://www.imhr.or.kr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인쇄일 | 2011년 12월 18일
| 발행일 | 2011년 12월 21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인권연구팀 02)2125-9754
| F A X | 02)2125-9748
| E-mail | research@humanrights.go.kr
| 제작 | (사)인권의학연구소 (02)711-7588

한국문헌번호: 9788961142328 93360 비매품